

2022년

지침연구

지방재정투자사업 사후관리 개선방안 연구 : 문화체육시설을 중심으로

2022. 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지방재정투자사업 사후관리 개선방안
연구 : 문화체육시설을 중심으로」

LIMAC 연구진

함윤주 연구위원(연구 총괄)
김상기 부연구위원
김도영 부연구위원
최성원 전문위원
주재문 분석원

외부 연구진

김 현 산동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제 I 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필요성	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1. 연구의 범위	8
2. 연구의 방법	9
3. 연구의 흐름	10
제 II 장 투자심사 및 사후관리 현황 및 쟁점	11
제1절 투자심사 현황	13
제2절 투자심사 사후관리 현황	16
1. 투자심사 결과 사후평가	16
2. 투자사업 이력관리	18
제3절 투자심사 사후관리의 한계 및 개선방향	28
1. 투자심사 사후관리의 한계	28
2. 현행 이력관리제도 관련 주요 쟁점 및 개선방향	31
제 III 장 이론적 논의 및 유사제도 검토	37
제1절 재정투자사업 사후관리 관련 이론적 논의	39
1. 성과관리와 사업평가의 의미	39
2. 사업평가체계에 기반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사후관리	47
제2절 해외 사후관리제도 사례	49
1. 일본	49
2. 영국	55
3. 미국	63

목차

제3절 국내 사후관리제도 사례	70
1. 건설진흥법에 따른 사후평가	70
2.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평가	88
3. 재정성과관리제도	98
4. 균형발전사업 평가제도	101
5. 기타 재정성과관리제도	106
6. 공공시설 운영단계 평가제도	107
제4절 선행연구	114
1. 제도 관련 선행연구	114
2. 평가지표 관련 선행연구	117
제5절 시사점	122
제IV장 투자사업 이력관리 인식조사	125
제1절 조사 개요	127
제2절 조사 결과	129
제3절 소결	140
제V장 문화체육시설 운영단계 이력관리 방안	143
제1절 운영단계 관리 현황	145
1. 공공시설별 운영 실적 통계 현황	145
2.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시자료	151
제2절 심층분석 사례분석	183
1. 분석대상 선정	183
2. LIMAC 타당성 조사 사례(울산 문수경기장)	183
3. 인천 심층점검 사례(5개 시설)	188
4. 소결	196

제3절 운영단계 이력관리를 위한 평가기준 모색	198
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설정	198
2. 유사시설 비교를 위한 통계분석 결과	202
제VI장 투자사업의 이력관리 관리범위 확대	213
제1절 기본방향 및 세부계획	216
제2절 추진전략	219
1. 법적 근거 마련	219
2. 전문기관 지정 운영	220
3. 관련기관 협력관계 구축	222
4. 환류체계 마련	223
제3절 투자사업 이력관리 시행지침(안)	224
부록 1: 일본 사후평가 사례	233
부록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사후평가 관련 근거조항	237
부록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사후평가 사례(충주종합스포츠타운)	239
부록 4: 설문지	241
부록 5: 시설구분별 유사시설 평가기준	248

목 표 목 차

〈표 II-1〉 사업 유형별 심사기관 기준 금액	14
〈표 II-2〉 사업유형별 투자심사 건수(2020년)	14
〈표 II-3〉 심사기관별 의뢰건수 및 통과건수	15
〈표 II-4〉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 2, 1항	16
〈표 II-5〉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2 2항	20
〈표 II-6〉 이력관리 업무 수행 절차	21
〈표 II-7〉 투자사업 단계별 주요정보	22
〈표 II-8〉 자가진단 항목	23
〈표 II-9〉 중점관리 후보사업 선정기준 변경	25
〈표 II-10〉 이력관리 대상 및 운영 현황	27
〈표 II-11〉 사후평가와 이력관리 대상사업 비교	29
〈표 II-12〉 사후평가와 이력관리 관리항목 비교	29
〈표 II-13〉 최근 공공시설 운영적자 관련 주요 신문기사	31
〈표 III-1〉 2016년(헤이세이 28년도) 공공사업에 관한 정책평가의 실시 건수	51
〈표 III-2〉 도로사업 사후평가 세부항목	62
〈표 III-3〉 사후평가 시기 및 평가분야	72
〈표 III-4〉 공사형태별·공사규모별 공사건수	76
〈표 III-5〉 발주기관별 대상사업 및 이행실적	77
〈표 III-6〉 문화시설 사후평가 현황	78
〈표 III-7〉 문화시설 안정성 평가 현황	79
〈표 III-8〉 문화시설 사업효율평가	80
〈표 III-9〉 문화시설 파급효과 분석 현황	81
〈표 III-10〉 체육시설 사후평가 현황	82
〈표 III-11〉 체육시설 안정성 평가 현황	83
〈표 III-12〉 체육시설 사업효율평가	84
〈표 III-13〉 체육시설 파급효과 분석 현황	85
〈표 III-14〉 주요재정사업평가의 시행근거	89
〈표 III-15〉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표	90
〈표 III-16〉 평가방법	91

〈표 III-17〉 주요재정사업평가지표 및 배점 비교(파주시)	93
〈표 III-18〉 경기도 재정사업평가 자체평가서 내용 충실도 평가지표	94
〈표 III-19〉 경기도 재정사업평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평가지표(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투자사업) ..	94
〈표 III-20〉 주요재정사업평가지표 및 배점 비교(파주시)	96
〈표 III-21〉 6개 부처의 사업성과평가제도	98
〈표 III-22〉 지원계정 자체평가 기준	103
〈표 III-23〉 지원계정 상위평가 기준	103
〈표 III-24〉 자율계정(시·도) 자체평가 기준	104
〈표 III-25〉 자율계정(시·도) 상위평가 기준	105
〈표 III-26〉 자율계정(시·군·구) 상위평가 기준	105
〈표 III-27〉 유사 평가제도 간 평가대상, 평가방법, 활용방안 비교	106
〈표 III-28〉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공공체육시설 평가지표	107
〈표 III-29〉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108
〈표 III-30〉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지표	109
〈표 III-31〉 2019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지표	110
〈표 III-32〉 2020년 국립박물관 평가인증 지표체계	112
〈표 III-33〉 2020년 국립미술관 평가인증 지표체계	113
〈표 III-34〉 분야에 따른 사후평가항목과 문화체육시설의 중점관리 항목	119
〈표 III-35〉 평가영역 및 세부 평가지표와 중요도	121
〈표 IV-1〉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표	129
〈표 IV-2〉 이력관리정보 공개대상 및 공개범위	132
〈표 IV-3〉 이력관리 정보공개 사유	133
〈표 IV-4〉 이력관리 정보비공개 사유	134
〈표 IV-5〉 투자사업 이력관리 결과 공개 찬반의견	134
〈표 IV-6〉 중점관리사업 선정 필요성	135
〈표 IV-7〉 중점관리사업 선정 기준	136
〈표 IV-8〉 사후관리제도 도입 찬성여부	136
〈표 IV-9〉 운영단계 관리 방식	137
〈표 IV-10〉 운영단계 관리 위한 기준	138

목 표 목 차

〈표 V-1〉 시설유형	146
〈표 V-2〉 국민육센터 운영현황 조사 설문 항목	150
〈표 V-3〉 공개 및 비공개 대상 기준	153
〈표 V-4〉 시설 유형 구분	154
〈표 V-5〉 공개내용	154
〈표 V-6〉 「지방자치법」상 공공시설의 정의	156
〈표 V-7〉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157
〈표 V-8〉 지방재정365와 서울시 조례 시설유형 비교	157
〈표 V-9〉 공공시설 건립비용 관련 조례현황	158
〈표 V-10〉 지방투자사업 매뉴얼 상 공공시설 정의	159
〈표 V-11〉 지방재정365 공시된 공공시설 내역	160
〈표 V-12〉 기타시설 중 별도검토 대상 예시	161
〈표 V-13〉 지방재정365와 지방회계기준 유형	162
〈표 V-14〉 시설유형에 따라 시설이 분류되어 있지 않은 공공시설 예시	162
〈표 V-15〉 복합시설로 구분되는 것이 바람직한 공공시설 예시	164
〈표 V-16〉 기타시설 내 시설구분의 다양화가 바람직할 것으로 기대되는 공공시설 예시	165
〈표 V-17〉 각 연도별 지방재정 365상에서 누락되었던 공공시설의 예시	165
〈표 V-18〉 기준연도별 데이터 비일관성이 발생하는 공공시설 예시	167
〈표 V-19〉 기준연도별 데이터 비일관성이 발생하는 공공시설 예시 1	167
〈표 V-20〉 기준연도별 데이터 비일관성이 발생하는 공공시설 예시 2	167
〈표 V-21〉 기준연도별 데이터 비일관성이 발생하는 공공시설 예시 3	167
〈표 V-22〉 기준연도별 데이터 비일관성이 발생하는 공공시설 예시 4	168
〈표 V-23〉 세입예산과목 중 사용료 등	170
〈표 V-24〉 지방투자사업 매뉴얼의 운영수익 구분	170
〈표 V-25〉 운영수익 세목관리	171
〈표 V-26〉 인천광역시 운영수익 비교(2020년 기준)	172
〈표 V-27〉 지방회계기준 비용 중 공공시설 관련비용	174
〈표 V-28〉 지방투자사업 관련 운영비 구분	175
〈표 V-29〉 타당성 조사의뢰서의 비목	175
〈표 V-30〉 운영비용의 분류 및 항목(안)	175

〈표 V-31〉 공무원인건비의 예산편성	177
〈표 V-32〉 시설관리비와 콘텐츠운영비 사례	178
〈표 V-33〉 공단 등 위탁과 민간위탁의 사례(예산)	180
〈표 V-34〉 위탁사업 집행잔액 반납 사례	181
〈표 V-35〉 위탁사업 집행잔액 수익비용 반영	181
〈표 V-36〉 미추홀도서관의 민간위탁방식	182
〈표 V-37〉 추진과정별 주요 사업내용 변경사항	184
〈표 V-38〉 문수체육관 시설개요	185
〈표 V-39〉 문수체육관 운영현황	187
〈표 V-40〉 문수체육관 방문인원 현황	187
〈표 V-41〉 인천광역시 운영비용 공시자료와 예산편성 비교(2020년 기준)	188
〈표 V-42〉 미추홀도서관 운영비용/운영수익 현황(2020년 기준)	189
〈표 V-43〉 미추홀도서관 세출예산(2020년 기준)	190
〈표 V-44〉 미추홀도서관 사업예산 구분(2020년 기준)	190
〈표 V-45〉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운영비용/운영수익 현황(2020년 기준)	191
〈표 V-46〉 문화유산관(유산계승팀) 인원 및 업무분장(2022년 기준)	192
〈표 V-47〉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용/운영수익 현황(2019~2020년 기준)	193
〈표 V-48〉 열우물테니스/스쿼시경기장 운영비용/운영수익 현황(2020년 기준)	194
〈표 V-49〉 하늘문화센터 운영비용/운영수익 현황(2020년 기준)	195
〈표 V-50〉 기초생활인프라 공급계획시 인구밀도 구분	201
〈표 V-51〉 공공시설 재분류 기준	203
〈표 V-52〉 2016~2019년도 지방재정365의 『공공시설 운영현황』의 기초통계 현황	204
〈표 V-53〉 2016~2019년도 지방재정365 『공공시설 운영현황』의 지역구분별 기초통계 현황 ..	205
〈표 V-54〉 2016~2019년도 지방재정365 『공공시설 운영현황』의 운영형태별 기초통계 현황 ..	206
〈표 V-55〉 2016~2019년도 지방재정365 『공공시설 운영현황』의 시설유형별 기초통계 현황 ..	207
〈표 V-56〉 2016~2019년도 체육시설 현황	208
〈표 V-57〉 2016~2019년도 문화시설 현황	209
〈표 V-58〉 2016~2019년도 복지시설 현황	210
〈표 V-59〉 2016~2019년도 기타시설 현황	211
〈표 VI-1〉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221



그림목차

[그림 II-1] 현행 투자사업 이력관리 절차	29
[그림 II-2] “공공시설 재정적자” 문제를 제기한 신문기사 수	30
[그림 III-1] 성과관리 프로세스	41
[그림 III-2] 사업평가: Results chain of a Project	43
[그림 III-3] 목적에 따른 구분	46
[그림 III-4] 일본의 공공사업 정책평가제도	50
[그림 III-5] 국토교통성의 완료 후 사후평가 시스템	52
[그림 III-6] 국토교통성 사업평가 진료카드 검색 사이트	53
[그림 III-7] 영국 관문심사절차	58
[그림 III-8] 2021년과 2022년 관문심사 대상 비교	60
[그림 III-9] 관문심사 결과(2013~2022)	61
[그림 III-10] CI 벤치마킹 프로그램과 타 활동간의 연계 개념	64
[그림 III-11] 성과지표 관리 Flow	66
[그림 III-12] 연평균 및 실제 개별 performance	67
[그림 III-13] 시간대별 속도 분포	68
[그림 III-14] 시간대별 속도 분포	68
[그림 III-15] 사업 전·후 통행 속도 PDF 및 CDF	69
[그림 III-16]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사후평가 세부절차	73
[그림 III-17] 사후평가 수행절차	74
[그림 III-18] 건설사업정보시스템 개념도	75
[그림 III-19] 시설물별 공사건수	76
[그림 III-20] 결과목표 및 단계목표의 예시	101
[그림 III-21] 2020년 국가균형발전사업 종합평가 추진체계	102
[그림 III-22] 사전 및 사후평가	115
[그림 III-23] 사후평가시스템	116
[그림 III-24] dBrain 재정성과정보 관리 개선방안	117



[그림 V-1]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146
[그림 V-2] 공공시설 운영현황 업무 흐름도	152
[그림 V-3] 공유재산과 공공시설	159
[그림 V-4] 문수체육관 출입구	186
[그림 VI-1] 이력관리 관리범위 확대	216
[그림 VI-2] 운영단계 이력관리 로드맵	217
[그림 VI-3] 이력관리 거버넌스(안)	222

지방재정투자사업 사후관리방안 개선연구 : 문화체육시설을 중심으로

I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I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 최근 재정분권 확대에 따라 재정 자율성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김성주와 전성만, 2021)
- 2018년 10월 정부는 『재정분권 추진방안』(관계부처 합동)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¹⁾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함
- 그러나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는 책임성이 수반되어야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음
- 재정분권 확대에 따라 예산의 계획적 집행, 효율적 집행 노력, 성과 창출 등과 같은 책임성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증가와 관리 필요성이 요구됨
- 김성주·전성만(2021)에서도 재정분권 전환사업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업의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투자사업은 지방재정의 양적 성장과 함께 증가 추세임
-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유도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1992년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가 도입됨

1) 재정자율성이란 지방자치단체 내의 정책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조달 규모 및 방법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재정책임성”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수요에 상응하는 적정수준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수립·집행하고,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음(이현우, 2018)

- 2020년 기준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의뢰된 사업(자체 및 의뢰심사)은 총 5,146건으로 2015년 대비 63.4% 증가하였으며, 총사업비 합계는 86.2조원에 달함
- 이러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양적 증가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해 투자심사의 기능이 더욱 중요해짐
- 따라서 공공사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투자심사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동시에 사업관리 측면에서 환류에 근거한 평가체계가 필요함
- 지방재정 규모의 성장과 대내외적 사회·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 심사 기준 등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 무엇보다도 투자심사 이후 사업의 성과관리 측면에서 사업의 시행→성과평가 및 측정→측정 결과의 환류 단계에 의거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진행 중인 사업의 개선은 물론이고, 향후 신규사업의 계획 및 타당성조사, 심사 단계에서 방법 및 판단기준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제공이 가능함
-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다양한 공공시설 건축사업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등의 문제로 기 추진된 공공시설 저조한 이용률 및 운영비 부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
- 공공시설은 수익성보다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무료 또는 민간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되어 운영수지 외에 이용자 수를 기반으로 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 및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수 외.(2021)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863개 공공 시설물 중 흑자를 내는 시설은 약 11.2%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운영비 부담을 오롯이 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부담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특히 『생활SOC 3개년 계획』(국무조정실, 2019.4.15.)에 따라 생활SOC복합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2020~2021년 3년간 총 530건이 선정되어 228개²⁾ 시·군·구 중 202개(88.6%) 지자체에 복합화시설이 1곳 이상이 설치될 예정임(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1.09.03.)

2) 행정구역상으로는 226개이나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포함하여 228개임

- 또한 이번 정부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022년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하여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공공시설물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한 현행 사후관리제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며, 실제 투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주요재정사업평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 이력관리제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사후평가 등 각종 사후평가제도가 존재함
- 이들 사후관리제도는 일부 중복되나, 평가목적과 대상, 평가범위, 평가주체 및 과정, 결과 활용도에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재정투자사업 관점에서 성과평가 및 관리에 한계가 있음

2. 연구의 필요성

-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는 2016년부터 시행하여 매년 연차보고서가 발간되고 있으나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관련한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투자사업 이력관리 결과 투자사업 진행 상황과 결과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거나 활용되지 않아 향후 공개 범위와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2016년부터 LIMAC은 이력관리 전문기관으로 매년 1,600여건의 중앙투자심사 및 500억원 이상의 자체투자심사 통과사업의 이력 관리 및 중점관리사업 관련 검토를 수행함
- 현재까지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정보만 공개하고 있으나,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유형, 주요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공유함으로써 이후 유사한 사업 추진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함
- 한편, 투자사업 이력관리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있으나,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DB 구축 및 분석과정을 거쳐 중점관리사업을 선정하도록 하여 관리 및 감시의 기능도 일부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자료 제출 협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문제, 중점관리사업 선정결과에 대한 패널티 또는 인센티브 부재 등으로 실제 해당사업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력관리 제도의 역할 및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되기 위해 현행 이력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이력관리 결과 공개 여부 및 공개 방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이 필요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투자사업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특히 운영단계에 대한 이력관리 확대 필요성 및 실행시 준비사항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재 투자심사 이후의 대표적인 사후관리제도는 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로, 사업관리범위는 사업 준공단계까지로 투자심사시 제시된 총사업비 및 일정 관리 측면에 한정됨
- 따라서 투자심사 이후 사후관리 측면에서 운영단계의 지역 수혜도 및 성과를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 운영단계의 사후관리를 통해 투자사업이 미치는 효과성, 효율성, 파급효과 등을 측정하고, 이러한 결과가 사전 타당성조사의 기초자료이자 투자심사의 주요 판단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환류체계를 마련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운영단계까지 투자사업 이력관리 확대를 위해 관리대상 및 범위 설정, 관리항목 및 자료 수집 방안, 활용 및 환류방안 등 전반적인 사후평가제도 운용에 대한 기초연구가 필요함
 - 다만 지방재정투자사업은 사업비 규모가 사업별로 차이가 크며, 사업유형도 다양하여, 운영단계 관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식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 운영단계 관리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유형이나 규모별로 운영단계 관련 필요한 자료항목과 수집방법, 평가주기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한 기초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운영단계 이력관리 중에서도 1차적으로 문화체육시설이 한정하여 관리할 경우 사전에 준비하여야 할 사항을 먼저 검토하고, 향후 실제 제도 시행시 지침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함
- 본 연구의 후속연구로 2023년부터 사업유형, 규모별 운영단계 이력관리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본 지침연구는 투자사업 사후관리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 본 연구에서는 우선 투자심사 현황 및 투자심사 이후 사후관리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제도 운영의 한계와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 최근 각 투자심사기관별 투자심사 현황
 - 투자사업 사후관리 관련 제도 운영현황
 - 현행 투자사업 이력관리 주요 쟁점 및 개선 방향
- 성과관리 및 사업평가 관련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국내외 유사제도와 비교하여 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검토함
 - 성과관리 및 사업평가 관련 이론적 논의(개념, 정의, 유형 등) 정리
 - 국내외 유사제도와의 비교 및 시사점
- 2022년 기준 투자사업 이력관리 대상 사업 관련 자료를 직접 입력 및 관리해야 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행 이력관리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수행하고, 제도 개선방향 관련 시사점을 도출함
 - 공무원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현행 이력관리제도의 개선 방향 도출
 - 운영단계까지 이력관리 확대 관련 의견 수렴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업유형 중 문화체육시설에 한정하여 운영단계까지 이력관리를 확대할 경우, 이력관리 세부지침 마련을 위한 관련 데이터 분석 및 향후 제도 도입 및 정착을 위한 자료 작성기준 및 수집 방안에 대해 검토함
 - 지방재정투자사업은 사업유형이 다양하므로, 운영단계 사후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유형에 대한 검토 필요함
 - 특히 공공시설 적자 이슈가 크게 두드러진 문화 및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체육시설 운영단계 이력관리 수행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함
 - 운영단계 사후관리 목적 및 대상사업
 - 운영단계 이력관리 주요 관리항목
 - 현재 시설 유형별 실적 통계 자료 구축 현황 조사 및 통계 분석
 - 운영단계 이력관리 단계적 수행방안
 - 대상, 범위, 방법 측면
- 또한 문화체육시설 운영단계 이력관리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으로 향후 자료 수집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지방재정365의 “공공시설 운영현황”의 최근 5년간 DB를 토대로 심층검토 사례 선정
 - 심층검토 사례 담당자 인터뷰
 - 운영단계 사후관리 목적 및 대상사업
- 궁극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투자사업 사후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 따라서 투자사업 사후관리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및 제도 정착을 위한 추진과제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 법적 근거 마련 및 전문기관 지정 운영, 관련기관 협력관계 구축 등

2. 연구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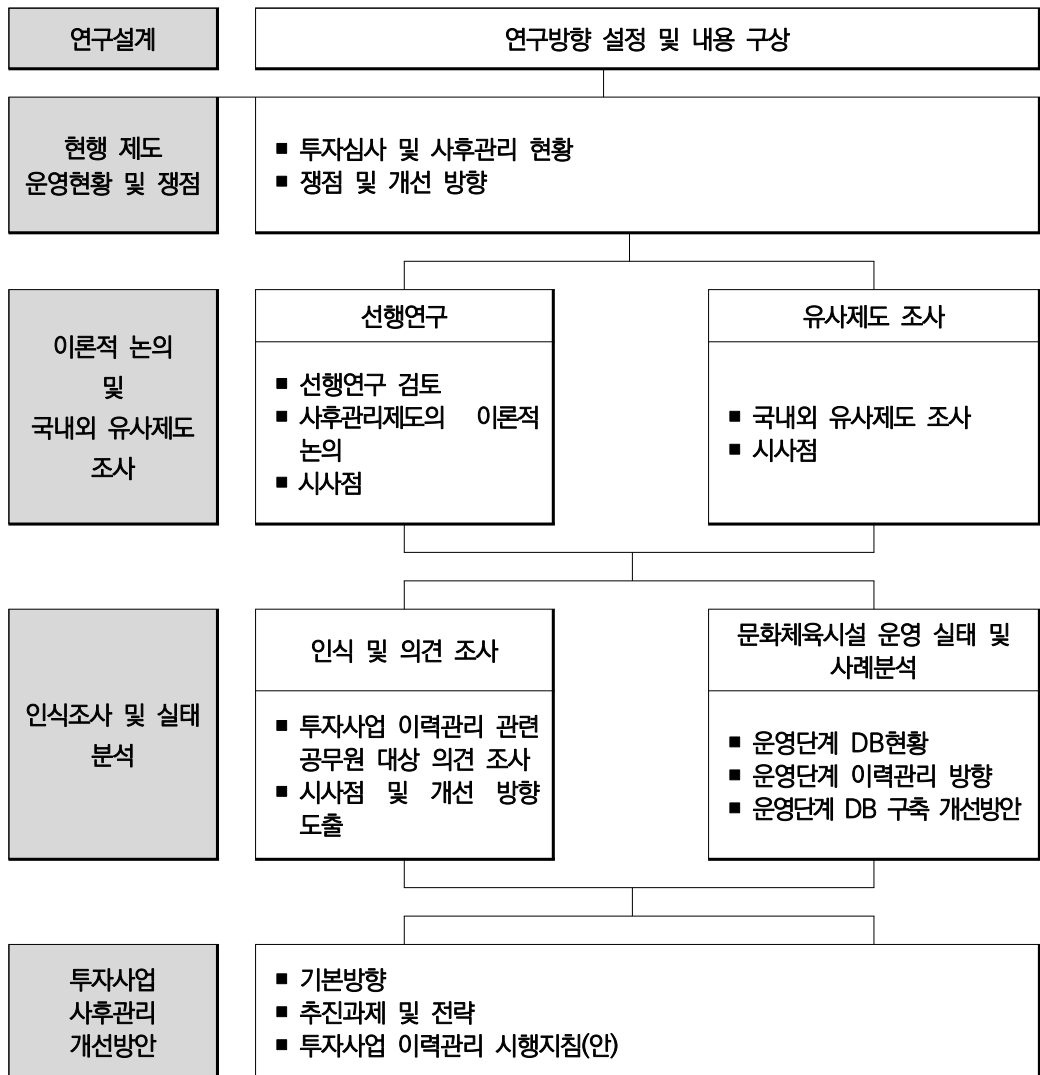
- 문헌 및 사례연구
 - 관련 제도 및 법령에 대한 분석
 - 국내·외 학술논문, 학위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서 이론적 논의 검토
 - 운영단계 DB 관련 가용한 자료 조사 및 정리
- 설문조사
 - 투자사업 이력관리 인식 관련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수행

□ 면접조사

○ 전문가 인터뷰 등

○ 심층검토 사례시설 담당공무원 또는 시설운영 관계자 대상 심층 인터뷰 실시

3. 연구의 흐름



지방재정투자사업 사후관리방안 개선연구 : 문화체육시설을 중심으로

II

투자심사 및 사후관리 현황 및 쟁점

제1절 투자심사 현황

제2절 투자심사 사후관리 현황

제3절 투자심사 사후관리의 한계 및 개선방향

II

투자심사 및 사후관리 현황 및 쟁점

제1절 투자심사 현황

□ 투자심사 대상 및 유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관은 사업 유형별로 총사업비 금액에 따라 구분됨
- 투자심사 대상사업 유형은 ①일반투자사업, ②행사성 사업, ③홍보관 사업, ④청사신축 사업, ⑤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5개로 구분됨
 - (시행령 규정) 일반투자, 행사, 홍보관, (시행규칙 규정) 청사, 문화체육시설
- 투자심사 유형은 지방재정 운용 관련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경우 새로운 유형을 만들고, 별도의 금액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해 왔음
 - (연혁) 일반투자('92년), 행사('02년), 홍보관('11년), 청사 신축('09년), 문화체육시설('13년)

〈표 II-1〉 사업 유형별 심사기관 기준 금액

(단위 : 억원)

구분		일반투자사업		문화체육시설 청사사업	행사성사업	홍보관사업	
		자체재원	복합재원				
시군구	시군구 자체	20	~ 60		1 3	3 5	
	시도의뢰		60 200	20억원 이상	3 30	5 30	
	중앙 의뢰		200 이상	200억원 이상 (이전재원이 포함된 경우)	30 이상	30 이상	
시도	시도자체	40	~ 300		3 30	5 30	
	중앙 의뢰		300 이상	40억 이상	30 이상	30 이상	

주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 개략적 분류임
세부 사업내용에 따라서 심사기관이 변동될 가능성 있음

□ 사업유형별, 심사기관별 투자심사 현황

- 2020년 투자심사 5,146건 중 일반투자 3,793건(73.7%), 행사성(19.3%), 문화체육시설(3.7%), 청사 신축(3.0%), 홍보관 사업(0.4%) 순임

〈표 II-2〉 사업유형별 투자심사 건수(2020년)

구분	일반투자	행사성	홍보관	청사	문화·체육	계
건수	3,793 (73.7)	992 (19.3)	19 (0.4)	152 (3.0)	190 (3.7)	5,146 (100.0)
지역	기초	2,283 (79.0)	606 (21.0)	1 (0.03)	-	2,890 (100.0)
	광역시	1,162 (64.9)	371 (20.7)	5 (0.3)	125 (7.0)	1,790 (100.0)
	중앙	348 (74.4)	15 (3.2)	13 (2.8)	27 (5.8)	466 (100.0)
금액	78.4 (90.9)	0.6 (0.6)	0.2 (0.2)	3.5 (4.1)	3.6 (4.2)	86.2 (100.0)

□ 투자심사 의뢰건수 추세

- 중앙투자심사 의뢰건수는 매년 약 400~500여건으로 연도별 증감이 있음
- 시도심사는 2016년 기준 1,341건에서 2019년 2,331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함
- 시군구심사 자체심사도 2016년 기준 2,199건에서 2019년 3,984건으로 크게 증가함

□ 투자심사 통과율

- 2016년~2019년 평균 통과율은 중앙투자심사 71.2%, 시도심사 87.1%, 시군구 자체심사 98.8%이며, 통과율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임
- 시군구 자체심사는 대부분의 사업이 통과되는 실정임

〈표 II-3〉 심사기관별 의뢰건수 및 통과건수

(단위: 건, %)

중앙투자심사							
'16년		'17년		'18년		'19년	
의뢰	통과 (비율)	의뢰	통과 (비율)	의뢰	통과 (비율)	의뢰	통과 (비율)
553	339	592	422	372	255	497	391
	(61.3%)		(71.3%)		(68.5%)		(78.7%)
시도 심사							
'16년		'17년		'18년		'19년	
의뢰	통과 (비율)	의뢰	통과 (비율)	의뢰	통과 (비율)	의뢰	통과 (비율)
1,341	1,139	1,603	1,346	1,637	1,454	2,331	2,115
	(84.9%)		(84.0%)		(88.8%)		(90.7%)
시군구 자체심사							
'16년		'17년		'18년		'19년	
의뢰	통과 (비율)	의뢰	통과 (비율)	의뢰	통과 (비율)	의뢰	통과 (비율)
2,199	2,164	2,656	2,632	2,879	2,838	3,984	3,953
	(98.4%)		(99.1%)		(98.6%)		(99.2%)

자료 : 윤성일·김상기(2020)

제2절 투자심사 사후관리 현황

1. 투자심사 결과 사후평가

가. 시행근거 및 목적

□ 투자심사 결과 사후평가 시행근거

- 투자심사 결과 사후평가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 2, ①항에 제시되어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2022.09)에 제시됨

〈표 II-4〉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 2, 1항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자체심사 및 시·군·구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군·구는 자체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예산반영률 및 사업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4., 2010.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투자심사 결과 사후평가 목적

- 투자심사 결과 사후평가의 목적은 “자치단체별로 투자심사의 적정성을 평가해 투자심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촉진시키고 평가결과를 공표해 투자심사 내실화를 도모”임(『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나. 주요내용

□ 평가 개요

- 평가시기 : 매년 1회
- 평가방법 : 자치단체 교차평가 또는 자체평가
- 대상기관 : 시·도 및 시·군·자치구

○ 주요평가항목(예시)

- 예산반영율(예산반영건수·예산액/적정심사 건수·금액)
- 미심사 사업예산 반영률(미심사건수·금액/당해연도 예산총액)
- 재검토·부적정사업 예산반영율(예산반영건수·금액/심사건수·금액)
- 조건부사업 조건이행율(조건이행건수·금액/조건부 사업수·금액) 등
- 2단계심사 이행여부(2단계심사 대상건수·금액)
- 총사업비 30%이상 증가 사업 재심사 이행여부(재심사 대상 건수·금액)

○ 평가대상사업 : 최근 3개년 투자심사사업

□ 평가반 구성

-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
- 심사대상사업에 대하여 자료를 작성, 평가 실시

□ 평가결과 조치

- 평가결과 투자심사결과 반영 없이 예산편성 및 집행한 자치단체는 재정패널티 부여 등 제재조치 부여

□ 운영현황

- 매년 말 행안부 및 17개 시도 투자심사 담당자들이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로부터 최근 3년간 자료를 취합함
- 대상은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뿐만 아니라 불통과한 사업(부적정, 재검토)도 포함하여 예산반영여부 및 반영률과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과 진도, 부진시 부진사유에 대해 조사함
 - 진도는 1. 예산 미반영 → 2. 예산반영, 미지출(실시설계 미실시) → 3. 실시설계 중 → 4. 실시설계 완료 → 5. 용지보상중 → 6. 계약절차 진행중 → 7. 착공 → 8. 준공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 부진사유는 ①국비미지원, ②국비지원액 부족, ③지방비미확보, ④지방비 부족, ⑤민자 등 기타재원 미확보, ⑥민자 등 기타재원 확보 부족, ⑦용지보상 협의 지연, ⑧집단민원 발생, ⑨행정절차 미이행, ⑩관계기관간협의지연, ⑪실시설계 결과 사업계획 변경 중, ⑫기타로 구분하여 조사함

2. 투자사업 이력관리

가. 도입 배경 및 목적

□ 이력관리 제도 도입 배경

-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방재정이 양적인 측면에서 성장함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유도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심사 제도(지방재정법 제 37조)를 실시함
- 그러나 투자심사가 통과된 이후의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지자체 자체적으로도 모니터링이 어려우며, 심사 시의 사업내용 대비 변경사항에 대한 추적 및 관리 불가능한 실정이었음
- 이에 투자심사 통과 이후의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중단·지연으로 인한 재정 손실, 운영손실 과다, 지방재정법령 위배 등의 문제를 관리함으로써
- 공공사업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2015년에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2)를 도입함

□ 이력관리 제도의 목적

- 투자심사 통과 이후의 예산편성 및 추진과정에 대한 관리를 통해 자치단체가 사업단계별로 상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독려하는데 목적이 있음
- 또한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 투자심사 제도를 벗어나는 사업에 대하여 제도권 내로 회귀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 이력관리제도의 의의 및 기대효과

- 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의 도입배경과 취지를 고려할 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력관리 결과에 대한 적절한 공개 및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각 활용 주체별 상당한 기대효과가 예상됨
- 지역주민
 - 지역에서 추진하는 주요 투자사업의 통과여부,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지

역주민에게 공개하여 투자심사 이후에도 주민의 참여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 필요함

○ 시군구 및 시도 사업부서

- 구체화된 사업 일정, 예산 등의 계획을 예산부서, 행정안전부 등과 공유함으로써 적극적인 사업 추진 가능
- 사업담당자 변경 시, 사업 내용 및 추진 경과를 용이하게 파악함으로써 원활한 업무 연계 가능
- 신규 사업 계획수립 시, 타 지자체 포함 기존 유사사례 정보 검토를 통한 사업 중복성 배제(또는, 차별성 강화) 가능

○ 시군구 및 시도 예산부서

- 각 부서별 추진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사업별 연간 재정관리(예산, 결산, 추경 등) 등에 활용 가능
- 지방채 발행 사업, 채무부담행위 포함 사업의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에 위험요인 인지 및 효율적 관리 가능
- 사업 추진 및 운영 부진 사업에 대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대응 마련 및 관리 가능
- 시도의 경우, 시도비 지원 규모, 지원 여부 판단(예하 자치단체 간의 형평성 등)에 활용 가능

○ 행정안전부

- ‘투자심사’ 이후의 사업 진행상황 모니터링을 통한, 투자심사 제도 개선에 활용
- 국가 차원에서의 각 자치단체별 추진 사업의 내용, 추진상황 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 수립에 활용 가능

○ 정부부처

- 국가 차원에서 각 자치단체별 추진사업 내용, 추진상황 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 수립에 활용
- 국비 투입 사업의 실제 사업 추진 및 운영 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향후 국비 배분 계획 수립에 활용 가능
- 추진/운영 부실 지자체 파악, 지원 부처의 국비 지원 규모 적정성 검토(ex,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등에 활용

○ 그 외 DB 사용자

-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방법론 개발,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하여 지방재정운용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나. 시행근거 및 수행절차

□ 시행근거 및 업무수행 근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 2, ②항에 사업단계별로 사업비 투입현황부터 운영단계까지 평가한 후 부진한 사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업무수행근거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 2 ③, ④항에 행안부장관이 자치단체에 투자사업 이력관리 관련 세부 지침을 통보하고,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제시됨

〈표 II-5〉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2 2항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호에 따른 투자사업의 심사, 심사 후 사업 추진 및 추진완료 후 운영의 각 단계별로 그 추진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을 관리(이하 "투자사업 이력관리"라 한다)하고, 사업단계별로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운영손익 등을 평가하여 사업지연 및 중단, 운영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앙의뢰심사 대상인 사업의 경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효과적인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평가 또는 제2항의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LIMAC의 이력관리 업무수행 근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이하 매뉴얼)상 행정안전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수행하도록 함
- 또한 매뉴얼 개정(2020.12.29.)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이력관리를 수행하도록 함

□ 이력관리 대상

- 이력관리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과 중앙의뢰심사 대상으로 제시됨

다. 절차 및 주요내용

□ 이력관리 수행절차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제IV장에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절차 및 세부기준이 명시됨
- 이력관리 업무는 크게 [1단계] DB구축 → [2단계] 사업검토 → [3단계] 사업관리 단계로 진행됨

〈표 II-6〉 이력관리 업무 수행 절차

구분	절차	수행주체
① DB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단계 정보입력 ※ 투자심사 의뢰서 기준 ■ 추진단계 정보입력 ※ 결산 기준 추진내용반영 ■ 자가진단 결과입력 ※ 자가진단 기준 토대로 입력 	지자체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B 구축 결과 검토 및 최종 확정 ※ 제출된 사업정보 오류 확인 및 수정/보완 절차 포함 	행안부 (LIMAC) 검토
② 사업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주요 변경사항 검토 	행안부(LIMAC) →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관리 후보사업 선정 및 결과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소명자료 제출 	지자체 → 행안부(LIMA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관리사업(자체관리계획 수립 대상) 선정 	행안부(LIMAC) → 중투위 보고
③ 사업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관리계획 수립 	행안부 요청 → 지자체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관리계획 검토 및 확정 	행안부(LIMA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자체관리계획 이행 여부 점검 ■ 재심사 대상 사업 공개 ■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 공개 	행정안전부

1) 1단계: DB구축

□ 주요 사업정보

- 투자사업은 준비단계, 추진단계, 완료단계 3단계로 구분하여 사업정보를 관리함
 - 투자사업의 단계별 사업정보 기재사항은 사업주관 자치단체의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후 예산부서의 검토를 거치도록 함
- 행정안전부 및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이하 LIMAC)는 제출된 사업정보 검토 후 최종 확정함
 - 제출된 사업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미제출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및 보완 요청을 함
 - 중앙투자심사를 거친 투자사업의 경우 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 추진정보와 투자심사의뢰서와의 비교를 통해 자치단체의 입력 누락 및 오류를 최소화함
- 투자사업 단계별 주요 사업정보는 다음과 같음

〈표 II-7〉 투자사업 단계별 주요정보

[1단계] 준비단계	[2단계] 추진단계 / [3단계] 완료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통과 시기, 사업명, 작성자 ■ 시행주체, 운영주체, 사업기간, 사업위치 ■ 투자심사 정보(심사유형, 결과, 조건) ■ 사전절차이행정보(타당성조사 관련) ■ 사업량(부지면적, 연면적, 세대수 등) ■ 일정정보(공사준공까지 일정정보) ■ 총사업비 및 운영비, 운영수입 정보 ■ 분양수입 정보(분양사업) ■ 연차별 자원조달계획 ■ 지방채 관련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단계 사업정보 항목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 추진과정 및 준공 기준으로 실제 집행 내용 반영 ■ 사업량(부지면적, 연면적, 세대수 등) ■ 일정정보 : 당해년도 실제 수행일정 ■ 총사업비 정보(실제 집행내역 반영) ■ 연차별 자원조달계획 및 집행내역 ■ 투자심사 조건별 이행 여부 ■ 자가진단 정보 ■ 중점관리사업 선정 여부 ■ 자체관리계획 이행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2020.12

□ 자가진단

- 투자사업 이력관리는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평가나 감사가 아닌 모니터링의 관점에서 추진되는 제도로써 추진단계 정보 제출시 자치단체 스스로 각자의 사업에 대한 자가진단표도 작성하여 제출함

〈표 II-8〉 자가진단 항목

구분	2016년 선정기준	2017~20년 선정기준	비고
사업비	① 최근 사업비 투입 후 6개월 이상 예산투입이 없는 사업	① 최근 사업비 투입 후 6개월 이상 예산투입이 없는 사업	동일
		② 최종 투자심사의뢰서 대비 사업비 변동 사업	세분화
		②-1 총사업비 10% 이상 변동	세분화
	② 자원별 사업비 10% 이상 변동	②-2 자원별 사업비 10% 이상 변동	동일
	③ 분야별 사업비 10% 이상 변동	②-3 분야별 사업비 10% 이상 변동	동일
사업내용		②-4 채무부담행위/ 매입확약/ 신용보증 등이 있는 사업	신설
사업기간	④ 최종 투자심사의뢰서 대비 사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사업	③ 최종 투자심사의뢰서 대비 사업내용의 변경 있는 사업	동일
기타	⑤ 최종 투자심사의뢰서 대비 공사완공연도 변경 사업	④ 최종 투자심사의뢰서 대비 공사완공 연도 변경 사업	동일
	⑥ 지방채 발행 이후 중단된 사업	⑤ 지방채 발행 이후 중단된 사업	동일
		⑥ 사업관련 민원이나 소송/분쟁이 있는 사업	신설
		⑦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확인 필요 사업	신설
		⑧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사업으로 조건이행 여부 확인 필요사업	신설
		⑨ 전년도 중점관리사업 중 자체 관리계획 이행 여부 확인 사업	신설

2) 2단계: 검토

□ 중점관리후보사업 선정

- 추진단계 사업 중 사업계획 변동이 큰 사업을 중점관리후보사업으로 선정하여 소명자료를 요청함
- 2020년 이력관리부터 중점관리후보사업 선정기준은 총사업비(사업비 규모 가중치 적용) 증가 정도, 자체재원 및 지방채 증가 정도, 일정지연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가 전체 사업에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선정함
 - 2019년 이전에는 자가진단에 제시된 기준인 총사업비 10% 이상 증가, 공사 준공연월이 12개월 이상 지연된 사업 등을 기준을 적용하여 후보사업을 선정함
 - 그러나 총사업비의 규모, 사업비 증가 및 지연 정도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동일 배점을 부여하여 중점관리 후보사업이 소규모 사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발생함
 - 이에 따라 사업비 규모와 변경 정도를 고려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정 기준을 개선함
- 중점관리후보사업 선정기준은 매뉴얼이나 법령에 의해 정해진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행안부 및 LIMAC이 관리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함
 - 현재는 상대평가를 실시하나, 관리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면 절대평가를 통해 선정 가능함

〈표 II-9〉 중점관리 후보사업 선정기준 변경

구분	기준		변경		
사업비	총사업비	10% 미만 증가: 0점 10% 이상 증가: 1점	총사업비	10% 미만 증가: 0점 20% 미만 증가: 1점 30% 미만 증가: 2점 ...	[가중치] 100억원 미만: 1배 200억원 미만: 1.1배 300억원 미만: 1.2배 400억원 미만: 1.3배 ...
	시군구비		자체재원		-
	시도비				
	지방채		지방채		-
사업기간	준공시기	12개월 미만 증가: 0점 12개월 이상 증가: 1점	준공시기	12개월 미만 증가: 0점 24개월 미만 증가: 1점 36개월 미만 증가: 2점 ...	-
기타	기타	감사원 지적사항 유무, 민원, 재심사대상 여부 등	기타	재심사대상	
▼▼▼					
종합	합계점수가 3점 이상 사업		합계점수가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		

□ 중점관리사업 선정절차

- 중점관리 후보사업에 대한 지자체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한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결정함

3) 3단계: 관리

□ 중점관리사업 자체관리계획

-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자체관리계획에는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된 사유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하고 최종적으로 선정사유별 원인 규명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 자체관리계획은 계획 대비 실제 사업추진 현황 분석, 사업 지연 또는 중단에 따른 투자사업 비효율, 재정손실 현황 및 원인분석, 재정손실 최소화 및 사업의 기존 목적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으로 구성됨
 - 자체관리계획 수립은 2016년에 행안부가 배포한 ‘자체관리계획 수립지침’을 준용함

□ 자체관리계획 이행여부 점검

- 자체관리계획에는 연차별 종합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행계획의 시행여부에 대해 차년도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통해 확인하고 있음

□ 기타사업 관리

-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이력관리 시스템에 입력된 사업계획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을 지방재정365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공개함

다. 이력관리 운영 현황

□ 이력관리 운영 현황

- 2016년도 : 기초연구 및 시범적으로 이력관리를 수행함
 - 이력관리 대상사업 범위 및 관리해야 할 사업정보, 검토기준을 마련함
 - 2013~2015년 중투심 통과 사업 중 500억원 이상 사업 186건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15개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을 선정하고, 시범케이스로 5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심층점검을 실시함
- 2017년도 : 대상사업 확대(중투심 통과사업 및 500억원 이상 자체투자심사 사업), 자료는 e-호조를 통해 제출함

- 2018년~ : 자료를 e-호조 대신 엑셀제출 방식으로 변경함
 - e-호조를 통해 입력된 사업정보의 정확성 결여, LIMAC의 e-호조 접근권한 이로 인해 이력관리 업무 전반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방식을 변경함

〈표 II-10〉 이력관리 대상 및 운영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투자사업 심사 기간	2013 ~2015년 (3년)	2013 ~2016년 (4년)	2013 ~2017년 (5년)	2013 ~2018년 (6년)	2013 ~2019년 (7년)	2013 ~2020년 (8년)
투자심사 구분	중투심 사업	투자심사가 완료된 모든 사업				
사업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중투심은 모든 사업, 자체심은 500억원 이상 사업만 대상				
사업수	186건	1,076건	1,323건	1,463건	1,575건	1,602건
중점관리 사업	15건	27건	31건	34건	16건	44건
심층점검	5건	-	-	-	-	-
자료구축	자치단체 문의를 통한 자료 구축	e-호조에자 치단체가 핵심정보 직접입력	자치단체가 핵심정보 직접 입력 (별도 DB 시스템 구축)			
자가진단 기준	4개 항목 12개 세부기준	9개 항목 13개 세부기준				

제3절 투자심사 사후관리의 한계 및 개선방향

1. 투자심사 사후관리의 한계

- 투자사업 통과 이후 중단사업 관리체계 부재
 - 투자심사 통과후 중단 사업 관련 관리기준이 부재하여 별도의 공식 절차 없이 사업
 - 2020년 총 53건의 사업이 투자심사 직후 또는 사업추진 중에 중단 또는 보류 상태이며, 2020년까지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되어 자체관리계획까지 수립하였으나 중단되는 경우도 존재함
 - 사전적 지방재정관리제도로서 투자심사제도의 역할 정립 및 계획적인 재정운용도·모, 추진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지역 주민 정보 공개 측면에서 중단 사업에 대한 보고 또는 관리체계가 필요함
- 조건부 판정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투자심사 통과 사업 중 대부분이 조건부 사업으로 조건부 의견 반영 여부 및 추가 보완 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함
 - 투자사업의 주요 사업정보 중 추진단계 사업은 투자심사 조건별 이행여부와 관련 세부내용을 작성함
 - 또한 투자심사 결과 사후평가에서도 조건부사업 조건이행율(여/부) 정도를 별도로 파악함
 - 그러나 상기 두 개의 정보 모두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며 조치 여부 정도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는 한계가 존재함
- 투자심사 결과 사후평가와 투자사업 이력관리 중복업무 최소화 및 업무 연계 필요
 - 투자심사 결과 사후평가는 매년 1회 최근 3개년 투자심사 사업(미통과 사업 포함)을 대상으로 자체 또는 교차 평가 실시하는 반면, 이력관리는 2013년 이후 투심심사 통과사업의 완료시까지 주요 사업정보를 관리함

〈표 II-11〉 사후평가와 이력관리 대상사업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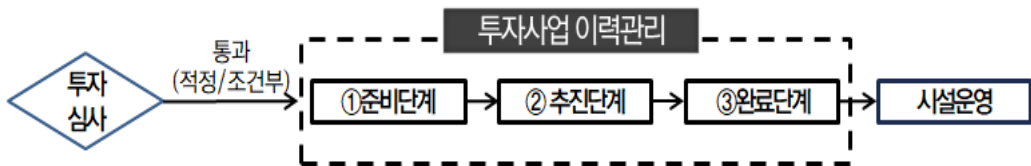
구분	사후평가 대상사업	이력관리
투자심사 결과 기준	적정	적정
	조건부	조건부
	재검토	
	부정적	
투자심사 이후 관리기간	최근 3개년 투자심사 의뢰사업	2013년 이후 투자심사 통과사업

〈표 II-12〉 사후평가와 이력관리 관리항목 비교

관리항목	사후평가	이력관리
예산반영율(예산반영건수·예산액/적정심사 건수·금액)	○	○
미심사사업예산 반영률(미심사건수·금액/당해연도 예산총액)	○	
재검토·부적정사업 예산반영율(예산반영건수·금액/심사건수·금액)	○	
조건부사업 조건이행율(조건이행건수·금액/조건부 사업수·금액)	○	○
2단계심사 이행여부(2단계심사 대상건수·금액)	○	○
총사업비 30%이상 증가 사업 재심사 이행여부(재심사 대상건수·금액)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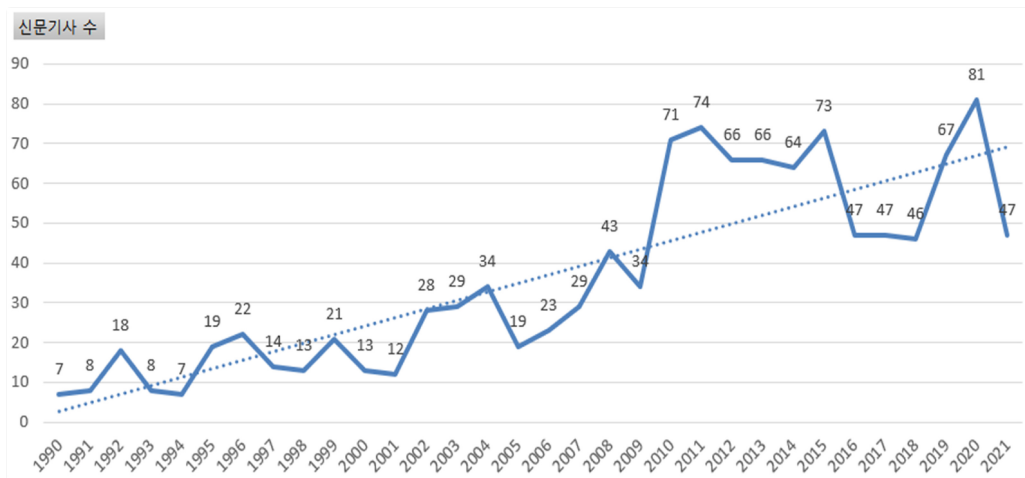
- 이력관리는 투자심사 결과 사후평가 대비 심층분석이 가능하나 불통과한 사업 이력은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사후평가와 연계하여 투자심사 사업의 이력에 대한 관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특성상 여러 번의 심사 이력이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검토/부적정을 받은 이후 재상정하여 통과한 사업의 경우 당초 재검토/부적정 사유에 대한 조치 및 해소 여부에 대한 이력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준공 이후 사업 관리 부재로 당초 투자사업의 목적 달성도 평가 한계
- 현행 투자사업 이력관리는 준공단계까지만 관리하며, 운영단계에서 지역 수혜도 등 심사 당시 설정한 사업 목표와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가 부재함

[그림 II-1] 현행 투자사업 이력관리 절차



- 지방재정365를 통해 매년 공시되는 『공공시설 운영현황』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리스트와 각 시설별 운영수입, 비용 등 개략적 운영실적이 공개됨
 - 그러나 축적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대상시설 유형이 불명확하고, 데이터 누락, 시설별 작성 기준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 운영단계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에 한계가 많음
 - 지방재정365의 『공공시설 운영현황』 관련 데이터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은 본 보고서 제4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함
-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 적자 및 저조한 이용률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옴
 - “공공시설 재정적자”로 검색된 신문기사 수 1,213개(자료: 빅카인즈, 언론사: 전국 일간지, 경제일간지, 지역일간지)에 달함
 - 최근 신문기사의 경우 나라살림연구소(2020)이 지방재정365의 『공공시설 운영현황』을 활용하여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치단체별로 관내 공공시설 적자 관련 이슈를 제기함

[그림 II-2] “공공시설 재정적자” 문제를 제기한 신문기사 수



자료 : 빅카인즈, 언론사 : 전국일간지, 경제일간지, 지역일간지

〈표 II-13〉 최근 공공시설 운영적자 관련 주요 신문기사

- “코로나 전으로 고속도로 통행수익 회복했지만.. 휴게소들은 적자 여전”(서울경제, 2021.10.22.)
- “도내 공공시설 5년 누적 적자 8천500억원…지방재정 ‘휘청’”(경기일보, 2020.06.25.)
- “부울경공공시설 91% 적자… “이용객 줄었는데 인력은 늘어””(국제신문, 2021.12.30.)
- “대구경북 공공시설 10곳 중 9곳 적자 운영”(2022.01.05.)
- “인천 29개 공공시설 2018년 1년동안568억원 순손실”(경기일보, 2020.08.19.)
- “대구 오페라하우스·문예회관, 年 평균 각 73억·68억 적자”(영남일보, 2020.08.13.)
- “혈세누수 주범“…광주전남 공공시설 4년간 누적적자 1780억원(전남일보, 2019.11.19.)
- “지자체 운영 공공시설 90% 적자… 부산도 80% 넘어(부산일보, 2021.12.29.)
- “793개 짓는 데 26조 들었지만… 매년 평균 10대 적자[혈세 축내는 공공시설]”(세계일보, 2020.07.27.)
- “‘인구절벽’에 남아도는 전북도 농어촌 공공시설”(동아일보, 2017.10.27.)

- 따라서 투자심사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이 정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시설 관련 투자심사 평가기준의 개선사항 도출 및 투자심사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또한 심층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 제고 및 건전재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2. 현행 이력관리제도 관련 주요 쟁점 및 개선방향

- 통과율이 높은 자체심사 특성상, 투자심사 이후 체계적인 사후관리 필요
 - 투자심사 기관별 심사건수를 살펴보면 19년 기준으로 중앙투자심사가 391건, 시도 심사(자체 및 의뢰심사 포함)가 2,115건, 시군구 자체심사가 3,953건임
 - 즉 전체 지방재정투자심사 중 시군구 자체심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심사통과율을 살펴보면 자체심사의 통과율이 99% 이상일 보임
 - 중앙투자심사의 경우 현행 이력관리를 통해 일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체심사의 경우 지방지출의 자율성 측면을 제고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투자심사 이후에 대한 사후관리가 요구됨

□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의 실효성 제고 측면

-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자료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함
- 그러나 제출된 사업정보에 각종 오류(일관성 부족, 산출근거 및 근거 부재, 누락 정보 등) 등으로 인해 DB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사업정보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는 등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이력관리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예: 시도합동평가 항목에 포함시키거나, 재정분석시 국가시책 이행 부분에 반영 또는 연말 예산지출 효율화 측면에서 별도 평가 및 시상 등)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력관리제도 결과 공개 관련

- 지역주민에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알리고, 자치단체 스스로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이력관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이 필요함 (여규동 외, 2019)
 - 이력관리가 투자심사 이후 행정안전부의 개입과 통제 측면에서 도입되기 보다는 지자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실제 LIMAC에 예산 및 사업담당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업무 파악을 위해 그동안 완료된 사업의 목록 및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 사례가 존재함
- 다만 이력관리 DB에 대한 소유권이 자치단체에 있으므로 공개 대상, 공개항목, 공개방식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함
 - 예를 들어, 공개 시 일괄 공개 또는 지방자치단체 개별 공개 여부 및 대민서비스 까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함
 - 공개 대상 : 지역주민까지 공개할 것인지, 순차적으로 시도 단위 또는 기초자치단체에만 공개할 것인지 등 선택 필요
 - 공개 항목 : ① 개별사업별 사업명, 위치, 총사업비, 일정, 규모 및 내용 등 주요 사업정보에 대한 변경 사항, ② 사업유형별·지자체별 주요 집계 정보 및 분석 자료, ③ 증점관리사업 및 자체관리계획 관련 자료 등에서 선택 또는 단계적 공개 확대

- 공개 방법 : 지방재정365에 일괄 공개 또는 차세대 e-호조를 통해 시도별·자치단체별 개별 공개 등

□ 중점관리사업 선정 체계 및 평가결과의 활용 관련

○ 현행 중점관리 후보사업 선정 기준의 한계

- 중점관리사업 선정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LIMAC에서 꾸준히 선정기준 개선작업 중임
- 현행 기준은 총사업비 및 일정 등 계량화하여 명확하게 부진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 재심사 대상사업 기준에 의거 제도 밖으로 넘어간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패널티가 존재함
- 다만 불가상승률 기준 등 세부적으로 재심사 대상 여부를 명확하게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하여 중점관리 후보사업에 대한 소명자료 검토시, 재심사 대상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함
- 중점관리 선정기준은 오히려 이력관리제도 도입 배경 및 취지를 고려할 때, 사업 준공 전까지의 관리는 스스로 하도록 하되, 투자심사 결과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조건부 판정사업에 대한 조치 및 추진상황을 기준으로 이행여부 및 준비정도 등을 선정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음

○ 중점관리사업 선정 및 관리의 실효성 부족

-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되어 자체관리계획을 세우더라도 계획대로 이행 중인 사업은 20% 내외(2020년 이력관리 결과 기준)이며, 미이행 또는 중단에 대한 패널티 등이 부재함
- 따라서 자체관리계획에 대한 이행률이 높이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
- 예를 들어 중점관리사업 선정 위원회를 중앙투자심사 위원회 내 구성하여 선정 기준 검토 및 선정 결과, 자체관리계획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이력관리 자료 수집 관련

- 차세대 e-호조 개발이 진행 중으로 향후 투자사업은 (가칭)관리사업으로 설정되어 자료 수집 관련 지자체 수작업이 최소화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자료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투자사업은 기존 세출예산 사업구조(정책-단위-세부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사업 집행관리를 위해 산출근거를 수작업으로 별도 관리함
 - 차세대 e-호조의 이력관리 관련 부문은 3단계 오픈 일정(23년 상반기 내 시범 오픈)으로 개발 진행 중임
 - 다만 이력관리 자료 수집기관과 분석기관이 이원화되기 때문에 향후 차세대 e-호조를 관리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주체로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력관리 범위 확대(대상 및 사업단계 측면)
- 현행 이력관리제도 하에 추진되는 사업관리범위는 사업 준공단계까지로 투자심사시 제시된 총사업비 및 일정 관리 측면에 한정됨
 - 따라서 투자심사 이후 사후관리 측면에서 운영단계의 지역 수혜도 및 성과를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 운영단계에서의 성과가 평가될 시 장기적으로는 사전 타당성조사의 기초자료이자 투자심사의 주요 판단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환류체계 구축이 가능함
 - 운영단계까지 이력관리 범위에 포함할 시, 투자사업 이력관리 대상사업은 공공시설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운영수지가 아닌 복지 제공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평가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 및 평가기준에 맞는 DB 확보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사업은 운영수지도 중요하나, 공공의 복지 차원에서 시설이 제공되므로 시설 사용자 수가 중요하며, 사후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에 맞는 각종 데이터 확보(운영비, 운영수입, 사용자 수 등)가 필수적임
 - 운영단계와 관련해서는 각 시설별 소관 중앙부처에서 이미 실적 통계를 일부 관리하고 있음
 - 문화체육부에서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등을 통해 문화체육시설 관련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광시설도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를 관리함
 - 다만 시설 유형별로 운영수지 및 이용객수가 모두 집계되지는 않고 있음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재정365에 “공공시설 운영현황”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해당 현황에는 문화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복지시설까지 포함됨

- 그러나 건립비 기준 기초 200억원 이상, 광역 300억원 이상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시설이 한정적임³⁾
- 향후 운영단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대상이 한정적이기는 하나, 운영단계 이력관리를 위해 각종 실적정보가 제공되는 지방재정365의 “공공시설 운영 현황”을 1차적으로 검토하여 문화체육시설의 경우 이력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데이터와 작성기준, 수집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차세대 e-호조 개발과 연계하여 수집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타 부처에서 수집 중인 데이터와의 연계 등도 감안하여 데이터 구축 방법에 검토 또한 필요함

3) 2021년까지는 건립비 기준 기초 100억원 이상, 광역 200억원 이상이었으나, 2022년부터 건립비 기준이 상향되어 자료 수집 대상이 축소됨

지방재정투자사업 사후관리방안 개선연구 : 문화체육시설을 중심으로

Ⅲ

이론적 논의 및 유사제도 검토

제1절 재정투자사업 사후관리 관련 이론적 논의

제2절 해외 사후관리제도 사례

제3절 국내 사후관리제도 사례

제4절 선행연구

제5절 시사점

Ⅲ

이론적 논의 및 유사제도 검토

제1절 재정투자사업 사후관리 관련 이론적 논의

1. 성과관리와 사업평가의 의의

- 투자사업의 사후관리 범위를 운영단계까지 확대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기 위해 성과관리이론 및 사업평가 측면에서 관련 개념 및 방법론을 살펴봄

가. 성과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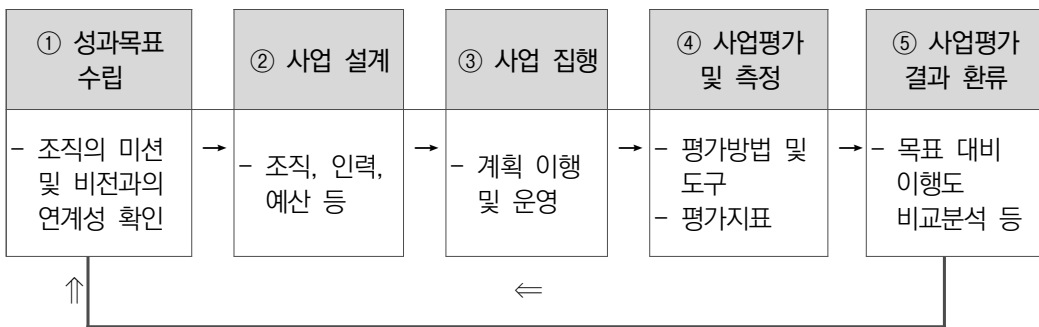
-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의 필요성 및 목적
 - 성과관리는 조직 혹은 개인 수준의 성과 개선(performance improvement)을 주요 목적으로 수행함
 - 즉, 조직 단위의 정책 혹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관리적 활동(management practices)을 통하여 성과 저해 요인을 사전에 규명하고, 이에 대한 원인 및 해소 활동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성과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수행하는 관리행위임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도 ‘정부 업무를 추진하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 성과관리 5단계
 - 성과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성과관리 체계의 수립이 선결 요인이라 하겠음
 - 성과관리는 총 5단계로 나뉘 볼 수 있는데, 각각 1) 성과목표의 수립, 2) 사업설계, 3) 사업 시행 4) 성과평가 및 측정 그리고 5) 측정 결과의 환류임

- 첫째, 성과목표 수립단계에서는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고, 이와 연계하여 평가대상이 되는 사업 혹은 정책의 주요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설정, 사업 (혹은 정책) 및 세부 사업 간의 연계성 점검을 수행하게 됨
 - 이러한 전략 및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활용할 정성 혹은 정량의 성과지표를 설정함
- 둘째, 사업설계단계에서는 사업 (혹은 정책)의 추진 주체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추진 및 전달체계를 구축함
 - 사업 (혹은 정책)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구성, 인력확보 및 예산 등의 자원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혹은 정책)의 집행과정에 대한 점검을 위한 평가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임
- 셋째, 사업 (혹은 정책) 집행단계는 사전에 계획한 바에 맞춰 예산 및 인력 등의 자원을 투입하여 계획한 사항을 이행, 즉 사업(정책)을 운영하는 단계임
- 넷째, 사업 (혹은 정책) 평가 및 측정단계에서는 평가대상이 되는 사업 혹은 정책의 주요 목표, 사업 혹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투입된 조직 단위의 요인들, 관련 업무 활동, 일련의 활동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 등 성과와 관련된 기본적인 핵심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임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 및 사업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측정 수단인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의 설정이 선결 요인이며, 선정된 성과지표의 객관성, 포괄성 및 적정성에 대한 사전점검 또한 필수 선결 요인임
 -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측정할 때 사업수행의 목적을 포괄적으로 대표하여 보여 질 수 있는 정보의 획득이 용이해야 하며, 해당 지표에 대한 조직 내외부 이해 관계자의 수용성 확보 또한 중요요인임
 - 일반적으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대한 점검 기준으로 SMART(Specific, Measurable, Attainable, Relevant, Timely)를 주로 활용함
 - 성과측정을 통해 얻어지는 정보들은 정책 혹은 사업이 계획 단계에서 수립한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 사전에 수립된 목표 대비 달성도가 어느 정도인지, 계획 대비 사업 혹은 정책의 이행 수준 및 상태가 어떠한지, 계획대로 정책 혹은 사업을 수행하였을 경우 그 효과가 무엇인지 등 다각도의 정보를 수집하게 되며, 이러한 정보수집을 위해 다양한 평가방법론을 적용하게 됨

○ 다섯째, 측정 결과의 환류

- 결과에 대한 조직 내·외부 이해관계자 간의 대화 및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사업 (혹은 정책)의 목표 대비 이행도 및 결과를 비교분석하고, 사업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및 의견 등을 수렴하여, 사업목표 혹은 사업설계 등 필요한 수정과정을 통해 차후 사업 집행상의 효과성, 효율성 증진을 도모함

[그림 Ⅲ-1] 성과관리 프로세스



나. 사업평가

1) 사업평가 정의

□ 개념

- 사업평가는 평가주체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특정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논점(issue) 및 그 가치를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유용성을 추구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음
- 사업평가는 사업 관련 의사결정 및 정책 결정 전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사업 대안(alternatives)을 선별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 성과측정과 사업평가의 차이

- 성과측정(performance measurement)과 사업평가(project evaluation)는 유사 개념이나 그 목적 및 특성에 있어서 차이점이 존재함
- 성과측정의 경우 사전에 설정된 목표 대비 평가대상이 되는 사업의 달성도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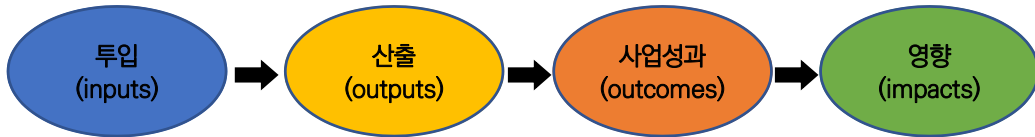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reporting)를 주요 목표로 수행함

- 사업평가는 한 개 이상의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함
 - 성과측정이 사업이 얼마나 잘(how well) 집행되고 있는지, 사업의 산출물이나 성과의 측정에 그치는 반면 사업평가는 측정된 성과가 무엇에 기인하는지 설명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둠(김재형 외, 2002)
 - 사업평가의 경우 사업변화이론 (theory of program change)에 근거하여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파악하고, 사업이 목표 달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동하는지 및 왜 작동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목표 성취의 조건을 역으로 파악하고, 각각의 조건들이 목표 달성과 인과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왜 연계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업평가는 계획한 목표 달성을 도모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탐색을 가능하게 함

2) 사업평가의 구성요소

- 사업평가 수행 시 측정기준과 관련하여 투입, 산출, 사업성과 및 영향 등 4가지 요소를 고려하게 됨
 - 투입(inputs) :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물리적, 인적 및 재정, 장비 등의 모든 투입 자원을 의미함
 - 활동(activities) : 투입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모든 활동을 의미함
 - 산출(outputs) : 단기간에 나타나는 결과물으로써 사업수행을 통해 도출되는 직접적인 물적·인적 산물 (재화 및 서비스 등) 등의 일차적 산출물을 의미함
 - 성과(outcomes) : 사업의 성과(outcomes)는 사업수행을 통해 도출된 산출(output)을 통해 초래된 효과를 의미하며, 산출물을 통해 파생된 일련의 변화, 편익 및 이익 등을 의미함. 즉 사업의 목표가 달성된 정보를 의미함
 - 영향(impacts) : 사업의 성과가 다른 부문 (예: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을 고려한 효과를 의미함

[그림 Ⅲ-2] 사업평가: Results chain of a Project



3) 사업평가의 주요 논점

- 사업평가를 수행할 때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를 수행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다음의 논점(issues)을 중심으로 사업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수행하게 됨
 - 사업의 적절성 (relevance): 사업의 목표 및 성과목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와 정책의 우선순위 및 상위 정책목표와의 연계성이 높은지 여부에 대한 점검. 사업이 현재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닌지에 대한 점검 또한 포함됨
 - 사업의 효율성 (efficiency): 사업의 인적, 물적 자원 즉, 투입물(input)의 경제적 활용을 통하여 사업의 산출물 (outputs) 및 결과(outcomes)로 전환되었는지에 대한 점검. 즉, 동일한 수준의 투입물을 활용하여 더욱 많은 혜택이 도출될 수 있는지 혹은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보다 적은 투입물을 활용하여 도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
 - 사업의 효과성 (effectiveness): 사업이 의도한 목표 혹은 정책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점검
 - 사업의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사업이 중단될 때 사업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
 - 사업의 사중손실(dead weight loss): 사업 전달체계의 설계 미비로 인하여 의도 하였던 집단에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 상황.

4) 사업평가의 구분

- 사업평가는 평가목적, 평가 시점 및 평가 주체에 따라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 평가목적에 근거할 때, 사업평가는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사업효과에 대한 평가로

구분할 수 있음

- 평가 시점을 근거로 구분할 때, 사업 시행 전에 수행하는 사전평가, 사업 진행 과정에 수행하는 과정평가 및 사업 완료 후 수행하는 사후 평가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주체에 따라 내부 평가 및 외부 평가로 구분될 수 있음

□ 운영평가와 효과평가

- 사업평가의 목적에 따라 운영평가 및 효과평가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운영평가(formative evaluation): 사업의 관리 및 집행상의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하는 평가를 의미함. 운영평가의 경우 사업이 의도한 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사업이 예상한 산출물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의 개선점을 도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
 - 효과평가(summative evaluation): 사업의 본질적 효과성을 점검 및 검토하기 위해 수행하는 평가로 정책결정자와 사업책임자의 책무성 제고를 목적으로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다수임. 총괄평가는 사업이 집행되고 난 이후에 사업수행이 사회에 미친 일련의 영향을 추정하는 평가임. 사업수행을 통해 목표, 결과물 및 영향 등을 도출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

□ 사전평가, 과정평가 및 사후평가

- 사업의 추진단계를 기준으로 볼 때 사업평가는 사전평가, 과정평가 및 사후 평가 세 가지로 나뉘 살펴볼 수 있음
 - 사전평가(ex-ante evaluation)는 사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사업의 경제성, 타당성 및 정책적 요인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결과는 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 등 관련 의사결정에 활용됨
 - 과정평가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사업의 중간성과 및 사업의 진행 상황들을 점검함으로써 사업 집행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함

- 사후평가는 사업이 완료된 후 일정 시점이 지난 후에 사업을 통해 발생한 결과 및 효과, 사업의 사전목표 대비 달성도, 사업에 초래된 비용 대비 효과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 결과는 추후 연속 혹은 유사 사업 진행 시 반영되거나 사업 관련 예산 및 사업추진구조 변경 시에 활용할 수 있음

□ 평가 주체에 의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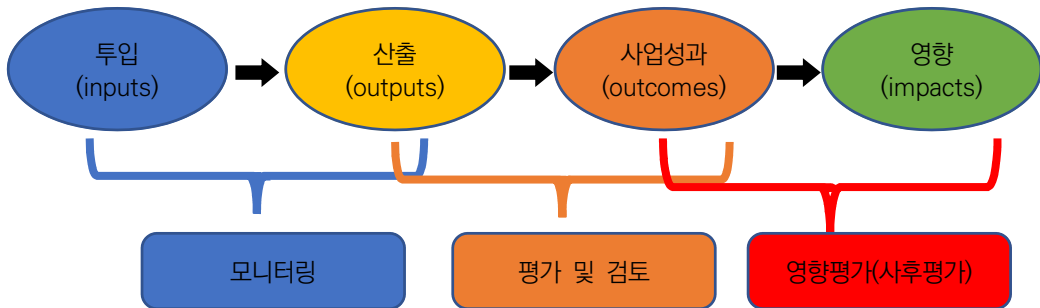
- 평가를 수행하는 주체에 따라 자체평가, 내부평가, 독립평가 및 외부평가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자체평가(self-evaluation): 자체평가는 평가대상이 되는 조직의 구성원들에 의해 관리 및 수행되는 평가로, 사업 관리자, 기술전문가 및 행정 담당 인력 등에 의해 수행됨
 - 내부평가(internal evaluation): 내부평가는 사업의 설계, 관리 및 지원 등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은 인력에 의해 독립적으로 관리 및 수행되는 평가를 의미함
 - 독립평가(independent evaluation): 독립평가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혹은 관련성이 없는 독립적인 조직 내 인력에 의해 관리되는 평가로서 평가수행은 외부의 독립적인 평가인력에 의해 수행되는 형태임
 - 외부평가(external evaluation): 외부평가는 사업과 연계성이 없는 외부의 평가자에 의해 관리되고 수행되는 평가의 형태를 의미함

□ 목적에 따른 구분

- 사업에 평가는 목적 및 시기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활용이 가능함
 - 사업 모니터링(project monitoring): 사업의 진행 상황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수행하는 것으로 주기적으로 사업의 성과와 관련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함으로써 사업의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일련의 활동 및 산출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
 - 연간 사업검토(annual project reviews): 사업의 산출물 및 결과물에 초점을 맞추며, 사업이 사전에 설정된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 형태로 수행되며 사업 관련 모니터링 및 평가 데이터 전반을 활용하여 수행함

- 중간 및 최종평가(interim and final evaluation): 사업의 최종 결과물 (outcomes) 및 사업을 통해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평가로, 사업목표 달성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며 필요할 때 사업수행 전략 및 사업 전반을 가이딩하는 일련의 가정에 대한 수정을 제안할 수 있음. 더불어 사업의 수행을 통해 소속 기관 또는 부처의 상위전략 및 목표 달성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평가 또한 함께 수행함
-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사업수행을 통해서 의도한 장기적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의미함

[그림 III-3] 목적에 따른 구분



□ 메타평가

- 메타평가는 ‘평가에 대한 평가(evaluation of evaluation)’로 평가가 잘 되었는지 점검하는 평가과정임(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7)
 - 메타평가를 상위평가라 부르기도 하나, 상위평가라 할 경우 상위기관이 하위기관을 평가하는 것만을 의미하므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 메타평가를 상위기관이 수행할 경우 상위평가라 볼 수도 있으나, 기관 스스로 발전 방향을 모색을 위해 전문가에 의뢰하여 메타평가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상위평가와 메타평가는 다른 개념임
 - 한편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제도에서는 상위평가를 재평가가 포함한 평가로 정의하며, 메타평가는 자체평가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제시함(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21)
- 메타평가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됨(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7:p.13~15)
 - 광의의 메타평가 : 투입평가-과정평가-평가효과 등 전체적인 평가체제 및 절차

에 관한 평가를 의미함. 평가에 투입된 인적·물적 자원, 평가의 과정과 내용, 평가의 효과 등을 분석하는 종합적인 평가 과정임

- 협의의 메타평가 : 특정평가를 제3자가 평가하는 상위평가로서 특정평가의 문제점 및 적실성을 규명하기 위해 제3자인 상위평가자가 평가하는 것을 말함
- 최협의의 메타평가 : 기존 평가결과를 재분석하는 것으로 의미함. 즉 특정평가 결과가 올바르게 해석되었는지, 평가결과가 추후에 활용될 수 있는 점 등을 분석함
- 형성적 메타평가 : 평가 진행과 해석에 관한 의사결정을 도와주고 평가의 진도를 점검하여 과정평가에 환류시키도록 하여 평가의 질을 확보하도록 함

2. 사업평가체계에 기반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사후관리

- 지방재정투자사업의 경우, 앞서 살펴본 성과관리이론에 근거하여 1) 성과목표의 수립, 2) 사업설계, 3) 사업 시행 4) 성과평가 및 측정 그리고 5) 측정 결과의 환류 단계에 의거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함
- 특히 사업평가 단계에서는 투입-산출-사업성과-영향의 순서에 따라 각 단계별 성과를 추적 및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지방재정투자사업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사업 유형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사전계획단계에서 자체 또는 의뢰심사제도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사업설계 단계에서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운용 중임
- 또한 투자심사 통과 이후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중단·지연으로 인한 재정 손실, 운영손실 과다 등의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2015년에는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가 도입함
- 그러나 현행 이력관리제도가 관리하는 범위는 사업집행 단계의 모니터링(project monitoring)에만 머물고 있어, 성과평가 측정 기준 중에서도 투입(inputs)까지의 단계만을 추적 및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
- 즉, 투자심사 완료 이후에 당초 목표한 산출물(outputs)과 궁극적으로는 사업의 결과(outcomes) 및 영향(impacts)을 체계적으로 평가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지방재정투자사업 관리 부실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음

-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자심사를 통과한 지자체 사업 중 중도에 중단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하며,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한 사업추진 여부 등을 파악하기 어려움
- 또한 사업이 완료되었더라도 운영단계에서 당초 목표한 바를 달성하였는지 확인이 어려워 일부 결과가 부실하더라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서 기존의 투자사업 이력관리의 관리범위를 확장하여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성과 및 유지까지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즉 투자사업의 집행에서 운영단계까지의 사업의 성과(outcomes)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설계단계에서 성과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업집행 및 완료시점까지 연계하여 평가 및 환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사업설계단계에서의 성과목표는 사업 추진 담당부서 및 담당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여 사후적으로 체계적인 성과 평가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함
-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를 객관적이고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하며 성과지표는 사업유형별로 일관성을 갖추어 유사사업간 비교검토 및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즉 사업설계 당시 목표 및 계획 대비 달성도를 점검하여 계획과 실제, 실적 및 성과 간에 차이를 비교 분석을 시행해야 하며, 더불어 유사시설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사업성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이러한 사후관리체계는 사전 타당성조사 결과의 적절성 및 타당성에 대한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심사시 유사사업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의 선정 또는 투자가 가능해짐

제2절 해외 사후관리제도 사례

1. 일본

□ 일본의 공공사업 정책평가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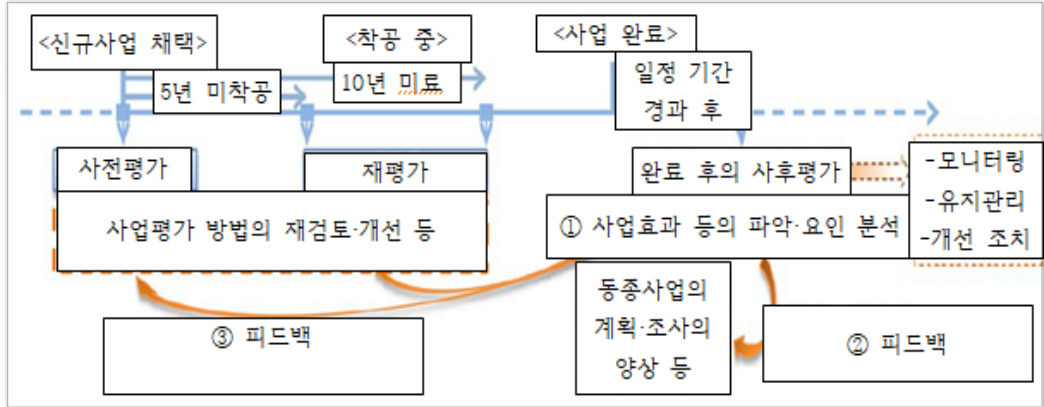
○ 사전평가

- 일본은 공공사업을 소관하는 각 행정기관이 「정책평가법」 제9조, 「행정기관이 행하는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헤이세이 13년 법령 제323호) 등에 따라, 총사업비 10억엔 이상의 사업은 개개의 공공사업에 대해 사전평가를 시행해야만 함
-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업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및 환경성에서는 「정책평가법 제6조」에 기반하여 수립한 “정책평가에 관한 기본계획”하에 사업 유형별 실시 대상, 실시 시기, 실시 방법 등을 정한 평가실시요강,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진행하기 위한 방법이나 원단위 등을 제시한 매뉴얼(이하 ‘평가 매뉴얼’이라 지칭) 등을 책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공공사업에 관한 정책평가를 실시함
- 공공사업에 관한 정책평가는 사업의 투자효율성, 파급력, 사회경제 변화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히 비용편익분석을 주로 수행하여 분석함

○ 재평가 및 사후평가

- 각 행정기관은 「정책평가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정책 결정 후 5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아직 착수되지 않은 사업, 정책 결정 후 10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업 등에 대해 재평가 방법을 정하고 이를 시행해야만 함
- 완료 후 사업평가는 의무화되지는 않았으나 사전평가 및 재평가와 함께 사업평가 체계의 일환으로 사업 완료 후의 사업 효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함
- 궁극적으로 사후평가의 목적은 개별 사업에 관한 적절한 개선 조치를 검토함과 동시에 해당 평가를 통해 드러난 과제 등을 동종 사업의 계획·조사의 양상이나 평가 방법의 재검토, 개선 등에 반영할 것을 목적으로 함

[그림 III-4] 일본의 공공사업 정책평가제도



자료: 정책평가심의회, 『공공사업에 관한 정책평가 개선방책』(헤이세이 30년 3월)

○ 총무성 및 정책평가심의회 역할

- 총무성은 정책평가의 총괄적 관리를 맡고 있으며, 정책평가심의회를 구성하여 정부 전체의 정책평가에 관한 기본방침 수립 및 변경, 관련 의견과 자문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사후평가 항목

- 사업유형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검토하여 1~2페이지의 보고서를 제출함
- 당초 사업비 및 사업효과(비용편익분석 결과)와 사후 비용 변화 및 사업효과 변화, 사업에 의한 환경 변화, 사업을 둘러싼 사회경제 정세 등의 변화, 향후 사후평가의 필요성 및 개선조치 필요성, 계획·조사의 평가방법 재검토 필요성 등

□ 사후평가 수행현황

- 「정책평가법」 상 사전평가와 재평가는 의무화되어 있으나, 사업완료 이후의 사후평가는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음
- 그러나 농림수산성과 국토교통성에서는 자발적으로 사후평가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두 성(省)에서 실시한 2016년도 기준 완료 후 사후평가 실시건수는 총 159건으로 집계되어 전체 정책평가의 약 1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정책평가심의회, 헤이세이 30년 3월)

- 환경성의 경우 자원공원 등에 대한 사업은 「자연공원 등 사업의 사후평가 실시 요강」에서 사전평가를 실시한 사업(사업비 1억엔 이상)의 완료 후 5년 경과 시점에서 실시한다고 되어있음
- 이에 따라 실제 평가 실적이 누적되고 있으나, 해당 평가 결과를 구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Ⅲ-1〉 2016년(헤이세이 28년도) 공공사업에 관한 정책평가의 실시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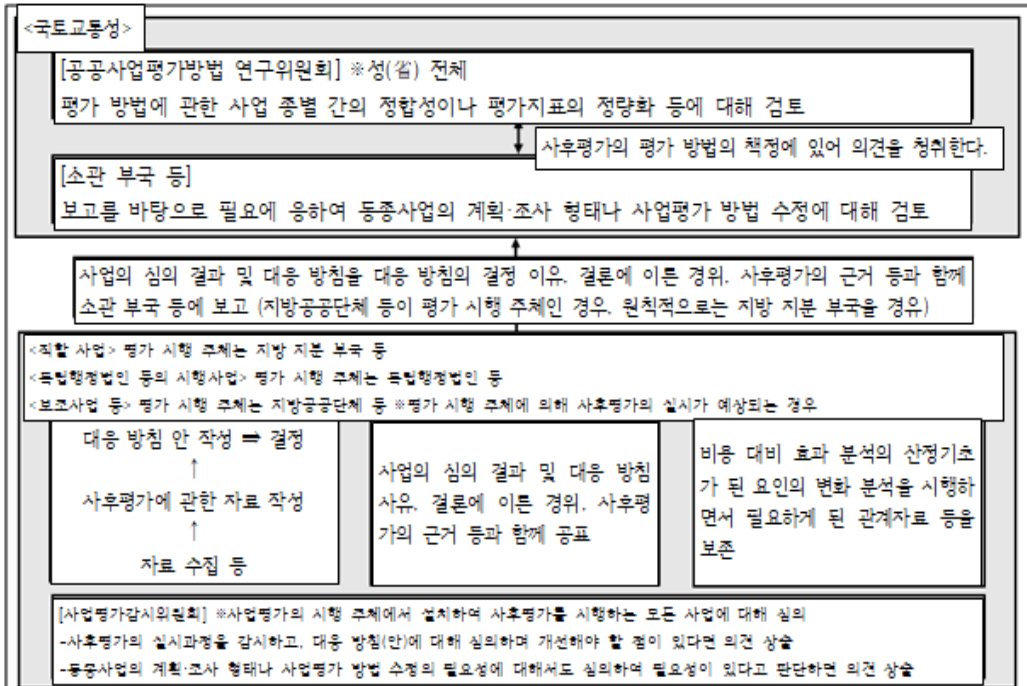
공공사업 소관 성(省)	사전평가	재평가	완료 후의 사후평가	계
후생노동성	4	16	0	20
농림수산성	158	77	92	327
경제산업성	0	7	0	7
국토교통성	235	471	67	773
환경성	0	0	0	0
계	397	571	159	1,127

주: 10억엔 이하 환경부 사후평가 건수는 제외
 자료: 정책평가심의회, 『공공사업에 관한 정책평가 개선방책』(헤이세이 30년 3월)

- 완료 후의 사후평가의 시행주체는 각각의 주관 부서가 속한 부국청이며, 공공사업의 주관 부서마다 기본 계획에 기반한 사업평가의 실시 방법 등을 정한 요령 등을 책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기반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함
- 국토교통성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후평가 시스템을 운영 중임
 - 사후평가 시행주체는 직할사업인 경우 지방 지분 부국이며, 독립행정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해당 법인이, 보조사업인 경우 지방의 공공단체임
 - 각 사후평가 시행주체는 자료수집, 사후평가 관련 방침을 수립함
 - 사후평가 실시 결과와 근거를 함께 공표하며, 비용대비효과 분석 산정 기초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함
 - 사후평가결과는 시행주체가 직접 사업평가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평가과정, 대응방침(안)에 대해 심의하고, 향후 동일 유형의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조사에 있어서 사업평가방법을 수정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함
 - 마지막으로 국토교통성은 성(省) 차원에서 공공사업평가방법연구위원회가 사후

평가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소관 부국이 관련 보고를 바탕으로 향후 동일 유형의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조사에 있어서 사업평가방법을 수정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하도록 함

[그림 III-5] 국토교통성의 완료 후 사후평가 시스템



자료: 정책평가심의회, 『공공사업에 관한 정책평가 개선방책』(헤이세이 30년 3월)

- 국토교통성에서는 사업평가결과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사업평가 진로기록 카드”(https://www.mlit.go.jp/tec/hyouka/public/jghks/chart.htm)를 운영하고 있음
- 해당 사이트에서는 평가연도, 평가단계, 사업종류를 입력한 후 사업대상지역을 지도에서 클릭하면 사업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음
- 본 보고서 부록에서는 3개의 각기 다른 사업유형(도로, 공원, 청사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사례를 번역하여 제시함

-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각 성(省)별로 독자적으로 공표자료 등을 통해 완료 후의 사후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좋은 사례들을 소개하기도 하는 것으로 제시됨
- 이외에 사후평가 실태현황을 바탕으로 2018년 정책평심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및 개선방책을 제시함
 - 현재 사후평가는 농림수산성과 국토교통성을 제외한 성(省)에서는 각 성(省)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특성상, 예컨대, 기존시설의 갱신이나 내진 강화가 주요 사업이어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추진시에는 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표 발굴이 필요하며, 사후평가 실시 부담이 생기므로 관련 인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성(省)을 비롯하여 지방공공단체가 사후평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기존에 국토교통성 등에서 실시한 사후평가의 개선이나 추진과정을 참고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주고, 제도가 단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공공단체와의 긴밀한 연계를 도모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됨
 - 또한 사후평가는 사전평가 또는 재평가 시점에서 가정한 효과와 비교하여 실제로 발현되고 있는 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과거 평가와의 정합성을 포함하여 결과에 대한 요인분석이 필수적임
 - 특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한층 정확하게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사업 개시시기부터 상황변화를 바탕으로 평가를 수행해야 함
 - 그러나 과거 평가결과와 관계된 자료가 체계적으로 보존 및 관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후평가를 통해 평가 결과가 바뀌었다라도 그 요인과 평가 결과와의 관계가 명료하게 밝혀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평가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됨

2. 영국

가. 관문심사절차(Gateway Review Process)

□ 영국의 관문심사절차(Gateway Review Process) 개요

- 영국은 2000년에 상무청(Office of Government Commerce, 이하 OGC)을 신설하여 영국 공공투자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영국 상무청은 Gateway Review Process와 관련된 정부조직이기도 하였음⁴⁾
- 영국에서는 “Gateway Review Process”를 도입하여 사업의 사전적, 프로젝트 도중, 사후적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음(김용성 외, 2011)
- 이에 따라 주요 건설 프로젝트의 필요성 제기에서부터 처분까지 시설물의 전생애(Whole-life)를 대상으로 함
- Gateway Review는 프로젝트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서 시행 착오를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조달청, 2004)
- 모든 공공영역은 내부적 검토 및 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그들만의 구조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Gate Review는 특정 시점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스냅샷을 제공하므로 내부적 검토 및 감사를 보완하는 의미를 가짐(UK IPA, 2021a)
- 한편 최근 기후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후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탄소 저감 효과도 Gateway Review의 중요한 사안이 되었음
- 관문심사제도는 총 6단계로 구분되며, Gateway 1~3단계는 투자결정 전단계인 사전평가단계, 4~5단계는 집행과 성과 검토 단계임
- 우선 발주자(Senior Responsible Owner, SRO)는 건설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가늠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 평가를 수행한 후, Gateway Review 담당자에게 평가 결과를 전달(이교선 외, 2009)
- 잠재적 위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 프로젝트와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Gateway Review 팀을 구성(이교선 외, 2009)
- Gate Review 0단계는 프로그램 전주기에 거쳐 전략적 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개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각 단계별로 반복되어 수행됨(UK IPA, 202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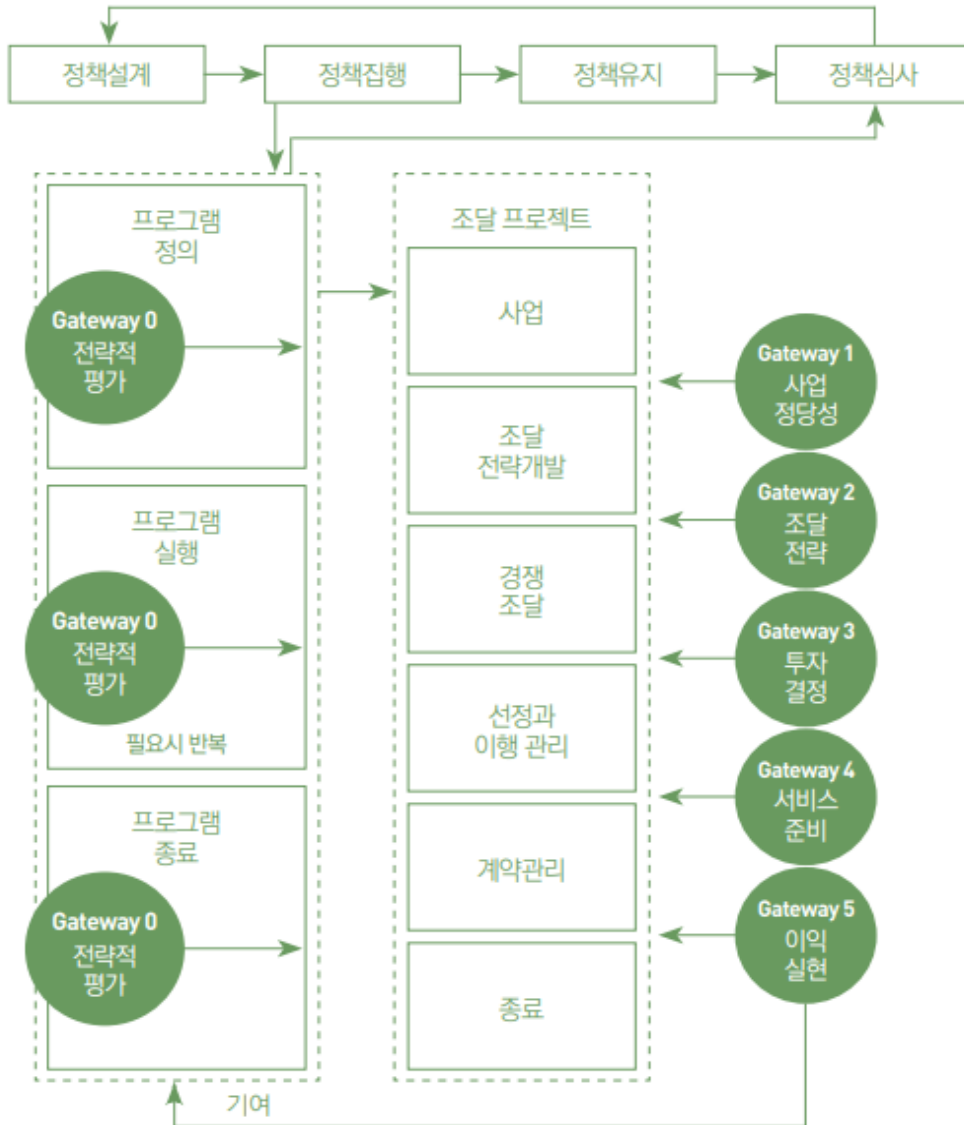
4) 다만 영국 상무청은 2011년 폐지

- Gate Review 0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범위와 목적이 적절하게 연구되었는지, 주요 이해관계자 간에 무엇을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는 공유되었는지, 프로그램이 조직의 전체적인 정책 또는 관리 전략과 우선순위에 적합한지 검증함
- 또한 Gate Review 0 단계에서는 자원 확보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나 탄소 배출 저감과 같은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도 검토함
- 또한 Gate Review 0단계에서는 프로그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작업 흐름이 어떻게 조직화될 것인지, 프로그램 관리 구조, 감시 그리고 자원 조달은 적절한지 검증함
-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결과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점검하기 위하여 Gateway 0단계는 건설 프로젝트 중간 단계에서도 시행됨
- Gate Review 0단계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며 프로그램의 의도된 결과와 편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임
- Gate Review 0단계는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의 종결 단계에서도 발생하는데, 이는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성공과 달성된 편익을 평가하고 학습되고 분석된 교훈들을 점검하기 위함임
- Gate Review 1단계에서는 사업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며 타당한 것인지 평가하며 명확하게 정의된 사업 범위, 사업 관리 조직 구성 여부, 사업 발주자 및 책임자의 역량 등을 확인함(이교선 외, 2009)
- Gate Review 1단계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이 건설 프로젝트를 통하여 얻게 될 편익에 동의하였는지, 건설 프로젝트 내 프로그램과 조직적 목표 간 연계가 명확한지, 비용·편익·위험 간 최적 균형이 식별되었는지, 자금은 조달 가능한지, 자원 배치가 적절하게 되었는지 등을 검토함(UK IPA, 2021b)
- Gate Review 2단계에서는 건설 프로젝트의 목표와 집행 계획을 명확히 정의하였는지 검토함(UK IPA, 2021c)
- 또한 Gate Review 2단계에서는 실행가능성, 건설 프로젝트의 Value for Money,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안된 접근법, 시장으로부터 제안(proposal) 또는 입찰(tender)를 받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평가함
- Gate Review 2단계에서는 전체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가능성을 확인하며 적

절한 프로젝트 성과 측정 수단 및 도구가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함

- 한편 Gate Review 2단계에서는 위험 관리, 이슈 관리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공급자 및 전달 파트너와 그러한 계획이 공유되고 있는지도 확인함
 - 지난 Gate Review 단계 이후로부터 품질 관리 절차가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도 검증하며, 향후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부 및 외부의 자원과 역량이 이용 가능한 상황인지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이에 대비할 계획은 있는지 점검함
- Gate Review 3단계에서는 건설 프로젝트가 여전히 필요하며 목표 시간 내에 달성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투자 결정 거버넌스를 조사하며 집행 계획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확인함(UK IPA, 2021d)
- Gate Review 3단계는 공급자 또는 다른 전달 파트너와의 작업 순서를 배치하기 전 또는 우선 협상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함
 - Gate Review 3단계에서는 추천되는 투자 결정이 적절한지 검토하며, Gate Review 3단계는 공급자 선택 결정 그 자체가 아니라 공급자 선택에 활용된 과정에 대한 보장을 하게 되는 역할을 함
 - Gate Review 3단계에서는 위험 관리, 이슈 관리뿐 아니라 변화관리 역시 마련되어야 하며 공급자 또는 전달 파트너와 공유가 되어야 함
- Gate Review 4단계에서는 건설 프로젝트 완료 시점에서 서비스를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함(이교선 외, 2009)
- Gate Review 4단계에서 강조되는 것은 프로젝트 종료를 위한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며 Gate Review 4단계에서는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검증됨(UK IPA, 2021e)
 - Gate Review 4단계에서는 고위 책임 소유자(Senior Responsible Owner, SRO)으로부터 운영 사업 소유자(Operational Business Owner)로 프로젝트를 넘겨주기 위한 준비를 확인하여야 함(UK IPA, 2021e)
- Gate Review 5단계에서는 프로젝트 실시 이후 운영 단계에 있는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사업 수행 이후 실제 편익과 기대 편익을 비교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사후평가를 실시함(이교선 외, 2009)

[그림 III-7] 영국 관문심사절차



자료 : 박소영(2017) 그림 1 인용

- Gateway Review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해당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다음 단계에 진행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음
- 영국의 Infrastructure and Projects Authority(IPA)에서 제시한 Gate Review 5단계의 목적의 일부는 아래와 같음(UK IPA, 2021f)

- 해당 사업의 전략적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며 기대되었던 결과가 실현 중인지 점검
- 해당 사업이 여전히 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
- 해당 사업 프로젝트에서 정의된 편익이 실현되었거나 실현되고 있는 중인지 평가
- 미래 편익 실현을 관리하고 측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거버넌스가 존재하는지 확인
- 환경이 변화하면 서비스 전달 및 계약도 변화한 새로운 환경에 맞추는 것을 확인
- Value for money를 개선하기 위한 계약 개발이 진행 중인지, 그러한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체계가 존재하는지 점검 및 평가
- 실현 가능하고 동의된 프로젝트 종결 계획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지속적인 지출과 편익 제공을 감시하기 위한 사후 종결 거버넌스가 존재하는지 감시
- 프로젝트 종결 이후에는 일의 흐름에 있어 명확한 책임 흐름도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
- 사업 프로젝트동안 학습된 내용을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존재하는지 확인

□ 영국의 관문심사 대상 및 수행주체

-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대한 좋은 관리와 통제는 프로젝트의 Value for Money와 정부 목적의 성공적 달성을 위하여 필수적임(UK IPA, 2021a)
- Gate Review는 건설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대한 현실적인 견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UK IPA, 2021a)로 심사 대상은 최소금액기준은 없으며 중앙정부 및 그 소속기관(Agency)이나 산하공공기관의 모든 프로젝트가 대상이 됨
- 관문심사는 강제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라 자율적 의무사항에 가까워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험이 높은 프로젝트의 경우 대부분은 수행하고 있음
- IPA의 2021-22년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on Major Project)에 따르면, 2021년 관리건수는 184건, 2022년은 235건으로 2021년 관리사업 중 이 중 25건이 관리대상에서 빠지고, 76건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옴
- 2022년에 더 이상 관리대상사업이 아닌 25건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거나, 다른 프로젝트에 합쳐지거나 유사 프로젝트로 대체된 경우 등임

[그림 III-8] 2021년과 2022년 관문심사 대상 비교

		AR 2022				AR 2022 Leavers
		Red	Amber/Red	Green	Exempt	
AR 2021	Red	2	5	0	0	0
	Amber/Red	9	31	1	1	2
	Amber	5	63	8	1	7
	Amber/Green	1	16	7	0	5
	Green	0	3	0	0	9
	Exempt	1	5	0	0	2
	AR 2022 Joiners	10	53	8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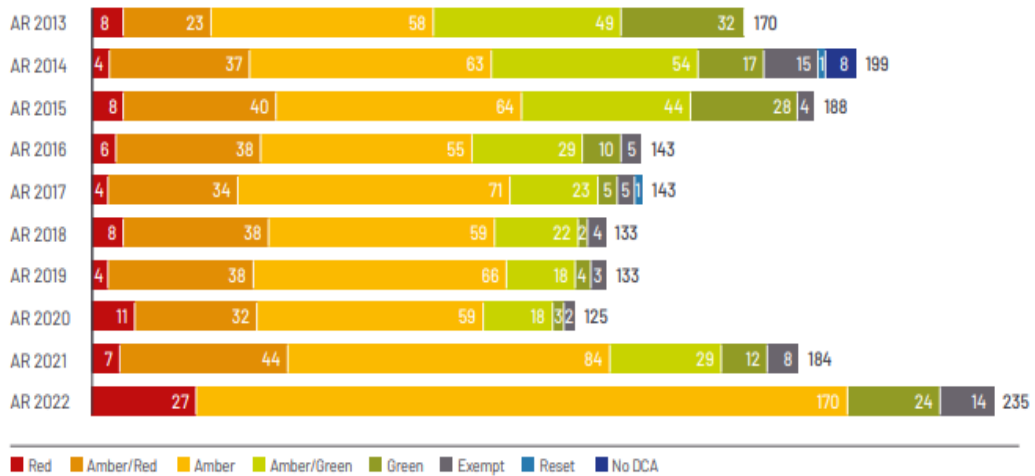
Improved	52	22%
Stayed the same	65	28%
Worsened	34	15%
Exempt	2	1%
AR 2022 Joiners	76	33%

자료: UK IPA(2022)

□ 영국의 관문심사 결과 및 자료 활용

- 관문심사 결과보고서(Delivery Confidence Assessment : DCA)는 사업을 5개의 색깔 등급으로 구분하여 사업의 성공여부 즉 계획된 시간과 비용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
- 예를 들어, 적색 등급을 받은 사업은 사업 성공여부가 불확실하여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함을 의미함
 - IPA의 2021-22년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on Major Project)에 따르면, 총 235건 중 27건이 적색 등급, 170건이 황색 등급을 받음
 - 또한 다음해까지 관리되는 사업은 재평가를 통해 등급이 변화되며, 예를 들어 2022년의 경우 전년도에 적색 등급을 받은 사업 7건 중 5건은 황색 등급으로 하향 조정됨

[그림 III-9] 관문심사 결과(2013~2022)



자료: UK IPA(2022)

- 영국의 관문심사는 사전타당성조사뿐만 아니라 집행의 중간과정 및 사후평가까지 포함하여 대규모 사업이 당초 목표한 바를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즉 운영을 통해 나타나는 편익이나 경제적 효과 달성 여부까지도 판단할 수 있음
-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기간동안 관찰된 비용, 소용기간 관련 정보는 신규사업을 계획할 때 활용할 수 있음(박소영, 2017)

나. 도로사업 사후평가제도(Post Opening Project Evaluation: POPE)

- 영국의 도로사업은 사후평가는 1981년 간선도로에 대한 사업예측모니터링 (Scheme Forecast Monitoring:SFM)을 도입하는데서부터 시작됨
-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시행된 사후수행평가(Post Implementation Evaluation Studies: PIES)를 거쳐, 지금의 사후평가제도(Post Opening Project Evaluation: POPE)로 발전하였음
- POPE 활용
 - 활용방안은 건설사업이 투자 가치 및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키는지 확인하고, 국민의 세금납부와 통행요금 징수의 당위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함

- 또한, 현재의 사업성 평가기법의 장단점을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평가기법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문가 논의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음

○ 주요 내용

- 사전·사후의 교통량을 비교하되, PIES는 통행시간 및 사고율 비교를 포함하였으며, POPE는 환경성, 접근성, 연계성 파급효과분석 등이 포함된 평가를 수행하고 있음(김혜란, 2012.9.10.)

○ 평가기관

- 영국의 POPE는 영국의 도로사업 후 도로청이 수행하는 평가로서 도로사업의 투자 가치 확인, 비용·편익 예측의 정확도 평가, 비용·편익 정확도 영향요인 확인, 사업성 평가 예측 정확성을 위한 평가기법 개선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

○ POPE의 평가항목 다음 표와 같이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접근성, 연계성을 대항목으로 공급자 및 이용자의 효율성, 역사문화유산, 생물종 다양성, 여행 분위기 등의 세부평가항목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사후평가항목 또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III-2〉 도로사업 사후평가 세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안전성	사고감소 안전성 개선	접근성	선택가치 단절 교통시설 접근성
경제성	재정 투자가치 공급자 효율성 이용자 효율성 통행 신뢰성 경제적 간접효과	통합성	교통시설 연계성 교통정책과 토지이용 정책 연계 교통정책과 정부정책 부합성
환경성	소음 지역대기질 온실가스 자연경관 도시경관		역사문화유산 생물종 다양성 수질환경 여행분위기

3. 미국

가. 미국 건설산업연구소의 벤치마킹 매트릭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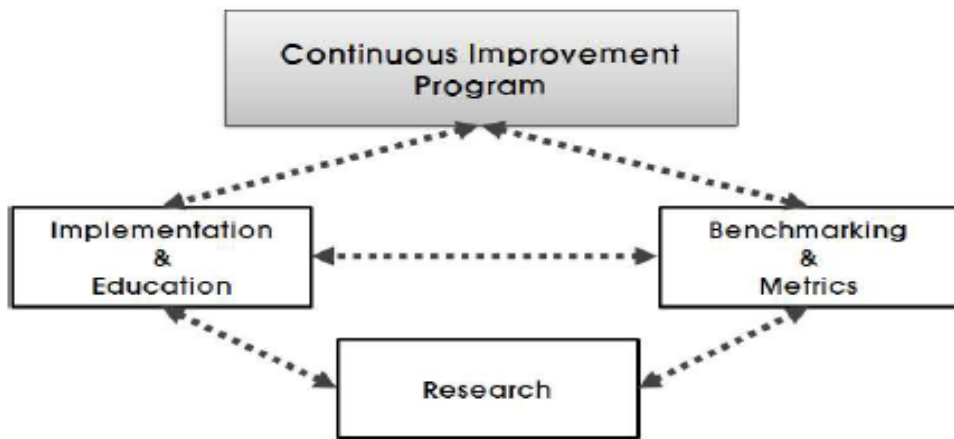
- 미국건설사업연구소(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이하 CII)의 벤치마킹 매트릭스(Benchmarking & Metrics)는 미국 건설사업의 대표적인 사후평가 시스템으로 1993년도에 시작하여 1996년도에 처음 분석 결과를 도출한 시스템임
- CII 회원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와 효율성을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미국 CII의 회원사는 물론 건설 산업 전체의 발전이 실행목적인
 - 평가내용
 - 건설산업계의 '프로젝트 성과에 대한 수준'을 제시
 - 참여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베스트 프랙티스⁵⁾(Best Practice)'에 대한 성과를 평가
 - CII의 '베스트 프랙티스' 적용결과 및 가치를 계량적으로 평가
 - 이에 따른 결과는 사업타당성을 예측하는데 실증적으로 사용됨
 - 프로젝트의 효율성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⁶⁾
- 벤치마킹 매트릭스는 전략적, 프로세스, 그리고 성과중심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성과중심 벤치마킹
 - 생산프로세스에 대한 성과 측정과 설문조사를 통해 각종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산업동향을 분석하고 특히 경쟁 대상 조직을 중심으로 벤치마킹을 수행하는 것
 - 생산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직접적으로 얻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제3자의 도움으로 작은 노력을 통해 벤치마킹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CII가 바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러한 벤치마킹 수행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5) Best Practice란 건설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최선의 수행 방법을 의미하며, 미국 CII는 이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개선연구", 2009.12, pp 36~55(재인용)

- 이러한 결과는 해당 프로젝트와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찾아낼 수 있으며, 타 활동분야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음
- 건설 프로젝트 수행성과의 지속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이 연구활동에서 도출된 개선 방법과 베스트 프랙티스를 참여회사에 적용, 교육시키며, 그 결과를 벤치마킹과 연계시키고 있음

[그림 III-10] CII 벤치마킹 프로그램과 타 활동간의 연계 개념



- 미국 CII의 성과분석의 경우, 분석팀은 벤치마킹 참여회사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기준으로 성과를 분석하고 수집된 모든 프로젝트의 종합 분석 결과에 대한 해당 프로젝트 및 회사의 성과수준과 위치를 제시함
- ‘프로젝트 비용 증가율’은 프로젝트 초기에 예상했던 사업금액과 완료 후, 실 투입된 총 사업비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수치가 높게 나오면 나올수록 예상치 못했던 총 사업비의 증가가 초래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프로젝트 공기 지연율’ 역시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산정되며, 공기 측면에서 해당 프로젝트가 얼마나 효율적이었는가를 평가할 수 있음
- 벤치마킹을 참여하는 각 회사는 자료를 제출한 프로젝트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또 회사차원에서는 다른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 지를 가늠할 수 있고, 향후 회사와 프로젝트 운영개선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교통분야 성과관리제도

□ MAP-21의 대규모 투자사업의 성과 측정 제도

- 2012년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MAP-21(Moving Ahead for Progress in the 21st Century) 법을 도입하면서 \$105 billion 규모의 교통시설 관련 프로그램 예산을 마련함
- 해당 법은 단순히 교통시설 인프라 구축만을 위해 편성된 것이 아니라, 교통시설의 도입 이후 해당 시설의 목적 달성 정도를 측정 지표를 설정하여 평가하도록 강제하였음(매 2년마다 보고서 제출)
 - 아래의 그림과 같이 미국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목표와 해당 목표를 측정하는 지표(performance measures)를 제시받은 각 주정부는 개별 주마다 본인들에게 필요한 프로젝트(도로/철도/자전거등 인프라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제시함
 -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교부 받은 예산을 활용하여 투자사업을 시행하고, 투자사업의 시행(준공) 이후 해당 시설 도입 이후 변화된 성과(performance)를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성과 측정 방식을 이용하여 지표값을 산출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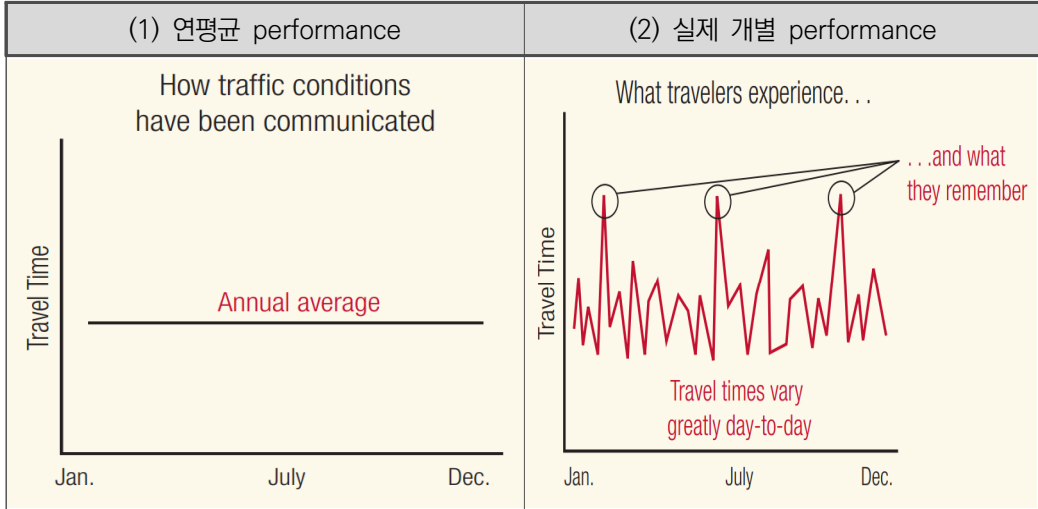
[그림 III-11] 성과지표 관리 Flow



자료: <https://www.fhwa.dot.gov/map21/presentations.cfm>

- 이전까지 미국의 교통관련 대규모 투자사업의 평가는 해당 사업의 준공까지 만을 다루어 실제 투자사업의 도입으로 인한 효과 측정은 부족한 실정 이였으나, MAP-21 법의 시행 이후 Big-Data를 활용하여 도입된 시설의 performance를 측정하고 이를 해당 사업의 목표 지수와 비교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가능케 하였음
 - 기존의 대규모 터널, 교량 건설 등을 포함한 교통 투자사업은 해당 교로망이 준공 되면 사업은 문제없이 완료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실제 모든 계획은 건설이 목적이 아니라 도로망 건설이라는 수단을 통해 혼잡완화, 통행시간 단축, 통행 거리 단축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됨
- 다만, 대규모 네트워크(도로망)에 추가되는 새로운 투자사업의 효과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료 수집(data collection) 방식으로는 성과지표와 성과목표를 적절히 도출하고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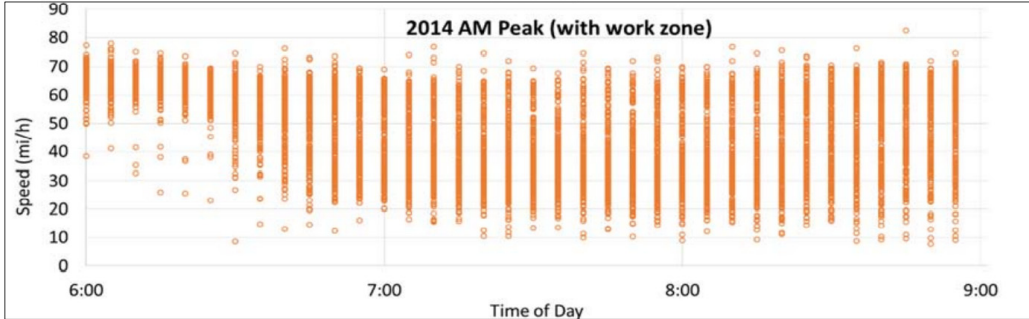
[그림 III-12] 연평균 및 실제 개별 performance



자료: https://ops.fhwa.dot.gov/publications/tt_reliability/brochure/ttr_brochure.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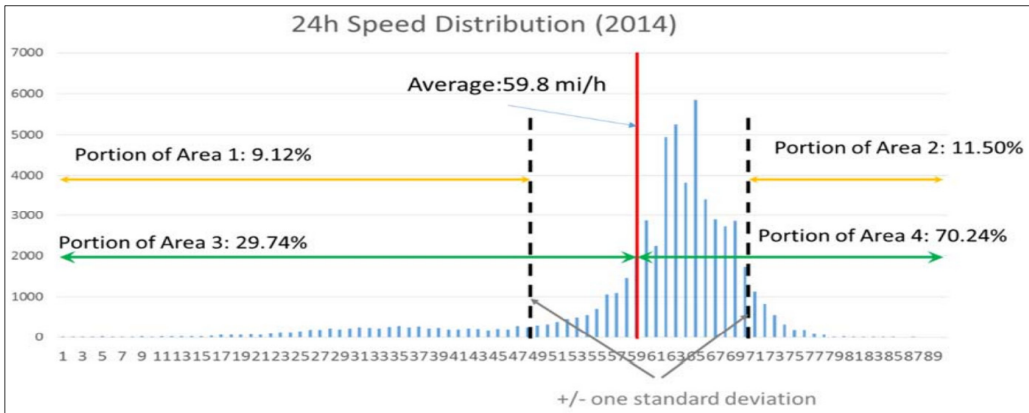
- 위의 그림 중 (1)번 그림은 과거 전통적으로 측정하는 성과 또는 성과 지표이며, (2)번 그림은 실제 개별 이용자들이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해당 시설물의 performance를 설명하고 있음
- 간헐적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만 전통적인 방식의 제한적 평가만이 가능하였고 이를 통해서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시설의 효과를 적절히 또는 제대로 판단할 수 없기에 미국 중앙정부는 NPMRDS(National Performance Management Research Data Set)라 불리는 Big-Data를 도입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함
- NPMRDS 자료를 활용한 사전·사후 평가 사례
 - NPMRDS는 미국 민간회사인 HERE가 미중앙정부에 제공한 교통관련 Big-Data이며, 미 본토의 전역의 도로망을 이동중인 차량들로부터 실시간 위치와 순간속도 자료를 제공받아 해당 자료를 5분에서 1분단위로 가공하여 제공하고 있음
 - [그림 III-12]의 (2)는 실제 도로 사용자들이 경험하는 해당 도로의 performance를 도식화 하였다면 아래의 [그림 III-13]은 NPMRDS 자료를 활용하여 도식화한 특정 도로의 시간대별 통행 속도의 분포임

[그림 III-13] 시간대별 속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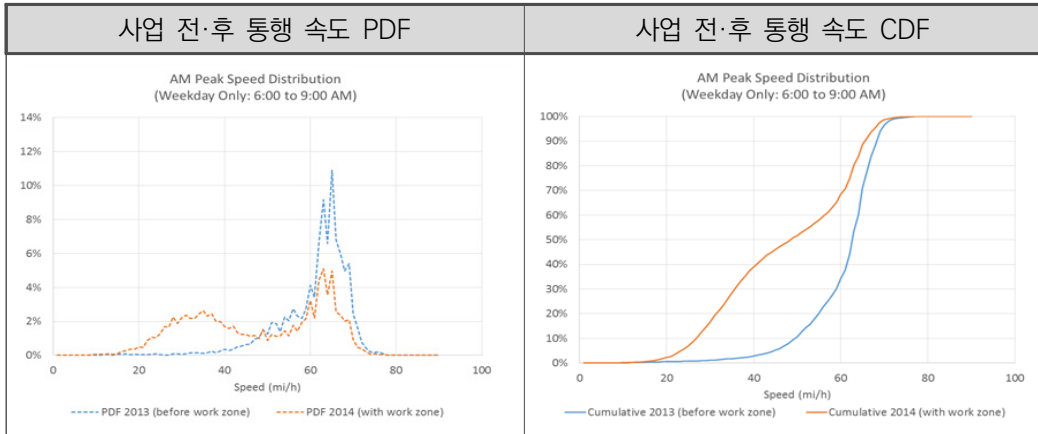
- 위 그림의 도로망에서 5분 단위의 평균 속도를 이용하여 통행시간의 분포를 구현하면 아래의 [그림 III-14]와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그림 III-14] 시간대별 속도 분포



- 과거부터 실시간으로 축적된 자료인 NPMRDA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전체의 5분 단위 performance를 구축한 결과 특정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전·후의 performance 변화 또한 분석이 가능하게 됨
- 아래의 [그림 III-15]는 특정 도로 사업 전·후의 통행속도 PDF(probability density function)와 CDF(cumulative density function) 변화를 보여 주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해당 도로에서 발생한 혼잡비용의 차이 또한 산출할 수 있음

[그림 III-15] 사업 전·후 통행 속도 PDF 및 CDF



- 미국 메릴랜드 대학 산하의 RITIS(Regional Integrated Transportation Information System)는 축적된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규모 도로 및 철도 투자사업 전·후의 performance 변화를 통해 사업효과를 분석하고 해당 지역의 혼잡비용 변화를 제시하고 있음
- 또한, 대도시권 내에서 흔히 발생하는 도로 공사장 전·후의 평가 또한 구축된 데이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주정부와 중앙정부는 도로망 전체의 performance를 모니터링하고 특정 project를 통해 기존 도로망의 performance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해당 project의 성공 여부 또한 판단할 수 있음
- 이는 개별 주의 project 기획 및 수행 능력 평가에도 반영되어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로도 활용되고 있음

제3절 국내 사후관리제도 사례

1. 건설진흥법에 따른 사후평가

가. 추진배경 및 목적⁷⁾

□ 도입배경

- 공공건설사업 수행성과를 평가하고 차후 유사사업 추진시 이를 활용하여 공공 건설사업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됨

□ 목적

- 발주청이 신기술을 활용한 후 기술의 장단점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신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평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기술의 활용에 도움을 주고자 함

나. 제도 연혁

- 2000. 03. 28 :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도입(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 2001. 05. 10 :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정
- 2008. 01. 01 :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 개통
- 2012. 01. 17 : 건설공사 사후평가 법적근거 마련 (대통령령 ⇒ 법률로 변경)
- 2014. 05. 23 :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사업 변경 (총공사비 500억원 ⇒ 300억원)

다. 추진근거 및 평가방법

□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8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 상기 법령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공사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내용, 방법, 대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993호, 2021.7.30. 일부개정)을 제정함⁸⁾

7) 건설사업정보시스템

8) 부록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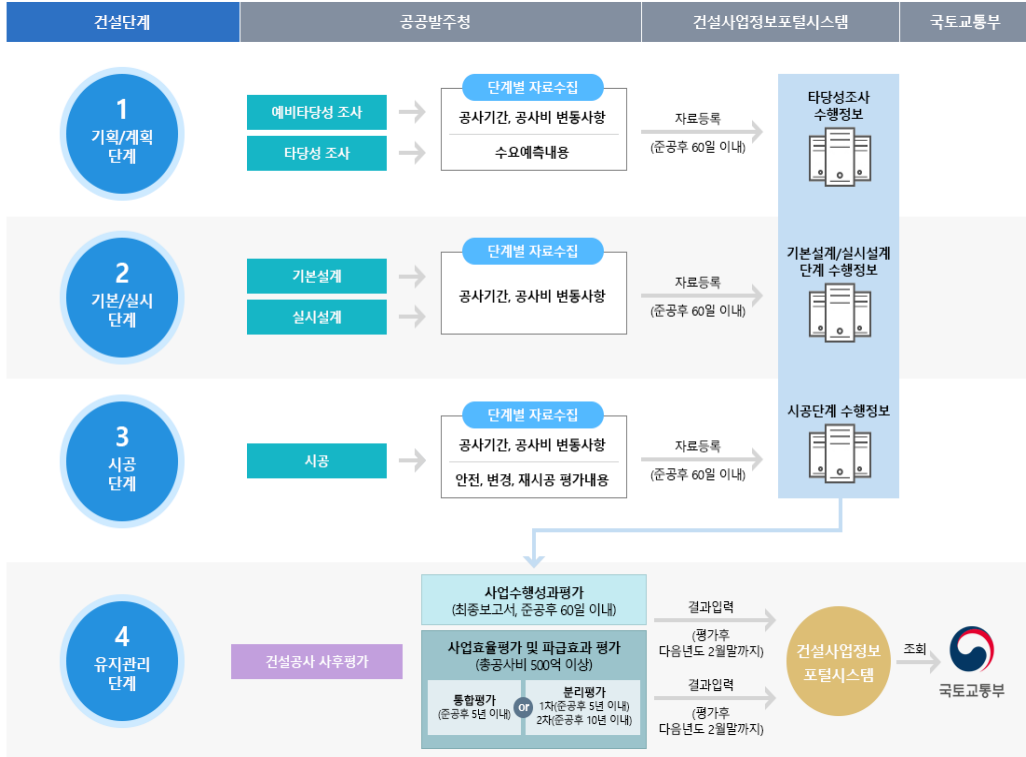
- 대상 :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공사 준공 후 5년 이내)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6에 의거 “발주청”,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한함
 - 단,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각 호의 건설공사(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숙사 등 단독주택, 공동주택, 고등 교육시설, 도서관, 의료시설, 연수원의 신·증축 사업 등 사업효과가 국지적이고 정형화된 건설공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되어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은 제외함
- 평가주체 : 사업 발주청이 직접 수행(용역사대행 가능)
 - 사후평가의 주체는 발주청이지만, 사후평가 수행에 전문인력이 부족할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사후평가를 일부 수행토록 위임하고 있으며, 사후평가 결과는 발주청이 건설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
 -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사후평가위원회(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자문을 받도록 함
- 평가절차 및 내용 : 건설공사 시행단계별로 수행
 - 사후평가의 평가분야는 크게 1) 사업수행성과 평가, 2) 사업효율 평가, 3) 파급효과 분석으로 구분되며, 500억 미만의 건설공사는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표 III-3〉 사후평가 시기 및 평가분야

평가시기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단계별 사업추진 완료 후 60일 이내	사업 수행성과	사 업 비	사업비 증감율	
			보상비 증감율	
준공후 5년 이내	사업효율	사업기간	사업기간 증감율	
		수 요	수요 (예측 vs 실제)	
	기대효과	B/C 비율 (예측 vs 실제)		
	파급효과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	민원	다수민원 발생 건수
				다수민원 처리 건수
		하자	하자 발생 건수	
			하자 처리 건수	
	지역경제	지역경제	인구 수	
			종사자 수	
			지역 총 생산	
환경	환경	지가 상승율		
			-	

- 건설단계별로 ①기획/계약 단계→②기본/실시단계→③시공단계→④유지관리단계 구분되며, 4단계 건설단계 중 사업수행성과평가는 ①~③단계, ④단계는 사업효율평가 및 파급효과평가를 실시함
- 즉 ①~③단계에서는 단계별 용역 및 시공이 **준공된 후 60일 이내**에 건설사업 정보 포털시스템 내의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에 관련 자료를 등록함
- 시설이 준공된 이후에는 준공 이후 60일 이내에 ‘사업수행평가’(사후평가), 평가완료 후 다음년도 2월말까지 건설사업정보 포털시스템 내의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에 결과 및 최종보고서 등록함
- 또한 건설공사 준공 후 5년 이내에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분리평가일 경우 2차는 10년 이내)(사후평가), 평가완료 후 다음년도 2월말까지 건설사업정보 포털시스템 내의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에 결과 등록
- 4단계 건설단계 중 사업수행성과평가는 ①~③단계, ④단계는 사업효율평가 및 파급효과평가를 실시함

[그림 Ⅲ-16]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사후평가 세부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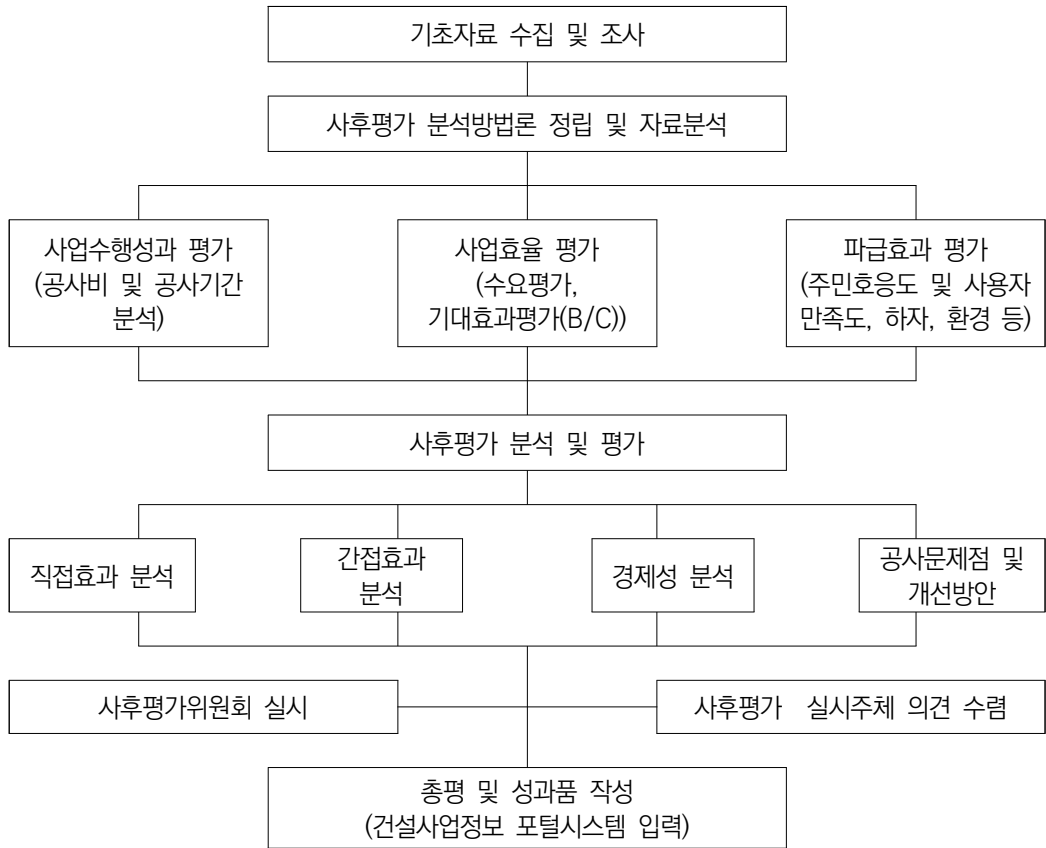
자료: 건설사업정보시스템(www.calspia.go.kr)

□ 사후평가 수행절차

-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문제점 및 개선방안, 효과분석으로 나누어 각 항목별 세부내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

□ 최종 성과품은 건설사업정보 포털시스템(https://www.calspia.go.kr)에 입력함

[그림 III-17] 사후평가 수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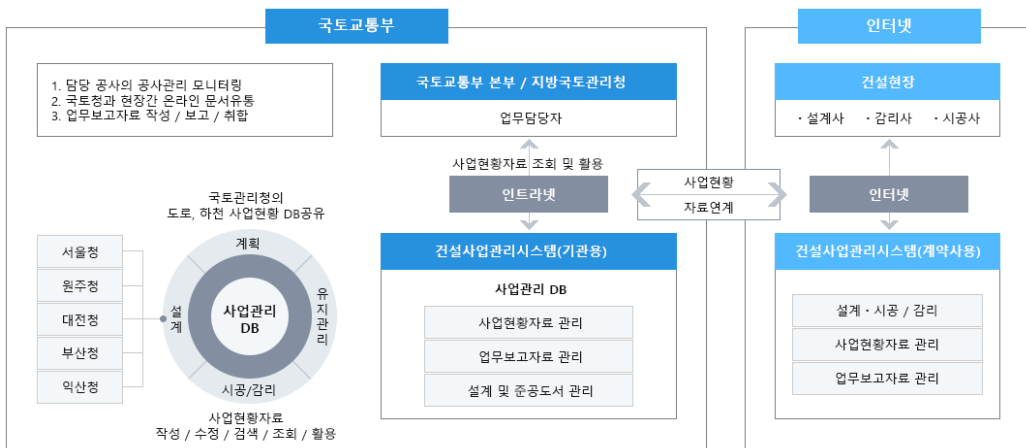


□ 건설사업정보시스템(www.calspia.go.kr)

-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은 공공발주기관과 건설업체(설계/시공/감리)간에 온라인으로 건설사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으로, 공공발주 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위한 시스템으로도 활용되어 관련 자료가 관리 및 축적되고 있음
-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은 2000년 도로사업관리시스템(RCMS)과 지방청 사업관리시스템이 각각 운용되다 2003년 통합한 이후, 2013년에는 항만건설사업시스템과도 통합하여 대규모 공공발주 사업 관리시스템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주요 사용자는 국토교통부 본부 사용자, 국토관리청의 도로시설국 공사관리자 및 지방국토관리청별 담당 공사관리관으로 각 사용자별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사용하도록 함⁹⁾

- 본부사용자는 국토교통부 본부 사용자로서 사업현황, 종합검색, 사업계획, 준공관리 등 기능을 사용
- 공사관리관은 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의 용역·공사 담당자로서, 업무보고, 사업현황, 종합검색, 사업/공사등록, 준공관리 등 5개의 기능을 사용
- 지방청 관리자는 국토관리청별로 해당 공사관리관의 권한을 지정 및 변경하고 국토관리청 전체 발주용역·공사를 관리하는 사용자로서, 업무보고, 사업현황, 종합검색, 사업/공사등록, 준공관리, 관리자 등 6개의 기능을 사용함

[그림 Ⅲ-18] 건설사업정보시스템 개념도



자료: 건설사업정보시스템(www.calspi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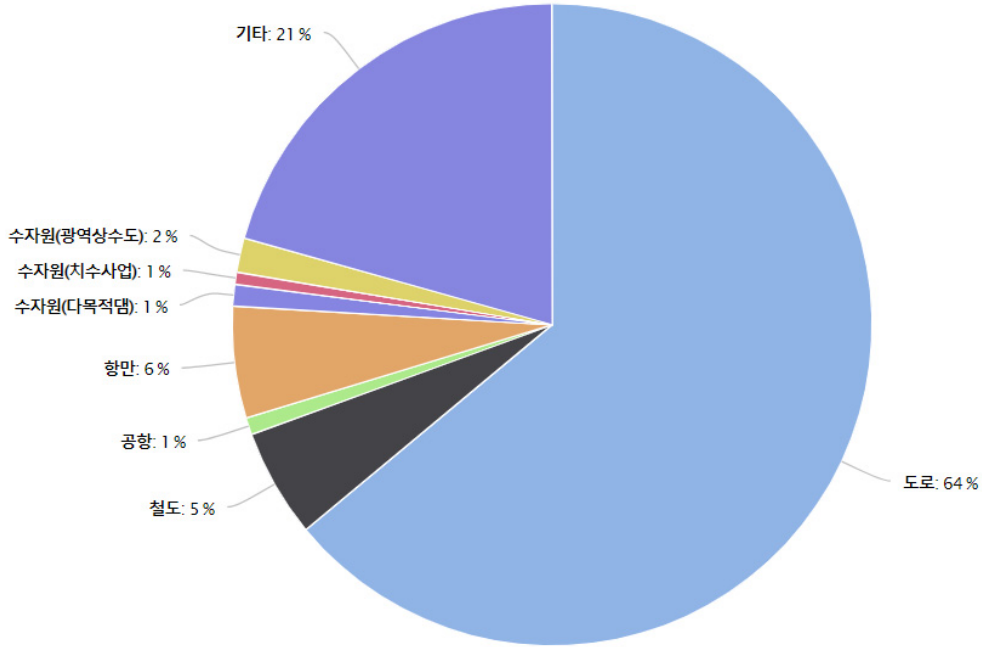
다. 운영현황

□ 공사 현황

- 2022년 11월 기준 건설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시설물별 공사건수는 도로가 64%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부분이 기타 시설물(21%)로 확인됨
- 기타 시설물의 전체 공사건수는 265건으로 확인되며, 이 중 사업수행성과를 완료한 사업이 175건,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를 제시한 사업은 95건에 불과 (35.8%)하며, 평가면제대상의 사업 수가 25건(9.4%), 평가 미완료 사업은 50건(18.9%)으로 나타남

9) <https://www.calspia.go.kr/portal/intro/introCms.doc>참고

[그림 III-19] 시설물별 공사건수



자료: 건설사업정보시스템(www.calspia.go.kr) 2022.11.23 기준

<표 III-4> 공사형태별·공사규모별 공사건수

(단위: 건)

공사형태	500억 미만	500억~1,000억	1,000억~2,000억	2,000억 이상	기타	전체
신규	137	270	133	141	165	846
개보수현대화	10	11	6	7	5	39
확장·증설	58	149	48	21	109	385
기타	2	3	1	12	2	20

자료: 건설사업정보시스템(www.calspia.go.kr) , 2022.11.23. 기준

□ 사후평가 수행현황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사후평가 관련 자료는 건설사업정보시스템에 축적되고 있으며, 연도별 수행현황은 2007년 25건에서 시작하여, 2022년 기준으로는 총 750건의 사업수행 성과표가 작성된 것으로 나타남
- 발주기관별 이행현황은 국토부가 70%로 가장 높으나 전체적으로 58% 수준 (19년 말 기준)임
 - 앞서 살펴본 공사 현황 건수(1,290건)과 기간별 통계상 수행건수(750건), 발주 기관별 통계상 수행건수(751건)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표 Ⅲ-5〉 발주기관별 대상사업 및 이행실적

(단위: 건, %)

구분	대상사업	완료	미시행
국토부(소속, 산하기관 포함)	686	412 (60.1%)	274 (39.9%)
타 부처	86	62 (72.1%)	24 (27.9%)
지자체	183	137 (74.9%)	46 (25.1%)
기타	231	140 (60.6%)	91 (39.4%)
합계	1186	751 (63.3%)	435 (36.7%)

주: 기타에는 공사, 공단, 지자체 소속 및 산하기관 등 포함
 자료: 건설사업정보시스템(www.calspia.go.kr) 2022.11.23 기준

- 건설사업정보시스템(www.calspia.go.kr)에는 사후평가 대상사업별 단계별 사후평가 수행 여부 및 수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요약표¹⁰⁾를 제공하고 있으며, 첨부된 사후평가보고서를 통해 세부사항을 확인하도록 함
- 그러나 사후평가 요약표가 모두 작성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사후평가보고서를 보아야지만 확인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함

10) 부록 3에 첨부됨 총주종합스포츠타운 요약표 참조

라. 문화 및 체육시설 사후평가 현황

1) 문화시설 현황

□ 건설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기타 시설물 리스트(265건) 중 문화시설은 9개이며, 이 중 사업수행성과 평가는 완료하였으나,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를 분석해야 하는 대상사업(500억원 미만 사업)은 절반 수준인 5건(55.6%)에 해당함

〈표 III-6〉 문화시설 사후평가 현황

발주기관	사업명	규모 (백만원)	사업수행 성과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공사	259,054	완료	완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공사	50,000	완료	평가면제대상
강원도 강릉시	올림픽 아트센터 건립사업	42,110	완료	평가면제대상
강원도 인제군	인제스피디움 건설공사	165,667	완료	완료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	31,933	완료	평가면제대상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 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	62,271	완료	완료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인천 어린이과학관 건설사업	55,977	완료	완료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설공사	144,109	완료	완료
부산도시공사	부산현대미술관 건립공사	33,700	완료	평가면제대상

자료: 건설사업정보시스템(www.calspia.go.kr)

- 사업 규모 측면에서 500억원 미만 사업이 3건,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사업 3건, 1,000억원 이상 ~ 2,000억원 미만 사업이 2건, 2,000억원 이상 사업이 1건으로 확인됨
-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면제 대상사업(4건) 중 3건은 500억원 미만 사업, 1건은 사업규모가 500억원인 사업으로 확인됨
- 사업 수행평가 성과 분석의 경우 사업 기간, 총사업비, 안정성을 위주로 평가함
- 다만, 일부 사업만 사업수행성과 평가에 안정성 분석(재해발생 건수, 재해율,

강도율, 재시공 건수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안정성 평가 면제 대상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발주청의 재량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Ⅲ-7〉 문화시설 안정성 평가 현황

사업명	평가 여부	평가 항목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공사	평가 완료	· 재해율 : 재해선수/연간근로자수*100 ·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연간근로시간*100 · 화재사고 수습현황, 안전보건 교육 현황, 사업안전보건비 사용현황
서소문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공사	평가 완료	· 재해율 : 재해선수/연간근로자수*100 ·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연간근로시간*100 · 안전 활동 실적
올림픽 아트센터 건립사업	미제시	
인제스피디움 건설공사	평가 완료	· 재해율 : 재해선수/연간근로자수*100 ·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연간근로시간*100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	미제시	
고양 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	평가 완료	· 안전성과에 관한 검토(재해율, 강도율) · 안전사고의 종류 및 원인 제시로 향후 사업 자료 제시
인천 어린이과학관 건설사업	미제시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설공사	미제시	
부산현대미술관 건립공사	평가 완료	· 재해율 : 재해선수/연간근로자수*100 ·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연간근로시간*100 · 안전 활동 실적

□ 문화시설의 사업효율평가 여부와 평가항목은 아래의 표와 같음

- 사업효율평가 수행 시 대부분 계획 대비 실제의 B/C 비율을 비교하고 있음
- 일부 사업(국립현대미술관 등)의 경우 분석결과 차이의 원인을 함께 제시하여 예측값과 실제값의 사이를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 분석까지 수행한 사후평가보고서는 일부에 불과하며**, 고양 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전/사후 B/C 비율을 함께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 **사업효율평가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표 III-8〉 문화시설 사업효율평가

사업명	평가 여부	평가 항목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공사	평가완료	- 수 요 : 20,221,465 → 실제 : 7,321,537 (증감률 -63.79%) - B/C비율 : 계획 0.92 → 실제 0.07 (증감률 -92.39%)
서소문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공사		평가면제대상
올림픽 아트센터 건립사업		평가면제대상
인제스피디움 건설공사	평가완료	- 수 요 : 미제시 - B/C비율 : 계획 0.98 → 실제 1.01 (증감률 +3.06%)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		평가면제대상
고양 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	평가완료	- 수 요 : 계획 994,666㎡ → 실제 994,756㎡ (증감률 +0.01%) - B/C비율 : 1.01 (사전/사후 B/C 비교 생략)
인천 어린이과학관 건설사업	평가완료	- 수 요 : 계획 연간 12만명 → 실제 48만명 (증감률 303%) - B/C비율 : 계획 0.6 → 실제 0.43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설공사	평가완료	- 수 요 : 계획 가동률 44% → 55% (증감률 +25%) - B/C비율 : 계획 1.0496 → 실제 1.0057 (증감률 -5%)
부산현대미술관 건립공사		평가면제대상

□ 문화시설 파급효과

- 문화시설의 파급효과는 민원, 하자, 지역경제, 지역사회, 환경 등 기타로 구분하여 제시되고 있으나 사업별로 사후평가보고서에 포함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상이함
- 또한, 일부 평가항목(지역경제)의 경우 분석에 포함하는 범위가 상이하며,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의 파급효과 역시 일반적인 현황분석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함
 -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의 경우 현황분석에 그치고 있으며, 환경 평가의 경우 대부분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있어 인과효과를 확인한 것은 아님

〈표 Ⅲ-9〉 문화시설 파급효과 분석 현황

사업명	평가 여부	평가 항목(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공사	평가 완료	- 민원 : 민원발생건수
		- 하자 : 하자발생건수, 하자처리건수
		- 지역경제 : 종로구 세입예산 및 지방세 변화, 취업자 수 및 취업률
		- 지역사회 : 미제시
		- 환경 : 설문조사 실시
서소문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공사	평가면제대상	
올림픽 아트센터 건립사업	평가면제대상	
인제스피디움 건설공사	평가 완료	- 민원 : 미제시
		- 하자 : 하자발생건수, 하자처리건수
		- 지역경제 : 인구수, 종사자수, 지역총생산, 지가상승율
		- 지역사회 : e-지방지표 현황
		- 환경 : 미제시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	평가면제대상	
고양 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	평가 완료	- 민원 : 민원발생 건수, 처리건수
		- 하자 : 미제시
		- 지역경제 : 인구수, 종사자수, 지역총생산, 지가상승율
		- 지역사회 : 미제시
		- 환경 : 설문조사
인천 어린이과학관 건설사업	평가완료	- 민원 : 민원발생 건수, 처리건수
		- 하자 : 하자발생건수, 하자처리건수
		- 지역경제 : 인구수, 종사자수, 지역총생산, 지가상승율
		- 지역사회 : 지역사회 낙후도
		- 환경 : 설문조사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설공사	평가완료	- 민원 : 민원발생 건수, 처리건수
		- 하자 : 하자발생건수, 하자처리건수
		- 지역경제 : 인구수, 종사자수, 지역총생산, 지가상승율
		- 지역사회 : 미제시
		- 환경 : 설문조사
부산현대미술관 건립공사	평가면제대상	

2) 체육시설 현황

□ 건설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기타 시설물 리스트(265건) 중 체육시설은 12건으로 확인되며 문화시설과 유사하게 사업수행성과는 분석을 끝냈으나,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사업이 4건에 해당함

○ 이 중 500억 미만의 사업으로 평가면제대상인 2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평가대상임에도 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표 III-10〉 체육시설 사후평가 현황

발주기관	사업명	규모 (백만원)	사업수행 성과표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표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공사	75,539	완료	완료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마산야구장 건립사업	110,800	완료	미완료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종합경기장 건립공사	116,586	완료	완료
경기도 화성시	화성 그린환경센터 건설공사	0	완료	완료
서울특별시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378,486	완료	미완료
인천광역시	옥련국제사격장 건설공사	12,047	완료	평가면제대상
인천광역시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 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	166,557	완료	완료
인천광역시	2014인천AG 십정(열우물)경기장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	67,500	완료	완료
인천광역시	2014인천AG 선학경기장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	60,350	완료	완료
인천광역시	2014인천AG 계양경기장 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	73,075	완료	완료
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남동경기장 건설공사	0	완료	완료
서울올림픽 기념국민체육 진흥공단	체조경기장 시설개선공사(건축, 소방)	35,670	완료	평가면제대상

주 : 화성 그린환경센터, 서남물재생센터는 체육시설을 포함함

- 사업 규모 측면에서 500억원 미만 사업이 4건,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사업 4건, 1,000억원 이상 ~ 2,000억원 미만 사업이 4건, 2,000억원 이상 사업이 1건으로 확인됨.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면제 대상사업(2건)은 모두 500억원 미만 사업으로 확인됨
- 사업 수행평가 성과 분석의 경우 사업 기간, 총사업비, 안정성을 위주로 평가함
- 다만, 문화시설과 마찬가지로 일부 사업은 안정성 평가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데 평가 면제 대상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발주청의 재량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보임

〈표 Ⅲ-11〉 체육시설 안정성 평가 현황

사업명	평가여부	평가 항목
충주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공사		미제시
창원마산야구장 건립사업	평가 완료	· 재해율, 재해율
진주종합경기장 건립공사	평가 완료	· 재해율 : 재해선수/연간근로자수*100 ·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연간근로시간*100
화성 그린환경센터 건설공사		미제시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미제시
옥련국제사격장 건설공사		평가면제대상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 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		미제시
2014인천AG 십정(열우물)경기장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		미제시
2014인천AG 선학경기장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		미제시
2014인천AG 계양경기장 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		미제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남동경기장 건설공사		미제시
체조경기장 시설개선공사 (건축, 소방)		평가면제대상

- 체육시설의 사업효율평가 여부와 평가항목은 문화시설과 유사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사업효율평가 수행 시 대부분 계획 대비 실제의 B/C 비율을 비교함
- 다만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 분석까지 수행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업이 실제값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시설과 차이를 보임

〈표 III-12〉 체육시설 사업효율평가

사업명	평가 여부	평가 항목
충주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공사	평가 완료	- B/C비율 : 0.02
창원마산야구장 건립사업	평가 완료	- 수 요 : 평균 관객수 예측수요 제시 - B/C비율 : 미제시
진주종합경기장 건립공사	평가 완료	- B/C비율 : 0.113
화성 그린환경센터 건설공사	평가 완료	- 수 요 : 계획 268톤 → 실제 339톤 (증감율 127%) - B/C비율 : 계획 1 → 실제 : 1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평가 완료	- 미제시(2022년 준공)
옥련국제사격장 건설공사		평가면제대상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 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	평가 완료	- B/C비율 : case1(0.966), case2(1.425), case3(0.813), case4(1.188)
2014인천AG 십정(열우물)경기장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	평가 완료	- B/C비율 : 0.86
2014인천AG 선학경기장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	평가 완료	- B/C비율 : 0.57
2014인천AG 계양경기장 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	평가 완료	- B/C비율 : 0.77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남동경기장 건설공사	평가 완료	- B/C비율 : 0.83
체조경기장 시설개선공사 (건축, 소방)		평가면제대상

□ 체육시설의 파급효과

- 체육시설 파급효과는 민원, 하자, 지역경제, 지역사회, 환경 등 기타로 구분하여 제시되고 있으나 사업별로 사후평가보고서에 포함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상이함
- 또한, 일부 평가항목(지역경제)의 경우 분석에 포함하는 범위가 상이하며,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의 파급효과 역시 일반적인 현황분석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함
-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의 경우 현황분석에 그치고 있으며, 환경 평가의 경우 대부분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있어 인과효과를 확인한 것은 아님
 - 예를 들어, 화성 그린환경센터 건설공사의 경우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환경평가로 같음하고 있음

〈표 Ⅲ-13〉 체육시설 파급효과 분석 현황

사업명	평가 여부	평가 항목(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
충주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공사	평가 완료	- 민원 : 민원발생건수, 민원처리건수
		- 하자 : 하자발생건수
		- 지역경제 : 인구수, 종사자수, 지역총생산, 자가상승률
		- 지역사회 : 미제시
		- 환경 : 설문조사 실시
창원마산야구장 건립사업		미제시
진주종합경기장 건립공사	평가 완료	- 민원 : 민원발생건수, 민원처리건수
		- 하자 : 하자발생건수, 하자처리건수
		- 지역경제 : 산업별 생산/소득/취업유발승수, 산업별 부가가치/수입/조세유발승수/
		- 지역사회 : 미제시
		- 환경 : 설문조사 실시
화성 그린환경센터 건설공사	평가 완료	- 민원 : 미제시
		- 하자 : 미제시
		- 지역경제 : 인구수, 종사자수,
		- 지역사회 : 미제시
		- 환경 :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명	평가 여부	평가 항목(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미제시
옥련국제사격장 건설공사		평가면제대상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 건설공사		미제시
2014인천AG 십정(열우물)경기장 건설공사	평가 완료	- 민원 : 민원발생 건수, 처리건수
		- 하자 : 하자발생건수, 하자처리건수
		- 지역경제 : 인구수, 종사자수, 지역총생산, 지가상승율
		- 지역사회 : 미제시
		- 환경 : 설문조사
2014인천AG 선학경기장 건설공사	평가 완료	- 민원 : 민원발생 건수, 처리건수
		- 하자 : 하자발생건수, 하자처리건수
		- 지역경제 : 인구수, 종사자수, 지역총생산, 지가상승율
		- 지역사회 : 미제시
		- 환경 : 설문조사(만족도 조사)
2014인천AG 계양경기장 건설공사	평가 완료	- 민원 : 민원발생 건수, 처리건수
		- 하자 : 하자발생건수, 하자처리건수
		- 지역경제 : 인구수, 종사자수, 지역총생산, 지가상승율
		- 지역사회 : 미제시
		- 환경 : 설문조사(만족도 조사)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남동경기장 건설공사	평가 완료	- 민원 : 민원발생 건수, 처리건수
		- 하자 : 하자발생건수, 하자처리건수
		- 지역경제 : 인구수, 종사자수, 지역총생산, 지가상승율
		- 지역사회 : 미제시
		- 환경 : 설문조사(만족도 조사)
체조경기장 설개선공사 (건축, 소방)		평가면제대상

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사후평가의 한계

- 제도의 목적 및 평가 결과의 객관성 확보 한계
 - 「건설기술진흥법」의 사후평가제도는 평가의 목적 자체가 건설공사 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투자사업 이력관리에 해당하는 준공단계까지의 관리에 집중된 측면이 있음
 - 또한 사업을 수행한 발주청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용역업체에 의해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발주청에서 수행한 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에 대한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5)
- 평가결과 작성 시기의 문제
 - 「건설기술진흥법」의 사후평가제도의 평가분야는 세 가지로 구분되며, 사업수행성과평가는 계획부터 준공까지 단계까지의 평가이며,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는 유지관리 단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준공 이후 5년 이내 수행하도록 함
 - 즉,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시기가 상이함에도, 사후평가 주체의 사정에 따라 사업수행성과 평가와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사업수행성과 평가가 사업비 증감 분석, 사업기간 증감 분석 등을 평가하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평가하는 것으로는 사업수행성과 상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거나 준공과정에서 개선하는 등의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저조한 평가이행률 및 평가결과의 환류체계 미비
 - 실제 수행현황을 살펴보아도, 건설기술진흥법의 사후평가제도는 법적 의무사항이나 실제 평가 이행률은 저조하며, 특히 지방재정투자사업 측면에서 지자체의 이행률은 25.1%에 불과함
 - 미이행 사유로는 예산부족, 법령 미숙지 등이 꼽히며, 미시행에 따른 별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20)
 -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평가항목 중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측면에서 평가결과가 환류되어 활용될 필요가 있음
 - 다만, 2019년 11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20.5.27 시행)으로 건설공사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이 지정되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직접 사후평가를 실시하지는 않으나 사후평가 결과의 분석 및 활용 측면에서 개선이 기대됨

- 사후평가 수행결과의 적정성 확인·점검
- 사후평가의 기준·절차·평가기법 등에 관한 조사·연구
- 발주청 사후평가서가 유사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자료 활용방안 마련
- 사후평가 관련 정보의 축적·분석, 분석정보의 보급
- 사후평가 관련 교육·훈련·기술교류·국제협력

□ 대규모 도로, 철도 등 교통부문 사업 중심

- 대규모 사업 중에서도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 부문 사업에 집중된 경향
- 또한 공사비 기준 300억원 이상 사업이 평가대상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 기준으로는 500~1,00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만 해당됨
-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재정부담이 되고 있는 생활SOC시설은 사후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2.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평가

가. 개념 및 근거

□ 개념

-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내부의 사업수행 부서가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고 예산부서가 확인 점검한 평가결과를 지방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임
- 국가는 2005년부터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시행 중이며,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평가는 2015년부터 도입됨

□ 시행근거

- 「지방재정법」 제5조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할 수 있음
- 또한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제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할 수 있음

〈표 Ⅲ-14〉 주요재정사업평가의 시행근거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의2(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나. 평가대상 및 방법

-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로 구분되며,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예규 제132호」에 제시됨
- 사전심사: 신규 행사성사업(시·도 및 시·군·구 신규 행사·공연·축제 등)
 - (평가 주체) 15명 이내, 민간인 3/4이상으로 구성된 민간위원회
 - (내용 및 절차) 민간위원회에서 신규 행사성 사업의 목적성·타당성·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심사 평가 실시
- 사후평가:(지방재정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사업은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설정
 - 투자사업 : 시·도 5억원 이상/ 시·군·구 2억원 이상
 - 행사성사업 : 시·도 및 시·군·구 2억원 공연·축제 등

다. 주요재정사업 사후평가 평가체계

- 평가절차 및 방법
 - (절차) ① 투자사업은 자체평가 및 예산부서 확인·점검 등 순차적 진행
 - 평가계획 수립 → 사업부서 자체평가(투자사업) 또는 민간위원회 사후평가(행사성사업)→평가결과 제출 → 확인및 점검을 통해 평가점수 결정
 - 행사성 사업은 민간위원회 사후평가 및 예산부서 확인·점검
 - 평가계획 수립 → 민간위원회 사후평가 → 평가결과 제출 → 확인·점검을 통해 평가점수 결정
 - 자체평가는 광역(실국 단위), 기초(실과 단위)의 해당 사업부서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전문연구기관의 지원 및 현장 실사 병행 가능함

- 행사성 사업은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후 평가 실시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축제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15명 이내. 민간인3/4이상) 등 기존 민간위원회 활용 가능함

□ 평가지표

- 계획(20점), 관리(30점), 성과·환류(50점)의 3단계로 구분해 11개 지표로 평가함
- 평가지표는 사업의 유형 및 자치단체 특성에 적합한 추가 지표를 자율적으로 수립 후 가·감점 지표로 활용이 가능함
 - 가·감점은 전체 배점의 5%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설정
 - 가·감점 지표 항목에 사회적 가치 지표*를 포함하여 가점 부여 가능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등

〈표 III-15〉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결과	
계획 (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10)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2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3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5		
			소 계	10	
	성과계획의 적정성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5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5		
		소 계	10		
관리 (30점)	사업관리의 적정성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15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0		
			소 계	30	
성과/ 환류 (50점)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 과의 환류 (50)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30		
		4-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10		
		4-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10		
			소 계	50	
계		100			

자료 : 행정안전부예규 제132호

주 : 사업유형 및 자치단체 특성에 적합한 추가 지표 활용 가능하며, 평가배점또한 자치단체가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 평가결과 산출 및 활용

-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이상 사업비율 20% 이내, ‘미흡’ 이하 사업비율 10% 이상 의무화함

〈표 Ⅲ-16〉 평가방법

* 5 등급	매우 우수/	우수 /	보통 /	미흡/	매우 미흡
점수	(90점 이상)	(89~80점)	(79~70점)	(69~60점)	(60점 미만)

- 평가결과 예산 반영시 사업특성 및 평가지표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우수’ 이상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증액 또는 유지
 -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예산 10%이상 삭감 원칙’을 적용
 -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재평가를 통한 등급 개선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 미반영
 - ‘보통’ 이상 등급 사업이라도 평가지표의 특성 및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사업 재검토, 통합·조정 등 제도개선 권고

라. 주요재정사업평가 사례

□ 경기도 재정사업평가 사례¹¹⁾

- 경기도 재정사업평가 대상
 - 2019년부터 소규모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평가대상 사업을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 투자사업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임
 - 이에 재정사업평가 대상사업 수가 2018년 496건에서 2020년 1,015건으로 급격히 증가함
- 경기도 재정사업평가 대상
 - 경기도 재정사업평가는 크게 사업부서 자체평가 -> 전문기관(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평가로 진행되며,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과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 자체평가 후 민간위원인 주민참여예산위원 평가도 진

11) 경기도 재정사업평가제도의 메타평가 연구(경기연구원, 2020) 참고

행하고 있음

- 평가지표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사업부서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전문가 평가지표를 별도로 구성하여 외부전문가 평가를 운영하고 있음
- 외부전문가 평가지표는 사업의 적정성(40점), 효과성(30점), 효율성(10점), 지속성(20점) 등 항목의 1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외부 전문가는 사업설계의 적절성, 경기도 추진 재정사업의 필요성을 위주로 평가하며,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전문적 평가의견을 제시함
- 평가결과는 사업부서 자체평가 50%, 외부전문가 평가 50%를 반영함
 -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평가를 병행하여 사업부서 자체평가 50% + 외부전문가 평가 30% + 주민참여 예산위원 평가 20%의 비중을 반영함

〈표 III-17〉 주요재정사업평가지표 및 배점 비교(파주시)

단계	평가지표	평가내용		단계
적절성 (20)	사업은 정부(경기도)의 역할로서 적절한가?	사업운영 방향의 적절성	중장기 비전 및 운영전략의 적합성	과정· 결과
	사업추진체계는 적절하게 설계되었는가?(예: 도 자체추진/위탁수행의 적절성)		사업추진체계 및 시행주체의 적절성	
	해당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이 재정지원목적 및 정책목적에 부합하고 있는가?		재정 지원목적 및 정책목적 부합도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노력	
효과성 (10)	해당사업이 당초 설정된 사업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사업목표 달성도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의 연계성	결과
			사업목표 달성도	
			예산 대비 집행실적	
	해당사업의 수행을 통해 국가·산업차원의 경제적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사업운영 성과	세부사업 고유성과	
			산업·국가차원의 경제적 성과	
			사업차원의 경제적 성과	
해당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체계는 합리적인가?	성과분석 체계의 합리성	성과분석지표의 타당성		
		성과분석결과의 객관성·공정성 성과분석 노력의 적절성		
효율성 (10)	주어진 투입자원으로 얼마나 많은 성과물을 창출하였는가?	사업운영 효율성	단위지원금액당 산출	산출· 결과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상업운영 방식 등은 얼마나 개선하였는가?		효율성 지수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	
지속성 (20)	해당사업의 수행을 통해 장기 국가발전 잠재력 축적, 국가정보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	사업운영 파급효과	기술적·경제적·사회문화적 파급효과	파급 효과
			장기 국가발전 잠재력 축적 국가정보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도	
	해당사업의 수행을 통해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를 어느 정도 만족시키고 있는가?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만족도	

〈표 III-18〉 경기도 재정사업평가 자체평가서 내용 충실도 평가지표

단계	평가내용	단계
※ 별도 평가 자체평가서 내용 충실도 (가·감점 +2 ~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서가 충실하게 작성되었는가? • 평가근거자료(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등)는 충실하게 제공되었는가? 	① 매우 우수: 2점(가점) ② 우수: 0점(감점 없음) ③ 보통: -1점 감점 ④ 다소 미흡: -3점 감점 ⑤ 미흡: -5점 감점

〈표 III-19〉 경기도 재정사업평가 주민참여예산위원 평가지표(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투자사업)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평가기반	정보공개 의 적정성 (20)	1-1. 담당부서에서 제공한 사업에 대한 정보의 양이 충분한가?	매우 그렇다(10), 그렇다(8), 보통이다(6),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지 않다(2)
		1-2. 담당부서에서 제공한 사업에 대한 정보의 질이 충실한가?	매우 그렇다(10), 그렇다(8), 보통이다(6),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지 않다(2)
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30)	2-1. 사업의 세부내용이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매우 그렇다(15), 그렇다(12), 보통이다(9),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지 않다(3)
		2-2.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인가?	매우 그렇다(15), 그렇다(12), 보통이다(9),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지 않다(3)
관리	사업관리의 적정성 (20)	3-1. 해당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었는가?	매우 그렇다(10), 그렇다(8), 보통이다(6),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지 않다(2)
		3-2.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부서의 사업관리 수준이 적정한가?	매우 그렇다(10), 그렇다(8), 보통이다(6),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지 않다(2)
성과	성과달성 (30)	4-1. 사업추진에 의해 당초 목적했던 성과 또는 정책효과를 달성하였는가?	매우 그렇다(30), 그렇다(24), 보통이다(18), 그렇지 않다(12), 매우 그렇지 않다(6)

□ 파주시 재정사업평가 사례¹²⁾

○ 파주시 주요재정사업의 평가대상 사업 현황

- 2018년 평가대상 주요재정사업은 188건이며, 전체 예산액은 90,132백만원, 집행액은 80,766백만원임
- 사업수를 기준으로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일억원 이상 ~ 오억원 미만의 사업이 65건으로 가장 많았음
- 예산액을 기준으로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십억원 이상 ~ 오십억원 미만 사업이 31,972백만원으로 35.1%임

○ 파주시 주요재정사업의 평가 기준

- 파주시의 주요재정사업평가기준은 행정안전부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계획, 사업 관리, 사업성과 분야로 나뉜 것을 준용하되, 파주시의 현실에 맞게 각 분야별로 세부심사항목을 조정함¹³⁾
- 파주시는 사업부서의 자체평가를 토대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체평가의 점수가 평가 기준에 반영되어 있음
- 다만, 파주시의 주요재정사업평가가 행정안전부의 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에 의해 평가되는 특징이 있음

12) 2019 파주시 재정사업평가(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참고

13)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적합하게 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표 III-20〉 주요재정사업평가지표 및 배점 비교(파주시)

행정안전부			파주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단계	항목	평가지표
계획 (20)	사업계획의 적정성 (10)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한지?	계획 (35)	사업계획의 적정성(35)	사업목표의 구체성(10)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 중복되지 않는지?			추진방식의 적정성(10)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지?			기대효과의 구체성(7)
	성과계획의 적정성 (10)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는지?			사업계획의 일관성(8점)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관리 (30)	사업관리의 적정성 (30)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했는지?	관리 (30)	사업관리의 적정성(15)	사업진행의 효율성(15)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예산의 집행행위(15)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했는지?			자체점검 실시 여부(5)
성과 (50)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 결과의 환류(50)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했는지?	성과 (35)	성과 (35)	계획된 성과 달성도(15)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했는지?			성과평가 실시 여부(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했는지?			성과평가 객관성(2)
					성과평가 결과 반영 여부(5)
		계속지원의 필요성, 사업부서만(5)			
부서 자체평가 점수(5)					
가점항목			자체평가보고서, 조사표 작성 충실성(3)		
감정항목			외부기관의 지적사항(-3)		

마. 주요 재정사업평가의 한계 및 시사점

□ 제도의 운용상 실효성 부족

- 주요 재정사업평가는 지방재정공시제도 하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며, 법령상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 자치단체의 평가제도 운영 현황이 파악되지 않으며, 시행하더라도 자율평가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

□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계획과 평가 간 연계성 부족

- 사업계획 단계에서 주요재정사업평가 대상사업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명확한 정의가 부재함
 - 성과관리제도 하 성과계획서의 사업은 정책-단위-세부사업으로 구분되며, 정책사업별로 성과목표를, 단위사업별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달성도를 작성하나, 주요재정사업평가에서의 사업은 개별사업을 의미하며, 단위사업이 될 수도 있고,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이 될 수도 있음(이삼주·김성주, 2016)
- 이에 따라 개별사업의 평가단계에서도 실질적인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함
 -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의뢰서 상 사업유형별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사업간 객관적이고 일관된 평가 가능함

□ 평가결과 활용의 한계 및 환류체계 필요

- 부진한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가 사업의 일몰 또는 예산 삭감으로 이어져,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성과부진으로 사업 추진이 더욱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음(이삼주·김성주, 2016)
 - 이에 따라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대한 "존치평가",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성과가 지속적으로 미진했을 때 일몰 또는 예산삭감 적용 방식 등이 제안됨
 - 경기도의 경우, 재정사업평가 결과 일몰이나 감액대상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부서 전체의 예산 실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신규사업으로 대체하는 구조로 작동되므로, 평가결과의 환류 체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됨(이상미 외, 2020)
- 투자심사 통과 사업에 대한 운영단계 사후평가 목적은 당초 사업목적 달성 여부 및 부진할 시 투자심사 통과 취지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컨설팅 기능이 필요함

-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 및 운영수익까지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 컨설팅이 필요함
- 따라서 심층평가 방식으로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제시 및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체계 마련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재정성과관리제도

1) 개요

- 기획재정부의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성과관리를 함으로써 실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전 부처의 모든 재정사업이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대상임
- 재정사업성과관리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4장의2 성과관리에서 규율하고 있음
 - 「국가재정법」 제85조의4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5년 단위로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 한편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에서는 아래와 같은 11개의 사업성과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표 III-21〉 6개 부처의 사업성과평가제도

부처	사업성과평가제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재정사업 심층평가 핵심사업평가 기금평가 보조사업평가 복권기금평가
과학기술부	R&D 사업 평가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평가
균형위	균형발전 평가
행안부	재난안전 평가
중기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평가

- 아래에서는 위의 사업성과평가제도 중 유사 평가제도로써 비교 가능한 재정사업 자율평가, 재정사업 심층평가, 핵심사업평가, 균형발전 평가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이다

2) 재정사업자율평가

- 2005년에 최초 실시된 후, 평가대상 범위, 주기, 상위평가 방식 등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변화가 있었으며 현재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에 기반을 두어 실시 중
 - 2016년부터 그동안 일반재정, R&D, 지역사업 등 각 분야별로 운영되던 각종 재정사업평가를 통합하여 부처단위의 종합적 평가를 실시(통합 재정사업 평가) 하였으나, 2018년부터 부처의 자율성을 제고하면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부처 자체평가로 전환됨
 - (평가대상) 원칙적으로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
 - (평가절차)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자체평가 → 평가결과 회신
 - (평가지표) 사업의 평가지표는 사업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는데 주로 계획(사업방식 적정성 등), 관리(예산 실제 집행률 등), 결과(목표달성률, 성과 우수성 등), 환류(제도 개선 관련 등)의 관점에서 평가지표가 구성되며 가점 및 감점사항이 존재
 - (평가결과 활용) 미흡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또는 제도개선방안 마련
 - (대외공개) 자율평가의 실효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기준·절차 및 평가결과는 원칙적으로 모두 대외 공개
- 평가체계는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사업평가와 유사하며, 다만 부처별로 자체적으로 지표와 배점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함

3) 재정사업심층평가

-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운용성과를 점검하는 사후적인 성과평가제도임
 - 재정사업자율평가가 리뷰 방식에 근거한 부처 자체평가에 기초하고 있어 개별 사업이나 사업군의 심층적인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의

성과를 심층 분석 및 평가하여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2005년 시험평가를 시작으로 2006년 도입됨

- 2006년~2009년 개별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진행하였으며, 2010년부터 정책목적, 대상 등이 유사한 다수의 사업을 사업군으로 묶어 사업군에 대한 평가로 전환됨
- 대상사업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으로 자율평가 결과 추가적 평가 필요 사업, 유사중복 또는 비효율적 사업,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 예상 사업, 기타 사업 추진의 성과 점검이 필요한 사업임
- 2014년 KDI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 총괄기관이 변경되었으며, 평가는 기획재정부, 각부처, 학계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층평가단이 정책효과를 분석함
- 평가결과는 재정전략협의회 보고(필요시) 후 예산편성 시 반영 또는 제도개선 조치 사항으로 권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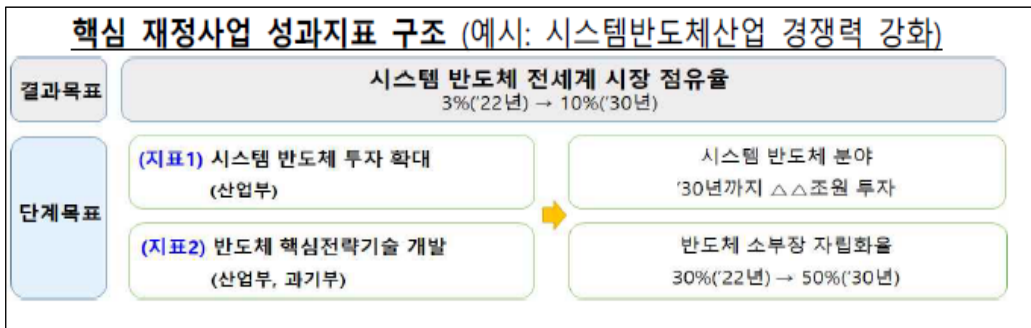
4) 핵심사업평가

- 재정당국과 사업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주요사업(일자리, 성장동력확충, 소득기반확충, 안심국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성과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포용성, 생산성, 민주성에 맞춘 핵심사업평가제도를 2018년에 도입함
- 2022년 핵심사업평가는 탄소중립 이행, 디지털 전환,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사업(군)10개를 대상으로 실시됨
- 기획재정부의 2022년 핵심사업평가 결과 최종 보고회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핵심사업평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을 달성할 수 있었음
 - 수요가 부족하거나 낭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투자 규모 및 방식을 다시 검토하거나, 부처 간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고, 사업 대상에 대한 지원 방법도 개선할 수 있었음
- 「2022년~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핵심사업평가를 대신하여 핵심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
 - 핵심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 하에서는 약 10개의 재정사업에 대하여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당국 중심으로 편성, 집행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기를 관리함

- 관련 부처, 국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서 약 10개의 핵심 재정사업(군)을 선정
- 기획재정부, 관련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군)별 전담 성과관리팀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여 집행 차원에서의 문제점을 빠르게 해결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사업을 재설계하고 재원을 재배분함으로써 재정사업(군)에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함
- 또한 결과목표 및 단계목표를 설정 및 공개함으로써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함

[그림 Ⅲ-20] 결과목표 및 단계목표의 예시



자료: 기획재정부(2022). 2022년~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p.5

4. 균형발전사업 평가제도

-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는 2005년부터 매해 상반기에 실시되고 있는 평가제도로써 균형발전 정책을 평가함으로써 균형발전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21)
-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 13조 및 제14조에 법적 기반을 두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사업 종합평가 추진체계는 지속적으로 변화함(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21)

- 2014년~2015년 무렵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평가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하기 시작함
- 2016년 평가 이후에 상위평가(또는 메타평가)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상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및 미흡부처를 선정한 후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과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을 높임
 - 상위평가: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수행 실적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자체평가가 부적절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별로 재평가를 실시
 - 메타평가: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수행 실적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자체평가의 적절성만이 판정됨
- 한편 2021년 국가균형발전사업 종합성과평가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음

[그림 Ⅲ-21] 20201년 국가균형발전사업 종합평가 추진체계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21). 국가균형발전사업 2021 평가백서

□ 2021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계정의 경우 부처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상위평가를 실시함(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21)

〈표 Ⅲ-22〉 지원계정 자체평가 기준

부문	평가지표	점검항목	배점	
			신규	계속/종료
사업기획	1. 사업기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① 균형발전목표와의 부합성	20	-
		②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내용의 구체성과 적절성	20	-
	2. 환류 및 개선의 적절성	③ 지적사항을 반영한 기획의 적절성	-	20
사업집행	1. 예산 집행의 효율성	④ 예산 집행률과 효율적 예산 집행 노력	10	10
	2. 사업운영의 적절성	⑤ 사업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의 적절성	10	10
		⑥ 모니터링 운영의 적절성	20	10
사업성과	1. 당해 연도 목표 달성도	⑦ 당해 연도 성과목표 달성도	20	25
	2. 균형발전기여 등 사회적 가치 창출	⑧ 균형발전기여 등 사회적 가치 창출	-	25
감점	제출기한 및 기타 평가지침 미 준수 등		-5	-5
* '균형발전 기여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 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하에 사업별 점수를 부여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21). 국가균형발전사업 2021 평가백서

□ 아래는 지원계정에 대한 자체평가 및 상위평가 평가지표임

〈표 Ⅲ-23〉 지원계정 상위평가 기준

부문	평가지표	점검항목	점검 결과
평가과정	1.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적절한가?	①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적절/ 부적절
		②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적절/ 부적절
평가결과	2. 성과지표 및 평가등급 부여가 적절한가?	③ 등급부여의 적절성	적절/ 부적절
	3. 자체평가 결과는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④ 등급배분 기준 준수 여부 및 전략적 왜곡 가능성	적절/ 부적절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21). 국가균형발전사업 2021 평가백서

- 2021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의 경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상위 평가를 실시함(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21)
 - 시·도 자율편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결과를 받아들이되 자체평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의 상위평가를 실시함
 -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실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상위평가를 실시하고 포괄보조사업별 지방자치단체 간 상대평가를 실시함
- 아래는 자율계정에 대한 자체평가 및 상위평가 평가지표임

〈표 Ⅲ-24〉 자율계정(시·도) 자체평가 기준

부문	평가지표	점검항목	배점	
			신규	계속
사업 기획	1. 포괄보조사업의 계획이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합리성	20	5
		② 사업구성 및 자원배분의 적절성	20	5
사업 집행	2. 포괄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	③ 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	20	15
		④ 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	20	15
사업 성과	3. 포괄보조사업 성과가 적절하고, 균형발전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	⑤ 포괄보조사업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도*	20	35
		⑥ 균형발전 기여 등 사회적 가치 창출**	-	25
감점	집행률, 제출기한 및 기타 평가지침 미준수 등		-5	-5
*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성과(이용자수, 매출액 등)가 저조한 사업(지표)은 '성과목표 달성도'에서 달성률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여 평가 추진				
** '균형발전 기여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 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 하에 사업별 점수를 부여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21). 국가균형발전사업 2021 평가백서

〈표 Ⅲ-25〉 자율계정(시·도) 상위평가 기준

부문	평가지표	점검항목	배점
평가과정 (20)	1.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적절한가?	①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10
		②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10
평가결과 (55)	2. 평가등급 부여가 적절한가?	③ 평가등급 부여의 적정성	40
	3. 자체평가 결과는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④ 등급배분 기준 준수 여부 및 전략적 왜곡 가능성	15
평가환류 (25)	4.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계획은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⑤ 지출구조조정의 적정성	10
		⑥ 사업구조조정의 적정성	15
감점	제출기한 및 기타 평가지침 미준수 등		-5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21). 국가균형발전사업 2021 평가백서

〈표 Ⅲ-26〉 자율계정(시·군·구) 상위평가 기준

부문	평가지표	점검항목	배점	
			신규	계속
사업 기획	1. 포괄보조사업의 계획이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합리성	20	5
		② 사업구성 및 자원배분의 적절성	20	5
사업 집행	2. 포괄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	③ 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	20	15
		④ 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	20	15
사업 성과	3. 포괄보조사업 성과가 적절하고, 균형발전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	⑤ 포괄보조사업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도*	20	35
		⑥ 균형발전 기여 등 사회적 가치 창출**	-	25
감점	집행률, 제출기한 및 기타 평가지침 미준수 등		-5	-5

*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성과(이용자수, 매출액 등)가 저조한 사업(지표)은 '성과목표 달성도'에서 달성률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여 평가 추진
 ** '균형발전 기여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 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 하에 사업별 점수를 부여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21). 국가균형발전사업 2021 평가백서

5. 기타 재정성과관리제도

- 지방보조사업
 - 민간 보조사업,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해 사업완료 후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매년 평가하는 제도임
-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실시되는 국고보조금 사업평가임
 - 평가지표는 ①보조사업의 타당성, ② 관리의 적정성, ③ 규모의 적정성으로 구분되며, 국고보조금 규모에 따라 중점을 두는 평가지표를 차별화함
 - 평가결과는 즉시폐지>단계적 폐지>통폐합>사업방식 변경>단계적 감축>정상추진으로 구분됨

〈표 Ⅲ-27〉 유사 평가제도 간 평가대상, 평가방법, 활용방안 비교

구분	재정사업자율평가	지방보조금 평가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평가 대상	예산 및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	지방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
평가 방법	각 부처평가 기재부 확인 평가	자체평가	자체평가(서면평가) 외부평가(대면평가) 외부평가(심층평가)
활용	우수이상 : 예산 증액 미흡이하: 예산 10% 삭감	미흡이하: 예산 삭감또는 지원중단	조건부 존치: 단계적 감축 폐지: 즉시 폐지 및 단계적 폐지

자료 : 이상주·김성주(2016)

6. 공공시설 운영단계 평가제도

- 공공시설 사후평가제도로는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시설 담당 중앙 부처에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우수사례 등을 선정하고 있음
- 공공체육시설
 -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 중 경영 관리, 운영활성화, 시설관리, 안전관리가 우수한 시설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운영을 개선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도모함

〈표 Ⅲ-28〉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공공체육시설 평가지표

부문	평가지표
경영관리 (30)	경영지수(정량10), 시설활용률(정량10), 예산절감(정량10)
운영활성화 (30)	고객이용률(정량5), 프로그램(정량5, 정성5), 체육·문화 행사 유치 및 홍보(정량5), 고객의견 수렴(정량5), 운영인력 전문성(정량5)
시설관리 (25)	시설물 유지관리(정성10), 사회적 약자 배려 시설 관리(정량5, 정성5), 친환경 운영(정성5)
안전관리 (15)	안전강화 개보수 실적 및 안전점검 실적(정량10), 시설물 안전관리 노력도(정성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7). 우수공공체육시설 운영사례집 p.1

- 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운영 효율화 및 이용·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함
 -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및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 대상: 설치·신고된 지 3년 이상 된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표 III-29〉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평가영역		배점	평가지표
시설 및 환경		4	편의시설의 적절성, 안전관리, 응급상황 및 화재예방 안전체계 구축
재정 및 조직운영		30	사업비 비율, 후원금 비율, 회계의 투명성, 사회적가치 실현기업 생산품 구매(미배점), 직원충원율, 직원 근속률, 직원교육활동비 및 내외부교육 참여시간, 직원채용의 공정성, 시설장 및 최고 중간 관리자의 전문성, 직원교육, 직원복지, 직원의 권리 및 인권 보호(배점적용), 사회복지관 직원의 급여(보수)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
프로 그램 및 서비스	사례 관리	14	사례관리 실행체계, 사례관리 인력의 전문성, 사례관리 수행의 전문성, 사례관리 협력 연계
	서비스 제공	25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 프로그램 수행 과정, 프로그램 평가
	조직화 사업	8	지역조직화 실행체계, 지역조직화 수행의 전문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이용자의 권리		6	이용자의 비밀보장, 이용자의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 고충처리, 서비스 정보제공 및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지역사회 관계		8	외부자원 개발, 자원봉사자 관리,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시설운영 전반		5	현장평가 위원 종합평가 (미배점)
총계		100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2020).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사회복지관

□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형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제반시설, 프로그램, 조직·인력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를 평가목적으로 함
- 법적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의2
- 대상: 1년 이상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표 Ⅲ-30〉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법 관련 지표
	항목	배 점	평가지표안	평점 만점	가중 치	배점 안	
1. 운영 및 관리	1.1 기관 운영계획	4	1.1.1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	5	0.4	2	
			1.1.2 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체계성	5	0.4	2	
	1.2 기관 운영체계	7	1.2.1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및 시설장 여부	5	1	5	●
			1.2.2 운영규정의 관리 수준	5	0.4	2	
2. 청소년 이용 및 참여	2.1 청소년 이용	9	2.1.1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 시설이용률	5	1	5	●
			2.1.2 수용정원 대비 청소년 시설 이용율	5	0.8	4	
	2.2 청소년 참여도	6	2.2.1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5	0.6	3	●
			2.2.2 자체 동아리 운영의 활성화 수준	5	0.6	3	
3.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3.1 연간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	8	3.1.1 프로그램 개발의 체계성	5	0.8	4	
			3.1.2 프로그램 평가운영의 적절성	5	0.8	4	
	3.2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12	3.2.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수	5	0.8	4	
			3.2.2 청소년활동 사업비 수준	5	0.8	4	
			3.2.3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의 우수성	5	0.8	4	
4. 인사 및 조직	4.1 직원확보율	8	4.1.1 직원 확보의 수준	5	0.8	4	
			4.1.2 수용정원대비 정규직 청소년지도사 확보율	5	0.8	4	●
	4.2 직원 전문성 및 안전성	12	4.2.1 직원 1인당 직무연수 참여시간	5	0.6	3	
			4.2.2 직원 대상 복지지원 수준	5	0.6	3	
			4.2.3 직원의 성범죄 강력 확인 여부	5	0.6	3	●
4.2.4 법정 의무교육 실시여부	5	0.6	3	●			
5. 시설기준 및 안전	5.1 시설기준 및 안전	19	5.1.1 수련시설 시설기준 준수여부	5	0.6	3	●
			5.1.2 안전관리계획서의 체계성	5	0.8	4	
			5.1.3 이용자안전관리	5	1	5	●
			5.1.4 안전점검 실시 및 보고	5	0.6	3	●
			5.1.5 안전보험 가입	5	0.8	4	●
6. 대외 협력 및 홍보	6.1 대외협력 및 홍보	5	6.1.1. 대외협력 및 연계정도	5	0.6	3	
			6.1.2 홍보활동의 노력 수준	5	0.4	4	
7. 종합평가	7.1 종합평가	10	7.1.1 평가준비도	5	0.6	3	
			7.1.2 전반적인 발전노력 수준	5	1.4	7	
합계						100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2019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설명회 자료집 p.6~7

□ 공공도서관

-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객관적 진단 및 분석을 통하여 운영 우수도서관을 발굴하고 포상하여 도서관서비스의 혁신 유도를 목적으로 함
- 법적근거: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4호(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 대상: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표 III-31〉 2019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지표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지표	배점	정량	정성
도서관 경영	계획·정책 연계	지역사회 이용자의 만족도 파악 및 정책 반영	150	50	100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 연계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50	50	-
	교류·협력	타 관공 도서관과의 협력	30	30	-
		지역사회 유대 활동 실적	30	30	-
	-	도서관경영 영역 혁신 사례 및 우수성(정성평가)	[선택형]	-	-
인적 자원	인적 자원	최고 관리자의 전문성 및 경력	50	50	-
		사서직원수(전년대비 사서수 증가율 포함)	40	40	-
		전문성 증진을 위한 직원 교육훈련	55	55	-
		인적자원 영역 혁신 사례 및 우수성(정성평가)	[선택형]	-	-
시설 환경	시설	자료실 면적(자료 공간, 이용자 공간) 비율	30	30	-
		시설환경 영역 개선 사례 및 우수성(정성평가)	[선택형]	-	-
정보 자원	장서	자료구입비(전년대비 자료구입비 증가율 포함)	50	50	-
		연간 장서 증가수(전년대비 구입도서 증가율 포함)	50	50	-
		장서개발정책 수립 및 실행 실적	65	65	-
	정보 자원 협력	정보자원 협력서비스	55	55	-
정보자원 영역 혁신 사례 및 우수성(정성평가)		[선택형]	-	-	
도서관 서비스	정보 서비스	도서대출권수(전년대비 도서 대출권수 증가율 포함)	50	50	-
		다양한 정보서비스 실시 여부 및 실적	35	35	-
		도서관 스마트서비스	30	30	-
	독서·문화/정보 격차 해소	독서·문화프로그램 수행 실적	60	60	-
		독서동아리 운영 및 활성화 실적	30	30	-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정보격차해소 활동 및 프로그램 실적	40	40	-
		도서관서비스 영역 혁신 사례 및 우수성	100	-	100
합계					100

자료: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보고서 p.20

□ 국립박물관, 공립미술관

- 공립 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12조의2(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따라 지방자치단체장미리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함
- 또한 설립 이후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6조(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에 따라 국립박물관·공립미술관 평가인증제도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국립박물관·공립미술관 평가인증제도는 국립박물관과 공립미술관의 질 향상 및 운영활성화 위해 실시함
- 대상: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국립박물관(36개관) 및 공립미술관 55개관(2019년 기준)
- 주요 내용
 - 설립 목적의 달성도
 -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실적
 -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평가 결과 활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평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

〈표 III-32〉 2020년 국립박물관 평가인증 지표체계

범주/배점	지표	세부지표	소계	정량	정성
설립 목적의 달성도 (15)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노력	운영계획의 적정성	9	1	4
		운영관리 적정성		2	2
	기관장 리더십	관장 리더십	6	1	2
		관장 전문성		1	1
		내부구성원의 기관 이해도 강화노력		0	1
조직, 인력, 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25)	조직 및 인력 관리	조직구성 적정성	8	2	2
		조직구성원 역량강화		2	2
	시설 관리	시설구성 적정성	9	1	2
		관리 전문성		2	2
		이용자 편리성		0	2
	재정 관리	예산규모 및 배정의 적정성	8	5	3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20)	자료 수집	소장품 확보 노력	5	2	3
	자료 관리	소장품 관리 적정성	7	1	2
		소장품 보존		2	2
	자료 활용	연구 및 성과 공유(연구자, 학계)	8	2	1
접근성 확장(일반인)		3		2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실적 (30)	전시	상설전시 운영	12	4	2
		특별전시 운영		4	2
	교육	교육 기획	12	2	2
		교육 운영 전문성		3	2
		문화향유 기회 확대(취약계층)		2	1
	관람객 정책	홍보마케팅	6	2	1
관람객 관리		2		1	
공적책임 (10)	법적, 정책적 책임 준수	법적 책임 준수	3	1	1
		정책 이행 노력		0	1
	상생협력	네트워크 활성화(국내외 유관기관)	7	1	2
		지역사회 협력		1	1
		자원봉사 운영		1	1
합 계			100	50	5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0.7.6.). 「평가 인증 통해 박물관과 미술관의 질을 높인다」

〈표 Ⅲ-33〉 2020년 공립미술관 평가인증 지표체계

범주	지표	세부지표	소계	정량	정성
설립 목적의 달성도 (15)	미션에 부합하는 운영 노력도	운영계획의 적정성	8	-	3
		운영관리 적정성		3	2
	리더십	관장 리더십 확보	5	-	2.5
		관장 전문성		2	0.5
	운영계획 이해도	지자체, 유관기관의 이해도 강화노력	2	-	1
		내부구성원의 기관 이해도 강화노력		-	1
조직, 인력, 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25)	조직 및 인력 관리	조직구성 적정성	5	-	2
		전문인력 고용 및 인적 자원 역량강화 노력		-	3
	시설 관리	수장고 시설관리 적정성	6	3	1
		전시공간 관리 적정성		-	1
		이용자 시설관리 적정성		-	1
	재정 관리	재원분배 적정성	14	7	1
		재원 지속성 및 조성 노력		6	-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20)	소장품 수집	소장품 수집 전문성 및 적극도	6	4	2
	소장품 관리	소장품 보존 적정성	11	3.5	2
		소장품 정보관리 적정성		5	0.5
	연구 및 아카이빙	연구 및 아카이빙의 적극성 및 전문성	3	2	1
전시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적 (30)	전시	전시 기획의 전문성	12	-	2
		전시 구현의 전문성		6	2
		전시이해 증진 노력		-	2
	교육	교육 기획의 전문성	12	-	2
		교육 운영의 전문성		7	1
		교육대상 다양화 노력		-	2
	관람객 개발	홍보마케팅	6	2.5	0.5
관람객 관리		2		1	
공적책임 (10)	법적, 정책적 책임 준수	박미법 준수여부	4.5	-	1
		관련 법령 준수 정도		1.5	1
		주요정책 이행실적		-	1
	상생협력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5.5	2	-
		지역사회 활동 적극도		2	-
		자원봉사 진흥		1.5	-
합 계			100	60	4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0.7.6.). 「평가 인증 통해 박물관과 미술관의 질을 높인다」

제4절 선행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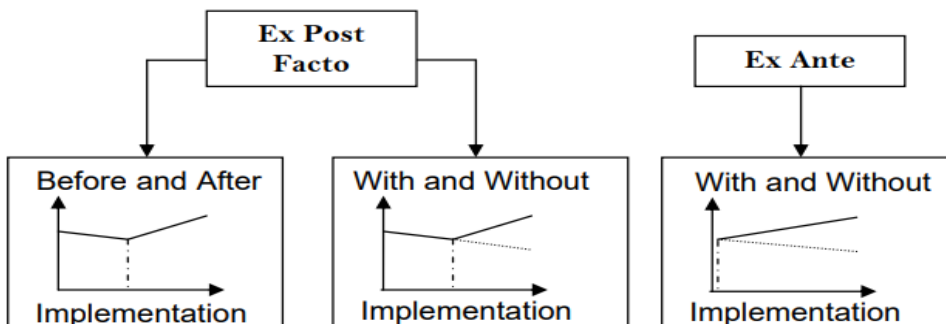
- 본 절에서는 국내 선행연구 중 공공사업의 사후평가제도 도입 또는 평가 방법과 관련하여 논의한 연구 결과를 살펴봄
- 첫째, 기존 사후평가제도와 관련하여 제도 관련 개선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대상인 투자심사 사후관리와의 연계성을 검토하고자 함
- 둘째, 본 연구 대상인 문화 및 체육시설관 평가지표와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고 투자사업 사후관리 측면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함

1. 제도 관련 선행연구

- 국내 공공사업의 사후평가와 관련한 제도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사후평가제도가 투자사업 단위 사후평가제도이며, 재정사업평가제도(지방재정, 국가재정) 등은 사업평가보다는 성과관리제도로써 운용되고 있음
- 다만 평가의 목적과 방법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투자심사 이후 사업에 대한 평가는 대상 측면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사후평가, 이력관리, 재정사업평가가 일부 중복되는 면이 존재함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사후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는 다수가 진행됨
- 옥현·김진옥(2015)는 사후평가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 방안에 대해 논하였으며, 이두헌·박희성(2016)은 전문기관 설치 필요성 연구를 진행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평가 관련 제도개선연구로는 제도 도입 초기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한 이삼주·김성주(2016)가 있으며, 최근에는 경기도 재정사업평가를 고유업무로 하는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이상미 외, 2020)에서 제도 시행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점검 및 개선방안을 모색한 연구를 실시함
- 이외에도 경기연구원에서 수행한 다수의 연구에서 투자심사 사후관리제도로써 재정사업평가와 연계 필요성을 제시함(이상미 외, 2021; 한명주 외, 2019)
- 상기 연구에서는 재정사업평가 대상이 되는 다수의 투자사업이 투자심사 시 의뢰된 사업계획과 무관하게 평가가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제기함

- 따라서 투자심사 의뢰시 최초 제안되었던 사업의 내용과 추후 운영되고 있는 사업 내용의 비교 검토를 통해 체계적 사후관리 필요성을 제시함(한명주 외, 2019)
- 공공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사후평가까지 통합관리 측면에서 김재형 외(2000, 2002)에서는 다양한 사례조사와 사후평가제도 도입방안, 평가방법론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짐
- 최근에는 정성윤·김지표(2018)가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하여 사업 완료 이후의 성과 및 유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도입방안을 제안함
- 정성윤·김지표(2018)에서는 사후관리 시스템 부재로 인해 투자사업의 관리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사업 완료 이후의 성과 및 유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특히 사후평가 결과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의 적절성 및 타당성에 대한 사후평가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추후 유사 사업에 대한 대안 선택과정에서 유사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사후평가 결과 간의 연계성을 조희 및 검토를 가능하게 하므로 더욱 실효성 있는 사업의 선정 또는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제시함
- 사전평가(Ex Ante)의 경우 예측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의 집행 혹은 미집행 시 결과에 대한 비교이나, 사후 평가(Ex Post)의 경우 사업 집행 이후 실시하며 시계열 데이터, 시뮬레이션 분석 등 다각도의 평가방법론을 활용하여 사업 시행 및 미시행 간의 결과 비교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 전·후의 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을 포함함

[그림 Ⅲ-22] 사전 및 사후평가



자료: 정성윤·김지표(2018) p. 234, 그림 10 재인용

[그림 III-23] 사후평가시스템



자료: 정성운·김지표(2018) p. 233, 그림 7 재인용

- 한편 국가사업 성과관리제도로는 재정사업자율평가 등이 있으며, 최근 한국재정정보원(박정수, 2020)에서 관련 DB를 관리하는 시스템인 dBrain을 활용한 성과관리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연구함
- 「국가재정법」상 운용되는 재정성과관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한국재정정보원에서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하 dBrain)내에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임
- 그러나 박정수(2020)에서는 현행 성과관리시스템이 구축 후 DB 확장이 미진하고 일부 성과정보는 수기로 작성되는 데다, 재정사업별로 별도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비표준화된 개별 보고서를 전자도서관식으로 저장·제공하는데 그쳐 성과정보 활용이 부진한 것으로 지적함
- 또한 각 재정성과관리제도를 전산으로 지원하는 성과관리시스템을 해당 주무부처들이 독립적으로 구축하여 dBrain과 별개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dBrain이 총괄시스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함
- 이외에도 재정성과정보를 각 부처 업무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검색, 통계 추출 등의 분석 기능을 구현해 제공하고, 재정성과정보의 품질 유지에 필요한 규정, 전담조직 등 지원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 다음 표는 박정수(2020)에서 dbrain기반 재정성과관리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주요 사항임

[그림 Ⅲ-24] dBrain 재정성과정보 관리 개선방안

문제점	⇒	개선방안
dBrain관리정보 부족 단위사업 중심 지표구성 사업정보 없거나 부정확 시스템 별 성과정보 분산 저장	⇒	dBrain재정정보 관리대상 확대 세부사업 성과정보 관리 세부·내역사업 정보 관리 외부시스템 연계 강화
정부의 성과정보 활용 부족 dB에의 제한적 접근 부처의 성과정보 활용 체계 미비 편성 등에 있어 성과정보 활용 부진	⇒	정부의 성과정보 활용 증진 방안 마련 통계분석시스템 등에 접근창구 마련 - 국장급 실무회의 설치 등 점검체계 마련 (가칭)성과관리위원회 구성, 활용을 위한 각 부처 책임자 지정
성과정보 거버넌스 부재 정보관리 규정 없음 부처내 책임소재 불분명 외부 전담조직 없음	⇒	관리·활용 절차 등의 거버넌스 확립 제규정 정비 정보관리 책임자 지정 전담조직 지정 또는 신설
재정성과정보 공개 부족 보고서 위주의 공개 편의성, 사용자에게 대한 배려 부족 ·계획서만 연 1회 공개. 메타정보 없음	⇒	재정성과정보 공개 확대 일부항목 DB화 공개 시각화 제공 사업별, 지표별 검색기능 제공 재정사업 성과관리 메타정보 제공

자료: 박정수(2020), 요약 p.5 그림 재인용

2. 평가지표 관련 선행연구

- 공공사업의 사후평가지표와 관련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사후평가제도의 기존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본 고에서는 문화 및 체육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관련 시설에 대한 사후평가지표를 검토한 다음 두 개의 연구를 살펴보고자 함
- 송도흠(2015)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행되는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건축사업의 시설유형별 사후평가항목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함

- 공공건축의 공익성과 공용성을 갖는 공공건축물의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주택시설, 교육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로 정하고 각 사업별 건설사업 사후평가항목을 도출하기 위하여 사업효율분야, 사업수행성과분야, 파급효과분야로 분류하여 건설사업 사후평가항목들을 선정함
- 예비타당성조사항목은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건설사업 사후평가 예비항목 간 상관성을 분석함
- 연구결과, 예비타당성조사, 건설시공평가, 파급효과 관련 선행연구의 인용항목을 분석하여 사업효율분야, 사업수행성과분야, 파급효과 분야 총 3개 분야에서 총 74개 사후평가 예비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이후 사후평가 예비항목과 예비타당성조사 항목(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간에 상관성을 검증하여 최종적으로 사후평가 항목 51개를 구체화 및 세분화 함
 - 또한 관련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건축사업 유형별 사후평가항목 중점요소 가중치를 분석하였으며, 중점관리항목도 선정함
- 특히 공공건축사업 유형 중 문화시설 사후평가 중점관리 항목은 총 51개 항목 중 14개 항목이 선정되었음
 - 문화시설의 상업적 측면에서의 수요예측이 명확하기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평가와 실사용자의 문화적 공간으로의 만족도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내는 결과로써 계획수요와 실제수요의 증감율에 대한 원인 규명과 다양한 편의 평가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시설의 공간에 대한 만족도와 에너지 효율 정도, 그리고 편의시설의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제시됨
- 체육시설 사후평가 중점관리 항목은 19개 항목으로, 체육시설의 경우 대형사업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이나 지역사회 특성조사 여부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남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사후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요예측에 대한 증감원인 규명을 비롯하여 정책과의 일관성 여부, 운영프로그램의 평가, 동종시설 현황의 검토 여부, 자연환경 및 교통환경 분석여부 등의 면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편의시설의 만족도나 실내환경의 만족도, 에너지효율증가 방안 등에 대한 중점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III-34〉 분야에 따른 사후평가항목과 문화체육시설의 중점관리 항목

분야	사후평가항목	문화	체육	사후평가항목	문화	체육
사업 효율	교류협력계획의 적합성	E	E	민감도 분석 적중률	B	B
	수요예측 적중률	A	A	경제적 타당성평가 적중률	A	A
	지리적 특성조사	E	B	지역사회 연계·발전계획검토	E	C
	동종시설현황조사	E	B	중장기 정책 부합여부	E	D
	지역사회특성조사	E	B	정책의 일관성 조사유무	E	B
	주민숙원도 및 수해도 조사	E	C	시설운영의 특성반영계획의 적합성	E	C
	서비스 편익 적중률	E	E	운영목표와의 부합성	E	B
	사회적 편익 적중률	E	E	운영비조달계획 적합성	D	D
	건축비의 조달계획 적합성	E	E	운영조직체계 계획의 적합성	D	D
	비용편익 적중률	A	A			
사업 수행 성과	공정관리계획의 적합성	D	D	상호협력체계의 적합성	E	E
	시공계획의 적합성	D	D	공사인력계획의 적합성	D	D
	재시공 여부	D	D	사업비 증감 비율	D	D
	하도급관리계획의 적합성	E	E	대안비용분석의 적합성	E	E
	안전관리계획의 적합성	D	D	설계변경 사업비계수	D	D
	현장발생폐기물 처리의 적합성	E	E	품질관리계획의 적합성	C	C
	가설시설계획의 적합성	E	E	공법개선제안의 적합성	D	D
	공사기간계획의 적합성	E	E	생산성향상제안의 적합성	D	D
	분쟁해결방법의 적합성	E	E			
파급 효과	내부공간설계와 시공상태평가	A	A	편의시설의 만족도	A	A
	디자인과 공간구성 평가	B	B	운영프로그램의 만족도	A	A
	건강/안전장치의 적합성	B	B	실내환경의 만족도	B	B
	하자보수처리의 적합성	D	D	민원율	C	C
	에너지효율정도 평가	A	A	공공시설과의 접근성	B	B
	지속가능성의 만족도	D	D	지역사회연계활동의 적합성	C	C
	내 외부 녹지공간의 만족도	A	A	지역경제의 성장률	E	E
	친환경설계요소의 만족도	B	B			

- 김홍규(2020)은 생활SOC 정책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SOC 운영평가기준을 개발하고 그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국민주권’과 ‘정의’, ‘불평등 해소’, ‘개인의 참여와 자율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효율과 형평의 가치 조화를 위한 운영평가 지표를 제안함
 - 연구대상은 생활SOC의 유형 중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국민생활체육센터를 대상적 범위로 하여 평가기준의 개발에 필요한 평가대상의 개념규정 및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설정, 평가항목 설정(델파이 분석), 평가항목별 가중치 설정(AHP) 등을 수행함
 - 본 연구에서는 문화·체육분야 생활SOC 운영가의 평가영역으로 국정철학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접근성’과 ‘참여성’을 기본 평가지표로 도출하고, 보완 평가지표로 ‘다양성’과 ‘공공성’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효과성과 지속성을 실현하는 개념체계를 구성함
 - 기존 운영평가에서는 서비스 공급자의 투입(input)과 이용자수, 만족도 등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인데 비해, 김홍규(2020)에서 제시한 운영평가들은 **접근성 개념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고려함**
 - 각 평가영역 및 세부평가지표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사용하여 지표간 중요도를 도출한 결과, **접근성>참여성>지속성>공공성>효과성(혁신성)>다양성(평등성) 순으로 우선순위가 도출됨**
 - 마지막으로 김홍규(2020)에서는 상기 제시된 생활SOC 운영평가를 해당 시설과 지자체의 자체진단평가와 중앙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의 사업간 비교평가 단계의 순서로 진행할 것을 제안함
 - 특히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함
 - 첫째, 자체평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통령령인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의 일부를 수정하여 자체평가의 결과를 지역문화시책에 반영 또는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승인을 통해 개별 시설에 대한 예산 확보의 안정성을 증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둘째,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의 우수사례 선정기준으로 작동하여 지자체 합동평가결과인 특별교부세(인센티브)와 연동되는 방안임

〈표 III-35〉 평가영역 및 세부 평가지표와 중요도

평가 영역	세부평가지표	비고	순위
접근성	사업의 접근성	물리적 거리와 도달시간 관점의 접근성	1
	시설의 접근성(시간적, 비용적, 심리적 접근성)	비물리적 접근성 중 금전적 및 시간적 지불가능성과 상호수용성	
	이용 편리성	문화서비스의 소비에 있어 인터페이스 영역의 고객친화성	
	프로그램의 다양성	이용자의 기호와 역량을 고려한 다양한 장르·단계별 프로그램 제공	
	문화향유 기회 확대	주민 관점의 문화향유의 양적(제공빈도, 시간) 증대	
다양성 (평등성)	문화향유의 평등성	소수자 및 약자에 대한 문화향유의 차별 방지	6
	문화적 수용성	사회통합을 위한 주민의 관념적 수준	
참여성	주민의 참여 수준	주민참여에 대한 장애요인의 제거수준	2
	시설운영의 개방성 및 공정성	참여자의 수와 그들의 노력에 대한 종합적 평가	
공공성	서비스의 공공성	운영주체내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이념적 지향, 미션의 보유와 의무성 보유	4
	운영 주체의 공공성	사적 이해관계의 배제와 공익적 목표 달성	
	지역사회의 정체성 및 인지도	이용자가 소비하는 서비스의 결과물에 대한 공공성과 공익지향	
	인력 구성과 활용의 공익성	정체성과 인지도는 공공성의 실현에 따른 결과	
효과성 (혁신성)	사회·경제적 영향성	운영결과의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원 제공	5
	성장 및 확산의 기반 확보 여부	사회의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서비스의 적합성과 구조적 문제의 개선 정도	
지속성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시설이 정해진 용도로 사용되어지는지에 대한 평가	3
	운영의 일관성 및 영속성	재정의 연도별 편차의 수준과 집행에 있어 절약, 가성비의 수준	

제5절 시사점

- 국내외 유사제도의 특징과 한계는 다음과 같음
 - 국외 사례 중 일본 정책평가제도는 사업추진단계별로 사전평가-재평가-사후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의 실제 효과에 대한 검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특징임
 - 또한 궁극적으로 향후 동일 유형의 사업을 추진할 때 계획단계, 심의 및 평가 단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제시됨
 - 따라서 이력관리 자료 및 평가의 결과가 환류되어 사업준비단계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함
 - 그러나 일본에서도 모든 성(省)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까지 동참하여 사후평가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되 선두주자가 이끌어주고 평가와 관련한 자료 수집 및 보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우리나라의 「지방재정법」에 따른 주요재정사업평가,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등은 투자심사 통과 이후 시설의 운영활성화 측면에서 컨설팅 등의 역할이 부족함
 - 「지방재정법」에 따른 주요재정사업평가는 자율평가제도로 모든 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평가의 주요 목적이 차년도 예산 존치 및 삭감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음
 - 또한 외부평가로 시행되는 자치단체도 있으나 외부평가를 시행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자치단체는 자체평가로 시행하기도 함
 - 따라서 일부 연구(이상미 외. 2021; 한명주 외. 2019)에서 투자심사 사후관리 제도로서 주요재정사업평가와의 연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단계에서 연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사후평가제도도 “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99.3)”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나, 미시행 시 별도의 패널티가 없어, 사후평가를 수행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음

- 사업부처가 시행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용역기관을 선정하여 평가하여, 용역사에서는 발주처 요구에 맞는 사후평가 결과가 도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 발주청에서 사후평가 용역 종료 후 보고서를 입력하기 때문에 잘못된 사후평가 결과 및 CLAS 시스템 입력시 DATA 오류 결과에 대한 개선요청 등 DB검토의 어려움이 있음
 - 사업수행성과 평가는 준공 후 60일 이내 이뤄져야 하지만, 5년 후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시 사업수행성과 평가를 함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료의 망실, 순환보직, 관리부서의 상이(사업수행성과는 발주부서,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는 본청) 등의 문제가 발생함
- 공공시설별로 일부 시설(예: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공공체육시설 등)은 소관부처에서 우수시설 선정사업 등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연속적이지 않고, 투자사업 결정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지 않음
- 제도 개선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투자심사 이후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첫째, 제도의 목적과 대상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주요재정사업평가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사후평가제도에서도 사전 계획단계와 비교한 사후평가가 투자사업의 성과관리 및 환류를 통한 사업선정 판단기준 개선과 연계하여 중요한 개선사항으로 제시됨
 - 또한 지방재정사업의 경우, 유사제도간 연계하여 사전계획에 대한 정보가 타법에 따른 사후평가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됨
 - 국가사업에 대한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는 dBrain시스템에서 각종 정보를 DB화할 수 있으며, 향후 해당 자료가 사후평가를 위해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정보의 정확성 문제뿐만 아니라 제대로 DB화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제시됨
 - 투자사업의 사후관리도 장기적으로는 시스템에 기반한 DB관리가 전제되어야 하며, 현재 차세대 e-호조와 연계하여 DB 구축 및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제도개선과 함께 논의되어야 함

-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운영단계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투자심사 사후관리체계에서 운영단계 성과까지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는 기존 재정사업평가 관련 지표뿐 아니라 공공시설 유형별 평가지표를 참고할 수 있음
 - 본 지침연구의 대상인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운영단계를 평가하기 위해 유의미한 지표로 송도흙(2015)에 따르면 주로 수요예측과 경제적 타당성, 접근성과 이용자 만족도, 유사시설 현황 등이며, 김홍규(2020)와 기존 다양한 문화체육시설 관련 우수사례 선정 평가표 등에서는 정성적인 평가영역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투자심사 사후관리체계에서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업목적 및 계획 대비 성과 달성정도, 유사사례 대비 비교검토 등을 목적으로 하므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계량화할 수 있는 지표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사후관리체계는 무엇보다도 투자심사를 기준으로 평가체계를 모색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투자심사로의 환류체계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따라서 1차적으로 본 사후관리체계를 통해 자치단체에서 투자심사 이후 운영하는 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후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각 시설별로 운영평가 및 컨설팅 제도와 연계하여 시설 운영 관련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지방재정투자사업 사후관리방안 개선연구 : 문화체육시설을 중심으로

IV

투자사업 이력관리 인식조사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조사 결과

제3절 소결

IV

투자사업 이력관리 인식조사

제1절 조사 개요

- 본 연구에서는 투자사업 이력관리 전반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수행하여 향후 투자사업 이력관리의 개선방향을 설정하고자 함
 - 특히 현행 이력관리제도 하에 축적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 공개 여부 및 공개범위, 공개 방식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또한 현재 매년 선정하고 있는 중점관리사업에 대한 선정 필요성, 선정 기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함
 - 추가적으로 향후 운영단계까지 이력관리제도를 확대할 경우, 도입 찬성 여부, 제도 운용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함
- 투자사업 이력관리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여규동 외, 2019)에서도 공무원 대상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당시 조사내용은 이력관리제도의 필요성과 이력관리 대상 확대에 대해 의견을 조사함
 - 대상은 2019년 지방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관련 공무원교육에 참석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함
 - 투자심사 이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비율은 42.5%이며, 이 중 별도의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비율은 33.9%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관리 시스템으로 이력관리제도가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줌
 - 투자사업 이력관리가 사업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52.9%,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13.0%에 불과하여 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조사됨
 - 이력관리 대상을 현행 유지 또는 중앙투자심사만 해야 한다는 의견이 70%를 차지

하였으며, 자체심사나 시도 의뢰심사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은 27.7%로 나타남

- 금번 조사대상은 2022년 이력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 또는 취합·관리해야 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업담당자 또는 예산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함
 - 따라서 이력관리와 관련하여 유경험자이거나 올해 이력관리를 하면서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데 의의가 있음
 - 2022년 이력관리 대상사업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 총 1,666건임
 - 따라서 1,666건의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담당자(일부사업은 담당자 중복)에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의 공문 협조를 받아 설문 응답을 요청함
- 조사기간 및 방법
 - 조사기간 : 2022년 8~9월
 - 조사방법 : 웹설문

제2절 조사 결과

□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 설문응답자는 권역별로 경기·인천권이 27%, 충청권이 17%, 호남권이 14%, 영남권이 27%, 강원·제주권이 10%. 무응답이 5%로 조사됨
- 근무지가 광역자치단체인 경우가 27%, 기초자치단체인 경우가 69%로 조사됨
- 근무년수별로 보면 5년 미만이 15%, 5년~10년 미만이 25%, 10년~15년 미만이 21%, 15년~20년 미만이 30%, 20년 이상이 9%로 조사됨
- 직급별로 보면 6급 이상이 30%, 7급이 53%, 8급이 13%, 9급 이하가 3%로 조사됨

〈표 IV-1〉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표

(단위: 명, %)

응답자 특성		응답자수	비중
전체		302	100
성	남성	212	70.2
	여성	90	29.8
연령	20대 이하	10	3.3
	30대	87	28.8
	40대	178	58.9
	50대 이상	27	8.9
권역	경기.인천권	81	26.8
	충청권	52	17.2
	호남권	43	14.2
	영남권	82	27.2
	강원.제주권	30	9.9
	무응답	14	4.6
근무년수	5년 미만	46	15.2
	5년~10년 미만	75	24.8
	10년~15년 미만	63	20.9
	15년~20년 미만	91	30.1
	20년 이상	27	8.9

응답자 특성		응답자수	비중	
사업부서 경험	사업부서	301	99.7	
	예산부서	110	36.4	
	사업+예산부서	109	36.1	
직급	6급 이상	92	30.5	
	7급	161	53.3	
	8급	39	12.9	
	9급 이하	10	3.3	
근무지역(광역시도)	경기도	77	25.5	
	인천광역시	4	1.3	
	강원도	24	7.9	
	충청남도	23	7.6	
	대전광역시	10	3.3	
	충청북도	19	6.3	
	부산광역시	8	2.6	
	울산광역시	9	3.0	
	대구광역시	16	5.3	
	경상북도	18	6.0	
	경상남도	31	10.3	
	전라남도	22	7.3	
	광주광역시	5	1.7	
	전라북도	16	5.3	
	제주특별자치도	6	2.0	
	무응답	14	4.6	
	근무지역(광역시/기초)	광역시	80	26.5
		기초	208	68.9
무응답		14	4.6	
A1. 심사 의뢰 경험	있음	191	63.2	
	없음	111	36.8	
A2. 투자사업 정보 입력 경험	있음	214	70.9	
	없음	88	29.1	
A3. 투자심사 업무 관리 경험	있음	107	35.4	
	없음	195	64.6	

주: 1) 사업부서 경험 : 중복 응답값

2) 권역: 경기. 인천권(경기, 인천),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세종), 호남권(전북, 전남, 광주), 영남권(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 강원. 제주권(강원, 제주)

- 사업부서에서 투자심사 대상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부서에 심사의뢰 경험
 - 투자심사 대상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부서에 심사를 의뢰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63.2%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36.8%는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사업부서에서 이력관리정보 입력 경험
 - 최근 5년(2017~2021년)동안 사업부서에서 이력관리를 위해 투자사업 정보를 입력한 경험 있는 응답자의 비중이 70.9%, 없는 응답자 비중이 29.1%로 조사됨
- 예산부서에서 투자심사 업무 관리 경험
 - 최근 5년 동안(2017~2021년) 예산부서에서 투자심사 업무를 관리(사업부서 투자심사사업 신청접수, 상위기관 의뢰 등) 경험 조사결과, 응답자의 35.4%가 경험이 있으며, 64.61%가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이력관리 정보공개 관련 의견
 - 이력관리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면,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공개대상에 따라 공개범위를 다르게 보기 문항을 제시함
 - 공개대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사업추진부서 및 예산부서 모두 투자사업 정보 전부(개별 사업별 세부정보)와 중점관리사업 관련 내용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는 답변이 29.5%~34.8%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공개범위도 투자사업 정보 전부로 제시됨
 - 반면 공개대상이 광역시도일 경우 중점사업에 대한 정보는 제외하고 개별사업 정보(전부)에 대한 공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각 공개범위별로 응답비중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음
 - 공개대상이 행정안전부와 일반시민일 경우에는 공개범위별 응답비중이 동일하였으며, 전부 또는 일부(각 항목별 평균값)를 공개하되, 중점관리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남

〈표 IV-2〉 이력관리정보 공개대상 및 공개범위

(단위: %)

공개대상	공개범위					
	전부+ 중점 사업	일부+ 중점 사업	전부	일부	중점 사업	공개 불가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 추진부서)	34.8	13.9	24.8	13.6	9.6	3.3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부서)	29.5	16.2	25.2	15.6	9.6	4
3) 광역시도 (시군구일 경우 해당 시도)	20.2	19.5	22.8	20.2	13.6	3.6
4) 행정안전부	18.9	16.6	21.2	23.2	15.2	5
5) 일반시민	18.9	16.6	21.2	23.2	15.2	5

□ 이력관리 정보공개 사유

- 이력관리 정보공개 사유로 제시된 보기 중 “사업담당자 변경 시, 사업 내용 및 추진 경과를 용이하게 파악함으로써 원활한 업무 연계가 가능”하다는 답변에는 81.5%가 동의함
- “사업 추진 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에 위험 또는 장애요인 인지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에는 73.2%가 동의함
- “신규 사업 계획수립 시, 타 지자체 포함 기존 유사사례 정보 검토를 통한 사업 중복성 배제(또는, 차별성 강화)가 가능하다”에는 78.8%가 동의함
- “사업추진 과정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찬성한다”에는 78.5%가 차지함

〈표 IV-3〉 이력관리 정보공개 사유

(단위: %)

구분	동의 (매우동의, 동의)	비동의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잘 모름
1) 사업담당자 변경 시, 사업 내용 및 추진 경과를 용이하게 파악함으로써 원활한 업무 연계가 가능하다	81.5	14.9	3.6
2) 사업 추진 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에 위험 또는 장애요인 인지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	73.2	20.5	6.3
3) 신규 사업 계획수립 시, 타 지자체 포함 기존 유사사례 정보 검토를 통한 사업 중복성 배제(또는, 차별성 강화)가 가능하다	78.8	17.9	3.3
4) 사업추진 과정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찬성한다	78.5	16.6	5.0

□ 이력관리 정보 비공개 사유

- 이력관리 정보 비공개 사유로는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지적이 염려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58.3%를 차지함
- 주민 또는 의회에 정치적 논란소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비공개를 찬성하는 의견은 81.1%, 상급기관 투자심사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하기 때문에 비공개 찬성 의견은 57.3%임
-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불이익이 우려되기 때문에 비공개를 지지하는 의견은 57.0%로 다른 비공개 사유 대비 낮은 비중을 차지함

〈표 IV-4〉 이력관리 정보비공개 사유

(단위: %)

구분	동의 (매우동의, 동의)	비동의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잘 모름
1)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지적이 염려된다	58.3	33.8	7.9
2) 주민 또는 의회에 정치적 논란소지를 제공할 수 있다	81.1	14.6	4.3
3) 상급기관 투자심사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	57.3	36.4	6.3
4)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불이익이 우려된다	57.0	34.4	8.6

□ 투자사업 이력관리 결과 공개 찬반의견

- 종합적으로 투자사업 이력관리 결과 공개 찬반에 대한 조사결과, 찬성 53.3%, 반대 46.7%로 조사됨
- 심사의뢰 경험이 있거나, 투자심사 업무관리 경험이 있는 경우 경험이 없는 경우 보다 조금 더 찬성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며, 투자사업 정보 입력 경험이 있는 경우 반대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5〉 투자사업 이력관리 결과 공개 찬반의견

(단위: 건, %)

구분	사례수	비율		
		찬성한다	반대한다	
전체	302	53.3	46.7	
사업부서 경험	사업부서	301	53.5	46.5
	예산부서	110	53.6	46.4
	사업+예산부서	109	54.1	45.9
A1. 심사 의뢰 경험	있음	191	55.0	45.0
	없음	111	50.5	49.5
A2. 투자사업 정보 입력 경험	있음	214	52.8	47.2
	없음	88	54.5	45.5
A3. 투자심사 업무 관리 경험	있음	107	54.2	45.8
	없음	195	52.8	47.2

□ 중점관리사업 선정 필요성

- 중점관리사업 선정이 필요하다는 데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에 대한 조사한 결과, 동의(매우 동의 및 동의)가 60.3%, 비동의(동의하지 않음 및 전혀 동의하지 않음)가 33.4%로 조사되어, 과반수 이상이 중점관리사업 선정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특히 투자사업 정보 입력 경험이 있거나 투자심사 업무 관리 경험이 있는 경우, 중점관리사업 선정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자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6〉 중점관리사업 선정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동의여부		
			동의	비동의	잘 모름
전체		302	60.3	33.4	6.3
사업부서 경험	사업부서	301	60.5	33.2	6.3
	예산부서	110	63.6	30.0	6.4
	사업+예산부서	109	64.2	29.4	6.4
A1. 심사 의뢰 경험	있음	191	60.2	33.0	6.8
	없음	111	60.4	34.2	5.4
A2. 투자사업 정보 입력 경험	있음	214	63.1	32.7	4.2
	없음	88	53.4	35.2	11.4
A3. 투자심사 업무 관리 경험	있음	107	63.6	29.9	6.5
	없음	195	58.5	35.4	6.2

□ 중점관리사업 선정 기준

- 중점관리사업 선정 기준에 대해 우선순위 3순위까지 조사한 결과,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 중 총사업비 증가가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로는 자체재원 증가, 3순위로는 투자심사결과에 대한 조건부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로 조사되었음
- 중점관리사업 선정 기준 가중종합순위에 대한 조사결과는 ①총사업비 증가, ②지방채 증가, ③감사원지적사항 순위로 조사되었으며, 단순종합순위도 가장 높은 비율은 총사업비 증가로 조사되었음

〈표 IV-7〉 중점관리사업 선정 기준

(단위: %)

구분	총 사업비 증가	자체재원 (시도비, 시군구비) 증가	지방채 증가	일정 지원	감사원 지적사항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재심사 여부	기타	계
1순위	43.0	6.0	16.6	10.9	11.9	7.3	4.3	-	100
2순위	12.3	20.9	9.9	16.9	16.6	16.2	7.0	0.3	100
3순위	10.6	8.3	14.2	14.2	13.9	19.9	18.2	0.7	100
가중종합순위	27.4	11.3	14.0	13.5	13.8	12.4	7.5	0.2	100
단순종합순위	65.9	35.1	40.7	42.1	42.4	43.4	29.5	1.0	300

□ 운영단계 사후관리제도 도입 찬성 여부

- 운영단계에 대한 사업추진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사후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찬성이 52.0%, 반대가 48.0%로 조사됨
- 즉 절반 이상이 사후관리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예산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투자심사 업무관리 경험이 있는 경우 60% 이상이 사후관리제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함

〈표 IV-8〉 사후관리제도 도입 찬성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찬성	반대	계
전체		302	52.0	48.0	100
사업부서 경험	사업부서	301	52.2	47.8	100
	예산부서	110	62.7	37.3	100
	사업+예산부서	109	63.3	36.7	100
A1. 심사 의뢰 경험	있음	191	53.9	46.1	100
	없음	111	48.6	51.4	100
A2. 투자사업 정보 입력 경험	있음	214	50.0	50.0	100
	없음	88	56.8	43.2	100
A3. 투자심사 업무 관리 경험	있음	107	62.6	37.4	100
	없음	195	46.2	53.8	100

□ 운영단계 관리 방식

- 운영단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 컨설팅 또는 포상 측면에서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지 질문함
- 공개 대상은 부실 또는 미흡한 사업으로 구분하여 선택하도록 하였고, 컨설팅의 경우 운영단계가 미흡한 시설, 포상의 대상은 우수한 시설임
- 조사 결과, 부실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선호하는 비중이 58.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우수 운영에 대한 포상(22.3%)으로 나타남
- 투자사업 정보 입력 경험, 투자심사 업무관리 경험이 없는 경우에 부실운영에 대한 컨설팅 수요가 전체 평균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투자사업 정보 입력 경험이 있거나, 투자심사 업무관리 경험이 있는 경우 우수 운영에 대한 포상을 선호하는 응답자 비중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9〉 운영단계 관리 방식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비율				계	
		부실 운영에 대한 공개	부실 운영에 대한 컨설팅	우수 운영에 대한 공개	우수 운영에 대한 포상		
전체	157	7.0	58.6	12.1	22.3	100	
사업부서 경험	사업부서	157	7.0	58.6	12.1	22.3	100
	예산부서	69	8.7	52.2	13.0	26.1	100
	사업+예산부서	69	8.7	52.2	13.0	26.1	100
A1. 심사 의뢰 경험	있음	103	6.8	58.3	11.7	23.3	100
	없음	54	7.4	59.3	13.0	20.4	100
A2. 투자사업 정보 입력 경험	있음	107	6.5	56.1	11.2	26.2	100
	없음	50	8.0	64.0	14.0	14.0	100
A3. 투자심사 업무 관리 경험	있음	67	9.0	50.7	13.4	26.9	100
	없음	90	5.6	64.4	11.1	18.9	100

□ 운영단계 관리 위한 기준

- 운영단계 관리를 위한 기준, 즉 부실 또는 우수 운영시설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보기 문항으로 ① 해당시설의 작년 운영실적과 비교하여 우수 또는 미흡 시설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인지, ② 투자심사 당시의 운영계획과 비교하여 당초 목표한 바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를 미흡한 시설로 볼 것인지, 또는 ③ 유사시설의 운영시설과 비교할 것인지 등을 선택하도록 함
- 조사 결과, 투자심사 당시의 운영계획과 비교가 49.0%이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유사시설과의 운영실적 비교(26.3%)인 것으로 나타남
- 심사의뢰 경험이 있거나 투자사업 정보 입력 경험이 있는 경우 유사시설의 운영실적과의 비교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평균 대비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심사의뢰 경험이 없거나 투자사업 정보 입력 경험이 없는 경우, 투자심사 당시의 운영계획과의 비교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평균 대비 높았으며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10〉 운영단계 관리 위한 기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해당시설의 작년 운영실적과 비교	투자심사 당시의 운영계획과 비교	유사 시설의 운영실적과 비교	기타	
전체	157	14.0	49.0	36.3	0.6	
사업부서 경험	사업부서	157	14.0	49.0	36.3	0.6
	예산부서	69	14.5	49.3	36.2	0
	사업+예산부서	69	14.5	49.3	36.2	0
A1. 심사 의뢰 경험	있음	103	13.6	46.6	38.8	1.0
	없음	54	14.8	53.7	31.5	0
A2. 투자사업 정보 입력 경험	있음	107	12.1	45.8	41.1	0.9
	없음	50	18.0	56.0	26.0	0
A3. 투자심사 업무 관리 경험	있음	67	14.9	49.3	35.8	0
	없음	90	13.3	48.9	36.7	1.1

- 운영단계를 관리하기 위한 사후관리제도 도입 반대한다고 제시한 응답자(145명, 48%) 중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응답자는 78명으로 주로 업무과중과 행정력 낭비, 지나친 개입인 점을 지적함
 -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심사부터 현재의 이력관리까지 관련 업무를 위한 인력 및 시간적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 운영단계는 감사 대상이라는 의견도 있으며, 운영은 사업부서가 아닌 별도의 관리 부서인 경우인 있기 때문에 투자사업과 연계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음
 - 다만 일부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수행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며,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점검 및 보완을 위한 취지라면 필요하되 충분한 교육과 안내를 선행하여 공무원들이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 또한 사후관리제도를 실제 운영할 시에는 사후관리 지적에 대해 패널티(신규사업 투자사업 심사 신청 불가 조치 등)를 주는 등 강제성이 없으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제3절 소결

- 2022년 이력관리 대상 사업 관련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투자사업 이력관리 정보 공개, 운영단계까지 확대 관련 의견 등을 수렴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
 - 첫째, 이력관리 공개를 전제로 어느정도의 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하는 것이 적정인지 질문한 결과, 해당 자치단체의 사업추진부서나 예산부서에는 모든 정보, 즉 개별사업에 대한 세부 정보를 비롯하여 중점관리사업에 대한 정보 일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상위기관(광역시도나 행정안전부)이나 일반시민에게는 중점관리사업에 대한 정보는 제외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보공개가 원활한 업무연계, 신규사업시 참고 등 측면에서 유용하나, 공개시 주민 또는 의회의 논란 소지를 제공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투자사업 이력관리에 찬성하는 비율이 과반수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음. 따라서 공개시 앞서 조사한 공개범위와 수준에 대해서는 공개대상에 따라 달리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력관리가 당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 및 감독의 취지가 아닌 자체 모니터링 지원 측면에서 도입되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수요와 우려사항을 종합해서 공개 관련 세부사항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둘째, 중점관리사업 선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개 관련 찬성 비율보다 높은 60%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총사업비 증가, 지방채 증가, 감사원 지적사항이 선정기준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조사됨
 - 셋째, 운영단계 사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찬성이 과반수를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예산부서나 투자심사 업무관리 경험이 있는 경우 60% 이상이 운영단계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시함
 - 운영단계 사후관리시에는 투자심사 당시 계획과의 비교, 유사시설과의 운영실적 비교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음
 -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투자사업 추진부서와 관리부서가 달라 사후관리에 대한 애로사항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실질적으로 투자사업 완료 이후 운영단계에서 몇 년 전에 투자심사 당시 계획 때 목표한 정량적인 기준, 특히 수요 및 편익, 운영수지 관련 목표가 유의미하게 비교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당시의 수요 및 편익, 운영수지 분석결과에 대한 증거 및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함
 - 그렇지 않을 경우, 일본의 사업평가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전평가 대비 사후평가 결과가 다르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분석이 어려우며 사전평가로의 환류 또한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투자사업 계획 당시의 비교도 중요하나, 향후 관련 DB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경우에 유의미한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현단계에서는 당장 제도 도입시 유사사례와의 비교에서 시설 운영의 실태를 현실적으로 평가가능할 것으로 보임
- 넷째, 운영단계에 대한 제도 도입시 담당자들의 업무 가중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어 관련한 기반 조성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의 반발이 우려됨
- 또한 충분한 교육과 세부지침 마련이 전제되어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됨

지방재정투자사업 사후관리방안 개선연구 : 문화체육시설을 중심으로

V

문화체육시설 운영단계 이력관리 방안

제1절 운영단계 관리 현황

제2절 심층분석 사례분석

제3절 운영단계 이력관리를 위한 평가기준 모색

V

문화체육시설 운영단계 이력관리 방안

제1절 운영단계 관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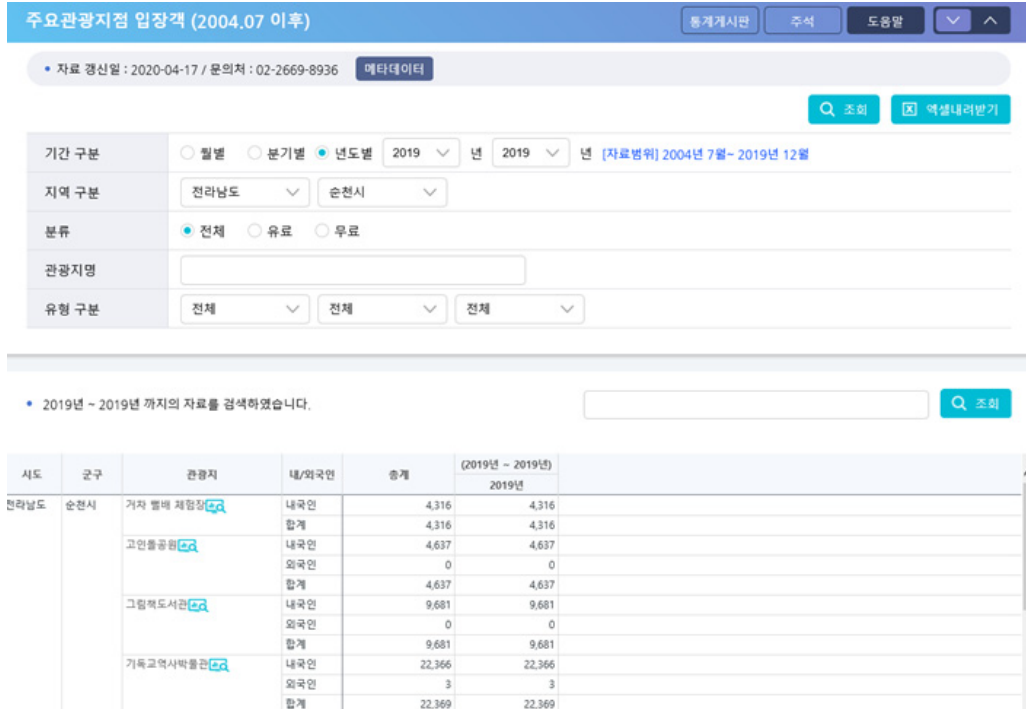
1. 공공시설별 운영 실적 통계 현황

- 공공시설의 운영단계와 관련해서는 각 시설별 소관 중앙부처에서 이미 실적 통계를 일부 관리하고 있음
- 운영단계를 관리하고 있는 분야는 크게 문화, 체육, 관광부문이 있으며, 그 외 공원, 주차장, 환경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해 일부 실적들이 관리되고 있음

가. 관광 부문

-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 : 운영실적 미제시
 - 유료관광지점 및 무료관광지점 입장객수를 매월 기초자치단체가 집계하고,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에 전산입력하면 분기별로 광역자치체가 1차 검수 및 승인 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종 검수 및 승인·공표함
 -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에서 포함되는 시설에는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관광시설 이외에 매우 다양한 시설의 입장객 통계도 작성됨

[그림 V-1]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표 V-1> 시설유형

근거 법령	세부 시설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등
문화재보호법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보호구역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미술관, 박물관자료, 미술관자료, 국립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관, 전시장,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등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
농어촌정비법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주말농원, 농어촌민박 등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도농교류 등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 전통사찰보존지, 문화유산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운동종목에 따른 체육시설과 시설형태에 따른 체육시설,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 등
온천법	온천 등

근거 법령	세부 시설
자연공원법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질공원, 공원구역 등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산림치유, 치유의 숲, 숲길, 유형산림문화자산, 무형산림문화자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	자연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생활환경보전림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 도시림, 생활림 등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의 숲(체험의 숲, 단체의 숲, 산림레포츠의 숲, 사회환원의 숲) 등
연안관리법	이용연안해역, 보전연안해역(해양생태보호구, 경관보호구, 공원구) 등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 (국토해양부 예규)	관리주체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형태에 따른 해수욕장 등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무인도서, 주변해역, 간조노출지 등
자연환경 보전법	생태마을,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야생 동식물 보호법	야생생물 등
하천법	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 등
소하천 정비법	소하천 등
해운법	해운업, 해상여객운송사업 등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유선사업, 도선사업, 유선장 및 도선장 등
선박 안전법	여객선 등
수상레저 안전법	수상레저활동, 래프팅, 수상레저기구, 동력수상레저기구, 수상레저사업 등
공연법	공연장 등
문화예술 진흥법	공연장(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장), 야외음악당, 화랑, 조각공원, 지역문화복지 시설(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문화보급전수시설 (국악원, 전수회관) 등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국립수목원, 공립수목원, 사립수목원, 학교수목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유원지 등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등
궤도운송법	궤도사업, 전용궤도 등
경륜·경정법	경륜, 경정, 경주장의 시설 설치 기준 등
한국마사회법	경마, 경마장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보호구역(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등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생물다양성센터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 등

□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 운영실적 미제시

- 전수조사는 아니나, 각 특별시·광역시에서 3개 이내, 각 시·도에서 7개 이내의 축제를 추천하면 관광·축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축제 프로그램 등 콘텐츠, 축제의 부가가치 창출효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실적 등을 기준으로 ‘대표’, ‘최우수’, ‘우수’, ‘유망’으로 등급을 분류함

나. 문화 부문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서 다양한 문화 시설에 대한 운영실적 자료를 제시함

- 다만 모든 시설유형별로 이용객수, 운영수입, 운영비용 등 운영실적으로 볼 수 있는 세부 항목에 대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음
- 시설유형 : 「도서관법」상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중전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회관)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상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등
 - (국립/공립) 도서관 : 시설규모, 소장자료, 직원현황, 운영예산, 이용현황 등
 - 박물관 : 시설현황, 소장자료, 프로그램, 인력현황 등
 - 미술관 : 인력현황, 시설현황, 자료현황, 프로그램 등
 - 생활문화센터 : 운영방식, 공간유형, 개관시간, 운영인력 등
 - 문예회관 : 공연장 및 전시장 규모, 관람자 수 포함 운영실적 등
 - 지방문화원 : 시설현황, 프로그램, 참여자 수 등
 - 문화의 집 : 운영시설 현황, 프로그램, 동아리 현황, 운영예산 등
 - 참고자료 : 지역문화재단 운영 현황
-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 엑셀파일로 자료가 게시됨
-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제시된 자료는 각 시설별로 다음의 관련 통계 및 자료와 연계되어 있음
 - 도서관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 박물관 : 전국 박물관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미술관 : 전국 미술관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문예회관 : 문예회관 운영현황 조사, 공연예술실태조사

□ 청소년수련시설 통계편람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서 매년 청소년수련시설 통계편람을 게시함
- 청소년 시설 이용 현황, 프로그램 운영 현황, 지구연 현황, 직무연수 현황, 지역 및 학교연계 현황, 예결산 현황 등을 제공함

다. 체육 부문

□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 운영실적 미제시

- 대상 : 육상경기장, 축구장, 하키장, 야구장, 싸이클경기장, 테니스장, 씨름장, 간이운동장(마을체육시설), 구기체육관, 투기체육관, 생활체육관, 전천후게이트볼장, 수영장, 롤러스케이팅장, 사격장, 국궁장, 양궁장, 승마장, 골프연습장, 조정카누장, 요트장, 빙상장, 설상경기장, 기타 체육시설(풋살장, 암벽장, 족구장, 야구연습장 등)
- 소유기관, 관리주체, 운영조직, 부지면적, 관리인원, 건축면적, 연면적, 경기장 면적, 시설 제원, 관람석, 준공연도, 건설사업비, 부대시설 등 제공

□ 국민체육센터 : 비공개

- 대상 : 전국 국민체육센터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매년 국민체육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동시에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담당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운영현황 실태를 파악함
 - 2021년 기준 운영현황을 파악한 국민체육센터는 완공된 시설 220개소를 대상으로 했음
 - 설문항목은 시설 일반현황, 운영 인력현황, 시설 운영시간 및 휴관일, 프로그램별 운영 현황, 사업비 및 매출액 현황 등임
 - 이를 바탕으로 국민체육센터별 포트폴리오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이 모든 자료는 비공개 자료로 처리되고 있음
 -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련 DB구축 시스템을 운영 중임

〈표 V-2〉 국민체육센터 운영현황 조사 설문 항목

차원	작성 기준	항목
시설 일반현황	2021년 10월말 기준	센터 준공일 / 시설개소일
		점유 규모 / 시설 면적 / 주차공간
		총별 주요시설(지하 / 지상 / 옥외)
		기타 시설 및 설비 현황(수영장 / 다목적체육관 / 헬스장 등)
운영 인력 현황	2021년 1~6월 기간 월평균 기준	시설 운영 인력
		지도자 및 강사인력 현황
시설 운영 시간 및 휴관일	정상적인 운영 기준	주간 운영시간(평일 / 토,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
		정기 휴관일
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현황	2021년 운영이 활발한 월 기준	체육프로그램 개설 현황(체육관 등 특정시설, 수영장, 헬스장 등)
		특정 대상 체육프로그램 개설 현황 (장애인 / 고령층(만65세 이상))
		개설 프로그램별 운영 현황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 현황	2021년 운영이 활발한 월 기준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설 현황
		특정 대상 문화·예술프로그램 개설 현황 (장애인 / 고령층(만65세 이상))
		개설 프로그램별 운영 현황
시설 대관 운영 및 이용현황	2021년 운영이 활발한 월 기준	시설 대관 운영 여부
		대관 시설별 운영 현황
체육/문화프로그램 및 시설 대관 이용 실적	2020년 연간 기준	2020년 연간 체육프로그램 총 이용 실적
		2020년 연간 문화·예술프로그램 총 이용 실적
		2020년 연간 시설 대관 총 이용 실적
사업비 및 매출액 현황	2020년 연간 기준	사업비
		매출액 / 매출 구성비
		운영비 / 운영비 구성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체육센터 운영지원 방안	현재 기준	센터 관련 정보 확인 채널
		이용자를 위한 예약시스템 구축 / 활용 현황
		이용자를 위한 정보 충분 제공성
		예약시스템 운영 개선 사항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센터별 월별 휴관일수
		코로나19 후, 이용자 수, 매출 등 정상화 기간
		비상상황 및 안전을 위해 센터 내 별도 조치 사항
		비상상황 및 안전을 위해 공단 지원사항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원(15문항)		
효율적 센터 운영을 위해 개선 사항		

자료: 2021년 국민체육센터 운영 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라. 주차장

- 전국주차장표준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운영실적 미제시
 - 운영방식(공영, 민영), 유형(노상, 노외, 부설), 운영시간, 요금정보, 위치(주소, 좌표) 등 제공

마. 도시공원

- 전국도시공원표준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운영실적 미제시
 - 공원유형, 면적, 보유시설, 지정고시일, 관리기관, 위치(주소, 좌표) 제공

바.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평가시스템
 - 통계정보에 '폐기물처리시설현황', '시설운영실적 통계정보' 등 제공

2.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시자료

가. 공공시설 운영현황 개요

1) 공개 목적

-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은 2016년부터 공공시설 관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365에 공개하기 시작함
 -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재정정보의 공개·공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공공시설 운영 등 재정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신뢰성 확보 필요하므로
 - 주민·언론 관심사항인 공공시설의 연간 이용인원, 비용, 수익 등에 대한 정보를 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지방재정365에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함

2) 대상

- 지방재정365에는 문화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까지 포함되며, 건립비 기준 기초 200억원 이상, 광역 300억원 이상 사업만을 공개대상으로 함

- 2021년까지는 기초 100억원 이상, 광역 200억원 이상부터 공개하도록 했으나 2022년부터 기초 200억원 이상, 광역 300억원 이상으로 대상이 변경됨
- 공시되는 자료 항목은 자치단체(광역/기초), 각 시설명, 유형/구분, 건립일, 운영방식, 건립비용, 연면적, 부지면적, 비용, 수익, 순수익, 이용자수 등임

3) 작성 기준

- 지방재정365는 2014년부터 실적부터 자료를 공시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는 각 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함
-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때 자료 작성 기준과 관련하여 안내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안내』와 e-호조의 『공공시설 운영현황 매뉴얼』을 배포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문건을 참고하여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대상시설에 대한 정보를 입력 및 전송하며,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송한 자료는 중앙부처로 바로 전송됨
- 각 자치단체에 배포되는 e-호조의 『공공시설 운영현황 매뉴얼』에는 사업담당자 외에 원가담당자가 현황을 작성 및 전송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가담당자가 누구 인지는 명확하지 않음

[그림 V-2] 공공시설 운영현황 업무 흐름도



자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공공시설 운영현황 매뉴얼(2022.05)

□ 세부 작성기준(『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안내』(행정안전부, 2022.6))

- 작성시점 : 전년도 결산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함
- 공개시점 : 매년 7월 중 e-호조에 입력하며, 지방자치단체 개별공시 이후 행정안전부 개별공시가 이루어짐
- 공개 및 비공개 대상 기준
 - 공공시설 중에 공개 대상은 주민편의시설로 지역주민이 직접 사용하는 문화체육 복지시설로 제시함
 - 상하수도, 쓰레기소각장 등 지역기반시설이나, 공원, 자연휴양림 등은 제외함

〈표 V-3〉 공개 및 비공개 대상 기준

공개대상 포함 시설 (기타 시설)	공개대상 제외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구민회관, 마을회관 등 주민 편의 시설이나 안전체험시설 • 문예회관 외에 각종 문화예술 공연 등을 위한 시설 (예: ○○문화센터, ○○공연장 등) • 토지나 조형물 등이 아닌 주로 건물을 활용한 과학문화환경 체험시설 등 (예: ○○과학관, ○○체험관 등) • 자치단체가 소유하되 위탁 운영하는 경우 • BTL, BTO 등 자치단체가 소유한 경우는 공개대상에 포함하되, 비용수익은 실제 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과 자치단체에 최종 귀속된 수익만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수도, 쓰레기 소각장 등 지역 기반시설 • 지역공원, 자연휴양림, 단순 전사조형물 등 주로 건물이 아닌 토지나 조형물 등을 활용하는 경우 • 주민편의 용도가 아닌 상업적 용도의 숙박시설, 시장, 타운 및 종합유통센터나 유통시설 등 (예: 컨벤션센터의 경우 주민편의 용도가 아닌 상업적 용도(대관료, 입장료 수익)으로 볼 수 있어 공개대상에서 제외) • 지역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는 시설 등 • 자치단체가 소유하지 않고 재단·사단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시설

자료: 행정안전부(2022.6)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안내』

- 시설 유형 구분 기준
 -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문체부),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여가부), 국립·공립·사립 과학관 현황(미래부), 전국 공공체육시설현황(문체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복지부)를 기준으로 구분함
 - 수영장, 볼링장 등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시설(국민체육센터, 시민체육관 등)은 “체육관”으로 분류함(문체부에서 구기체육관, 투기체육관 등으로 분류)

-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는 “기타시설”로 구분함

〈표 V-4〉 시설 유형 구분

시설유형	공개대상 공공시설(시설 구분)
문화시설	공립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회관, 과학관
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육상경기장, 야구장, 축구장, 수영장 등 문체부에서 22종으로 분류)
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기타시설	그 밖에 주민편의, 안전 등을 위한 공공시설

○ 공개내용

- 공공시설물의 물리적 현황과 비용, 수익, 이용객 등 운영현황을 작성토록 함
- 운영수익 중 귀속된 수익은 민간위탁료 등으로 제시함
- 연간 이용인원은 유료, 무료 이용인원을 불문하고 실제 시설을 이용한 총 인원을 제시하도록 함

〈표 V-5〉 공개내용

시설유형	내용										
공공시설물 현황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 인력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자산가치 변동현황					내용 연수
						건립 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 상각비 누계	장부 가액		
운영현황	연 간 이 용 인 원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 익 (C= B- A)
		계	인건 비	유지 관리 비	기타	계	입장 료	대관 료	임대 료	귀속 된 수익	

○ 시설운영비 산정 관련 세부 기준

- 해당 시설 운영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하며, 인건비의 경우 공무원, 비공무원, 정규직, 비정규직을 불문함
- 동일한 인력이 수개의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 또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인건비 산정하도록 함
- 리모델링에 이르지 않은 시설 보수 및 수리비용은 운영비에 포함하며, 각종 사업비 및 행사 비용도 운영비에 포함하도록 함
- BTL방식 시설의 경우 임대료 등의 비용은 운영비용에서 제외함
- 최초 개관에 소요된 비용(도서, 미술품, 서가 구입비 등)에 한해 운영비용에서 제외함(건립비용에 기 포함)
- 관리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전체 수익(비용)을 합산하여 운영수익(비용) 산정함
- 관리 주체 중 민간위탁이 있는 경우 자치단체에 귀속된 수익(부담한 비용)만 산정하도록 함

나. 공공시설 운영현황 DB 실태 및 개선사항**1) 공시 대상시설 기준**

- 현재 지방재정365의 공공시설 운영현황은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대상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4가지 시설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나 타법 및 제도 등에 제시된 공공시설에 대한 정의, 유형과 비교검토가 요구됨 불분명함
- 따라서 공공시설의 개념, 유형 등에 대한 정의 다음과 같은 법령 및 기준 등을 토대로 검토할 수 있음

가)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이용 또는 특별히 이익을 얻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및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 그러나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은 없으며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표 V-6〉 「지방자치법」상 공공시설의 정의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5조(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나) 서울시 및 경기도 사례

-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조례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의 조례는 다음과 같음
- 서울시 조례에서는 공공시설과 공공건축물을 구분하고 있는데 공공시설의 유형으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을 제시하고 있음. 한편 경기도의 경우 공공시설과 공공건축물을 구분하지 않고 공공시설물이란 개념을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 조례에서는 공공시설은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시설이라고 본 반면 공공건축물은 단순히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건립한 건축물이라고 정의하여 양자를 구분함.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공공건축물에 대해 도민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시설이라고 규정함

〈표 V-7〉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p>「서울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및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공공건축물’이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5. ‘건립비용’이라 함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p>「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이란 경기도, 경기도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용 시설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공청사 나. 도로·교량·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도로·교통시설 다.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라. 취수장,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상·하수도 시설 마.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체육관, 문화센터 등 문화·체육시설 바.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 사. 그 밖에 도민의 복지와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시설

- 서울시 조례의 경우 지방재정365와 달리 주차장, 공원과 함께 특히 교량이 포함된 것과 함께 공공건축물에 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이 예시된 것이 특징임

〈표 V-8〉 지방재정365와 서울시 조례 시설유형 비교

지방재정365	서울시	비고
문화시설	문화/체육시설	*공공건축물(서울시): 관공서, 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
체육시설		
복지시설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시설	
기타시설	주차장, 공원, 교량	

- 참고로 법제처 자료를 조회해보면 공공시설 등 건립비용 공개에 대한 조례제정 자치단체는 약 51개인 것으로 파악됨¹⁴⁾

〈표 V-9〉 공공시설 건립비용 관련 조례현황

지역	광역	기초
서울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중구
경기/인천	경기도, 인천광역시	(경기) 광명시, 광주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안양시, 평택시, 하남시 (인천) 남동구
강원	강원도	속초시, 원주시
충청/대전	충청남도, 충청북도	(충남) 보령시 (충북) 음성군, 충주시 (대전) 대덕구
전라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전남) 광양시, 목포시,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전북) 순창군
경상/대구/부산/울산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 김해시, 함양군 (대구) 수성구, 중구 (울산) 중구
제주	-	-
51	11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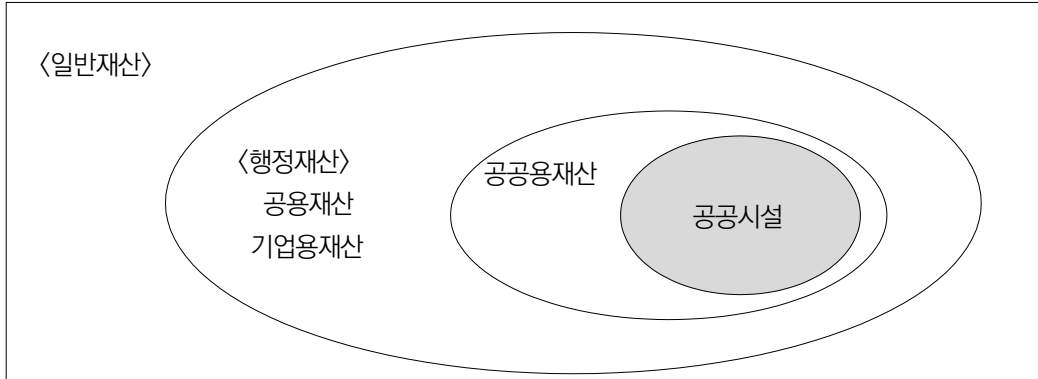
주: 경남교육청, 광주교육청, 목포시 1개 중복

다) 공유재산과 지방재정365의 공공시설

-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구성되어 있음(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5조)
- 공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을 말하며, 도로, 공원 등이 대표적임(동법 시행령 제25조)
- 지방재정365의 『공공시설 운영현황』에서 공시되는 공공시설은 성격상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에 일부에 해당되는 개념(문화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 기타시설)으로 볼 수 있을 것임

14) 법제처 사이트에서 키워드로 단순 검색

[그림 V-3] 공유재산과 공공시설



라) 지방투자사업 매뉴얼¹⁵⁾

□ 지방투자사업 매뉴얼은 “1. 지방재정 투자심사의뢰서”의 서식(p100)에서 공공 시설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음

〈표 V-10〉 지방투자사업 매뉴얼 상 공공시설 정의

- ④ 공공시설이라 함은 청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운동장, 체육관, 하수종말 처리장, 축산폐수처리시설, 수련시설, 기숙사 등을 말함
- 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전시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등 각종시설과 같이 유물, 전시물 등 콘텐츠가 필요한 시설의 경우 콘텐츠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

- 이는 지방재정365에서 사용하는 개념보다 넓은 개념으로 회계기준으로 보면 행정 및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이 모두 포괄된 것으로 보임
- 지방투자사업 매뉴얼에서는 투자심사의 성격상 예산금액 기준으로 대상 여부가 판별되므로 지방에서 투자하는 공공시설(사실상 행정재산)을 포괄해야 하는 점에 따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15)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행정안전부, 2022.09)

마) 지방재정365의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시자료

- 2020년 지방재정365에 공시된 공공시설은 총 893건으로 이중 문화시설이 370건, 체육시설이 345건, 복지시설이 33건, 기타시설이 145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시설구분은 문화시설은 6종, 체육시설은 보다 상세한 17종인 반면 복지시설 및 기타시설의 경우 시설구분이 1종에 불과함
- 특히 기타시설의 경우 그 밖에 주민편의, 안전 등을 위한 공공시설로 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시설구분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음

〈표 V-11〉 지방재정365 공시된 공공시설 내역

시설유형	시설구분(건)	시설수(건)
문화시설 (6구분)	공립도서관(84), 과학관(11), 문화예술회관(127), 미술관(11), 박물관(82), 청소년수련회관(55)	370
체육시설 (17구분)	간이운동장(1), 롤러스케이트장(1), 빙상장(8), 사격장(3), 설상경기장(3), 수영장(23), 승마장(2), 싸이클경기장(3), 야구장(11), 양궁장(2), 요트장(1), 육상경기장(58), 조정카누장(2) 체육관(133), 축구장(23), 테니스장(5), 기타체육시설(66)	345
복지시설 (1구분)	종합사회복지관	33
기타시설 (1구분)	기타시설	145
	합계	893

주: 2020회계연도 기준

- 행정안전부의 공개안내에 따르면 “기타시설”이란 문화시설, 체육시설 및 복지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그밖에 주민편의, 안전등을 위한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기타시설에 포함되는 사례로는 다음의 경우가 있음
 - 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2쪽)
 - 문화예술진흥법 사 문화예술회관에 포함되지 않는 문화센터, 공연장 등 (6쪽)
 -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4쪽)
- 실제 DB상 기타시설에는 여러 가지 성격의 것이 혼재되어 있는데 공공시설 포함 여부를 추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 실제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안내』(행정안전부, 2022.6)에서도 상하수도, 쓰레기 소각장 등 지역기반시설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하기 표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의 경우는 제외하면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주민편의시설이 행정복지센터에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시설을 공공시설에서 포함해야 할 것인지, 그렇다면 현재 공공시설 운영현황 DB에는 극히 일부 행정복지센터만 포함되었기 때문에 포함여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그 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도 극히 일부만 DB에 포함되어 있으며, 의료시설 및 노동종합복지회관 등 특정계층을 위한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운영현황을 관리하지 않을 것인지, 현재 해당유형 시설 역시 극히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운영현황을 작성한 것으로 보임

〈표 V-12〉 기타시설 중 별도검토 대상 예시

유형	내용	비고
수질정화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시흥에코센터(시흥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처리시설, 직영매립시설, 치인오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경남 합천군)	사회기반시설 포함 여부
공원	동탄호수공원어울림센터(경기 화성시) 엑스포공원사업소, 함평자연생태공원(전남 함평군)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경북 상주시) 꿀벌나라테마공원(경북 칠곡군) 별빛누리공원(제주도)	공원 중 일부만 반영 추정
행정복지센터	아름동 행정복지센터(세종시) 구리시 행정복지센터(경기 구리시) 남악복합주민센터(전남 무안군) 다산행정복합타운(경북 고령군)	복합시설
기타	중구 구민회관(서울 중구) 행복요양병원(서울 강남구) 보훈회관, 노동종합복지관(경기 군포시) 교문동 주차빌딩(경기 구리시) 근로자종합복지관(전북 완주군)	의료시설 주차장 복지관 기타

- 참고로 지방재정365의 시설유형(2020년 기준)을 지방회계기준의 회계과목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이 대응될 수 있음
 - 공원, 시설유형은 대부분 주민편의시설임을 알 수 있으나 기타시설에는 일부 사회기반시설 성격의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

〈표 V-13〉 지방재정365와 지방회계기준 유형

지방재정365 (시설유형)	지방회계기준 (회계과목)	비고
문화시설	문화및관광시설	주민편의시설
체육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주민편의시설
기타시설	공원, 의료시설, 주차장, 복합시설, 기타주민편의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건물	일반유형자산
	수질정화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사회기반시설

2) 시설유형 구분 및 누락 실태

- 현재 지방재정365의 공공시설 운영현황에서는 공공시설이 시설 유형 및 시설 구분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가 다수 발견됨
 - 문화시설로 분류되어야 할 시설 중 기타시설로 분류된 것이 존재
 - 아래는 문화시설로 분류되는 것이 더 타당하지만 현재 지방재정 365 공공시설 현황표에서 기타시설로 분류된 시설의 예시임

〈표 V-14〉 시설유형에 따라 시설이 분류되어 있지 않은 공공시설 예시

자치단체	시설명	시설유형(현재)	시설유형(개편안)
서울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	기타시설	문화시설
인천본청	하늘문화센터	기타시설	문화시설
대전본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기타시설	문화시설
경기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기타시설	문화시설
충남천안시	천안홍대용과학관	기타시설	문화시설
경북김천시	김천시립문화회관	기타시설	문화시설
경북칠곡군	향사아트센터	기타시설	문화시설
경남김해시	김해문화의전당	기타시설	문화시설
경남합천군	문화원	기타시설	문화시설

- 이로 미루어볼 때 현재 지방재정 365의 공공시설 현황 관리에 있어 시설유형 및 시설구분의 분류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공공시설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취합 및 분류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의 시설유형 및 시설구분을 개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우선 행정, 문화, 체육 기능이 복합된 복합시설이 늘어나고 있는데 복합시설에 대한 별도의 분류가 없고, 기타시설로 제시하게끔 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부산사상구의 다누림센터는 실제로는 어린이집 운영, 다문화 가정 지원, 국민체육센터, 문화원 등이 있어 문화, 체육, 육아 기능 등을 함께 수행하고 있음
 - 복합시설에 관한 시설유형 및 시설구분이 부재한 현재 상황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취합 실무자가 이러한 복합시설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실무자의 자의에 따라 공공시설이 분류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지방재정365의 공공시설 운영현황에서는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시설이 기타시설 또는 기타체육시설 등으로 분류되어 있음
 - 송파구체육문화회관의 경우 체육시설 중 기타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있음
 - 세종본청의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기타시설로 분류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기타시설 내에 복합시설이라는 시설구분을 새롭게 만들어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시설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음

〈표 V-15〉 복합시설로 구분되는 것이 바람직한 공공시설 예시

자치단체	시설명	시설유형 및 시설구분		시설기능
		현재	재분류	
서울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기타시설/기타시설	기타시설/복합시설	문화 및 체육 복합
서울송파구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체육시설/기타체육 시설	기타시설/복합시설	문화 및 체육 복합
울산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기타시설/기타시설	기타시설/복합시설	문화 및 체육 복합
전북장수군	한누리전당	기타시설/기타시설	기타시설/복합시설	문화 및 체육 복합
부산사상구	사상구 다누림센터	기타시설/기타시설	기타시설/복합시설	문화, 체육, 복지, 보건 산업진흥 등 복합
세종본청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기타시설/기타시설	기타시설/복합시설	문화, 체육, 행정 등 복합
경기화성시	다원이음터	기타시설/기타시설	기타시설/복합시설	문화 및 체육 복합
경기양평군	양서에코힐링센터	기타시설/기타시설	기타시설/복합시설	문화, 체육, 복지 등 복합
제주본청	제주별빛누리공원	기타시설/기타시설	기타시설/복합시설	문화(천문과학관) 및 공원 기능 복합

- 한편 체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로 분류되기 어려운 공공시설을 모두 기타 시설이라는 하나의 항목으로만 분류하고 있음
- 하지만 기타시설 내에도 다양한 성격의 공공시설이 존재하며 이를 기타시설이라는 항목 하에 하나로 묶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현재 기타시설로 분류되고 있는 공공시설 역시 산업진흥, 관광, 문화 및 체육 복합 등으로 재분류하는 것이 가능함
- 따라서 지방재정365의 『공공시설 운영현황』을 통하여 공공시설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타시설 내 관광시설, 산업진흥시설, 기숙사 등의 시설구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표 V-16〉 기타시설 내 시설구분의 다양화가 바람직할 것으로 기대되는 공공시설 예시

자치단체	시설명	시설유형 및 시설구분(현재)	시설유형 및 시설구분(개편안)
경기화성시	도봉나래관	기타시설/기타시설	기타시설/기숙사
서울본청	서울혁신파크	기타시설/기타시설	기타시설/산업진흥
울산울주군	양평 맑은숲캠프	기타시설/기타시설	기타시설/관광시설
전남진도군	진도타워	기타시설/기타시설	기타시설/관광시설
경기수원시	수원시연화장	기타시설/기타시설	기타시설/장례시설

- 지방재정365의 『공공시설 운영현황』에서 누락되는 공공시설이 매해 발생하고 있음
 - 과거에는 기재되어 있던 공공시설이 특정 연도에는 지방재정 365상 공공시설 현황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례가 드물게 존재
 - 예를 들어 화성시아르뎀복지관의 경우 2018년도 지방재정365의 공공시설 운영현황에만 기재되어 있음
 - 또한 2020년도 지방재정365의 공공시설 운영현황에서는 전남 해남군의 공공시설, 전남 순천시의 공공시설, 전북 남원시의 공공시설 등이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누락되어 있음
 - 2016년도와 2017년도 지방재정365의 공공시설 운영현황에서는 경남 합천군의 공공시설이 전부 기재되어 있지 않음

〈표 V-17〉 각 연도별 지방재정 365상에서 누락되었던 공공시설의 예시

기준 연도	누락 공공시설의 예시
2017	대전시립박물관
2018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영덕군 고래불국민야영장
2019	고창 고인돌박물관
2020	마포중앙도서관 윤봉길체육관 옥천체육센터 순천만국제습지센터 해남공룡박물관

-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대상에 대해서 건립비나 시설유형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보다 분명한 기준 내지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누락되는 공공시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공공시설 공개기준이 일부 명확하지 않아 특정 성격의 공공시설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재되어 있고,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는 현상이 발생
 - 예를 들어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등 지역기반시설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남 합천군의 경우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직영매립시설, 오수처리시설 등을 지방재정365의 공공시설 운영현황에 공개함
 - 수원시의 경우에는 장례 관련 시설인 연화장을 지방재정365의 공공시설 운영현황에 기재하고 있는데, 수원시 이외에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장례 관련 시설을 건립 및 운영 중에 있지만 장례 관련 시설을 지방재정365의 공공시설 운영현황에 기재하지 않음
- 현재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건립 및 운영되고 있는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365의 공공시설 운영현황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는 공공시설이 존재함
 - 이 역시 어느 범위의 공공시설까지를 지방재정365의 공공시설 운영현황에 등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행정안전부에서 수집하는 공공시설 운영현황이 건립비 기준에 따라 대상사업이 제한적이기는 하나 해당 자료 공개제도를 통해 상당히 세부적인 운영실적까지 관리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투자심사와 연계하여 충분히 사후관리 측면에서 공공시설 운영현황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대상과 범위를 조정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같은 이름의 공공시설이지만 연도 간 데이터의 비일관성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 이는 지방재정365의 데이터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같은 시설이지만 지방재정365의 공공시설 운영현황에 등재된 연도에 따라 건립일, 건물면적, 토지면적 등 세월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데이터에도 변동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 아래는 지방재정365의 공공시설 운영현황에서 기준연도에 따라 건립일, 건물 면적 및 토지면적이 변화하는 공공시설의 예시를 제시한 것임

〈표 V-18〉 기준연도별 데이터 비일관성이 발생하는 공공시설 예시

자치단체	시설명	건립일	건물면적	토지면적	기준연도
서울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2001.11.01	11,570	13,478	2016
서울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2001.11.01	11,570	13,478	2017
서울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2001.11.01	11,570	13,478	2018
서울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2001.11.01	11,266	13,345	2019
서울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2001.10.31	11,266	13,345	2020

〈표 V-19〉 기준연도별 데이터 비일관성이 발생하는 공공시설 예시 1

자치단체	시설명	건립일	건물면적	토지면적	기준연도
경기양평군	오커빌리지	2009.04.10	13,375	1,304	2018
경기양평군	오커빌리지	2010.12.03	1,304	13,375	2019
경기양평군	오커빌리지	2010.12.03	1,304	13,375	2020

〈표 V-20〉 기준연도별 데이터 비일관성이 발생하는 공공시설 예시 2

자치단체	시설명	건립일	건물면적	토지면적	기준연도
서울강남구	행복요양병원	2012.06.01	18,607	18,585	2019
서울강남구	행복요양병원	2014.03.31	18,607	6,427	2020

〈표 V-21〉 기준연도별 데이터 비일관성이 발생하는 공공시설 예시 3

자치단체	시설명	건립일	건물면적	토지면적	기준연도
대구수성구	수성아트피아	2007.05.01	14,873	18,290	2016
대구수성구	수성아트피아	2007.05.01	14,873	18,290	2017
대구수성구	수성아트피아	2006.08.27	3,754	14,873	2018
대구수성구	수성아트피아	2006.08.27	3,754	14,873	2019
대구수성구	수성아트피아	2006.08.27	14,873	18,290	2020

〈표 V-22〉 기준연도별 데이터 비일관성이 발생하는 공공시설 예시 4

자치단체	시설명	건립일	건물면적	토지면적	기준연도
인천본청	계양체육관/양공장/ 국제벨로드롬	2013.09.17	28,147	308,463	2016
인천본청	계양체육관/양공장/ 국제벨로드롬	2013.09.17	28,147	308,463	2017
인천본청	계양체육관/양공장/ 국제벨로드롬	2013.10.02	28,147	234,872	2018
인천본청	계양체육관/양공장/ 국제벨로드롬	2013.10.02	28,147	234,872	2019
인천본청	계양체육관/양공장/ 국제벨로드롬	2013.10.02	28,147	234,884	2020

□ 이외에도 데이터 항목별로 누락된 사항이 상당수 발견됨. 다음은 2020년 기준 공개자료에서 누락된 사항임

- 첫째, 인건비 금액이 없는 경우가 60건으로 나타남. 이 중 직영은 20건이며 위탁 및 BTL이 40건임. 인건비는 모든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해당 건의 경우 자료누락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둘째, 유지관리비가 없는 경우도 20건이 있었음. 이 중 직영은 5건이며 위탁 및 BTL이 15건임. 유지관리비는 수선보수 등 시설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기재 누락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유지관리비가 없는 경우 인건비 또는 기타비용은 기재된 경우가 많았음
- 셋째, 기타비용이 있는 경우가 159건임. 기타비용이 있으나 유지관리비가 없는 경우는 10건이고, 149건은 유지관리비 및 기타비용이 모두 있는 경우임. 기타비용이 있으나 유지관리비가 없는 경우는 분류가 잘못된 경우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넷째, 비용이 전혀 없는 경우(0원)도 4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다섯째, 총 454건의 시설이 입장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 중에는 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어 누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여섯째, 대관료가 없는 경우는 423건이며 임대료가 없는 경우는 524건임
- 일곱째, 귀속된수익(민간위탁료 등)이 있는 경우가 92건임. 다만 이 중 12건은 직영으로 나타나 기재오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귀속된 수익 비중이 입장료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여덟째, 기타수익이 있는 경우가 457건으로 나타남. 기타수익 금액이 운영수익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내역분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3) 운영비용 및 운영수익 작성 기준

- 현재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시자료에는 총운영비용과 총수익이 공개되며, 각 항목에 대한 세부내역은 공시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e-호조에 작성할 시에는 각 세부항목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도록 함
 - 총비용 : 인건비, 유지관리비, 기타(민간, 자부담등)
 - 총수익 : 입장료, 대관료, 임대료, 귀속된 수익(민간 위탁료 등), 기타 수익
-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안내』(행정안전부, 2022.6)에서는 운영비 작성상 세부기준을 일부 제시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인건비는 비정규직, 비공무원을 모두 포함하여 제시하도록 하며, 동일한 인력이 여러개의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전용면적 개준으로 분개하도록 함
 - 운영비에는 리모델링비 등 대수선비는 제외하고, 사업비를 포함시키도록 하며, 개관시기 운영비는 운영설비비로 보아 제외하는 것으로 제시함
 - BTL의 경우 임대료는 운영비에서 제외하고, 대신 민간위탁방식의 경우 수익은 지자체에 귀속된 수익과 부담한 비용만 산정하도록 함
 - 그러나 귀속된 수익에 대한 부가설명으로 민간 위탁료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혼동의 여지가 있음
 - 예를 들어 위탁관리사업의 경우 수탁기관(지자체)가 보조금형식으로 지원하는 위탁료가 수익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음
 - 공공시설을 운영현황에서 비용과 수익자료를 검토하여 운영수지분석을 실시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민간 위탁료 등은 수익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비용의 경우에도 운영방식이나, 관리감독 관련 인력에 대한 인건비 포함 여부, 문화시설의 경우 예술단 등 콘텐츠 제공 인력에 대한 포함여부에 따라 인건비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통계자료 구축 측면에서 각 총비용 및 총수익 세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음에서는 운영수익 및 운영비용의 세부항목 검토를 통해 작성항목의 정의 및 개념을 정리하고, 인천시 사례를 활용하여 작성기준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정리함

가) 운영수익

□ 운영수익의 유형

- 공공시설의 이용과 관련된 수익으로 「지방자치법」 제153조에서는 사용료를 제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예산편성기준¹⁶⁾을 살펴보면 시설운영과 관련된 예산과목으로는 재산임대수입(211)과 사용료수입(212) 중 일부가 기본대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수료수입(213)이 포함될 수 있음

〈표 V-23〉 세입예산과목 중 사용료 등

과목구분	설정	비고
211-02 공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료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료	
212-07 입장료수입	입장료 및 관람료 수입	
212-08 주차요금수입	주차장법 등에 의한 주차요금수입	주차장
212-09 기타사용료	타 과목에 속하지 않은 사용료수입	
213-04 보건의료수수료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의 진료, 검사 수수료수입	의료시설
213-05 기타수수료	1. 타 과목에 속하지 않은 수수료수입	

- 한편 “지방투자사업 매뉴얼”에서는 투자심사와 관련하여 운영수익으로는 입장료, 사용료, 이용료, 수수료 등을 예시하고 있음. 다만 수수료의 경우 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수입으로 행정안전부 공개안내에서 제시한 공공시설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¹⁷⁾

〈표 V-24〉 지방투자사업 매뉴얼의 운영수익 구분

투자심사 의뢰서(별지 1호)			
공공시설 운영계획서		경제적 타당성 비용효과분석	
수입	입장료	금전적 수입	사용료
	사용료		이용료
	...		수수료
			...

16)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17)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수수료수입으로는 증지수입, 폐기물처리수수료,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보건의료수수료, 기타수수료가 있음

□ 운영수익의 세목관리

- 사용료, 공유재산임대료 등은 세외수입에 속하는 것으로 세입수입정보시스템을 통해 징수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전산으로 관리되는 세외수입 징수부를 살펴보면 예산편성기준에서 “목”까지만 관리하는 것과 달리 실무에서는 보다 세부적인 “세목” 수준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세목을 통해 공공시설 사용료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
- 만약 공시대상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을 세목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다 용이하게 입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자치단체별로 세목관리 내용이 다르며 공공시설 공시대상이 모두 세목으로 관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현실적으로 운영수익의 내역은 상당 부분 수작업을 통해 파악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됨

〈표 V-25〉 운영수익 세목관리

장 - 관 - 항 - 목 - (세목) (예)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2 사용료수입 212-07 입장료수입 문화예술회관 공연입장료

- 참고로 지방투자사업 매뉴얼에서는 1. 지방재정 투자심사의뢰서의 중 “공공시설 운영계획서” 작성시 수입과목으로 사용료, 입장료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경제적 타당성 비용효과 분석”과 관련하여 금전적수입으로 사용료, 이용료, 수수료 등을 예시하고 있어 시설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수입원을 상정하고 있음

□ 세입예산과 운영수익

- 세입예산 편성과 관련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서는 각 시설별로 세입금액을 자세히 기재하고 있음

- 예를 들어 공유재산임대료의 경우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통한 결산자료에서 시설별 수입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과 달리 예산서에는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쉬운 편임. 인천광역시의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음

〈표 V-26〉 인천광역시 운영수익 비교(2020년 기준)

순번	시설명	운영 ¹⁸⁾	수익	세입예산	비고
1	미추홀도서관	직영	18	20	임대료 15 ¹⁹⁾ 대관료 5
2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직영	2	2	대관료 5
3	문화예술회관	직영	436	436	대관료 300 공연수익금 등 136 ²⁰⁾
4	어린이과학관	위탁	212	933	
5	축구전용경기장	위탁	1,534	1,465	
6	삼산월드체육관	위탁	1,053	4,133	
7	송림체육관	위탁	683	1,750	
8	문학박태환수영장	위탁	688	2,600	
9	옥련국제사격장	위탁	43	102	
10	강화고인돌체육관/ 아시아드BMX경기장	위탁	58	43	
11	계양체육관/양궁장/ 국제베로드롬	위탁	407	923	
12	남동체육관/럭비경기장	위탁	767	1,018	
13	문학경기장(야구장 포함)	위탁	8,343	120	차이 큼 ²¹⁾
14	선학체육관/하키/빙상장	위탁	412	805	체육관 수입 확인 안됨
15	송도종합LNG스포츠타운	위탁	165	475	야구장 포함
16	열우물테니스/스쿼시경기장	위탁	577	1,882	
17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연희크리켓경기장	위탁	1,062	3,803	
18	하늘문화센터	위탁	83	-	확인 안됨

18) 위탁운영의 경우 인천도시공사의 결산서를 확인하면 많은 부분이 확인될 것이나 자료입수 제한으로 사용하지 못함

19) 물품보관함 임대료 9,000/ 도서관발전진흥원 사무실 사용료 5,500/ 이용자 복합기 임대료 160/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료 200 (211-02 공유재산임대료)

20) 시립예술단 외부출연수익금 80,000/ 시립예술단 직무연수 수익금 6,000/ 공연프로그램 판매수익금 등 50,000 (224-06 그 외수입)

21) 축구장을 포함한 야구장 운영권은 SSG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입장료등 금액을 사후정산 조건이라고 알려져

- 시설별로 공시된 수익과 세입예산 금액을 살펴보면 유사한 경우도 있으나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운영수익 금액을 기재하기 위한 지침 및 실무사례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됨

나) 운영비용

- 운영비용은 공공시설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별도로 정의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의 설립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비용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운영비용은 실무상 공공시설 운영원가, 공공시설 운영비 등으로 불리고 있음
- 자치단체의 비용분류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발생주의에 근거한 지방회계기준에서는 비용을 성질별로 인건비, 운영비, 정부간이전비용, 민간등이전비용, 기타비용의 5종으로 구분하고 있음
- 지방회계기준의 비용을 과목성격을 기준으로 공공시설 운영비용과 관련성을 가지는 것과 관련성이 없는 것을 나눠보면 다음과 같음
- 이때,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한 것은 공공청사, 수질정화시설 등을 잠정적으로 공시대상 공공시설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근거에 따른 것임

〈표 V-27〉 지방회계기준 비용 중 공공시설 관련비용

분류	관련비용	비관련비용	비고
인건비	급여, 복리후생비, 기타인건비, 퇴직급여	-	
운영비	도서구입및인쇄비, 소모품비, 홍보및광고비, 지급수수료, 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보험료및공제료, 임차료, 출장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위탁대행사업비, 연료비, 기타운영비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기타자산수선유지비,	비관련 자산
		이자비용	비경상 항목
		행사비, 의회비, 예술단운동부운영비 주민자치활동운영비, 징수교부금, 원정수구입비, 용지주택매출원가 공립대학운영비	자치단체 고유활동
정부간 이전비용	-	all	
민간등 이전비용	-	all	
기타비용	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비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비관련 자산
		대손상각비, 기타비용 등	기타

□ 참고로 지방투자사업 매뉴얼의 1. 지방재정 투자심사의뢰서의 중 “공공시설 운영계획서” 작성시 운영비용²²⁾에서 예시하고 있으며 “경제적 타당성 비용효과 분석”과 관련해서도 비목을 제시하고 있음

- 한편 5. 타당성 조사의뢰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비목구분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음
- 특징적인 것은 지방회계기준의 운영비를 시설운영비란 명칭을 사용하거나, 용역비와 시설관리비 또는 운영비와 유지보수(관리비)로 추가 구분하고 있는 점이 특징임
- 공공시설의 특성상 실물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점도 특징적인 부분임

22) 실제로는 “수입”과 “지출” 및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손익”으로 되어 있음

〈표 V-28〉 지방투자사업 관련 운영비 구분

투자심사 의뢰서(별지 1호)				타당성 조사의뢰서* (별지 5호)	
공공시설 운영계획서		경제적 타당성 비용효과분석			
지출	인건비	운영비	인건비	운영비	인건비
	시설운영비		용역비		운영비
	감가상각비		시설관리비		유지보수(관리)비
	...				기타

□ 특히 타당성 조사의뢰서의 경우 각 비목에 포함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표 V-29〉 타당성 조사의뢰서의 비목

구분	내용	비고
인건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각 조직의 인력소요 인건비 총합	
운영비	제경비, 시설관리비(보안, 기계, 조경 등), 수도광열비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유지보수비	안전진단, 유지보수비, 수선비	
기타	물품구입비, 재투자비 (예) 도서구입비, 박물관의 유물구입비 등과 같이 시설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매뉴얼의 분류를 참고하되 지방회계기준에 따른 실제 회계 과목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은 분류 및 항목을 고려할 수 있음

〈표 V-30〉 운영비용의 분류 및 항목(안)

분류	과목(지방회계기준)	추가
인건비	급여, 복리후생비, 기타인건비, 퇴직급여	
운영관리비 ²³⁾	도서구입및인쇄비, 소모품비, 홍보및광고비,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보험료및공제료, 임차료, 출장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위탁대행사업비, 연료비, 기타운영비	
유지보수비	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비	
기타	-	시설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예: 유물구입비 등)

다) 운영비용 항목별 이슈사항

□ 운영비용과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는 이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예상됨

① 인건비의 구분과 예산편성

- 공무원은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보다는 관리감독만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음. 다만 사업소의 경우 해당 시설을 직접운영하는 경우 직접인력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
- 위탁운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공무원인건비를 단순하게 제외할 이유가 없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직접인력과 간접인력의 구분될 필요가 있음
 - 직접인력은 공공시설의 운영과 직접 관련된 인력으로 관리감독 등 업무는 제외할 필요가 있음
 - 인건비 예산편성 방식의 차이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의 반영 가능성 검토가 필요함
 - 예를 들어, 사업소의 경우 공무원인건비를 부서별 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나 (예: 인천시 문화예술회관) 본청 소속 부서에서 관리하는 경우 (예: 인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에는 본청에서 일괄하여 편성하고 있음
 - 즉 부서별 예산에 공무원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영의 경우 사업소에서 운영한다면 해당 개별공공시설과 관련된 인건비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한 반면, 본청 부서에 운영한다면 추가로 부서 인건비 금액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됨
 - 즉 사업소의 경우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시설별 담당을 구분하거나 여러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직원의 경우 업무량을 구분해야 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함. 다만 이 경우 업무의 성격, 주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임
 - 한편 본청에서 일괄 편성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실제 직원별 급여를 계산할 것인지 또는 직급별 평균급여(또는 직원 평균급여)에 근무인력 수를 곱하여 공무원인건비를 계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임
 - 또한 사업소와 달리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직접인력의 범주에 대한 판단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됨

23) 운영비란 명칭에 유지보수비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운영관리비로 수정

- 위탁운영의 경우 공무원 중 직접인력은 없다고 가정해야 하는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함
-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사실상 공공시설 운영에 따른 직접업무를 모두 위탁하였다고 보는 경우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는 없을 수 있음

〈표 V-31〉 공무원인건비의 예산편성

구분	직영	위탁운영
사업소	공무원인건비가 부서예산에 포함되어 있음	-
본청 부서	공무원인건비는 총괄부서(인사과)에서 일괄 편성	

- 참고로 지방재정365에 공개된 2020년 공공시설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893건 중 직영 403건, 위탁 470건, BTL 20건으로 나타나 예상보다 직영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한편 BTL의 경우 사실상 관리운영권이 민간투자사에 있는 것으로 보여 위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② 감가상각비의 포함여부 및 공개

- 지방재정365에서 감가상각비는 공공시설 건립비용을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을 반영하고 있으며(정액법), 운영비용과는 별도의 칸(column)으로 공개되고 있음
- 운영비용(원가)에 대한 분석에 있어 발생주의 비용인 감가상각비를 제외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오히려 이를 제외하는 경우 적정한 운영비용 정보를 보여 주지 못하게 됨
- 그러나 선행 연구자료를 보면 감가상각비를 명확하게 포함하는 경우가 오히려 적음. 이는 해당 시설에 대한 건립비용(취득원가) 정보를 별도로 파악하기 어려움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 한편 지방투자사업 매뉴얼 중 “공공시설 운영계획서”에는 감가상각비를 예시로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재정365에서는 건립비용을 입력하면 감가상각비를 자동으로 e-호조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며 이는 지방회계기준의 감가상각방법(정액법)과 부합하는 방식임

③ 콘텐츠운영비와 시설관리비

- 운영비를 구분하는 방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지보수비와 운영관리비로 나누는 방안과 함께 시설관리비와 콘텐츠운영비로 나누는 방법도 존재함
- 이 경우 행정안전부 공개안내에 따른 공공시설의 종류가 문화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 기타시설로 구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콘텐츠운영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표 V-32〉 시설관리비와 콘텐츠운영비 사례

내용	직영	위탁
시설관리비	도서관 청사유지관리 전수교육관 건물관리/장비관리/시설보수 공연장 청사유지관리/시설물 관리 (무대시설, 객석시설)	계약(협약) 내용에서 확인가능
콘텐츠운영비	도서관 자료실운영 전수교육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립교향악단/합창단/무용단/극단 공연	

- 공공시설의 경우 민간 시설물의 단순 대관(임대)와 달리 시설과 인력이 함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²⁴⁾ 콘텐츠 제공 인력이 공공시설 운영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
- 콘텐츠 운영비는 성질별로 인건비(강사 등), 운영비(소모품비, 도서구입및인쇄비, 지급수수료 등)에 나누어져 집행되고 있음
- 참고로 지방투자사업 매뉴얼에서는 박물관, 문화예술회관 등의 경우에는 콘텐츠 운영비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콘텐츠운영비는 특히 인건비 부분이 큰 편으로 공무원, 기간제근로자 또는 보상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인력에 대한 비용이 운영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큰 이의가 없음
-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술단 즉,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연극단 등을 직접 고용하고 있는 경우임

24) 앞에서 살펴본 세입예산 과목의 임대료, 기타사용료 및 입장료의 차이에서도 이 점이 드러남

- 특히 각 자치단체별로 예술단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되며 문화예술회관(문화시설)의 경우 예술단인건비의 유무에 따라 운영비용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시설운영에 따른 비교가능성 측면에서 예술단인건비를 운영비용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④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의 포함여부
- 운영비용에 세출예산 중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지출액을 포함할 것인지를 검토가 필요함
 - 지방회계기준에 따르면 시설비 집행은 수선유지비(비용) 또는 자산의 증가로 처리될 수 있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증가로 표시되어야 하나 실제 예산편성 내역에 따라 소모품비 등으로 비용처리될 부분이 존재할 수 있음
 - 예산편성에 있어 대규모수선은 시설비에 소규모수선은 일반운영비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임. 한편 자산취득 및 건설에 따른 것은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에 편성됨
 - 단순하게 시설비, 자산취득비를 모두 운영비용에 포함하게 되면 자산의 대규모 취득에 따른 지출이 포함되게 되는 경우 실제 운영비용 규모를 파악하고 다른 공공시설과의 비교분석이 어려울 수 있음. 또한 감가상각비를 별도로 반영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중계상의 문제도 예상됨
 - 따라서 공공시설과 관련된 시설비 및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되는 부분만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박물관의 유물구입비(기타유산자산), 미술관의 작품구입비(기타유산자산)의 경우 시설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기타비용으로 분류하도록 투자사업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회계기준에 따르면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투자사업의 사후관리 관점에서 이 부분은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⑤ 공단 등 위탁과 민간위탁의 예산목 운영차이

- 공공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지방공단 등에 위탁하는 경우와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를 구분할 수 있음
-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위탁운영의 경우 편성목이 매우 단순한 것을 알 수 있음. 공단 등에 위탁하는 경우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 목을 민간위탁시에는 민간위탁금 목을 사용함. 차이가 있는 부분은 위탁한 공공시설에 자본적지출을 집행할 때임
- 인천시의 경우를 보면 자본적지출의 경우 공단 등 위탁의 경우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집행되고 있으나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시설비가 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만약 대규모 보수가 발생하는 경우 공단 등에 대한 위탁의 경우 자본적지출액이 모두 자본적위탁사업비에 포함되어 운영비용이 과대계상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

〈표 V-33〉 공단 등 위탁과 민간위탁의 사례(예산)

내용	공단등 위탁	민간위탁
경상적지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8-10)	민간위탁금(307-05)
자본적지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03-02)	시설비(401-01)*

주: 문학경기장 개보수 기본 및 실시설계비, 송도LNG종합스포츠타운 축구장 인조잔디 개보수

⑥ 위탁정산에 따른 반납금 등 고려

- 공공시설에 대한 위탁을 하는 경우 위탁사업비(또는 위탁금)에 대해서는 정산이 이루어지며 정산결과 반납액이 있는 경우 수탁기관은 다음해에 반납하고 있음
- 반대로 부족액이 있으면 다음해 예산에 추가로 반영하여 지급함)
- 인천시가 공개한 공공시설 18건 중 직영 3건을 제외한 15건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액의 세입예산 편성여부를 조사해보면 민간은 8곳 중 2곳(축구전용경기장, 문학경기장)에서 확인되었으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7곳 모두 반납액을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V-34〉 위탁사업 집행잔액 반납 사례

내용	직영	위탁운영
그 외수입 (224-06)	2019년 어린이과학관 위탁운영사업 집행잔액	2019년 축구전용경기장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 매 회계연도별로 위탁사업비(또는 위탁금) 금액을 엄격하게 적용하려면 매년 결산시 정산결과에 따른 반납예정액은 해당연도 위탁사업비에서 차감하고(즉 비용을 감액)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추가반영하여야 함. 그러나 공단 등에 위탁하는 경우가 아닌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결산자료를 별도로 입수하여 이를 확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해당연도에는 위탁사업비 지급액을 운영비용으로 반영하고, 다음해에 정산에 따른 반납액 발생(그외수입 224-06)하여도 이를 수익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생각됨

〈표 V-35〉 위탁사업 집행잔액 수익비용 반영

	장점	단점
반납액의 해당연도 비용 반영	- 회계연도 귀속을 적정하게 적용 - 실질 운영비용을 반영하려면 반 납(예정)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	- 공단 등 결산자료를 확인하여 조정 하 는 절차가 필요 - 민간위탁의 경우 자료입수가 곤란 하 여 실제 적용 어려움
반납액의 다음연도 수익 반영	- 공공시설 운영에 관련된 모든 수 익을 포함할 수 있음 - 수익계산을 단순하게 적용할 수 있음	- 전년도에 위탁금 전체를 비용으로 반 영하였는데 반납액을 다음해에 수익 으로 반영하는 것은 혼란을 줌 - 공공시설 운영에 따른 경상적수익 만 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

⑦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운영비용

- 인천시 미추홀도서관의 경우 BTL방식에 따라 건설된 것으로 민간투자에 따른 임대료 지급과 운영비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예산목은 민간 자본이전(402)에 포함된 민간위탁사업비(402-03)²⁵⁾임. 임대료에는 민간투자에 따른 원금과 이자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점이 특징임

25) 공공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금(307-05) 목이 사용됨

- BTL원금은 부채의 상환이고 이자의 경우 비경상비용으로 모두 운영비용과는 무관한 부분임. 다만 운영비의 경우 도서관시설의 운영 및 관리명목으로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비용으로 볼 수 있음. 미추홀도서관은 인천지식정보센터(주)가 사업주체로 직접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미추홀도서관은 인천시의 부서로 편제되어 있으나 세출예산을 보면 청사 등 시설유지관리에 따른 항목을 찾기 어려움. 반면 산하의 청라호수도서관, 영종하늘도서관, 청라국제도서관, 마전도서관 등의 청사유지비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음
- 따라서 미추홀도서관의 운영관리는 약정기간(20년) 중 사업주체인 인천지식정보센터(주)가 담당하는 것으로 보아 민간위탁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다만 도서관의 실제 운영인력인 사서 등 인건비가 직접 편성되어 있어 민간위탁의 범위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표 V-36〉 미추홀도서관의 민간위탁방식

인천지식정보센터(주)의 감사보고서 (2020년) 주석1

(1) 사업의 특성

본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인천광역시(이하 "주무관청")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시행됩니다. 건설기간 중 당사가투자한 민간투자비는 운영기간동안 주무관청이 지급하는 시설임대료와 부속시설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으로 보전받고 있으며, 도서관시설의 운영 및 관리 명목으로 발생하는 운영비 역시 주무관청이 지급하는 운영비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2) 사업기간

본 도서관시설의 완공 후 소유권은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당사는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의 무상사용 기간동안 관리운영권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 운영기간 종료 후에는 본 도서관시설의 사용권 및 관리운영권이 주무관청에 이양됩니다.

제2절 심층분석 사례분석

1. 분석대상 선정

- 본 절에서는 투자심사 결과, 지방재정365의 공시자료 등을 활용하여 심층분석 사례를 선정하여, 향후 운영단계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 첫 번째 사례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이하 LIMAC 타당성 조사) 이후 투자심사를 거쳐 사업이 완료된 사례 중 운영기간이 어느정도 확보된 시설을 선정하고자 함
- 그러나 실제 데이터 검토 결과 2015년부터 실시된 LIMAC 타당성 조사 이후 운영단계에 도달한 사례로 유일하게 울산 문수경기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두 번째 사례는 앞서 지방재정365의 공시자료를 검토하였으나, 실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어떤 기준에 따라 세부자료를 입력하는지 심층면담을 실시한 경우임
- 앞서 인천시 사례를 살펴본 바 심층점검 사례도 인천시 사례 중에서 직영방식, 시설유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총 5개의 시설을 선정함
- 면담일정은 2022년 10 13~14일 이틀간 인천시 재정관리담당관실의 협조를 받아 시설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함

2. LIMAC 타당성 조사 사례(울산 문수경기장)

- LIMAC 타당성 조사를 수행했던 문화체육관광분야 사업 중에 준공 이후 운영 중인 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담당자, 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심층점검을 진행하였음
- 2022년을 기준으로 타당성 조사 이후에 실제 준공된 문화체육시설 사례는 2015년 1차 타당성 조사에 의뢰한 사업인 울산 실내종합체육관 건립사업이 유일함
- 본 사업은 2015년 타당성 조사 수행 이후 2차례 투자심사를 거쳐 준공된 사례이며, 주요 사업내용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상당 부분 변경된 것으로 판단됨

- 당초 울산시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에서 타당성 조사를 거치면서 사업계획이 일부 축소(연면적 20,000㎡ → 18,355㎡)되었으며, 투자심사를 거치면서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불링장 추가함(지하1층 주차장 일부에 불링장으로 설치해 추가 임대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함)
- 이후 울산시에서는 초기 투자비용 절감과 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불링시설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치했으며, 민간투자자는 초기투자비(31억원)을 투자하고 기부채납 후 일정기간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받아 운영할 계획임

〈표 V-37〉 추진과정별 주요 사업내용 변경사항

구분		부지	연면적	총사업비	수입	지출
의뢰서		18,500㎡	20,000㎡	553억원	-	550백만원/년
타당성 조사	검토안	18,500㎡	20,000㎡	670억원	919백만원/년	1,665백만원
	대안		18,355㎡	616억원	-	1,412백만원/년
투자심사(재검토) (2016년 2차)		18,500㎡	18,355㎡	443억원	919백만원/년	550백만원/년
투자심사(조건부) (2016년 3차)		18,500㎡	18,355㎡	443억원	1,167백만원/년	1,508백만원/년
준공		24,075㎡	18,350㎡	571억원	-	-

- 추진과정에서 연면적은 유사하게 유지된 반면, 건축계획으로 보면 투자심사 대비 사업계획이 상당히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음
- 관람석은 4,000석→4,017석, 연면적은 18,355㎡→18,350㎡, 지하주차장 주차 대수는 20대→23대로 일부 증감이 있음
- 당초 지하1층, 지상4층 계획이었으나,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변경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442억원→571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표 V-38〉 문수체육관 시설개요

층별	영역	시설	면적(㎡)	세부시설
전체	연면적		18,349.75	경기장 : 12,325.86 / 생활체육 : 6,023.89
지상 3층	계		2,227.59	
	경기장	관람시설	1,871.66	관람석
		운영시설	60.01	조정실
		유지관리시설	206.16	제트공조실
	공용시설	89.76	계단실, 복도	
지상 2층	계		2,735.16	
	경기장	관람시설	890.86	경기장통로, 어린이보호실, 매점, 수유실
		운영시설	38.28	창고
	공용시설	1,806.02	계단실, 콘코스, 화장실	
지상 1층	계		7,303.77	
	생활 체육	소계	2,161.25	
		생활체육시설	1,508.80	스피닝룸, 에어로빅, 휘트니스, 부상자재활체력단련실
		운영시설	49.19	용기구창고
		유지관리시설	71.37	공조실
		편의시설	148.26	카페
		공용시설	383.63	홀, 안내부속실, 화장실
	경기장	소계	5,142.52	
		경기시설	2,675.69	선수대기실, 샤워실, 탈의실, 방송준비실
		운영시설	644.78	용역원실, 방재실, 관리사무실, MDF실/통신실
		유지관리시설	99.13	공조실
공용시설		1,722.92	계단실, 로비, 복도, 화장실	
지하 1층	계		6,083.23	
	생활 체육	소계	3,862.64	
		생활체육시설	3,013.57	볼링장, 휴게공간, 라켓볼장, 스포츠샵, 샤워실, 탈의실
		운영시설	196.62	운영사무실, 폐기물재활용보관실
		유지관리시설	96.14	공조실
		공용시설	556.31	계단실, 로비, 복도, 화장실
	경기장	소계	2,220.59	
		주차시설	1,221.13	지하주차장
		유지관리시설	973.62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팬룸, ESS실, 가스실
공용시설		25.84	계단실	

자료: 울산시설공단 홈페이지(<https://www.uic.or.kr/munsu/gym/gym01.do>)

- 문수체육관은 2021년 7월 준공 이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개관하여 운영 중이며 전문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이 모두 있음
- 전문체육시설(실내체육관)과 생활체육시설(헬스장, 필라테스 등)의 출입동선이 아래 그림과 같이 별도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림 V-4] 문수체육관 출입구



- 울산시설공단에서 제출한 문수체육관 운영현황 자료는 다음과 같음
- 2022년부터 헬스장 및 생활체육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7월 실적데이터를 기준으로 2022년 운영비 및 운영수입을 추정함
- 단, 불링장의 경우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별도 운영비, 운영수입, 방문객수는 집계하고 있지 않으며, 불링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 관리비 등은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청구해 징수하고 있음

〈표 V-39〉 문수체육관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운영비			운영수입			
	합계	대행 사업비	자본 예산	합계	대관 수입	생활체육 수입	그 외 수입
2021년 11월~12월	1,094	649	445	101	21	77	3
2022년 1월~7월	2,350	2,316	34	371	39	329	3
2022년 추정결과	4,029	3,970	58	636	67	564	5
타당성조사 (2015 1차)	1,559			919			
투자심사 (2016 3차)	1,508			1,167			

- 최근 정부정책 변경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라 운영 인력이 큰 폭으로 증가(8인→19인)하여 운영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표 V-40〉 문수체육관 방문인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방문인원				
	합계	실내체육관	헬스장	생활체육	라켓볼
2021년 11월~12월	17,661	4,309	6,318	5,500	1,534
2022년 1월~7월	110,135	12,618	56,819	34,864	5,844
2022년 추정결과	188,803	21,631	97,404	59,767	10,018

주: 방문인원의 경우 대관시설인 실내체육관은 이용자가 제출한 사용신청서 인원 기준이며, 강습시설(헬스장, 생활체육, 라켓볼)은 강습 등록인원을 기준으로 사용일 환산함(헬스장 주 5일 등)

- 방문인원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단계와 비교하려고 했으나, 편의 추정방식이 CVM방식으로 각 시설별 수요추정을 하지 않고 실내체육관만을 대상으로 수요추정을 진행한 점, 운영수지 분석을 위해 일부 수입이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 수요를 분석하였으나 검토한 수요의 단위가 다른 점, 사회적 거리두기로 실내체육관 대관이 활성화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직접적으로 비교가 어려운 실정임

- 실내체육관을 일반 개인이 대관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동호회(2022년 기준 1회), 대부분은 단체에서 대관하나, 2022년 1~3월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대관실적이 저조하였음
- 따라서 향후 사업계획/타당성조사 당시부터 성과지표(수요, 수입, 지출 등)가 명확해야 사전/사후 평가 비교가 가능함

3. 인천 심층점검 사례(5개 시설)

- 인천광역시 내 지방재정365에 공개되고 있는 문화·체육시설 중 운영수익과 비용이 예산서와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시설을 추려서 심층점검을 실시함
- 심층점검 대상은 미추홀도서관,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인천문화예술회관, 열우물테니스/스쿼시경기장, 하늘문화센터임

〈표 V-41〉 인천광역시 운영비용 공시자료와 예산편성 비교(2020년 기준)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편성단위	회계	비용	세출예산
1	미추홀도서관	BTL	부서	일반	5,021	12,905
2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직영	세부사업	일반	379	567
3	문화예술회관	직영	부서	일반	8,738	23,993
4	어린이과학관	공단위탁	세부사업	일반	4,756	4,756
5	축구전용경기장	민간위탁	세부사업	일반	2,794	2,794
6	삼산월드체육관	공단위탁	세부사업	일반	4,754	5,121
7	송림체육관	공단위탁	세부사업	일반	3,206	3,501
8	문학박태환수영장	민간위탁	세부사업	일반	3,106	3,965
9	옥련국제사격장	민간위탁	세부사업	일반	1,068	1,179
10	강화고인돌체육관/아시아드BMX경기장	공단위탁	세부사업	일반	1,259	1,294
11	계양체육관/양궁장/국제벨로드롬	공단위탁	세부사업	일반	2,424	2,563
12	남동체육관/력비경기장	민간위탁	세부사업	일반	1,564	1,676
13	문학경기장(야구장 포함)	민간위탁	세부사업	일반	5,604	2,037
14	선학체육관/하키/빙상장	민간위탁	세부사업	일반	928	942
15	송도종합LNG스포츠타운	민간위탁	세부사업	일반	982	1,831
16	열우물테니스/스쿼시경기장	민간위탁	세부사업	일반	3,390	4,026
17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연희크리켓경기장	공단위탁	세부사업	일반	4,467	4,661
18	하늘문화센터	공단위탁	세부사업	공기업	2,900	2,804

- 지방재정365에 직접 데이터를 입력했던 담당자는 순환근무, 업무지정자 부재 등으로 확인이 불가하였음
-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지방재정365 세부데이터와 각 시설의 담당자들의 면담을 통해 시설운영현황을 파악함

가. 미추홀도서관

- 인천 미추홀도서관(지역대표 도서관)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사업방식 : BTL)으로 추진되어 2008년 준공된 시설임
- BTL로 추진된 시설로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보안(경비, 주차), 시설(시설, 전기), 미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도서관 운영인력(사서, 행정 등)은 직접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음
- 미추홀도서관은 시설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 미추홀도서관 부서로 예산을 편성하되, 미추홀도서관장이 본관과 분관 4개소(청라호수, 청라국제, 영종하늘, 미전)를 관장하고 있음

〈표 V-42〉 미추홀도서관 운영비용/운영수익 현황(2020년 기준)

(단위 : 백만원/년)

운영비용				운영수익				
계	인건비	유지관리비	기타	계	입장료	대관료	임대료	기타
5,021	1,796	3,225	-	18	-	-	5	13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지방재정365 세부데이터와 심층점검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음
- 미추홀도서관은 부서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운영인력 기준으로 안분해 적용한 것으로 보이며, 유지관리비는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임대료, 운영비와 도서구입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임
- 민간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임대료는 당초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총사업비에 해당 되는 금액으로 실질적인 운영비항목으로는 보기 어려움

- 미추홀 도서관에서는 별도로 방문자를 카운팅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도서대출권수를 기준으로 연간 이용인원을 환산함
- 미추홀도서관은 인천광역시의 별도 사업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조직내 인건비가 함께 예산편성되고 있는 점이 특징임
- 2020년 기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과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나누어져 있으며 사업예산은 도서구입비, 기타사업예산가 포함되어 있음

〈표 V-43〉 미추홀도서관 세출예산(2020년 기준)

(단위 : 백만원)

계	세출예산					
	사업예산			행정운영경비		
	소계	도서구입비	기타사업예산	소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12,905	7,015	1,149	5,866	5,890	5,506	384

자료: 미추홀도서관 일반현황(인천광역시 2022.7.29.)

- 도서구입비가 포함된 사업예산은 총 7,015백만원으로 이 중 본관에 속하는 미추홀도서관의 예산은 5,022백만원임. 이 금액은 지방재정365의 운영비용 공개금액인 5,021백만원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임

〈표 V-44〉 미추홀도서관 사업예산 구분(2020년 기준)

(단위 : 백만원/년)

계	본관		분관				
	미추홀	송도	분관공통	청라호수	영종하늘	청라국제	마전
7,015	5,022	79	29	507	412	384	582

- 분석에 따른 특징은 다음과 같음
- 공공시설이 조직(부서)로 운영되는 경우 하위에 다른 시설이 함께 포함될 수 있음. 이 경우 운영비용 공개의 취지를 생각할 때 공개대상 개별시설에 대한 것만을 구분하기 위해 비용구분 작업이 필요하게 됨. 미추홀도서관의 경우 분관은 모두 제외하였으며, 송도국제기구도서관의 경우 조직상 본관에 속하나 별도 시설로 보아 제외하였음

-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가 공개자료 금액에는 누락됨. 인건비 등은 운영비용에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인건비를 반영이 어렵다면 근무인원²⁶⁾ 등 합리적 기준으로 안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기타사업예산에는 미추홀도서관의 BTL과 관련된 임대료(1,530백만원) 및 운영비(1,324백만원) 등 2,854백만원이 포함됨. 그러나 임대료는 BTL에 따른 원리금²⁷⁾ 상황에 따른 것으로 운영비용으로 볼 수 없음
- 민간사업자가 시설, 미화, 보안 등 업무를 담당하고 사서, 행정 등은 인천광역시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고 있음 도서관 운영의 본질적 부분은 직영형식을 취하고 있어 지방재정³⁶⁵ 공개시 운영방식을 BTL로 선정한 부분은 오해가 있을 수 있음
- 도서관장, 운영지원부 등 본관에 속하는 조직이나 분관 및 분관을 포함한 도서관 전체에 대한 공통적인 지원업무와 관련된 인건비 및 경비 등은 배부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실무적인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나.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의 경우도 방문객 수를 체크하는 시스템은 별도로 없고, 안내데스크의 안내 직원이 직접 방문객 수를 체크함

〈표 V-45〉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운영비용/운영수익 현황(2020년 기준)

(단위 : 백만원)

운영비용				운영수익				
계	인건비	유지관리비	기타	계	입장료	대관료	임대료	기타
379	239	141	-	2	-	-	-	2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 분석에 따른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예산액과 운영비용 공개금액이 다른 것에 대한 명확한 원인은 파악할 수 없으나 예산과 실제집행액의 차이로 추정됨

26) 22.7.29 기준 현원 53명 중 본관인원은 27명이며 이 중 송도국제기구도서관 사서 1인을 제외하면 미추홀도서관 인원은 26명으로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함

27) 원금과 이자. 원금을 갚는 것은 회계상으로 보면 부채(장기미지급금)의 상환에 해당

- 예산이 본청내 문화유산과의 통계목이하의 “설정”으로 편성되어 있음. 따라서 사업으로 편성된 경우와 달리 전수교육관 관련 경비 예산액을 쉽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특히 인건비는 본청 전체의 것이 인사과에서 일괄 편성하고 있어 전수교육관 직접 인건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함
- 전수교육관과 관련된 조직은 문화유산과(유산계승팀)임. 조직은 팀장1인, 팀원으로 공무원 5인, 공무직 1인으로 총 7명이며 실제 근무장소는 전수교육관임. 업무분장을 보면 전수교육관 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인원은 공무원 2인으로 판단됨. 주된 업무가 전수교육관과 관련되지 않거나 단순히 관리감독 성격의 인력 등은 고려하지 않았음. 팀장은 공통업무 성격으로 배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나 실무적인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표 V-46〉 문화유산관(유산계승팀) 인원 및 업무분장(2022년 기준)

	구분	전수교육관 관련업무	기타업무
1	팀장	업무총괄	
2	공무원	설치조례 등 관리	무형문화재 보전조례 등 전통문화예술 대축제, 탈춤교육관 위탁운영 등
3	공무원	-	무형문화재 전승자 등 관리 무형문화재 조사 및 영상기록화
4	공무원	전수교육관 전기, 통신설비관리 전수교육관 공연장 운영지원 전수교육관 공무직 등 관리 전수교육관 시설관리(기계, 소방, 승강기, 무인경비 등)	-
5	공무원	전수교육관 활성화 국비지원	무형문화재 정기공연 등 모니터링 활성화 공연프로그램 운영, 전통민속 전수학교 운영 등
6	공무원	전수교육관 시설관리(건축, 토목, 조경 등) 전수교육관 부대시설 및 공연장 운영지원, 전수교육관 부대시설 대관 관련, 입주단체 공공요금 부과,	공유재산 물품관리, 시설운영 자재관리 시설방역관리, 팀 서무 등
7	공무직	전수교육관 안내	학생교육 체험예약관리, 보유자선생님 수업 및 작품판매 관련

다. 문화예술회관

-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지방재정365의 운영비용과 세출예산상의 비용 간의 차이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천시립예술단의 인건비의 포함유무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이며, 지방재정365 상 2019년 운영비용은 인천시립예술단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연간 운영비용이 25,093백만원에 달함
- 2020년은 COVID-19로 인해 운영수익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보임

〈표 V-47〉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용/운영수익 현황(2019~2020년 기준)

(단위 : 백만원/년)

구분	운영비용				운영수익				
	계	인건비	유지관리비	기타	계	입장료	대관료	임대료	기타
2020	8,738	3,020	5,718	-	436	54	107	49	226
2019	25,093	17,561	7,532	-	1,666	716	416	49	485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의 경우에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예술단원의 인건비 포함여부에 따라 운영비용에 큰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예술회관은 인천광역시의 별도 사업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조직내 인건비가 함께 예산편성되고 있는 점이 특징임
- 분석에 따른 특징은 다음과 같음
 - 회관을 인천광역시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예산액과 운영비용 공개금액에 차이가 있음. 담당자와 인터뷰 결과 추경예산 23,993백만원 중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301-10: 예산목) 15,288백만원을 차감하면 약 8,705백만원으로 지방재정365의 공개금액 8,738백만원과 유사함. 즉 예술단인건비가 운영비용에는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예산서를 보면 공연예산 외에 시설관리예산도 많이 포함되어 있음. 특히 시설비(631백만원) 및 자산취득비(613백만원)가 운영비용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시설물의 청소, 조경관리는 위탁²⁸⁾하고 있음. 직영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위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임

- 문화예술회관에서 직접 기획하는 공연이 있고, 민간에 대관료를 받아서 외부에서 진행하는 공연이 있는데, 현재 지방재정365에 입력하는 연간 이용인원은 기획 공연만 해당됨
- 문화예술회관에서 민간으로부터 대관료를 받고 외부에서 공연하는 경우에는 방문객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통계에는 반영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라. 열우물테니스/스쿼시경기장

- 열우물테니스/스쿼시경기장은 체육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위탁운영비를 지급하고 있고, 인천시 체육진흥과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만 하고 있음

〈표 V-48〉 열우물테니스/스쿼시경기장 운영비용/운영수익 현황(2020년 기준)

(단위 : 백만원/년)

운영비용				운영수익				
계	인건비	유지관리비	기타	계	입장료	대관료	임대료	기타
3,390	1,198	2,191	-	577	329	-	240	8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 분석에 따른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예산액과 운영비용 공개금액에 대한 명확한 원인은 파악할 수 없으나 예산과 실제집행액의 차이로 추정됨
 - 예산상 1개의 예산목(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음. 따라서 운영비용 입력시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등 비목구분은 위탁사업비 집행액을 기준으로 안분되는 것으로 판단됨
 - 시설에 대한 대규모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위탁금(307-05)과 별도로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대규모 개보수비를 회계상 자본적지출로 본다면 이를 제외하고 순수한 위탁비만을 운영비용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연간 이용인원의 경우 울산 생활체육시설과 동일하게 프로그램료 강습등록인원의 사용일 기준으로 환산해서 적용하고 있음

28)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308-10): 1,895백만원

마. 하늘문화센터

- 하늘문화센터는 인천시설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에서 위탁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음
- 열우물테니스/스쿼시경기장과 동일하게 인천시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음

〈표 V-49〉 하늘문화센터 운영비용/운영수익 현황(2020년 기준)

(단위 : 백만원)

운영비용				운영수익				
계	인건비	유지관리비	기타	계	입장료	대관료	임대료	기타
2,900	1,194	1,509	197	83	68	1	9	2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 분석에 따른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다른 시설들이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 되는 것과 달리 공기업특별회계(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음
 - 예산액과 운영비용 공개금액에 대한 명확한 원인은 파악할 수 없으나 예산과 실제집행액의 차이로 추정됨
 - 운영비용 입력시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등 비목구분은 위탁사업비 집행액을 기준으로 안분되는 것으로 판단됨
 - 예산으로 보면 경상적대행사업비와 함께 자본적대행사업비도 편성되어 있음. 인터뷰 결과 대수선이 발생하는 경우 민간위탁과 달리 자본적대행사업비로 집행된다고 설명함
 -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이 편성되어 있음(기타영업외수익). 그러나 운영수익 공개자료에는 이를 제외하고 산정하였음
- 연간 이용인원은 울산과 동일한 형태로 프로그램별 강습등록인원의 사용일 기준, 대관시설의 경우 대관신청서상 인원으로 산정하고 있음

4. 소결

- LIMAC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투자심사를 통과한 이후 준공된 문수체육관과 인천시 5개 시설을 대상으로 심층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투자심사 단계에서 작성된 운영계획(운영수입, 운영비 등)을 기준으로 실제 운영되는 자료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 담당자들의 의견도 공공건축물로 추진시 심의과정, 민원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고, 정부 정책 변경(비정규직 정규직화), 외적요인(코로나 등)으로 인해 투자심사 당시 자료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었음
 - 문수체육관의 경우 투자심사 당시 불링장을 추가하여 운영수입을 반영하였으나, 실제로는 민간투자를 유치해 초기투자비용을 감소시켰으나, 별도 운영수입이 집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각 시설별 운영주체 및 방식, 예산편성기준 등에 따라 운영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이 달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함
 - BTL의 경우 투자비에 해당되는 임대료가 운영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예술단원의 인건비 포함여부에 따라 운영비용에 큰 차이가 발생함
 - 또한, 시설을 민간 혹은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이 구분가능하나, 부서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안분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도 향후 운영단계에 대한 사후관리방안을 고려해서 수요 추정을 하지 않을 경우 직접적으로 비교가 어렵다는 점도 존재함
 - LIMAC 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 분석을 위한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서 CVM 방법론을 적용하다 보니, 전체 시설에 대한 수요 추정 결과는 없고, 실내체육관 시설에 대해서만 장래 방문객 수를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체육시설의 방문객수 자료가 공개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365의 공공시설 운영현황자료가 유일한 실정이나, 실제 방문인원보다 과다 집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방재정365에서 공개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연간 이용인원 자료는 방문인원을

추정하는 방식과 유사한 방식(대관시설은 시설이용자의 사용신청서, 강습시설은 사용일 기준 환산)으로 취합하고 있어, 실제 방문인원보다 과다 집계될 가능성이 존재함

- 헬스장은 주 5일 기준, 기타 프로그램은 진행(월수금 / 화목 등)일수를 기준으로 환산함

제3절 운영단계 이력관리를 위한 평가기준 모색

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설정

가. 평가항목

- 운영단계의 평가항목은 사전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와 비교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이되, 최대한 정량화하여 검토가능한 항목이어야 함
- 본 지침연구의 대상인 문화체육시설의 경우 투자심사의뢰서상 공공시설 운영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전계획에 대한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운영수입 및 운영비용 산출근거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내용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비교검토가 필요함
- 이외에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해 수요예측과 편익분석이 수행된 경우, 사후적으로 관련 내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 외 사항으로는 앞서 선행연구 및 평가사례에서 살펴본 요인 중 접근성, 만족도 등과 같은 요인에 대해 검토가 가능하나, 사전단계 대비 비교의 관점으로 수행될 필요는 없는 항목인 것으로 보임
- 본 지침연구에서는 현 상황에서 구득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 예정으로, 지방재정365의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시자료와 그 외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등의 자료에서 구득가능한 평가자료를 활용하고자 함

나. 평가기준

1) 투자심사 기준 평가

- 투자심사 당시 계획과 평가가 가능한지 검토하기 위해, 2008년부터 중앙투자심사에 통과한 사업의 운영단계 자료를 수집함
- 운영단계 자료는 지방재정365의 2016~2020년 『공공시설 운영현황』과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자료를 활용함

- 상기 자료 매칭 결과,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정보를 바탕으로 공공시설 완공 이전에 예측되었던 사업비,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과 완공 이후의 실제 수치를 대략적으로 비교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부산도서관의 중앙투자심사상에는 사업비가 500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지방재정365에서는 건립비용이 약 520억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음
- 우선 매칭 결과 지방재정365에 등재된 공공시설과 투자심사를 매칭한 결과 상당수는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공공시설 이력과 매칭되지 않았음
- 약 970개에 이르는 지방재정 365 등재 공공시설 중 약 82개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만이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관련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에 따라 지방재정365에 등재된 공공시설의 경우에 건축 이전 예상되었던 각종 수치와 현재의 수치를 비교하는 작업이 데이터 부족으로 인하여 쉽지 않은 상황임
- 이는 현재 지방재정365의 데이터만으로는 투자심사 이후 공공시설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함
- 지방재정365의 대안으로서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량, 청소년수련시설 세부현황, 전국 공공 체육시설 데이터도 검토하였으나 연간 이용자수, 공공시설 운영 및 유지에 투입되는 비용, 공공시설 운영 및 유지에 따른 수익 등이 일관적이고도 충분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심사 이후 사후관리 관련 데이터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존재함
- 또한 매칭이 되더라도 해당시설의 투자심사 의뢰서 검토 결과, 사전계획 및 평가와 운영단계 실제 현황과 비교가 현실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에 한계가 있었음
- 투자심사 의뢰서상에 공공시설 운영계획서의 내용이 상세하지 않아 운영비, 운영수입, 이용자 수 관련 내용과 산출근거가 미비한 경우가 많았음
- 또한 이용자수의 경우 시설이나 프로그램별로 수요의 단위 등 달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움

- 즉 단순 숫자 비교는 가능하나, 수요나 운영비, 운영수입과 관련한 세부내역이 제시되지 않아 사후적으로 환류체계 등을 고려한 분석을 하기에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문화체육시설의 경우 투자심사 기준으로 평가할 시, 완료 시점에 당초 대비 사업규모(연면적 등), 시설용도 및 구성, 사업비 등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음

2) 유사시설 기준 평가

- 유사시설을 기준으로 운영단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유사시설 설정기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선정된 유사시설의 운영실적 기초통계를 기반으로 평균 또는 중간값 등과 비교하여 시설 운영실적을 비교평가할 수 있음
- 유사시설 설정 기준은 첫째, 시설의 유형과 구분이 일치해야 하며, 둘째, 규모가 유사해야 함. 셋째로는 배후수요 측면에서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가 유사하고, 대형시설의 경우에는 지역내 유사시설 공급현황도 경쟁공급 측면에서 수요에 영향에 크므로 확인이 필요함
- 그러나 상기 제시한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유사시설을 선정하고,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이 용이하지는 않음
- 우선 관련 자료 측면에서 샘플 수가 충분하다면 시설 유형, 구분, 지자체 유형 구분, 경쟁시설 현황까지 모두 고려하여 세분화된 평가기준점이 설정될 수 있으나, 현재 가용한 운영현황자료는 지방재정365의 『공공시설 운영현황』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자료임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의 경우 일부 시설은 이용객수, 수입, 비용 등 운영실적 항목 모두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아, 대부분의 시설은 지방재정365의 공시자료가 최대 가용한 자료로 볼 수 있음
- 지방재정365의 자료는 연간 800여건의 시설에 대해서만 자료가 수집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2022년부터는 대상시설 건립비 기준이 상향되며 샘플수가 적어질 것으로 예상됨
- 즉 상기 제시한 유사시설 선정기준을 단순화하여 현 시점에서 분석가능한 유사시설 선정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유사시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설정함
- 첫째, 시설유형 및 구분은 지방재정365의 공시자료 기준을 준용하되, 시설구분으로 세분화하여 샘플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유형을 기준으로 유사시설로 설정함
 - 둘째, 규모까지 고려하여 세분화할 경우, 유사시설의 샘플수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초통계 분석시 단위면적당 또는 이용객수 1인당 실적 등을 활용함
 - 셋째, 배후수요가 유사 자치단체를 분류하는 기준은 다양한 기준이 있을 수 있으나, 본 검토에서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세분화할 경우 유사시설 샘플수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사자치단체의 유형은 최대한 단순화하여 적용하고자 함
- 이에 따라 생활SOC 관련하여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현황 자료 및 분석안내서』(2019)에 제시된 지역유형을 참고함

〈표 V-50〉 기초생활인프라 공급계획시 인구밀도 구분

밀도	도시구분	인구규모
고밀	대도시	50만 이상
중밀	중소도시	10만 이상
저밀	소도시, 농촌	10만 이하

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현황 자료 및 분석안내서』(2019)

2. 유사시설 비교를 위한 통계분석 결과

- 유사시설과의 비교를 위해 지방재정365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사업유형 및 지역유형을 고려한 평가기준 실적치를 제시하고자 함
- 2020년도의 통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왜곡된 수치라는 점을 고려하여 2016~2019년도 지방재정365 내 『공공시설 운영현황』을 검토하기로 함
- 공공시설 소재지의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고밀도 지역으로, 공공시설 소재지의 인구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중밀도 지역으로, 공공시설 소재지의 인구가 10만 명 이하인 경우에는 저밀도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또한 운영형태(직영, 위탁, BTL, BTO)별 기초통계 현황도 분석도 실시함

- 사업유형은 지방재정365의 공공시설 운영현황에 대한 2016~2019년 자료를 분석하기에 앞서, 앞서 데이터상의 오류 및 편이를 위해 일부 재분류가 필요한 시설을 조정함
- 시설유형은 유지하되 각 시설유형 내 시설구분을 보다 세분화함
 - 체육시설에는 전국공공체육시설 현황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기타체육시설로 분류된 시설 중 일부를 수정하는 등 시설구분을 일부 조정함
 - 일부(예: 함안 스포츠타운) 시설에는 육상 관련 시설이 없더라도 축구장, 야구장 등 여러 체육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예: 함안 스포츠타운) 육상경기장으로 분류함
 - 이는 육상경기장으로 분류된 대부분의 시설이 다목적 종합운동장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바, 육상시설이 없더라도 다목적 종합운동장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에는 육상경기장과 동일한 성격의 체육시설인 것으로 구분하기 위함임
 - 또한 수영장은 실내에 있으며 다른 체육시설을 갖춘 체육관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여 체육관으로 재분류하였으나 단독 수영장의 경우에는 수영장으로 분류함
 - 시설구분 중 테니스장은 테니스 배드민턴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는데 배드민턴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공공시설을 테니스장과 함께 분류하기 위함임
- 또한 체육시설의 목적에 따라 다목적 체육시설인지, 단일목적 체육시설인지에 관해서도 구분을 시도함
- 이는 체육시설의 경우, 단일 목적을 위한 경기장(예: 야구장, 조정카누장 등)은 대상 공공시설의 수가 적어서 개별 시설구분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하기 어려웠던 점을 해결하기 위함
- 문화시설 및 복지시설에도 기타문화시설과 기타복지시설이라는 시설구분을 두어 기존의 시설구분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공공시설을 분류함
- 기타시설의 경우 상이한 성격의 공공시설을 보다 용이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복합시설, 관광시설, 산업진흥, 기숙사, 환경 등의 시설구분을 두어 재분류함

〈표 V-51〉 공공시설 재분류 기준

시설유형	시설구분	내용
체육시설	육상경기장	전국공공체육시설 현황의 육상경기장 정의에 따라 종합운동장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체육시설을 육상경기장으로 분류하였으며, 육상트랙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야외 종합운동장으로서의 성격을 갖춘 체육시설은 육상경기장으로 분류
	체육관	다목적 실내 체육관
	체육공원	다목적 야외 체육공원
	단일 체육시설	단일종목 전용 체육시설 예시: 축구장, 야구장, 수영장, 롤러스케이팅장, 테니스배드민턴장, 빙상장, 사격장, 승마장, 사이클경기장, 양궁장, 요트장, 조정카누장
	기타체육시설	위의 시설 분류에 포함되기 어려운 체육시설 예시: F1국제자동차경주장
문화시설	공립도서관	지방재정 365의 분류와 동일
	문화예술회관	지방재정 365의 분류와 동일
	박물관	지방재정 365의 분류와 동일
	미술관	지방재정 365의 분류와 동일
	과학관	지방재정 365의 분류와 동일
	청소년수련회관	지방재정 365의 분류와 동일
	기타문화시설	문화시설로서의 성격을 가지지만 위의 분류에 포함되기 어려운 경우 예시: 안전체험관, 평생학습관
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지방재정 365의 분류와 동일
	기타복지시설	복지시설로서의 성격을 가지지만 종합사회복지관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예시: 요양병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기타시설	복합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시설로 활용 가능한 경우
	관광시설	관광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공시설
	교통회관	예시: 수원시녹색교통회관
	기숙사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을 위하여 설립한 기숙사 등
	산업진흥	특정 산업분야 등 산업체를 지원하는 성격을 가지는 공공시설
	청사	공공청사
	환경	청결한 공공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 예시: 공공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타시설	기타시설 중 위의 분류에 포함되기 어려운 경우 예시: 주차빌딩, 공원사업소 등

- 2016년~2019년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할 때 연간 이용자수, 순수익, 비용, 수익,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 운영수지비율('수익/비용'을 의미)의 최대값, 최소값, 중위값 및 평균값은 다음과 같음
- 운영수지 비율의 중위값과 평균값을 비교할 때 대체로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여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 공공시설의 일반적인 현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V-52〉 2016~2019년도 지방재정365의 『공공시설 운영현황』의 기초통계 현황

분석 항목	최대값	최소값	중위값	평균값
연간 이용자수(명)	11,739,138	15	134,244	296,602
순수익(백만원)	16,967	-58,262	-597	-1,080
비용(백만원)	58,265	1	1,193	2,151
수익(백만원)	46,839	0	193	1,071
건물면적(㎡)	648,715	33	7,022	12,099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명)	2041.84	0.01	17.68	45.32
운영수지 비율	8.58	0.00	0.21	0.39

- 2016년~2019년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할 때 지역구분별 연간 이용자수, 순수익, 비용, 수익,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의 최대값, 최소값, 중위값 및 평균값은 다음과 같음
- 저밀도 지역이 중밀도 또는 고밀도 지역에 비하여 건물 면적당 연간 이용자수의 최대값, 최소값, 중위값 및 평균값이 모두 낮아 예상대로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공공시설의 수요가 더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하지만 순수익 측면에서는 저밀도 지역의 공공시설이 중밀도 또는 고밀도 지역의 공공시설에 비하여 중위값 및 평균값을 기준으로 할 때 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님
- 이는 고밀도 또는 중밀도 지역의 공공시설이 저밀도 지역의 공공시설에 비하여 수익 측면에서 중위값 및 평균값이 높지만 비용 측면에서 중위값 및 평균값이 높은 정도가 더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표 V-53〉 2016~2019년도 지방재정365 『공공시설 운영현황』의 지역구분별 기초통계 현황

구분	분석 항목	최대값	최소값	중위값	평균값
고밀도	연간 이용자수(명)	10,009,000	500	254,674	443,941
	순수익(백만원)	16,967	-23,427	-926	-1,316
	비용(백만원)	33,229	6	1,972	2,943
	수익(백만원)	36,253	0	493	1,627
	건물면적(㎡)	113,663	110	8,525	13,895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명)	638.30	0.08	28.76	52.95
	운영수지 비율	7.18	0.00	0.31	0.45
중밀도	연간 이용자수(명)	11,739,138	300	145,988	306,727
	순수익(백만원)	9,387	-27,562	-613	-1,113
	비용(백만원)	43,726	2	1,327	2,269
	수익(백만원)	46,839	0	290	1,154
	건물면적(㎡)	648,715	33	7,371	13,067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명)	2,041.84	0.06	18.45	51.26
	운영수지 비율	7.35	0.00	0.28	0.44
저밀도	연간 이용자수(명)	3,319,292	15	54,667	113,215
	순수익(백만원)	12,203	-58,262	-361	-749
	비용(백만원)	58,265	1	496	1,030
	수익(백만원)	13,812	0	41	283
	건물면적(㎡)	151,746	261	5,437	8,057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명)	429.63	0.01	10.58	24.29
	운영수지 비율	8.58	0.00	0.08	0.21

□ 2016년~2019년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할 때 운영형태별 연간 이용자수, 순수익, 비용, 수익,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의 최대값, 최소값, 중위값 및 평균값은 다음과 같음

- 순수익과 운영수지 비율의 중위값 및 평균값 측면에서 직영 및 BTL에 비하여 위탁이 상당히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
- 비용의 중위값은 BTL>위탁>직영이고, 평균값은 위탁>BTL>직영이기 때문에 위탁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 비용이 낮기 때문에 BTL 및 직영에 비하여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연간 이용자수의 중위값은 위탁>BTL>직영, 연간 이용자수의 평균값은 위탁>직영>BTL이며 수익의 중위값은 위탁>BTL>직영, 수익의 평균값은 위탁>직영>BTL로서 수요가 많고 수익성도 어느정도 기대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위탁 형태로 운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V-54〉 2016~2019년도 지방재정365 『공공시설 운영현황』의 운영형태별 기초통계 현황

구분	분석 항목	최대값	최소값	중위값	평균값
직영	연간 이용자수(명)	2,213,000	15	102,061	209,248
	순수익(백만원)	12,203	-58,262	-639	-1,325
	비용(백만원)	58,265	3	833	1,624
	수익(백만원)	13,812	0	55	299
	건물면적(㎡)	151,746	98	6,421	9,871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명)	1,649.87	0.01	14.80	33.63
	운영수지 비율	8.58	0.00	0.07	0.18
위탁	연간 이용자수(명)	11,739,138	220	189,783	383,796
	순수익(백만원)	16,967	-18,944	-523	-825
	비용(백만원)	43,726	1	1,702	2,663
	수익(백만원)	46,839	0	786	1,835
	건물면적(㎡)	648,715	33	7,726	14,281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명)	2,041.84	0.05	21.82	57.36
	운영수지 비율	7.35	0.00	0.51	0.59
BTL	연간 이용자수(명)	615,882	4,700	143,315	170,598
	순수익(백만원)	960	-4,892	-1,654	-1,591
	비용(백만원)	4,937	375	1,806	1,875
	수익(백만원)	2,092	0	147	284
	건물면적(㎡)	24,493	2,172	7,807	10,076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명)	82.21	0.25	18.22	22.42
	운영수지 비율	1.85	0.00	0.10	0.18

□ 2016년~2019년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할 때 시설유형별 연간 이용자수, 순수익, 비용, 수익,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의 최대값, 최소값, 중위값 및 평균값은 다음과 같음

- 시설유형 중 연간 이용자수의 평균값이 가장 높은 시설유형은 문화시설이었으며 연간 이용자수의 중위값이 가장 높은 시설유형은 복지시설임
- 순수익의 평균값 및 중위값이 가장 낮은 시설유형은 문화시설인 것으로 드러남

- 시설당 운영수지비율 역시 문화시설에서 평균 및 중위값이 가장 낮음
- 이는 문화시설이 다른 시설유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용은 높은 데 비하여 수익은 낮기 때문으로 판단됨
 - 특히 문화시설 중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의 경우 건설 및 유지비용은 상당히 높지만 이용자들로부터의 수익은 거의 기대할 수 없음

〈표 V-55〉 2016~2019년도 지방재정365 『공공시설 운영현황』의 시설유형별 기초통계 현황

구분	분석 항목	최대값	최소값	중위값	평균값
체육 시설	연간 이용자수(명)	10,009,000	500	96,210	250,288
	순수익(백만원)	16,967	-20,400	-332	-569
	비용(백만원)	33,229	2	909	1,723
	수익(백만원)	36,253	0	257	1,152
	건물면적(㎡)	166,515	33	7,480	14,835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명)	2,041.84	0.06	12.48	45.33
	운영수지 비율	7.18	0.00	0.38	0.48
문화 시설	연간 이용자수(명)	11,739,138	300	159,332	344,253
	순수익(백만원)	3,113	-27,562	-942	-1,580
	비용(백만원)	43,726	1	1,387	2,584
	수익(백만원)	46,839	0	137	1,005
	건물면적(㎡)	648,715	455	6,778	10,510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명)	1,649.87	0.08	20.89	48.08
	운영수지 비율	6.00	0.00	0.11	0.27
복지 시설	연간 이용자수(명)	1,459,953	220	219,844	307,396
	순수익(백만원)	1,306	-7,853	-317	-612
	비용(백만원)	10,403	107	1,498	1,794
	수익(백만원)	5,901	0	673	1,181
	건물면적(㎡)	18,686	555	7,016	8,290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명)	165.27	0.05	33.49	36.95
	운영수지 비율	2.22	0.00	0.31	0.55
기타 시설	연간 이용자수(명)	2,100,000	15	140,960	267,471
	순수익(백만원)	12,203	-58,262	-602	-1,038
	비용(백만원)	58,265	3	1,190	2,050
	수익(백만원)	14,956	0	425	1,012
	건물면적(㎡)	140,995	98	6,841	10,083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명)	331.45	0.01	22.12	36.99
	운영수지 비율	8.58	0.00	0.35	0.50

- 한편 각 시설 유형 내 시설구분에 따른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우선 시설구분 중 시설 개수가 부족하여 통계분석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
 -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관의 연간이용자수 중위값 및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체육관의 수요가 체육시설 중에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체육공원은 건물면적이 다른 시설구분에 비하여 꽤 작은 것으로 나타나 건물면적당 연간이용자수의 중위값 및 평균은 체육공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운영수지비율 측면에서는 체육관과 단일목적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구분에 비하여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드러남

〈표 V-56〉 2016~2019년도 체육시설 현황

구분	분석 항목	육상경기장	체육공원	체육관	단일목적 체육시설
연간 이용자수(명)	중위값	73,731	46,000	121,225	97,849
	평균	259,643	53,193	260,141	247,441
순수익(백만원)	중위값	-350	-88	-366	-287
	평균	-830	-359	-575	-164
비용(백만원)	중위값	540	127	1,139	1,061
	평균	1,602	402	1,550	2,755
수익(백만원)	중위값	34	20	567	500
	평균	770	43	972	2,590
건물면적(㎡)	중위값	9,976	414	6,864	11,051
	평균	21,065	685	9,774	22,534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명)	중위값	8.65	89.20	15.34	9.55
	평균	39.13	391.60	31.53	36.33
운영수지 비율	중위값	0.09	0.12	0.50	0.53
	평균	0.25	0.38	0.53	0.72
시설 개수		92	13	189	56

- 문화시설의 경우 공립도서관과 미술관이 다른 시설구분에 비하여 운영수지 비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는데 공립도서관의 경우 수익이 다른 시설구분에 비하여 낮고, 미술관의 경우 비용이 다른 시설구분에 비하여 높기 때문임
- 한편 공립도서관의 경우 연간 이용자수 및 건물면적당 연간이용자수에서 다른 유형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수익성은 가장 낮을지언정 지역사회로부터의 수요는 가장 높은 시설이라 볼 수 있음

〈표 V-57〉 2016~2019년도 문화시설 현황

구분	분석 항목	공립 도서관	문예 회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청소년 수련 회관	기타 문화 시설
연간 이용자수(명)	중위값	531,900	96,511	119,756	194,080	150,316	434,462	93,188
	평균	675,845	258,926	210,854	317,974	275,403	467,900	137,979
순수익 (백만원)	중위값	-1,403	-917	-688	-2,775	-704	-292	-672
	평균	-1,817	-1,851	-1,134	-3,685	-1,217	-767	-924
비용(백만원)	중위값	1,464	1,532	952	3,190	959	2,520	927
	평균	1,903	3,637	1,532	4,019	1,438	2,528	1,345
수익(백만원)	중위값	30	256	73	170	164	1,268	88
	평균	86	1,784	403	333	237	1,761	421
건물면적(m ²)	중위값	6,459	8,519	5,101	9,661	6,345	7,252	6,222
	평균	7,093	13,210	6,751	11,075	6,711	17,438	7,301
건물면적(m ²)당 연간 이용자수(명)	중위값	81.36	10.26	22.66	22.01	33.50	54.19	17.57
	평균	105.86	18.14	51.88	33.04	38.12	63.66	25.79
운영수지 비율	중위값	0.02	0.17	0.09	0.07	0.19	0.81	0.25
	평균	0.04	0.31	0.23	0.10	0.18	0.67	0.40
시설 개수		76	142	91	13	12	38	20

- 복지시설의 경우 365내 해당 시설 개수가 다른 시설유형에 비하여 부족하고, 지방재정 365에서 제시한 시설구분 역시 종합사회복지관과 기타복지시설로 나뉘 뿐이어서 다른 시설유형에 비하여 통계분석에 한계가 있으나 기초통계분석 수치는 아래와 같음

〈표 V-58〉 2016~2019년도 복지시설 현황

구분	분석 항목	종합사회복지관
연간 이용자수(명)	중위값	231,530
	평균	315,411
순수익(백만원)	중위값	-305
	평균	-603
비용(백만원)	중위값	1,519
	평균	1,817
수익(백만원)	중위값	703
	평균	1,214
건물면적(m ²)	중위값	7,090
	평균	8,325
건물면적(m ²)당 연간 이용자수(명)	중위값	33.53
	평균	37.58
운영수지 비율	중위값	0.34
	평균	0.56
시설 개수		35

- 기타시설 중 복합시설은 체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적으로 갖추어진 시설로서 관광시설에 비하여 연간 이용자수는 많지만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의 중위값은 두 시설구분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운영수지 비율의 중위값과 평균값 역시 두 시설구분이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설구분이 수익성이 더 좋다고 판단할 수는 없음
 - 다만 순수익의 경우 관광시설이 중위값과 평균값 모두 복합시설에 비하여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표 V-59〉 2016~2019년도 기타시설 현황

구분	분석 항목	복합시설	관광시설
연간 이용자수(명)	중위값	198,437	107,415
	평균	317,665	155,898
순수익(백만원)	중위값	-656	-295
	평균	-923	-613
비용(백만원)	중위값	1,609	550
	평균	2,065	1,359
수익(백만원)	중위값	637	185
	평균	1,142	746
건물면적(m ²)	중위값	8,176	3,277
	평균	11,007	6,699
건물면적(m ²)당 연간 이용자수(명)	중위값	22.68	26.14
	평균	37.09	50.38
운영수지 비율	중위값	0.36	0.31
	평균	0.51	0.48
시설 개수		73	24

- 한편 시설구분별 지역구분과 운영형태를 고려한 통계분석표 부록5에 제시함
 - 실제 유사시설과 비교 시에는 시설유형보다는 시설구분에 따라 유사평가대상을 선정해야 함
 - 운영형태와 지역구분을 동시에 고려하기에는 샘플수가 적기 때문에 운영방식은 별도로 통계분석을 실시함

지방재정투자사업 사후관리방안 개선연구 : 문화체육시설을 중심으로

VI

투자사업의 이력관리 관리범위 확대

제1절 기본방향 및 세부계획

제2절 추진전략

제3절 투자사업 이력관리 시행지침(안)

VI

투자사업의 이력관리 관리범위 확대

- 지방재정투자사업은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1992년부터 자체 또는 상급 기관이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투자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사업의 책임성 강화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운용 중임
- 그러나 현행 이력관리제도는 투자심사에 의뢰한 총사업비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까지만 살펴보기 때문에 공공사업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함
 - 즉 현재는 투자사업 계획 수립시 목표한 사항에 대해 실제 달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어려운 상황임
- 또한 대상사업이 중앙투자심사 및 대규모 자체심사 통과사업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자체심사 사업의 경우 이력관리가 부재한 상황임
- 특히 본 지침연구에서는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 제고 측면에서 현행 투자심사 및 이력관리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국내외 유사제도로부터 향후 투자사업 이력관리 개선 방향을 검토함
- 또한 사업 및 예산부서 공무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 개선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검토함
- 마지막으로 운영단계까지 이력관리를 확대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문화체육시설을 중심으로 기존 운영단계 관리 현황 조사, 인천시 사례를 통한 심층분석, 기존 자료를 기준으로 한 평가 기준을 검토함
- 상기 사항을 종합하여 본 장 제 1절에서는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운영단계까지 확대하기 위한 기본 방향 및 세부계획을 제시하고 제2절에서는 이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전략, 제3절에서는 공공시설에 한하여 운영단계 자료 수집을 위한 세부 작성 지침(안)을 제시하고자 함

제1절 기본방향 및 세부계획

□ 현황 및 문제점

- 당초 투자사업 이력관리의 목적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2 2항에 제시된 바와 같이 완료 후 운영단계까지 관련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사업추진과정을 평가하도록 함
- 그러나 2016년부터 이력관리 제도를 실제 운용하면서 운영단계까지 관리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사업의 성과평가 및 환류가 부재함

□ 이력관리 관리범위 확대 필요성

- 운영단계에 대한 평가는 이력관리 제도를 사업의 전주기적 평가로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환류 과정을 통해 이력관리 결과가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신규 투자사업을 판단하는 데 적극 사용될 수 있음
- 투자사업 이력관리는 궁극적으로는 운영단계까지 포함하여 운용될 필요가 있음
- 또한, 타당성조사 수행 지침 및 투자심사 판단기준 개선에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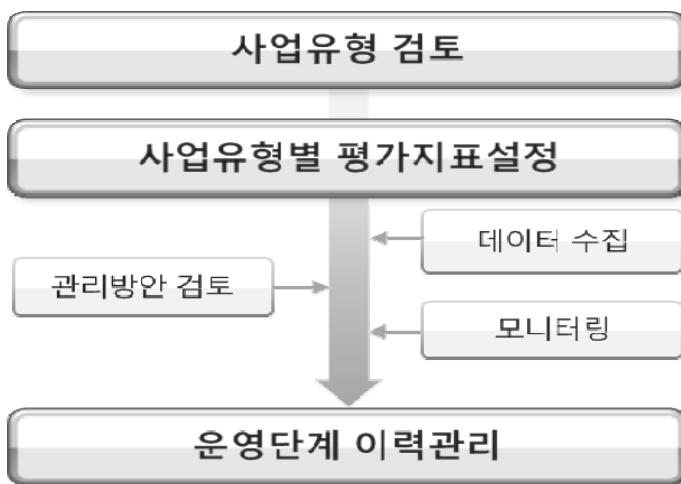
[그림 VI-1] 이력관리 관리범위 확대



□ 이력관리 범위 확대 기본방향

- 투자사업의 성과 평가 및 그 결과를 사전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로 환류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력관리 범위를 운영단계까지 확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함
 - 다만 투자사업에는 다양한 사업 유형이 있으며, 모든 사업이 운영단계 관리가 필요한 것은 아님
 - 모든 사업유형에 대해 일괄적으로 운영단계 이력관리를 수행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시급한 사업유형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시범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운영단계 관리가 시급한 사업유형을 검토하고, 유형별 운영단계 관리를 위한 사업계획 단계부터 운영단계까지의 평가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실질적으로 적용가능하고 계량화 가능한 성과 평가지표를 사업유형별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사업유형별로 의뢰서에 공통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공통성과지표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제시하는 자율성과지표로 구성할 수 있음
 - 성과지표는 사전계획단계에서 성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제 운영단계에서 데이터 수집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지표여야 함
 - 따라서 데이터 수집 및 관리 방안 등 관련 제반 상황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그림 VI-2] 운영단계 이력관리 로드맵



○ 운영단계 평가 기준은 ①투자심사 의뢰서 대비 성과 평가 또는 ②유사사례 대비 우수/미흡 여부 검토할 수 있음

○ 사업유형별 평가기준 설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문화체육시설은 투자심사 의뢰서 기준으로 평가할 시, 현행 이력관리에서 관리하는 완료시의 사업규모, 사업비, 용도 측면에서 평가 가능함. 그러나 운영단계 실적은 투자심사 의뢰서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본 연구를 통해 파악됨
- 문화체육시설 등 유사사례 기준으로 운영단계 평가가 필요한 사업유형은 DB 축적 측면에서 유관기관의 협업이 필요함
- 문화체육시설은 유사사례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나, 현재 구득가능한 운영단계 DB가 부족하므로 관련 DB 수집방안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문화/체육시설 관련 유관기관 및 각 시도연구원 등에서도 일부 축적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으므로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함
- 예: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한국스포츠행정과학원(국민체육센터), 시도연구원(예: 시설별 운영비 산정) 등

□ 이력관리 범위 확대 세부계획

○ 1단계(2023년) : 시범적으로 투자심사 의뢰서 기준으로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유형을 검토하고, 주요 성과지표 검토 및 관련 실적 수집, 평가 등을 수행

- 문화체육시설의 경우 DB 수집 방안 관련 검토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 가능 여부 검토

○ 2단계(2024년~) : 1단계 시범실시를 바탕으로 운영단계 이력관리가 필요한 사업유형을 재검토하여 확대 실시

- 문화체육시설의 경우 DB 수집 방안 관련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단계 이력관리 시범 실시

제2절 추진전략

1. 법적 근거 마련

- 현재 투자사업 이력관리의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2 2~4항에 제시되어 있으며, 간략하게 투자사업 이력관리의 개념과 대상, 행정안전부의 지침 통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향후 이력관리 대상사업의 확대 및 운영단계까지 관리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법적 강제력 확보와 제도적 틀이 형성되어야 함
- 따라서 우선적으로 이력관리 제도의 법적근거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현재 규칙에 제시된 사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차세대 e-호조를 통한 사업정보 추적 및 관리, 전문기관 지정 및 차세대 e-호조를 통한 사업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및 활용 업무 관련사항을 제시함
 - 현재 이력관리 관련 내용은 사후평가와 연계하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2에 제시되어 있으나 규칙에 제시된 사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함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다음 41조의 1로 추가하고 제41조의 2(주요사업 공개 방법)에서 투자사업 이력관리 관련 내용과 연계하여 공개 관련 사항을 구체화할 수 있음
 - 제41조의 2(주요사업 공개 방법) 개정사항 추가 검토 필요함
 - 이력관리 대상 사업으로 규칙에는 중앙투자심사사업과 5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해당 사항을 삭제하여 모든 투자심사가 해당되는 것으로 함
 - 심사주체에 따라 이력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는 점을 시행령에 제시함
 - 또한 이력관리제도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시행지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제3절 참고)
 - 현재 이력관리 관련 내용은 사후평가와 연계하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2에 제시되어 있으나 규칙에 제시된 사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함

- 이때 이력관리 대상 사업으로 규칙에는 중앙투자심사사업과 5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해당 사항을 삭제하여 모든 투자심사가 해당되는 것으로 함
- 또한 이력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력관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때 기존의 이력관리 대상(중앙투자심사 및 대규모 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임하고, 시군구 및 시도 자체심사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이 자체적으로 이력관리 전문기관을 정하도록 함

2. 전문기관 지정 운영

- 이력관리 대상 및 범위 확대에 따라 이력관리 전문기관 지정이 필요하며, 해당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지정하고, 세부적인 업무범위는 행정안전부령(심사규칙)으로 제시하도록 함
 - 제9조의2에서 투자사업 이력관리 내용은 삭제함
 - 제9조의3으로 투자사업 이력관리 전문기관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추가함
- 지방자치단체 자체심사(시도 의뢰심사 포함)의 경우 자체적으로 이력관리를 수행할시 지방자치단체 소속 시도연구원을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업무 지원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를 위해서는 분권화된 시스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각 시도별 연구기관에서 관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기관 지정이 필요할 수 있음
- 또한 총괄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현행과 같이 중앙투자심사 및 대규모 사업에 대한 이력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그 외 이력관리 총괄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이 필요함
 - 다만 총괄 전문기관의 조직·인력의 체계적인 정비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함
- 행정안전부의 주도적인 역할 없이 확대 및 개편된 제도 도입과 정착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초기에는 총괄 전문기관을 운영하여 집중화된 시스템이 필요할 수 있음
 - 이때 총괄기관의 역할이 단순 지침인 매뉴얼 작성, 배포에만 역할을 한정하게 되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이력관리에 대한 메타평가 또는 상위평가를 통해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 역할 수행이 필요함

○ (총괄전문기관 역할)

- ① 중투심 및 대규모 자체심 사업은 직접 이력관리 수행
- ② 500억원 이하 자체심 사업에 대한 이력관리결과 상위평가 또는 메타평가 수행
- ③ 이력관리 총괄기관으로 이력관리정보 축적·관리, 분석·연구 수행
- ④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시도연구원 교육
- ⑤ 운영단계 관리를 위해 분야별 외부전문가 등을 활용한 컨설팅·교육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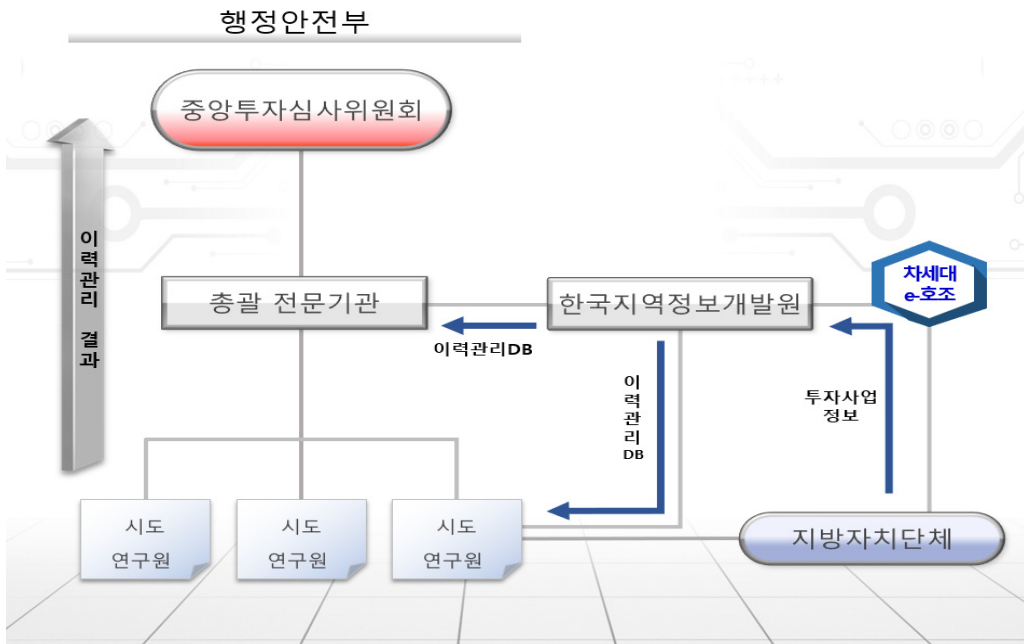
〈표 Ⅵ-1〉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p>시행령 제41조의3(투자심사 이력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사업의 심사, 심사 후 사업 추진 및 추진완료 후 운영의 각 단계별로 그 추진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을 관리(이하 “투자사업 이력관리”라 한다)하고, 사업단계별로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운영손익 등을 평가하여 사업지연 및 중단, 운영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한 사업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법96조의2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함</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사업의 이력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투자사업 이력관리 수행하기 위해 제2항의 정보시스템에 구축된 정보를 접근 및 활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사업의 경우 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앙의뢰심사 대상인 사업의 경우 <p>④ 시·도지사는 자체심사 및 시·군·구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군·구는 자체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⑤ 제1항에 따른 이력관리 대상, 절차 및 방법 등 이력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p> <p>⑥ 제1항의 평가 또는 제2항의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제도 운영에 대하여 조언·권고할 수 있다.</p> <p>규칙 제9조의3(투자사업 이력관리 전문기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 전문기관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총괄하는 전문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영 제41조의3제3항의1호 및 2호의 투자사업 이력관리 ② 영 제41조의3제4항의 이력관리결과 상위평가 또는 메타평가 수행 ③ 이력관리정보 분석·연구 수행 ④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영 제41조의3제4항의 이력관리기관 대상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3. 관련기관 협력관계 구축

- 이력관리제도의 확대 운영을 위해서는 관계기관간 다음과 같은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함
- ① 총괄기관은 이력관리를 위한 제도 연구 및 세부 지침을 마련, 제도 정착을 위해 시도연구원 교육·선도함
- ② 차세대 e-호조를 통한 안정적인 자료 협조를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이력관리 공동수행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 ③ 시도연구원은 총괄기관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긴밀하여 협업하여 자체적으로 이력관리를 수행함
- ④ 이외에 운영단계 관리시 문화체육사업 등 소관 중앙부처에서 성과를 관리하는 시설의 경우 관련 제도와 연계하여 운영단계 컨설팅 및 우수사례 선정 관련 관계기관과 협업함

[그림 VI-3] 이력관리 거버넌스(안)



4. 환류체계 마련

- 투자사업 이력관리 결과는 개별사업의 성과 평가뿐만 아니라 환류체계를 통해 앞으로 실시하게 될 동종 사업의 계획이나 조사, 사전 타당성 평가 등 공공사업 평가 방법 개선 등에 활용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이를 통해 사후관리제도로서 투자사업 이력관리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전 타당성조사와의 비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과거 평가 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제3절 투자사업 이력관리 시행지침(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00조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규칙」 제00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 이후에 실시하는 투자사업 이력관리의 시점, 대상, 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에 통과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단년도 사업이거나 토지매입사업 등 평가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투자심사 통과 이후 면제대상사업 유형을 관리 여부에 대해 결정 필요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사업 이력관리"란 향후 투자사업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투자심사 통과 이후의 사업 추진 전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중단·지연으로 인한 재정손실, 운영손실 과다 등의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사업 전주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준비단계사업: 이력관리 수행 직전년도 투자심사 통과 사업
3. 추진단계사업: 전전년도까지 투자심사 통과 사업
4. 완료단계사업: 전전년도까지 투자심사 통과된 사업중 전년도 말 기준으로 완료된 사업
5. 운영단계: 사업완료년도 이후 운영 기간이 최소 3년인 사업
5. 중점관리사업: 사업비 변동, 민원이나 소송/분쟁이 발생한 사업, 이로 인해 내용 및 규모 변경, 감사원 지적을 받은 사업 등 당초 계획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한 사업
6. 자체관리계획: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재정손실 최소화 및 사업의 기존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관리 계획을 수립
7. "이력관리 전문기관"이라 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00항에 따라 투자사업 이력관리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말한다.

제2장 투자사업 이력관리 내용, 절차 및 방법 등

제4조(이력관리의 내용)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추진/완료단계 이력관리: 투자심사 의뢰 당시 사업내용(공사비, 공사기간, 자원규모 및 구조

- 등)과 추진과정 상의 변경내용간의 비교·분석
2. 운영단계 이력관리: 투자심사 의뢰 당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사업 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사업효과의 비교·분석

제5조(자료제출 시기 및 방법) ①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료제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사업 추진/완료단계: 매년 1회, 상반기 중
 2. 사업 운영단계: 사업 완료후 3년 이내 1회, 매 3년 1회
- ② 지방자치단체는 차세대 e-호조를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이력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이력관리 전문기관은 이력관리 대상이 되는 투자사업을 파악하여 매년 3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이력관리 전문기관은 차세대 e-호조를 통해서 자료입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제6조(자료 작성 기준 및 수집 관리)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추진단계별 작성기준에 따라 자료를 수집 및 입력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완료단계: 전년도 말 기준으로 사업 기본정보 작성
2. 운영단계: 별표에 따라 작성한다.

제3장 투자사업 이력관리 수행주체

제7조(수행주체) ① 차세대 e-호조를 관리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매년 상반기 투자사업 이력관리 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추출하여 이력관리 전문기관에게 제공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입력한 정보의 오류 검증 및 정확성 확인
 2. 누락된 사업정보 확인 및 추가 요청
- ② 이력관리 전문기관이 제출된 자료를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이력관리 전반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체 이력관리 사업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한다.
 2. 중점관리후보사업 선정 및 소명자료를 검토한다.
 3. 최종 중점관리사업 선정 후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자체관리계획을 검토한다.
 4. 차년도 자체관리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5. 운영단계 이력관리 대상사업 분석 후 부실 운영사업 및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6. 부실 운영사업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주관한다.
 7.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다.
- ③ 중앙투자심사 위원회는 투자사업 이력관리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 검토 및 최종 대상사업을 결정한다.

별표. 공공시설 운영단계 작성기준

1. 작성시 유의사항

- ① 작성에 있어 예산자료가 아닌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 ② 비용 및 수익은 세부항목별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특히 금액 단위가 맞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한다.
- ③ 비용 및 수익이 전년도 자료에서 업데이트 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작거나 큰 값이 입력하지 않도록 한다.

2. 계산원칙

- ① 비용과 수익은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과 최종 귀속된 수익을 대상으로 한다.
- ② 민간이 관리주체인 경우(민간위탁 등) 전체 수익과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공공시설 운영관련 세출예산은 조직(실·과·소),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산출기초(설정) 등으로 편성될 수 있으므로, 비용 산정시 공공시설과 관련 없는 항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3. 비용의 구분

- ① 비용은 해당 공공시설의 운영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
- ② 비용은 인건비, 운영관리비, 유지보수비, 기타비용으로 구분한다.

비용	인건비	운영관리비	유지보수비	기타비용
계	xxx	xxx	xxx	xxx

4. 운영방식에 따른 비용 반영

- ① 공공시설 운영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운영하는 직영과 민간 등에 맡기는 위탁으로 나뉘어진다.
- ② 직영은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와 본청의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소에서 여러 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인건비 및 경비 중 개별 공공시설 운영에 관련된 직접인력에 대한 것을 반영한다.
- ③ 본청 내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경우 먼저 부서별 인건비 금액을 파악한 후 제2항을 준용한다
- ④ 위탁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에 맡기는 경우와 민간에 맡기는 경우를 포함한다. 비용은 위수탁 협약 등에 따라 산정된 계약금액을 인건비, 운영관리비, 유지보수비 등 성격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 ⑤ 위탁금액을 다음해에 정산함에 따라 반납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당해연도 운영비용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추가 지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실제 지급한 연도의 위탁사업비(운영비용)로 본다.

5. 공통비와 간접비

- ① 동일 인력이 여러 개의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준(전용면적, 기타 증빙서류 참고)으로 나누어 인건비를 산정한다.

- ② 동일인력이 공공시설 운영업무와 기타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업무의 성격(직접인력에 포함되는지)과 주된 업무에 해당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포함여부를 결정한다.
- ③ 다른 공공시설 등과 공통으로 부과되는 경비는 합리적인 기준(예: 전용면적, 사용량)에 따라 배부한다.

6. 인건비

- ①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 및 공무원이 아닌 자의 인건비를 모두 포함한다.
- ② 인건비는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
- ③ 공공시설 운영에 직접 관련된 인력운영에 따른 비용을 인건비로 반영한다. 대표적으로 관리감독에 따른 인건비는 제외한다.

7. 직접인력의 범위

- ① 공공시설 운영관련 직접인력에는 일반인력과 콘텐츠운영인력이 포함된다. 다만 예술단원은 제외한다.
- ② 일반인력 및 콘텐츠운영인력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일반인력	행정업무 인력, 시설물의 유지보수 인력 (예) 팀장, 일반관리(운영지원 및 부대시설 관리, 입주단체 관리, 시설대관 관리, 공무직 관리 등) 시설물관리(기계, 전기, 건축, 토목, 조경 등), 회원관리, 청소, 안내
콘텐츠 운영인력	특정 프로그램 운영관련 강사비, 공연 및 행사관련 인건비 (예) 스포츠 강습, 문화교양 수업, 문화예술 공연

8. 유지보수비

- ① 유지보수비는 공공시설의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의 기능유지를 위한 비용을 말한다.
- ② 리모델링이 아닌 시설보수 및 수리비용 등 회계결산 상 자산에 대한 수선유지비로 계상한 것은 유지보수비에 포함한다.
- ③ 지방공단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한 경우 리모델링 등 사업비를 위탁사업비에 포함한 경우(공기관 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03-02)에는 이를 유지보수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9. 운영관리비와 기타비용

- ① 운영관리비란 운영비 중 수선유지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말한다.
- ② 각종 사업비 및 행사비용도 운영관리비에 포함한다.
 - ③ 공공시설의 개관에 소요된 도서, 미술품, 서가구입비 등은 건립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용에서 제외한다. 다만 개관 이후에 시설운영을 위해 도서, 미술품, 서가구입비 등 정기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기타비용으로 분류한다.
- ④ BTL방식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임대료 및 이자비용은 원리금 분할상환에 따른 것이므로 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10. 수익의 구분

- ① 수익은 해당 공공시설의 운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직접수익을 말한다.
- ② 수익은 입장료, 대관료, 임대료, 귀속된수익, 기타수익으로 구분한다.

운영수익	입장료	대관료	임대료	귀속된수익	기타수익
계	xxx	xxx	xxx	xxx	xxx

11. 입장료, 대관료, 임대료

- ① 입장료는 세외수입 중 입장료수입(예산목 212-07)을 말하며 관람료 등을 포함한다.
- ② 대관료는 공연이나 행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에게 공공시설을 빌려주는 경우의 수입을 말한다 (관련 예산목: 212-09 기타사용료).
- ③ 임대료는 공공시설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수입으로 대관료를 제외한다 (관련 예산목: 211-02 공유재산임대료).

12. 귀속된 수익

- ① 귀속된 수익은 공공시설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계약(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한 수익을 말한다.
- ② 구체적으로 민간위탁에 따른 예상수입이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초과수입액 또는 업무 효율성 향상, 이자 발생 등으로 비용이 계약금액보다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계약이 된 경우를 말한다.

13. 기타수익

- ① 기타수익은 입장료, 대관료, 임대료, 귀속된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말한다(관련 예산목: 224-07 그외수입).
- ② 공사, 공단, 민간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은 전년도에 지급한 사업비의 반납액이므로 기타수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③ 예술단의 외부출연에 따른 수익금은 기타수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타수익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공연프로그램의 판매수익금
 - 공공시설 재해복구와 관련된 보험금 수령액
 - 공공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불용장비의 매각에 따른 수입금

참 고 문 헌

- _____,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시행 2020. 11. 1.] [행정안전부령 제 200호, 2020. 9. 11., 일부개정].
- _____,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2022.09)
- _____. (2022.9.23.) 「성과부진 사업의 투자규모 감축, 유사사업간 중복 해소 등 22년도 핵심사업평가 결과 최종 보고회 개최」, 보도자료
- _____. (2021.12.16.) 『생활SOC정책 주요성과』 보도자료
- 국무조정실. (2018.10.30.) 『재정분권 추진방안』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 (2022)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 김성수, 황의찬, 유현지, 석재성. (2021) 「생활SOC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추진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 김성주, 전성만. (2021) 「재정분권 전환사업의 실행력 확보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혜란(2012.9.10.) 「영국의 도로사업 사후평가 제도와 시사점」, 국토정책 Brief 398호
- 김홍규 (2020) 「문화·체육분야 생활 SOC 활성화를 위한 운영평가 지표 연구」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 류영아 (2007) 「지방자치단체 메타피어 시스템 구축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2020) 「2021년 국민체육센터 운영 현황조사 결과보고서」
- 박세인 (2013). 유럽의 대형 R&D사업 사전평가 사례분석 -영국의 대형 R&D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박소영(2021) 「영국의 대규모 자본지출 관리제도: 관문심사제도를 중심으로」, 재정이슈포커스 Vol.11
- 박정수(2020) 「dBrain 기반 재정성과관리 지원 강화 방안」, 한국재정정보원
- 손희준 (2018) 「자치분권 시대의 지방재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회계통계센터
- 송도흠 (2015) 「공공건축사업 유형별 사후평가 모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여규동, 최성원, 박선영 (2019) 「투자사업 이력관리 정보의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수요자별 맞춤형 정보제공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육현, 김진욱. (2015)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스템의 고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2호(JKIIT, Vol.13, No.12)
- 윤성일, 김상기(2020)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교선·이두헌·김창환·한예령·권순욱·박희성·김창환·김정렬·박재우·유지연·김윤성.
(2009). 건설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개선 연구. 국토해양부.
- 이두헌, 박희성. (2016) 「건설공사 사후평가 전문기관 설치 필요성 연구」, 대한토목학
회논문집 제36권 제2호
- 이두헌, 이교선, 김경훈, 이강욱. (2020) 「건설공사 사후평가센터 증장기 전략수립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두헌, 정인수, 신은영, 김경훈. (2015) 「건설공사 평가관리 및 활용 고도화 방안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삼주, 김성주. (2016)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평가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 이상미, 라휘문, 김영찬. (2021) 「경기도 재정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
- 이상미, 신열, 장정연. (2020) 「경기도 재정사업평가제도의 메타평가 연구」, 경기연구원
- 이현우. (2018)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 정성윤·김지표. (2018) 「재정투자평가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기반의 사후평가
관리시스템 도입 방안」. 대한산업공학회지, 44(3)
- 조기현, 전성만. (2019) 「생활SOC 정책의 긍정적 효과(사례) 및 효율적 운영방안」,
2019 정책이슈리포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조달청. (2004). 조달 전문성 활용제도(Gateway Review 제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9) 「건설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개선연구」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21) 「국가균형발전사업 2021 평가백서」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공공시설 운영현황 매뉴얼』
(2022.05)
- 한명주, 박윤혜, 김도일. (2019)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경기연구원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예규 제132호」
- 건설정보사업시스템 www.calspia.go.kr(최종검색일 2022.11.20.)
- 지방재정365 <http://lofin.mois.go.kr>, 공공시설 운영현황(최종검색일 2022.10.20.)
- 빅카인즈 <https://www.bigkinds.or.kr/>
- 일본 국토교통성, 사업평가 진료기록카드”
(<https://www.mlit.go.jp/tec/hyouka/public/jghks/chart.htm>)

- MAP21 <https://www.fhwa.dot.gov/map21/presentations.cfm>
- UK IPA. (2021a). Gate Review Process Gate 0 Review: Strategic Assessment V1.0.
- UK IPA. (2021b). Gate Review Process Gate 1 Review: Business Justification V1.0.
- UK IPA. (2021c). Gate Review Process Gate 2 Review: Delivery Strategy V1.0.
- UK IPA. (2021d). Gate Review Process Gate 3 Review: Investment Decision V1.0.
- UK IPA. (2021e). Gate Review Process Gate 4 Review: Readiness for Service V1.0.
- UK IPA. (2021f). Gate Review Process Gate 5 Review: Operations Review and Benefits Realisation V1.0.
- UK IPA. (2022). Annual Report on Major Projects 2021-22.

政策評価審議会, (平成30年3月『公共事業に係る政策評価の改善方策』
(정책평가심의회, 『공공사업에 관한 정책평가 개선방책』(헤이세이 30년 3월))

부록 1: 일본 사후평가 사례

1) 공원 사례 : 국영알프스아즈미노공원

사업명 (개소명)	국영알프스아즈미노공원		담당과 담당과장명	도시국공원복지·경관과 五十嵐 康之	사업 주체	간토지방정비국				
실시장소	나가노현 아즈미노시, 오마치시 및 기타아즈미군 마쓰카와무라									
해당 기준	사업 완료 후 일정 기간(5년 이내) 경과한 사업									
주요 사업 관련 수치	공원면적 약353헥타르									
사업기간	사업채택	헤이세이2년도	완료	헤이세이27년도						
총사업비 (억엔)	채택시	600	완료시	611						
목적·필요성	<p><해결해야 할 과제·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나의 도부현을 넘어 넓은 관점에서 조성된 이호 공원. 북 알프스의 산들과 아즈미노 지역의 축복받은 자연 환경을 살림으로써 자연과 문화의 융합을 목표로 한 새로운 레크리에이션 수요에 대응하는 것 등이 요구되고 있다. <p><달성해야 할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의 이념인「자연과 문화에 얽힌 풍부한 자유시간 활동 실현」을 근거로,「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자연 환경과의 공존을 목표로 한 보전 활동이나 개발 활동 추진」,「각종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을 대표하는 자연환경 속에서 편안함과 건강으로 이어지는 즐거움을 제공」,「공원이 지역 재유형 관광의 거점이 될과 동시에, 공원 내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과 제휴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공헌」 등을 기본 방침으로 하며 종합적으로 정비, 관리, 운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p><정책 제재상의 위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목표: 양호한 생활환경, 자연환경 형성, 배리어프리 사회 실현 시책목표: 양호하고 녹음이 풍부한 도시공간 형성, 역사적 풍토 재생 등 추진 									
비용효과 분석의 산정 기초가 된 요인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속도로 등의 도로망 확충, 공원 정비 사업 종료 등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의 산정 기초가 된 요인이 변화했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실시했다. 야생동물에 대한 안전대책 때문에 이전 평가에 비하여 총사업비가 약 1억엔 증가했다. 									
사업전체의 무자효율성	기준연도	레이와2년도								
	B:총편익 (억엔)	2,851	C:총비용(억엔)	1,507	전체B/C	1.89	B-C	1,344	EIRR (%)	7.70%
사업효과의 발현상황	<p>①입장 인원 및 이용자 만족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략 연간 50만명이 방문, 90% 이상이「만족」,「그럭저럭 만족」이라고 대답. <p>②관광진흥지역 활성화 기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풍토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실시. <p>③장수·복지 사회에 대한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 길을 배리어프리에 대응하도록 하며 공원 내 이동 교통을 확보. <p>④자연과의 공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문화와 공원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참여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생물 다양성과 지역 고유의 환경, 이를 뒷받침하는 기능 계층의 효과와 다양한 사람들 간의 교류를 창출하고 있다.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하여 녹음이 풍부한 환경과 지역 경관, 귀중한 동식물이 서식 및 성장하는 환경이라는 배려를 높임으로써 계절별·지구별 특색 있는 경관을 창출하고 있다. <p>⑤방재에 관한 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 기관과의 사이에서 제해시에 있어서의 귀가 곤란자 지원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 방재 훈련이나 방재 체험 이벤트 등을 실시해, 방재 의식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p>⑥사업 실시에 의한 동식물의 서식·생육 환경 등에의 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중이나 지역의 재래종 등을 고려한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공원 내에 귀중종인 큰종대검박이푸른부전나비의 보호구역을 마련해 보호 단체 등과 공동으로 관찰회나 이벤트 등을 실시. <p>⑦문화재의 보전·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 내에서 확인된 고분과 유적지 등의 보호와 정보 전달, 학습지도 활용되고 있다. 									
사업실시에 따른 환경 변화	동식물의 서식·생육 환경의 보전·장출, 태장 문화재의 보전·활용에 힘쓰고 있으며, 사업 실시에 따른 환경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사회경제적세 등의 변화	지자체의 종합 기본계획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현저에서도 기대를 받고 있다. 본 공원 인근의 현영 공원과도 상호 특성을 보완하면서 상승 효과를 발휘하는 사실이 되고 있다.									
향후 사후 평가의 필요성	본 사업의 실시에 의해 관광 진흥 등 지역 활성화, 방재 등에 관하여 일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추가 사후평가가 필요 없다.									
개선조치의 필요성	본 사업의 실시에 의해 관광 진흥 등 지역 활성화, 방재 등에 관하여 일정한 효과를 얻고 있으므로, 당면한 개선조치의 필요성은 없다.									
동종 사업의 계획·조사 방식이나 사업 평가 방법의 재검토 필요성	동종 사업의 계획·조사 방식에 대해 제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없다. 단, 사후 평가 방법(간접 이용 가치의 효과 설명)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해 나간다.									
대응방침 이유	없음									
대응방침 이유	본 공원의 목적에 따른 효과가 발현되었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2) 도로 사례; 일반국도 4호 코가오야마 바이패스

사업명	일반국도 4호 코가오야마 바이패스		사업 구분	일반국도	사업 주체	국토교통성 간토지방정비국	
기종점	自 : 이바라키현 코가시 야기하시 至 : 이바라키현 유키시 오다바야시				연장	15.9km	
사업개요	<p>신4호 국도는 사이타마, 이바라키 서부, 도치기 주요 도시를 종관하는 연장 약 80km의 간선도로로, 북간토 지역의 광역 간선도로망을 형성하고, 도호쿠 자동차도와 함께 간토~도호쿠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다중층 네트워크를 형성해 대체성을 확보한다. 코가오야마 바이패스는 신4호선 국도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으로 국도 50호와 접속함으로써 지역 내 이동 교통 및 통과 교통이 집중되므로 현 도로의 교통 상황 개선, 지역 개발 활성화를 도모하는 6차선 우회 사업이다.</p>						
사업목적·필요성	코가오야마 바이패스는 교통 체증 완화, 교통 안전 확보, 지역 개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 개요도							
사업 효과 등	사업기간	사업화년도: 쇼와 48년	용지착수: 쇼와 56년	공용년	(당초/헤이세이) 24년	변동 1.1배	
		도시계획결정: 쇼와 45년	공사착수: 쇼와 60년	(감정/완성)	(실적)/H14 - H17년/H28년		
	사업비	계획시 注1	(목적치) - / 516억엔	실적	(목적치) - / 471억엔		변동 0.91배
		(감/완성)	(실현치) - / 488억엔	(감/완성)	(실현치) - / 443억엔		
	교통량 (해당노선)	계획시	(H42)		실현		(R1.10)
	(감/완성)	- / 57,900 ~ 69,000차/일		(감/완성)	- / 47,007차/일		
여행속도향상(공용년 현도 -해당노선)	29.2 km/h → 53.8 km/h (공용직년차) 헤이세이 2년 (공용후년차) 레이와 1년			교통사고감소(공용년 현도 →공용후 현도)	166건/억대km → 35건/억대km (공용직년차) 헤이세이 2년 (공용후년차) 레이와 1년		
당초 비용 대비 효과분석 결과	B/C	4.7	총비용 : 917억엔 (사업비 : 850억엔, 유지관리비 : 67억엔)	총편익 : 4,347억엔 (주행시간 단축 편익 : 3,387억엔, 주행경비 감소 편익 : 734억엔, 교통사고 감소 편익 : 227억엔)	기준년	헤이세이 19년	
사후 비용 대비 효과분석 결과	B/C	2.4	총비용 : 1,568억엔 (사업비 : 1,307억엔, 유지관리비 : 262억엔)	총편익 : 3,755억엔 (주행시간 단축 편익 : 3,464억엔, 주행경비 감소 편익 : 287억엔, 교통사고 감소 편익 : 4.2억엔)	기준년	레이와 3년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	비용 증가액		-억엔		편익 감소액 : -억엔		
사업 지연의 이유	· 지역 및 관계기관 협의에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p>객관적 평가지표에 대응하는 사후평가항목 :</p> <p>①원활한 모빌리티 확보 · 병행하는 국도 4호(현 도로)의 교통량이 감소하여 정체 손실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p> <p>②국도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 일상 활동권 중심 도시로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다.</p> <p>③개성 있는 지역의 형성 · 도의역 「베쿠라가노사토코가」의 개업과 바이패스와의 직결, 연선 공업 단지의 개발을 촉진</p> <p>④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 확보 · 3차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 예상된다.</p> <p>⑤안전한 생활환경 확보 · 병행하는 국도 4호(현도)의 사상 사고율이 감소</p> <p>⑥계해에 대한 대비 · 이바라키현·도치기현의 방재 계획에서 제1차 긴급 수송 도로로 지정</p> <p style="text-align: right;">기타 14개 항목에 해당</p> <p>기타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한 항목 : · 특별히 없음</p>
사업에 의한 환경 변화	<p>환경영향평가에 대응하는 항목 · 특별히 없음</p> <p>기타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한 항목 · 특별히 없음</p>
	<p>사업평가감시위원회의 의견 · 해당 사업에 관해서는 향후 사업 평가 및 개선 조치는 필요 없음</p>
	<p>사업을 둘러싼 사회경제 정세 등의 변화 · 연선의 공업단지로의 기업 진출이 촉진됨으로써 잠정 개통 전인 헤이세이2년과 비교해 레이와2년의 종업원 수는 약 1.3배, 제조품 출하액은 약 2.1배로 증가</p>
	<p>향후 사후평가의 필요성 및 개선조치의 필요성 · 본 사업의 실시로 사업목적인 「교통체증 완화, 교통안전 확보, 지역개발 활성화」에 대해 다양한 정비효과가 발현되고 있어 향후 사후평가 및 개선조치의 필요성은 없다.</p>
	<p>계획·조사의 본연의 자세나 사업 평가 수법의 재검토의 필요성 · 동종사업의 계획·조사에 있어서는 도로정비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치단체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해당 사업은 지역으로부터의 조기 개통 요망 등에 의해 바이패스 기능이 조기 발현될 수 있도록 단계 정비가 진행되어 교통 상황 개선뿐만 아니라 연선 공단에서 기업 입지·단지 확장이 더욱 촉진되어 지역 고용·경제를 비롯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였다. · 차음벽이나 노면배수시설 등에 대해 현지조사 결과나 개발 상황을 토대로 설치 계획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해 비용을 절감했다. · 향후에는 가스카베 후루카와 바이패스 정비를 촉진하고 현 국도 4호선의 바이패스로서 기능하는 단계에서 전 구간을 하나의 사업 단위로 평가하는 것을 검토한다.</p>
	<p>특기 사항 · 특별히 없음</p>
	<p>※ 총비용, 총편익과 그 내역은 각 연차의 가액을 할인율을 이용해 기준년의 가치로 환산해 누계한 것 ※ 注1 헤이세이19년도 재평가 시의 값</p>

3) 청사 사례 : 와카야마 지방합동청사

사업명	와카야마 지방합동청사	담당과	영선부기술·평가과	사업	국토교통성
		담당과장명	長谷部 武志	주체	近畿지방정비국
실시장소	和歌山県和歌山市二番丁3				
해당기준	사업 완료 후 2년이 경과한 사업				
사업에 관한 여러 수치	•부지: 6,501 m ² •구조: 철골조(일부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지상10층, 지하1층, 탑옥1층 •규모: 21,673 m ²				
사업기간	사업채택	헤이세이21년	완료	헤이세이29년	
총사업비	90억엔				
목적·필요성	<해결해야 할 과제·배경> 입주예정관서가 사용하던 청사는 시설 노후와 업무 다양화, 업무량 증대로 인하여 건물이 수요에 비하여 비좁게 됨에 따라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또 일부 시설은 현행 내진 기준에서 내진성능도 부족하였다. 이들 시설의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해 와카야마 지방검찰청·구검찰청 부지에 필요한 업무 면적을 확보한 합동청사를 정비한 것이다. <정책 체계상의 위상> •정책목표: 관청시설의 편리성, 안전성 등의 향상 •시책 목표: 환경 등을 배려한 편리하고 안전한 관청 시설 정비·보전 추진				
사회 경제 정세 등의 변화	본 사업의 사업계획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 정세 변화는 특별히 없다고 생각된다.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의 산정 기준의 변화	당초의 사업계획에 따른 정비가 이루어지고 청사가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채택 시점부터 특별한 요인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업효과 발현상황	•위치, 규모 및 구조의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 기능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성, 경관성, 환경보전성, 유니버설 디자인, 방재성 및 내용·보전성에 대해 특히 충실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청 신속 및 수리 시책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상정하고 있던 사업의 효과는 충분히 발현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사업 실시에 따른 환경 변화	환경부하 저감에 대한 대책이나 CASBEE 평가 결과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된다.				
대응방점	향후 사후평가의 필요성	사업의 효과는 충분히 발현되었다고 생각되므로 향후 사후 평가의 필요성은 없다.			
	개선조치의 필요성	사업의 효과는 충분히 발현되었다고 생각되므로 개선 조치의 필요성은 없다.			
동종 사업의 계획·조사 방식이나 사업 평가 방법의 재검토 필요성	현 시점에서 재검토의 필요성은 보이지 않는다.				
기타	<제3자 위원회의 의견·반영 내용> 사업평가감시위원회에서 '향후 사후평가의 필요성, 개선조치의 필요성은 없다'는 판단은 타당하다고 여겨졌다.				

부록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사후평가 관련 근거조항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의2(사후평가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후평가 수행결과의 적정성 확인·점검
 2. 사후평가 관련 정보의 축적·분석, 분석정보의 보급
 3. 사후평가의 기준·절차·평가기법 등에 관한 조사·연구
 4. 사후평가 관련 교육·훈련·기술교류·국제협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④ 전문관리기관의 지정·운영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범위·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6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상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이하 “사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 발주청은 사후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와 제78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2. 공사 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
3. 해당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
5. 그 밖에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사후평가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④ 사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항에 따른 조사·분석의 결과에 관한 사항
2. 제2항에 따른 조사·분석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⑤ 제3항과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종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평가서를 축적·분석하여 건설공사의 시행과정별로 표준적인 소요기간 및 비용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6조의2(사후평가 관리 등) ① 법 제52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후평가 시행에 관한 검토·자문

2. 사후평가 수행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

3. 그 밖에 사후평가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연구원을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후평가 관리 업무를 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③ 건설기술연구원은 법 제52조의2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상공사 현황 및 사후평가서 등 사후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발주청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26.]

제86조의3(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① 법 제52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86조의2제2항에 따라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건설기술연구원은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한다.

③ 건설기술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후평가 관리 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④ 건설기술연구원은 위탁받은 사후평가 업무에 대한 계획 및 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세부업무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 출연금 사용실적을 포함한 전년도 업무실적: 매년 3월 31일까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6조(사후평가 결과의 공개) 발주청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고, 사후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부록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사후평가 사례(충주종합스포츠타운)

▶ (1) 건설공사 개요

관리번호	충주시-2022-충주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공사		
준공일	2017/08/28	평가일	2022/06/20
공사개요(공구별 또는 공종별 분할발주된 경우 각각의 공사)			
공사명	충주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공사		
공사규모	부지면적 : 307,010㎡ 주경기장 : 연면적 46,272㎡, 14,946석 보조경기장 : 연면적 20,609㎡ 주차시설 : 1,388대		
공사성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개보수현대화 <input type="checkbox"/> 확장·증설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사비 지급방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총액계약 <input type="checkbox"/> 단가계약 <input type="checkbox"/> 실비정산 <input type="checkbox"/> 기타		
발주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평가담당자(부서/직위/성명)	체육진흥과 / 주무관 / 신은성	
공사위치	충주시 대림로 85(호암동) ~ 충주시 대림로 85(호암동)		
공사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면서 기존 공설운동장(1968년 건립) 시설로 대회 개최가 불가능하여 충주종합운동장 신축 확정 ○ 주변 호암공원, 호암지, 대계지를 고려한 친환경적인 스포츠타운 조성으로 충주를 스포츠메카로 활성화 		
입찰·계약 방식			
도급방법	<input type="checkbox"/> 단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성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기계속공사 <input type="checkbox"/> 단기계속공사 -> 계속비 전환공사 (전환시점 :) <input type="checkbox"/> 기타공사		
입찰방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적격심사 <input type="checkbox"/> 최저가 <input type="checkbox"/> 토크 <input type="checkbox"/> 대안 <input type="checkbox"/> 기타		
계약방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한 <input type="checkbox"/> 일반경쟁 <input type="checkbox"/> 지명경쟁 <input type="checkbox"/> 수의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업참여자(공동수급자)			

▶ (2) 건설사업 수행성과평가

가. 정량적 성과평가

평가항목 / 사업단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	시공
용역비 및 공사비 (단위:백만원)	계약금액	0	0	1,919	25,000	70,551
	추정공사비	0	0	2,306	-	-
	추정공사기간	0년 0개월	0년 0개월	0년 0개월	0년 10개월	-
공정	준공금액	0	0	1,898	34,663	75,539
	계약공기	0년 0개월	0년 0개월	0년 0개월	0년 10개월	2013/01/01 ~ 2015/03/12~2017/08/28
설계변경 (물가변동 금액제외)	실제공기	-	-	-	2015/12/31	2015/03/13~2022/08/28
	건수	-	-	-	-	6
	증감액	-	-	-	-	4,988
	계약자 귀책금액	-	-	-	-	0
재시공 금액	-	-	-	-	-	0

* 보상한의 계약금액에는 당초 보상추정금액을 준공금액에는 '실집행보상비'를 기재, 계약공기에는 '보상시작시점'을 '실제공기'에는 '보상완료시점'을 기재
* 시공한의 계약공기에는 계약상의 최소 작동일과 계약상의 최후 작동일을 기재하고, 실제공기는 계약상의 최소 작동일과 실제 공사종료일을 기재

나. 사업수행평가(종합)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사업수행성과	사업비	사업비 증감률	계획 : 104,300 백만원 → 실제 : 115,786 백만원 (증감률 11.01 %)
		보상비 증감률	계획 : 25,000 백만원 → 실제 : 34,663 백만원 (증감률 38.65 %)
	사업기간	사업기간 증감률	계획 : 3 년 4 개월 → 실제 : 4 년 0 개월 (증감률 20 %)

지방재정투자사업 사후관리방안 개선연구 : 문화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표(통합평가)

관리번호	충주시-2022-충주통합스포츠타운 조성공사			
준공일	2017/08/28	평가일	2022/06/20	
공사개요(공구별 또는 공종별 분담발주된 경우 각각의 공사)				
공사명	충주통합스포츠타운 조성공사			
공사규모	부지면적 : 307,010㎡ 주장기장 : 연면적 46,272㎡, 14,946석 보조장기장 : 연면적 20,609㎡ 주차시설 : 1,388대			
공사위치	충주시 대항로 85(호암동) ~ 충주시 대항로 85(호암동)			
공사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면서 기존 공설운동장(1968년 건립) 시설로 대체 개최가 불가능하여 충주종합운동장 신축 확장 ○ 주변 호암공원, 호암지, 대계지를 고려한 친환경적인 스포츠타운 조성으로 충주 스포츠메카로 활성화 			
발주기관	평가담당자(부서/직위/성명)		재육진룡과 / 주유관 / 신은성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사업포괄	수요	수요 (단위 : -)		계획 : 0 → 실제 : 0 (증감률 0%)
	기대효과	B/C 비율		계획 : 0 → 실제 : 0 (증감률 0%)
파급효과	주인의 조용도 및 사용자 만족도	민원	다수민원 발생 건수	5 건
			다수민원 처리 건수	5 건
		하자	하자 발생 건수	1 건
			하자 처리 건수	0 건
		지역경제	인구 수	213,334 명
			종사자 수	97,668 명
			지역 총 생산	8,091,600,000,000 원
			지가 상승률	8.54 %
		환경	-	사후환경영향조사 완료(2021.12.) 설문조사 내용 참조

■ 주요사항 기타(반드시 기록)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로 계획단계의 수요예측, 경제성분석 등의 기초자료 부재로 건설공사 완료 후의 실제 수요지와 경제성분석 자료의 비교 검토가 불가하여 건설사업 기획 시 타당성조사 등 수행에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사후평가 결과를 향후 feed-back시켜 후부 공사수행 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를 우선하게 한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조사 시 수요분석 및 경제성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향후 유사 건설사업 기획 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 당해 건설공사 시행과정이나 유지관리업무를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기술할 것

■ 특히 평가항목 중 수요, 기대효과가 계획과 상이할 경우 그 원인을 자세히 기술할 것

B 중공단계까지 이력관리제도(현행 제도) 개선 방향 관련 의견조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2에 의거, 2016년부터 매년 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심사 통과 이후 사업 추진정보(사업명, 사업비, 위치, 추진일정 등)가 수집 및 분석되고 있으나, 관련 자료는 별도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B1. 이력관리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면,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투자사업 정보 전부 : 개별 사업별 세부정보(사업비, 일정, 재원조달계획, 투자심사 결과 조치내역 등)
- ② 투자사업 정보 일부 : 자치단체별 사업정보 항목별 평균 등 집계정보(사업비 평균, 사업비 증감 및 일정 지연 평균 등)
- ③ 중 점 관 리 사 업 : 사업비 증가 및 일정 지연 등을 검토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업을 중점 관리사업으로 선정하여 자체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함
※ 매년 약 20~40건 중점관리사업 선정

(1) 공개대상	(2) 공개 범위					
	전부+중점 (①+③)	일부+중점 (②+③)	전부 (①)	일부 (②)	중점 (③)	공개 불가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 추진부서)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예산부서)						
③ 광역시도 (시군구일 경우 해당 시도)						
④ 행정안전부						
⑤ 일반시민						

B2. 다음은 이력관리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사유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사유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더불어 추가로 고려되어 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기타'에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력관리 결과 공개를 통해	매우 동의	동의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잘 모름
1) 사업담당자 변경 시, 사업 내용 및 추진 경과를 용이하게 파악함으로써 원활한 업무 연계 가 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사업 추진 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에 위험 또는 장애요인 인지 및 효율적 관리 가 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신규 사업 계획수립 시, 타 지자체 포함 기존 유사사례 정보 검토를 통한 사업 중복성 배제 (또는, 차별성 강화)가 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사업추진 과정의 투명성 제고 측면 에서 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기타()					

E 응답자 일반 현황

※ 응답자 관련 문항은 통계적 분석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성 별	① 남 ② 여
연 령	① 20대 이하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근무년수	① 1년 미만 ② 1년~5년 미만 ③ 5년~10년 미만 ④ 10년~15년 미만 ⑤ 15년~20년 미만 ⑥ 20년 이상~25년 미만 ⑦ 25년 이상
부서 경험여부 (중복가능)	<input type="checkbox"/> 사업부서 <input type="checkbox"/> 예산부서
직급	① 9급 이하 ② 8급 ③ 7급 ④ 6급 ⑤ 5급 이상 ⑥ 기타(_____)
근무 지역	광역시.도명 (_____) 기초자치단체명 (_____)

♣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부록 5: 시설구분별 유사시설 평가기준

〈표 부록 5-1〉 2016~2019년도 육상경기장(체육) 현황

구분	분석 항목	최대값	최소값	중위값	평균값
고밀도	연간 이용자수(명)	4,129,242	20,000	342,741	791,362
	순수익(백만원)	1,811	-6,822	-1,470	-1,840
	비용(백만원)	15,365	95	3,057	3,914
	수익(백만원)	11,411	0	1,178	2,074
	건물면적(㎡)	113,663	3,512	39,074	42,862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명)	303.27	0.27	10.69	35.01
	시설당 운영수지비율	1.27	0.00	0.44	0.41
중밀도	연간 이용자수(명)	2,500,000	730	87,540	200,440
	순수익(백만원)	3,522	-20,400	-349	-774
	비용(백만원)	20,510	55	699	1,618
	수익(백만원)	11,004	0	58	840
	건물면적(㎡)	139,771	172	12,736	21,951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명)	2,041.84	0.11	7.16	50.50
	시설당 운영수지비율	1.92	0.00	0.10	0.32
저밀도	연간 이용자수(명)	571,987	1,215	42,001	70,742
	순수익(백만원)	-23	-5,789	-225	-398
	비용(백만원)	6,162	28	229	435
	수익(백만원)	489	0	9	37
	건물면적(㎡)	105,553	261	5,120	9,132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명)	292.82	0.10	8.60	26.81
	시설당 운영수지비율	0.55	0.00	0.04	0.08
직영	연간 이용자수(명)	725,409	730	45,652	97,164
	순수익(백만원)	1,811	-20,400	-275	-692
	비용(백만원)	20,510	28	318	1,047
	수익(백만원)	11,411	0	13	355
	건물면적(㎡)	139,771	261	7,937	17,664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명)	292.82	0.10	5.60	18.55
	시설당 운영수지비율	1.40	0.00	0.04	0.13
위탁	연간 이용자수(명)	4,129,242	6,957	182,068	465,947
	순수익(백만원)	3,522	-8,498	-539	-1,006
	비용(백만원)	11,294	55	1,412	2,311
	수익(백만원)	11,004	0	350	1,298
	건물면적(㎡)	113,663	172	15,209	25,383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명)	2,041.84	0.27	15.69	65.27
	시설당 운영수지비율	1.92	0.00	0.34	0.40

〈표 부록 5-2〉 2016~2019년도 체육관(체육) 현황

구분	분석 항목	최대값	최소값	중위값	평균값
고밀도	연간 이용자수(명)	10,009,000	500	263,969	425,959
	순수익(백만원)	1,228	-4,417	-600	-701
	비용(백만원)	7,229	6	2,082	2,170
	수익(백만원)	5,312	0	1,430	1,469
	건물면적(㎡)	44,617	1,443	9,792	10,973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명)	254.22	0.12	27.34	48.48
	시설당 운영수지비율	4.14	0.00	0.64	0.65
중밀도	연간 이용자수(명)	1,792,363	1,000	133,416	271,131
	순수익(백만원)	1,995	-18,225	-362	-614
	비용(백만원)	18,225	2	1,363	1,750
	수익(백만원)	4,821	0	797	1,130
	건물면적(㎡)	43,029	368	7,102	10,412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명)	174.62	0.50	16.03	31.71
	시설당 운영수지비율	4.82	0.00	0.58	0.63
저밀도	연간 이용자수(명)	488,029	4,300	53,277	84,226
	순수익(백만원)	9	-1,791	-276	-372
	비용(백만원)	3,394	5	339	525
	수익(백만원)	1,718	0	18	153
	건물면적(㎡)	22,734	931	5,791	7,203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명)	119.12	0.32	8.73	15.72
	시설당 운영수지비율	1.07	0.00	0.07	0.19
직영	연간 이용자수(명)	1,724,024	1,000	73,330	135,231
	순수익(백만원)	444	-3,220	-285	-399
	비용(백만원)	4,391	5	413	679
	수익(백만원)	3,402	0	47	280
	건물면적(㎡)	31,041	368	6,094	8,598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명)	111.96	0.32	8.85	17.53
	시설당 운영수지비율	1.97	0.00	0.15	0.28
위탁	연간 이용자수(명)	10,009,000	500	179,942	328,937
	순수익(백만원)	1,995	-18,225	-447	-659
	비용(백만원)	18,225	2	1,710	2,019
	수익(백만원)	5,312	0	1,232	1,354
	건물면적(㎡)	44,617	1,130	7,390	10,392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명)	254.22	0.12	19.03	39.30
	시설당 운영수지비율	4.82	0.00	0.64	0.67

〈표 부록 5-3〉 2016~2019년도 단일목적 체육시설(체육) 현황

구분	분석 항목	최대값	최소값	중위값	평균값
고밀도	연간 이용자수(명)	2,576,642	12,242	125,435	368,594
	순수익(백만원)	16,967	-5,369	-247	206
	비용(백만원)	33,229	88	1,241	3,251
	수익(백만원)	36,253	0	603	3,457
	건물면적(㎡)	76,302	235	9,782	16,138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명)	638.30	0.79	15.83	67.76
	시설당 운영수지비율	7.18	0.00	0.56	0.89
중밀도	연간 이용자수(명)	1,054,830	6,600	82,480	194,669
	순수익(백만원)	9,387	-8,801	-287	-386
	비용(백만원)	27,855	30	996	2,695
	수익(백만원)	28,413	0	519	2,309
	건물면적(㎡)	166,515	285	10,817	24,259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명)	348.70	0.37	8.73	21.94
	시설당 운영수지비율	6.08	0.00	0.55	0.66
저밀도	연간 이용자수(명)	200,000	1,000	26,570	78,638
	순수익(백만원)	662	-1,349	-304	-360
	비용(백만원)	3,256	267	496	1,090
	수익(백만원)	3,917	4	105	730
	건물면적(㎡)	151,746	4,015	15,772	36,913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명)	19.09	0.06	2.48	3.40
	시설당 운영수지비율	1.20	0.01	0.29	0.36
직영	연간 이용자수(명)	731,081	1,000	67,150	161,634
	순수익(백만원)	615	-2,551	-350	-525
	비용(백만원)	3,987	30	666	1,052
	수익(백만원)	2,242	0	131	527
	건물면적(㎡)	151,746	285	12,578	21,930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명)	185.96	0.06	7.10	15.56
	시설당 운영수지비율	1.42	0.00	0.32	0.38
위탁	연간 이용자수(명)	2,576,642	6,600	123,043	272,555
	순수익(백만원)	16,967	-8,801	-248	-56
	비용(백만원)	33,229	88	1,252	3,265
	수익(백만원)	36,253	0	597	3,209
	건물면적(㎡)	166,515	235	10,817	22,714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명)	638.30	0.37	10.83	42.56
	시설당 운영수지비율	7.18	0.00	0.57	0.82

〈표 부록 5-4〉 2016~2019년도 공립도서관(문화) 현황

구분	분석 항목	최대값	최소값	중위값	평균값
고밀도	연간 이용자수(명)	2,250,000	17,844	583,789	739,088
	순수익(백만원)	-118	-7,331	-1,358	-1,852
	비용(백만원)	7,336	166	1,400	1,966
	수익(백만원)	1,826	0	37	114
	건물면적(㎡)	29,654	2,681	6,284	7,395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명)	474.11	3.96	89.87	114.59
	시설당 운영수지비율	0.40	0.00	0.03	0.05
중밀도	연간 이용자수(명)	2,165,444	14,683	507,386	643,620
	순수익(백만원)	-57	-10,584	-1,475	-1,742
	비용(백만원)	10,611	57	1,519	1,809
	수익(백만원)	1,367	0	25	67
	건물면적(㎡)	20,229	1,882	6,459	6,758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명)	391.76	2.61	80.10	103.22
	시설당 운영수지비율	0.38	0.00	0.01	0.04
저밀도	연간 이용자수(명)	886,583	39,665	278,101	437,758
	순수익(백만원)	-888	-4,892	-2,524	-2,504
	비용(백만원)	4,907	888	2,587	2,554
	수익(백만원)	137	0	27	50
	건물면적(㎡)	12,172	6,110	9,150	8,499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명)	88.42	4.79	30.84	47.20
	시설당 운영수지비율	0.04	0.00	0.01	0.01
직영	연간 이용자수(명)	2,064,788	14,683	500,429	572,765
	순수익(백만원)	-57	-10,584	-1,436	-1,949
	비용(백만원)	10,611	57	1,474	2,039
	수익(백만원)	1,826	0	25	90
	건물면적(㎡)	29,654	1,882	6,560	7,646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명)	210.43	2.61	70.53	77.94
	시설당 운영수지비율	0.40	0.00	0.02	0.04
위탁	연간 이용자수(명)	2,250,000	136,949	992,753	1,024,097
	순수익(백만원)	-364	-2,797	-1,331	-1,363
	비용(백만원)	2,836	367	1,414	1,434
	수익(백만원)	290	0	44	71
	건물면적(㎡)	8,555	2,930	5,106	5,219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명)	474.11	30.39	216.60	200.29
	시설당 운영수지비율	0.24	0.00	0.03	0.05

〈표 부록 5-5〉 2016~2019년도 문화예술회관(문화) 현황

구분	분석 항목	최대값	최소값	중위값	평균값
고밀도	연간 이용자수(명)	1,211,926	4,350	167,815	245,322
	순수익(백만원)	1,870	-23,427	-1,027	-2,355
	비용(백만원)	29,173	55	2,859	6,001
	수익(백만원)	30,457	18	669	3,645
	건물면적(㎡)	56,351	1,820	13,872	21,130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명)	34.86	2.39	9.15	12.07
	시설당 운영수지비율	1.17	0.03	0.23	0.44
중밀도	연간 이용자수(명)	11,739,138	3,948	106,915	322,233
	순수익(백만원)	3,113	-27,562	-1,049	-2,067
	비용(백만원)	43,726	64	1,934	3,941
	수익(백만원)	46,839	0	419	1,868
	건물면적(㎡)	86,574	1,251	10,273	14,011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명)	230.28	0.60	11.01	18.60
	시설당 운영수지비율	2.18	0.00	0.24	0.37
저밀도	연간 이용자수(명)	3,319,292	11,250	46,459	142,809
	순수익(백만원)	-45	-6,753	-702	-1,084
	비용(백만원)	16,747	75	788	1,440
	수익(백만원)	11,041	0	53	356
	건물면적(㎡)	26,794	1,843	5,225	6,256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명)	429.63	2.42	9.48	21.36
	시설당 운영수지비율	0.74	0.00	0.08	0.11
직영	연간 이용자수(명)	655,396	3,948	67,823	100,850
	순수익(백만원)	295	-27,562	-923	-2,183
	비용(백만원)	28,611	55	1,061	2,464
	수익(백만원)	2,705	0	114	281
	건물면적(㎡)	47,087	1,745	6,736	9,971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명)	34.86	0.60	9.54	10.86
	시설당 운영수지비율	1.26	0.00	0.10	0.15
위탁	연간 이용자수(명)	11,739,138	13,731	140,703	476,607
	순수익(백만원)	3,113	-18,944	-888	-1,429
	비용(백만원)	43,726	77	2,787	5,327
	수익(백만원)	46,839	2	980	3,898
	건물면적(㎡)	86,574	1,251	10,945	17,347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명)	429.63	1.25	11.84	28.12
	시설당 운영수지비율	2.18	0.01	0.37	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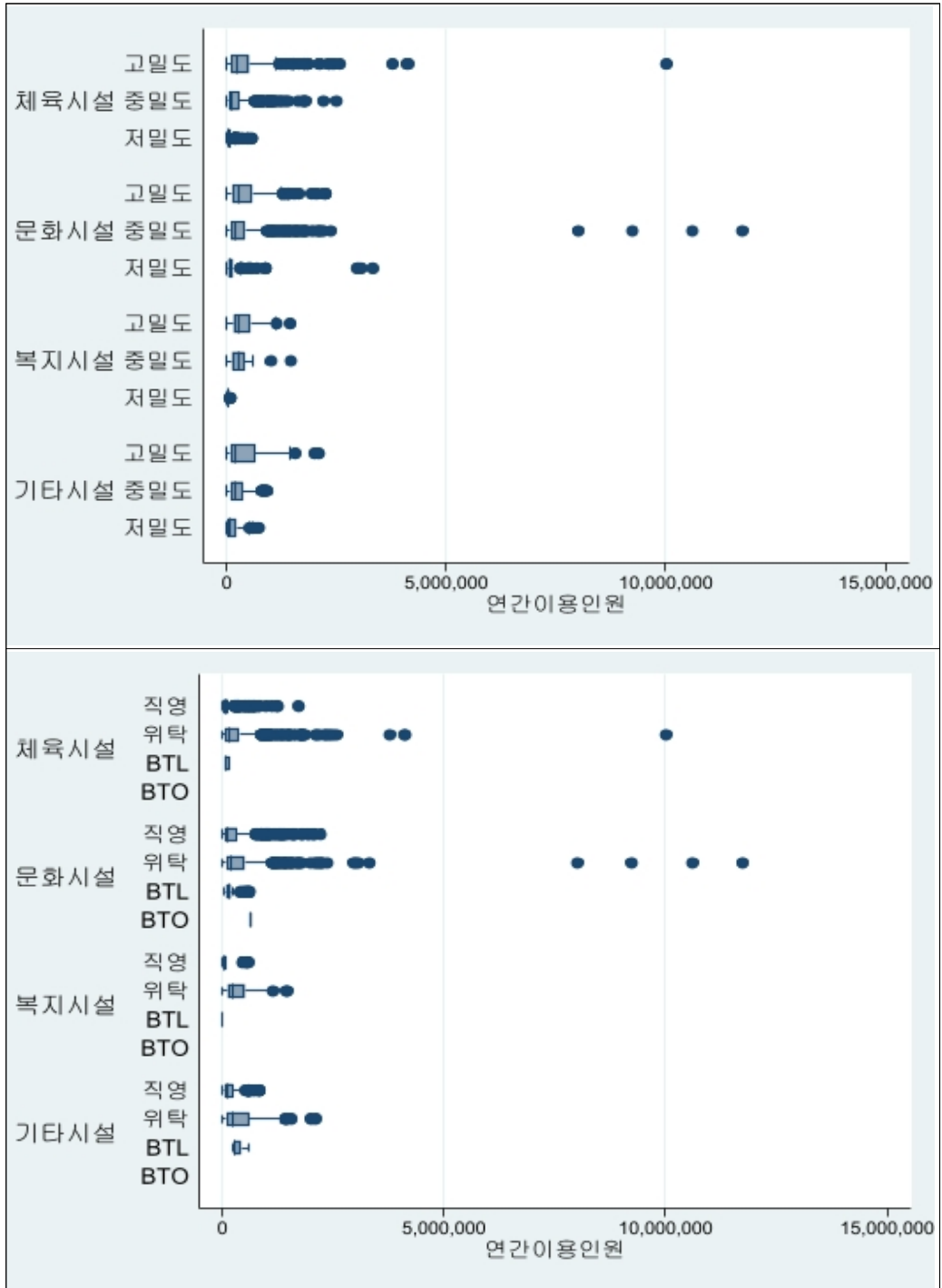
〈표 부록 5-6〉 2016~2019년도 박물관(문화) 현황

구분	분석 항목	최대값	최소값	중위값	평균값
고밀도	연간 이용자수(명)	1,317,559	32,128	168,036	248,749
	순수익(백만원)	1,372	-12,969	-806	-1,517
	비용(백만원)	13,212	86	1,167	2,025
	수익(백만원)	6,373	0	98	508
	건물면적(㎡)	23,717	1,392	6,616	7,498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명)	285.06	9.16	29.86	38.71
	시설당 운영수지비율	1.44	0.00	0.08	0.24
중밀도	연간 이용자수(명)	2,213,000	12,979	112,688	262,830
	순수익(백만원)	2,621	-15,083	-776	-1,265
	비용(백만원)	16,260	64	1,010	1,773
	수익(백만원)	12,127	0	68	508
	건물면적(㎡)	49,667	789	4,653	7,228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명)	1,649.87	1.24	21.76	76.97
	시설당 운영수지비율	2.55	0.00	0.06	0.22
저밀도	연간 이용자수(명)	351,749	559	100,942	116,588
	순수익(백만원)	75	-3,231	-387	-674
	비용(백만원)	3,391	1	653	850
	수익(백만원)	1,663	0	73	190
	건물면적(㎡)	54,878	455	3,980	5,584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명)	154.80	0.30	18.03	30.19
	시설당 운영수지비율	1.08	0.00	0.11	0.21
직영	연간 이용자수(명)	2,213,000	559	117,258	226,086
	순수익(백만원)	2,621	-15,083	-744	-1,287
	비용(백만원)	16,260	21	868	1,600
	수익(백만원)	12,127	0	56	313
	건물면적(㎡)	23,717	455	4,679	5,751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명)	1,649.87	0.30	21.78	58.76
	시설당 운영수지비율	1.39	0.00	0.06	0.16
위탁	연간 이용자수(명)	683,549	32,948	128,411	167,253
	순수익(백만원)	1,372	-3,231	-497	-598
	비용(백만원)	6,185	1	1,007	1,270
	수익(백만원)	6,373	0	277	684
	건물면적(㎡)	54,878	625	5,798	9,312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명)	285.06	1.24	29.43	33.59
	시설당 운영수지비율	2.55	0.00	0.25	0.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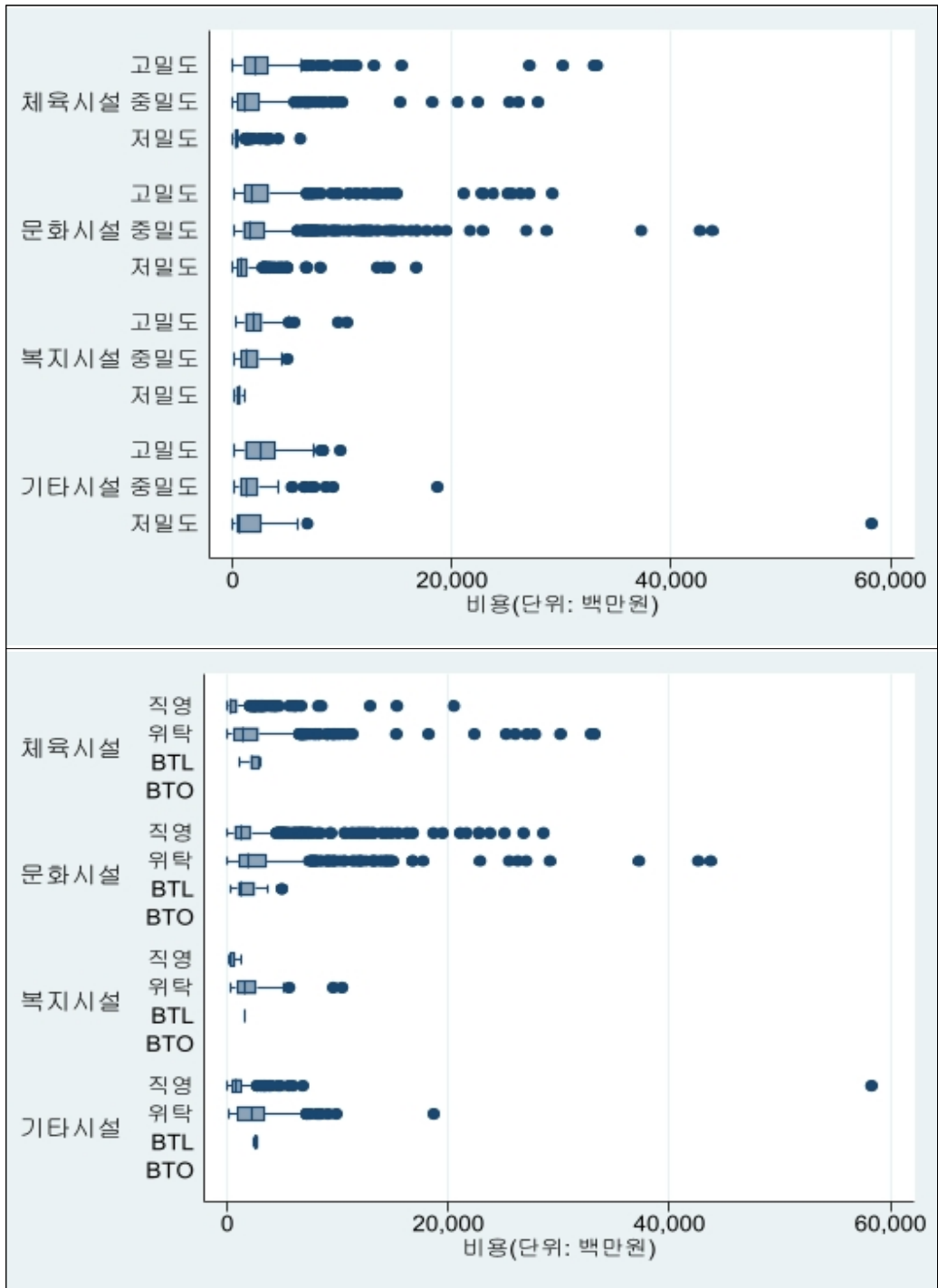
〈표 부록 5-7〉 2016~2019년도 복합시설(기타) 현황

구분	분석 항목	최대값	최소값	중위값	평균값
고밀도	연간 이용자수(명)	2,100,000	1,586	363,398	502,501
	순수익(백만원)	141	-7,212	-1,409	-1,790
	비용(백만원)	9,828	166	2,682	3,195
	수익(백만원)	4,551	0	1,262	1,405
	건물면적(㎡)	31,097	1,042	10,392	12,500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명)	213.64	0.15	31.66	49.05
	시설당 운영수지비율	1.05	0.00	0.34	0.40
중밀도	연간 이용자수(명)	919,488	2,000	236,925	299,690
	순수익(백만원)	4,190	-5,469	-555	-623
	비용(백만원)	9,143	162	1,485	1,823
	수익(백만원)	8,440	0	720	1,200
	건물면적(㎡)	44,024	731	8,176	9,588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명)	203.62	0.55	25.67	39.98
	시설당 운영수지비율	7.35	0.00	0.54	0.60
저밀도	연간 이용자수(명)	590,210	3,281	103,051	124,284
	순수익(백만원)	12,203	-3,332	-502	-555
	비용(백만원)	4,853	161	705	1,200
	수익(백만원)	13,812	0	152	645
	건물면적(㎡)	56,014	3,252	6,795	12,689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명)	92.67	0.57	10.02	14.22
	시설당 운영수지비율	8.58	0.00	0.19	0.44
직영	연간 이용자수(명)	833,000	3,281	94,886	159,003
	순수익(백만원)	12,203	-2,571	-653	-646
	비용(백만원)	3,369	161	833	1,104
	수익(백만원)	13,812	0	132	458
	건물면적(㎡)	56,014	731	8,263	10,933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명)	92.67	0.57	14.77	18.56
	시설당 운영수지비율	8.58	0.00	0.16	0.34
위탁	연간 이용자수(명)	2,100,000	1,586	316,371	428,031
	순수익(백만원)	4,190	-7,212	-613	-1,088
	비용(백만원)	9,828	162	2,289	2,713
	수익(백만원)	8,440	0	1,342	1,625
	건물면적(㎡)	44,024	1,042	7,577	11,048
	건물면적(㎡)당 연간 이용자수(명)	213.64	0.15	36.25	50.24
	시설당 운영수지비율	7.35	0.00	0.59	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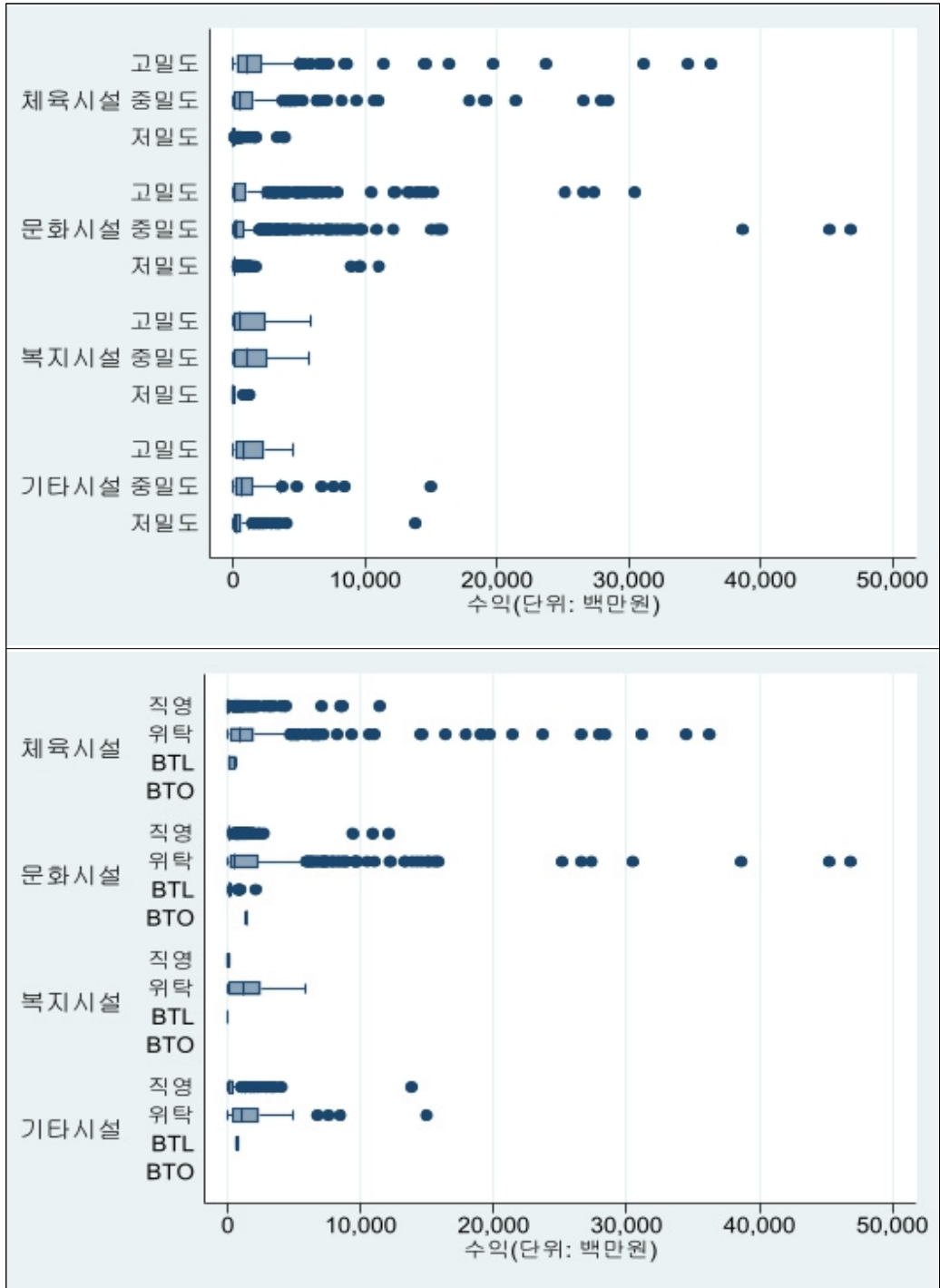
[그림 부록 5-1] 시설유형, 지역구분 및 운영형태별 연간이용인원의 박스플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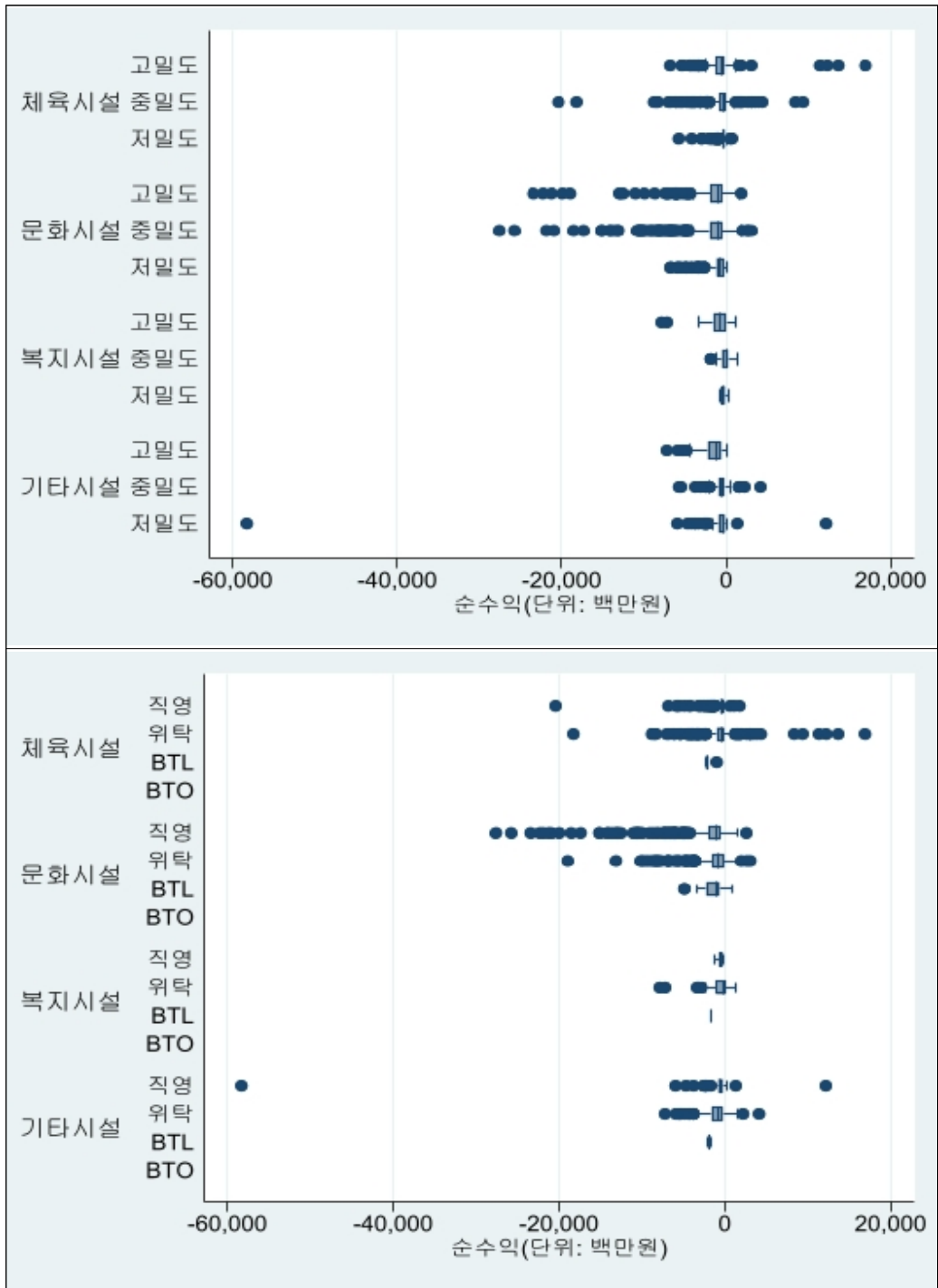
[그림 부록 5-2] 시설유형, 지역구분 및 운영형태별 비용의 박스플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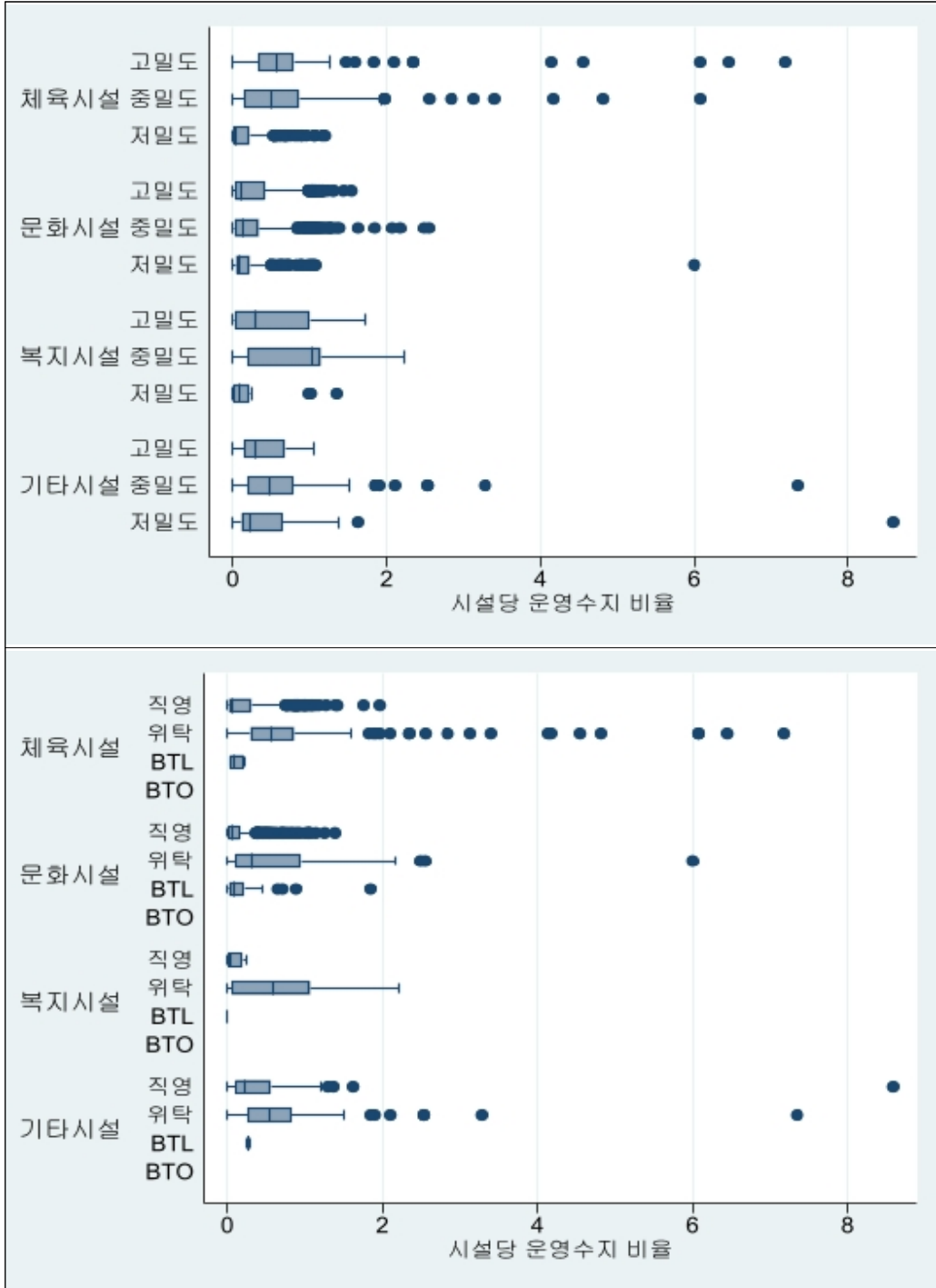
[그림 부록 5-3] 시설유형, 지역구분 및 운영형태별 수익의 박스플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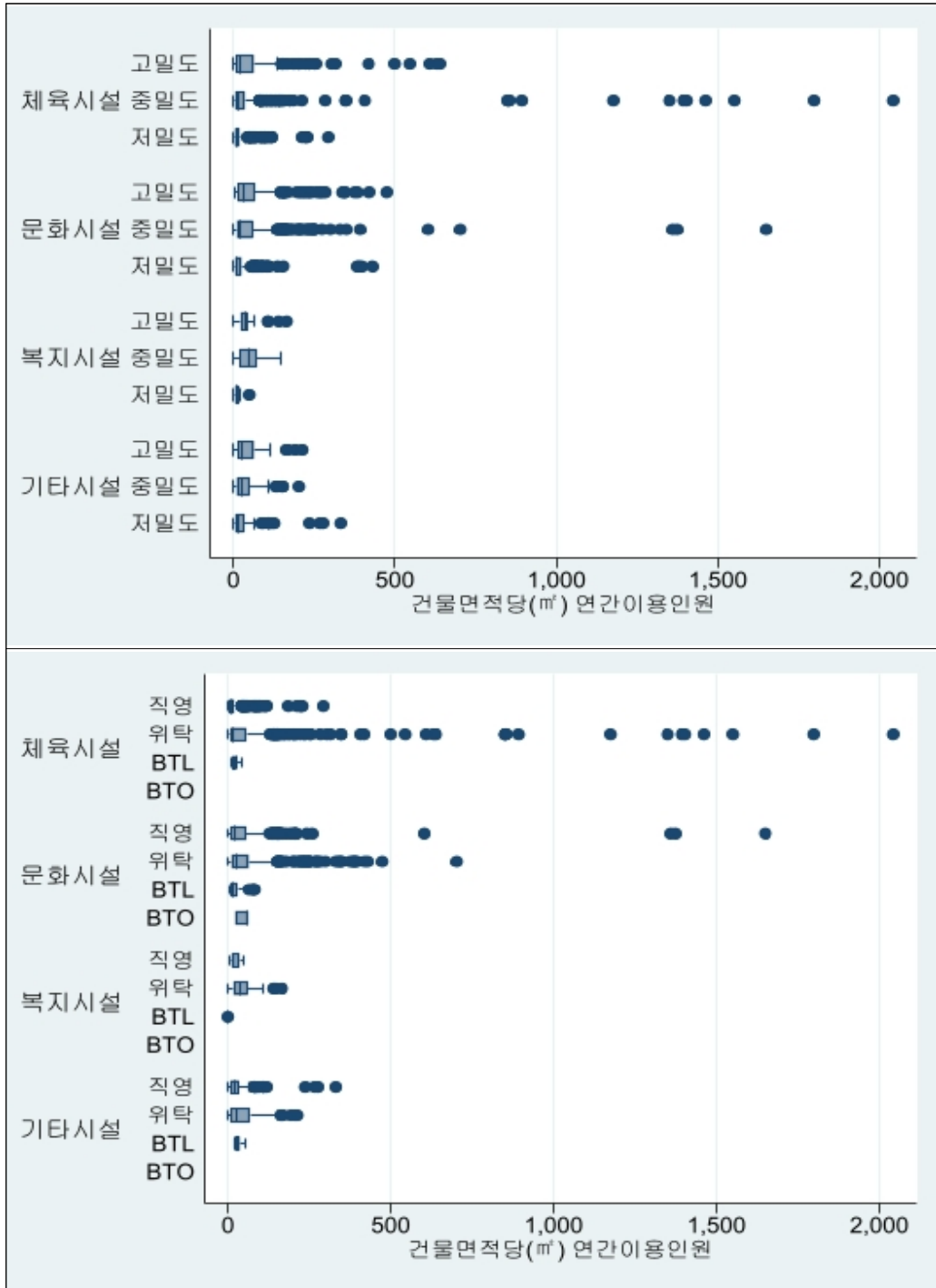
[그림 부록 5-4] 시설유형, 지역구분 및 운영형태별 순수익의 박스플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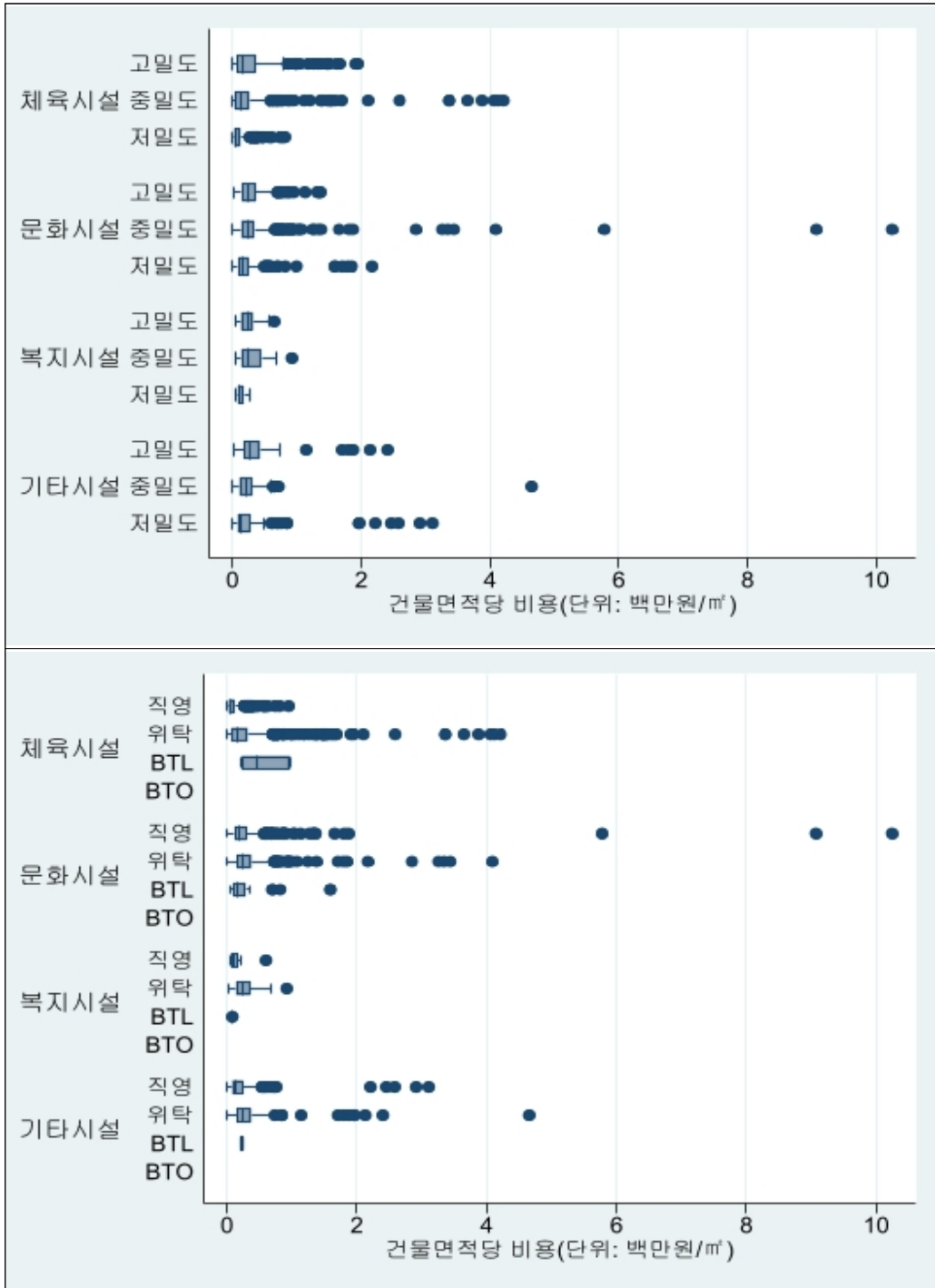
[그림 부록 5-5] 시설유형, 지역구분 및 운영형태별 시설당 운영수지 비율의 박스플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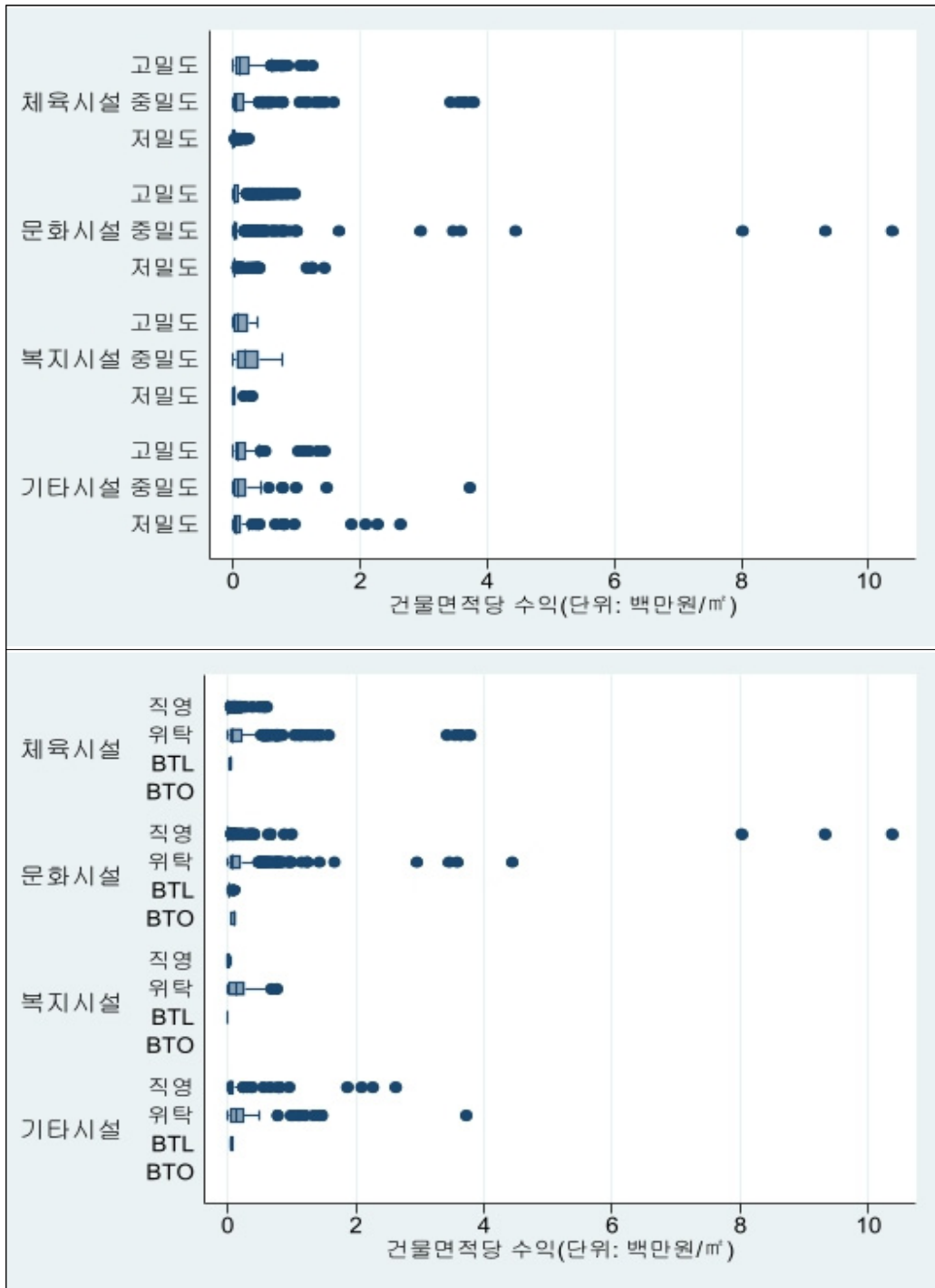
[그림 부록 5-6] 시설유형, 지역구분 및 운영형태별 건물면적당 연간이용인원의 박스플롯



[그림 부록 5-7] 시설유형, 지역구분 및 운영형태별 건물면적당 비용의 박스플롯



[그림 부록 5-8] 시설유형, 지역구분 및 운영형태별 건물면적당 수익의 박스플롯



[그림 부록 5-9] 시설유형, 지역구분 및 운영형태별 건물면적당 순수익의 박스플롯

